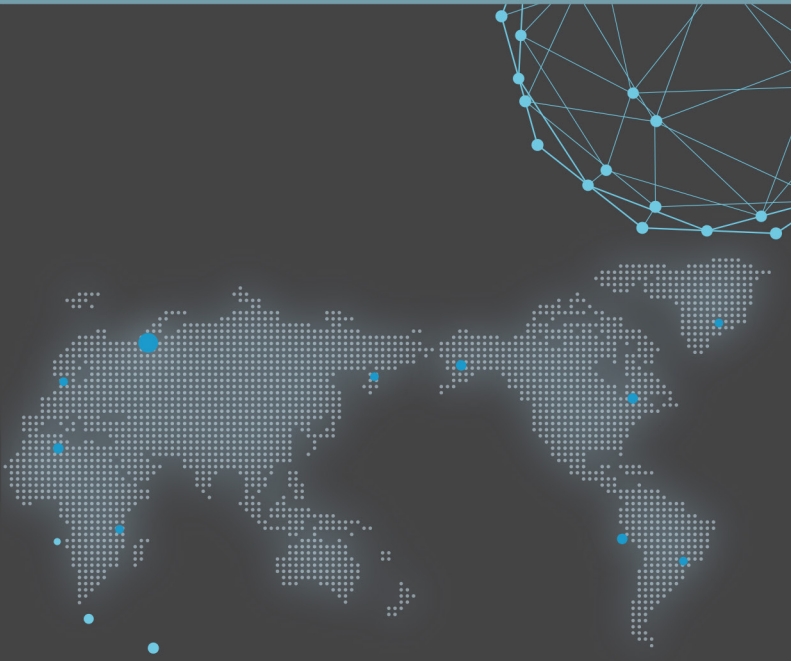


신흥국의 세정연구

말레이시아



2021. 12.



· 연구진:

Deloitte Malaysia	박성은 Director	lipark@deloitte.com
Deloitte Malaysia	서지원 Manager	jiwsuh@deloitte.com
Deloitte Malaysia	이성은 Assistant Manager	sungeelee@deloitte.com
Deloitte Malaysia	Chee Pei Pei Executive Director	pechee@deloitte.com
Deloitte Malaysia	Subhabrata Dasgupta Executive Director	sudasgupta@deloitte.com
Deloitte Malaysia	Larry James Sta Maria Director	lstamaria@deloitte.com
Deloitte Malaysia	Shiranee Niles Associate Director	shniles@deloitte.com
Deloitte Malaysia	Hoo Mei Shiew Assistant Manager	mehoo@deloitte.com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덕원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오기일	

· 책임의 면제(Disclaimer):

각 국가의 세정은 그 국가의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보고서는 각국의 세정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최신 세정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각 국가의 법령·과세관청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청, Deloitte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합니다.

목 차

제1장 말레이시아 소개	1
I. 경제 및 사회적 배경.....	3
1. 비즈니스 환경.....	3
2. 통화.....	5
3. 은행 및 금융.....	6
4. 외국인 투자.....	7
II. 이민국.....	9
1. 소개.....	9
2. 이민 허가 종류.....	9
3. 취업 허가 신청 과정.....	13
4. 기관 - 승인, 심사, 지원.....	16
III. 말레이시아의 조세체계.....	18
1. 말레이시아 조세체계 소개.....	18
2. 세금의 종류.....	24
3. 세무 및 관세 조사와 감사.....	30
4.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Tax Calendar).....	46
제2장 말레이시아 주요 세법	51
I. 개인소득세.....	53
1. 과세 기준.....	53
2. 과세 소득.....	53
3. 세법상 거주자.....	55
4.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	60
5. 세무 신고와 준수 사항(Tax Returns and Compliance).....	65
6. 주재원에 대한 세금 면제와 조세 특례.....	78

7. 상속세 및 증여세	78
8. 순부유세	79
9.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이하 EPF)과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79
10. 고용주의 의무	79
11. 과세소득 계산 예시(근로소득 및 투자 소득을 받는 개인)	91
II. 법인소득세	94
1. 과세관할(scope of taxation)	94
2.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95
3. 과세소득 계산의 기준(basis of assessment)	96
4. 과세소득과 세율	98
5. 손금 공제(tax deductions)	104
6. 영업손실과 미사용 결손금(unabsorbed losses)	117
7.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118
8. 세무 신고와 준수 사항	126
III.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136
1. 이전가격 규정	136
2. 지배(Control)의 정의	137
3. 이전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 가능성 분석 항목	138
4. 그룹 내 용역(Intragroup services)	139
5. 무형 자산(Intangibles)	141
6. 그룹 내 금융	141
7. 이전가격 문서	142
8. 이전가격의 감사(Transfer pricing audit)	145
9. 벌금 및 추징금	146

목 차

IV. 간접세	147
1. 말레이시아 관세의 종류	147
2. 재화의 분류(Classification of goods)	149
3. 수입관세 경감제도	149
4. 공통 세관 신고서	150
5.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	150
6. 판매세(Sales tax)	151
7. 서비스세(Service Tax)	166
8. 판매세(Sales tax) 및 서비스세(Service tax) 행정 사항	179
V.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181
1. 개관	181
2. 원천징수 대상 지급 종류	181
3. 세무 신고와 준수사항(Tax Returns and Compliance)	187
VI.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s)	195
1.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원칙의 적용	195
2. 대한민국 거주자의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 규정 항목	197
3.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슈	199
4. 협정 적용 절차	200
VII. 기타 세금	202
1. 인지세(Stamp Duty)	202
2. 토지세 및 재산평가세	210
3. 부동산 양도세(Real property gains tax, RPGT)	210

제3장 대한민국 투자자의 기타 고려사항	241
I. 말레이시아 내 사업체 설립.....	243
1. 사업체의 주요 형태.....	243
2. 사업 규정.....	247
3. 회계, 신고, 감사 의무.....	248
II. 세제 혜택.....	249
1. 말레이시아의 투자 장려정책.....	249
2. 제조 부문에 대한 혜택.....	249
3. 농업 부문에 대한 혜택.....	253
4.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혜택.....	257
5. 환경 관리에 대한 혜택.....	257
6. 연구 개발에 대한 혜택.....	260
7. 교육훈련에 대한 추가 혜택.....	262
8.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263
9.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혜택.....	264
10.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대한 혜택.....	264
11. 저개발 지역에 대한 혜택.....	264
12. 기타 혜택.....	265
 참고문헌.....	 268

목 차

표 목차

제1장 말레이시아 소개

〈표 1-II-1〉 신청 자격	11
〈표 1-II-2〉 EP 카테고리	11
〈표 1-II-3〉 취업 허가 신청 절차 개요	14
〈표 1-III-1〉 위반 및 처벌의 주요 내용	22
〈표 1-III-2〉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25
〈표 1-III-3〉 부동산 양도세율	27
〈표 1-III-4〉 데스크 감사(desk audit)와 현장 감사(field audit)	32
〈표 1-III-5〉 세무조사 활동	33
〈표 1-III-6〉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34
〈표 1-III-7〉 자진 신고 가산세	41
〈표 1-III-8〉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46
〈표 1-III-9〉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마감일	47
〈표 1-III-10〉 회사, 신탁회사, 유한 책임 파트너십,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47
〈표 1-III-11〉 기타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48
〈표 1-III-12〉 부동산 양도세 관련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49
〈표 1-III-13〉 판매세와 서비스세 관련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49

제2장 말레이시아 주요 세법

〈표 2-I-1〉 개인소득세율.....	61
〈표 2-I-2〉 공제 유형(세법상 거주자에게만 해당).....	62
〈표 2-I-3〉 세금 환급(Tax rebates)(세법상 거주자에게만 해당).....	64
〈표 2-I-4〉 기부금(Donation)/선물(Gifts)/기여금(Contribution).....	65
〈표 2-I-5〉 개인소득세 신고 양식과 납부 기한.....	65
〈표 2-I-6〉 고용주의 의무-신고서, 마감일, 제출 방법.....	80
〈표 2-II-1〉 회계기간 변경 통지서의 제출 기한.....	97
〈표 2-II-2〉 중소기업의 우대세율.....	103
〈표 2-II-3〉 차량의 적격지출.....	119
〈표 2-II-4〉 일반적인 자본공제 비율(General rates of capital allowance).....	121
〈표 2-II-5〉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류의 가속자본공제	123
〈표 2-II-6〉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의 신고납부 절차.....	127
〈표 2-II-7〉 주요 위반 내용 및 처벌.....	135
〈표 2-III-1〉 지배와 특수관계자의 규정항목.....	137
〈표 2-III-2〉 이전가격 산출방법-일반적인 적용법.....	138
〈표 2-III-3〉 비교가능성 분석-주요 고려 사항.....	139
〈표 2-III-4〉 그룹 내 용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활동.....	139
〈표 2-III-5〉 그룹 내 용역의 판단기준.....	140
〈표 2-III-6〉 금융지원의 종류.....	142
〈표 2-III-7〉 이전가격 문서의 주요 내용.....	144
〈표 2-IV-1〉 SST-02 신고서(SST-02 return)-판매세 신고를 위한 주요 계산.....	157
〈표 2-IV-2〉 SST-02 신고서-서비스세(Service tax) 신고를 위한 주요 계산.....	169
〈표 2-IV-3〉 SST-02A 신고서-수입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Service tax) 신고를 위한 주요 계산.....	170
〈표 2-IV-4〉 가산세 비율.....	179
〈표 2-V-1〉 원천징수 대상 소득.....	181

목 차

〈표 2-V-2〉 원천세 납부 관련 신고서 양식.....	188
〈표 2-V-3〉 원천세 납부 관할 센터.....	188
〈표 2-VII-1〉 재산 양도 시 인지세율.....	202
〈표 2-VII-2〉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시 인지세율.....	204
〈표 2-VII-3〉 용역 계약 시 인지세율.....	204
〈표 2-VII-4〉 부동산 양도세율.....	214

제3장 대한민국 투자자의 기타 고려사항

〈표 3-I-1〉 말레이시아의 기업 유형별 특징 245

목 차

그림 목차

제1장 말레이시아 소개

[그림 1-II-1] 말레이시아 지도.....	9
[그림 1-III-1] 데스크 감사(desk audit)와 현장 감사(field audit).....	31
[그림 1-III-2] 국세청(IRB)의 세무조사 관련 부서.....	33
[그림 1-III-3] 말레이시아 세무감사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34
[그림 1-III-4] 현장 감사 방문.....	36
[그림 1-III-5] 세무감사의 시작과 종료.....	37
[그림 1-III-6] 세무감사 중요 타임라인.....	37
[그림 1-III-7] 불복청구타임라인	43

제2장 말레이시아 주요 세법

[그림 2-Ⅲ-1] 이전가격 문서 종류의 구비기준.....	143
[그림 2-Ⅳ-1] 판매세 사업자등록 타임라인.....	152
[그림 2-Ⅳ-2] 서비스세 사업자등록 타임라인.....	168

제1장 말레이시아 소개

- I. 경제 및 사회적 배경
- II. 이민국
- III. 말레이시아의 조세체계

제1장 | 말레이시아 소개

I 경제 및 사회적 배경

1. 비즈니스 환경

말레이시아는 양원제 연방 의회가 있는 연합 입헌 군주국으로서 임명을 통한 상원의원과 선거를 통한 하원의원으로 이루어진다. 양 디 페르투안 아공(the Yang di-Pertuan Agong) 국왕이 연방국 원수로서 의례를 치른다.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연방 직할지인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연방 정부 수도 및 입법부의 소재지), 푸트라자야(Putrajaya)(연방 정부의 대표 행정 수도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소재지), 라부안(Labuan)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 주의 입법 수장은 전통 말레이 지도자로 술탄(Sultan)이라 칭하고, 브를리스(Perlis) 주에서는 라자(Raja), 네그리 쉴빌란(Negeri Sembilan) 주에서는 양 디 브루투안 브사르(Yang Di-Pertuan Besar)라 칭한다. 나머지 4개 주의 입법 수장은 양 디 브루투아 느게리(Yang-Di-Pertua Negeri)라 칭하는 주지사가 특정 기간 임명된다.

말레이시아 법체계는 영국 관습법에 기초한다. 연방 법원은 말레이시아의 최상위 법원으로 아래로 항소 법원, 두 개의 항소 법원, 말레이반도 법원 및 동말레이시아 법원, 하위 법원이 있다. 하위 법원에는 각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 법원과 치안 법원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최고법규는 「헌법」으로, 근본 규범과 기본 자유권을 규정하고, 연방법은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제정되고 전국에 적용된다. 주 의회에서 제정되고 특정 주에만 적용되는 주법도 있다. 말레이시아 「헌법」에는 두 가지 사법 시스템이 있는데, 「세속법」(민형 사법)과 「샤리아법 (Syariah laws)」(이슬람교도에게만 적용)이 있다.

1957년 독립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광물 및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던 말레이시아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말레이시아 몇몇 상품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데, 팜유(palm oil)의 주요 생산국이자 고무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석유, 천연가스 및 전기 전자제품의 생산 수출국이기도 하며,

이는 말레이시아 공산품 전체 수출액의 47%를 차지한다.

말레이시아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큰 노력을 들이는데, 비교적 개방적인 무역 정책 체제를 유지하여 1차 상품, 가공품, 서비스의 수출 증대를 위한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창립 회원국이자 아세안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국이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지역 내 물자 유입이 자유로운 통합시장 조성이라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 협정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세안(ASEAN)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ASEAN)은 회원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확립하고, 해외 무역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공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무역 및 사회적 동맹이다.

말레이시아는 일반 특혜 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혜택을 일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카자흐스탄, 스위스,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받고 있다.

가. 가격 조절(price controls)

국내 통상 소비자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는 액화석유가스, 설탕, 식용유, 밀가루 가격을 조절하며, 특정 주요 식품 가격은 축제 기간 동안 조절받게 된다.

나. 지식 재산권

말레이시아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국으로,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과 문학·예술 분야의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서명국이다.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 협력 조약 가입, 비엔나 협약에 서명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상표, 특허, 저작권, 산업 디자인,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집적회로 설계가 있고, 저작권 침해 시 강력한 법규와 민·형사상 처벌을 적용한다.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법정이 따로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가 지식 재산권 규정을 만들었다.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에서 법률(말레이

시아 지식재산청 법률 2002,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법률 2000, 집적회로 설계 법률 2000, 상표 법률 1976, 특허 법률 1983, 산업 디자인 법률 1996, 저작권 법률 1987)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관리·규제하며, 기타 지식 재산권에 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

2. 통화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하는 통화는 말레이시아 링깃(MYR/RM)이다.

가. 외환 관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발행한 외환 행정 규칙(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Rules)을 적용해 외환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며 자본 송환, 수익, 배당(dividend), 로열티, 임대료, 수수료는 자유롭게 허용된다.

중앙은행은 통화·금융 안정을 위해 자유주의적 외환 정책을 유지하고, 국내외 실물경제 활동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말레이시아 경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관해 준수해야 할 세무상 거주자별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무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

- 가) 재화의 수출
- 나) 외화자산 투자
- 다) 말레이시아 및 해외로부터 외화 차입
- 라) 비거주자로부터 링깃 차입
- 마) 금융 보증
- 바) 외화 지급
- 사) 외환 매입·매도

2) 세무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

- 가) 말레이시아 투자

- 나) 차입
- 다) 링깃 결제
- 라) 외환 매입·매도

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웹사이트를 참조¹⁾하면 된다.

3. 은행 및 금융

말레이시아 은행 부문은 2001~2010년까지 금융 부문 마스터플랜(Financial Sector Master Plan)에 따라 상당한 구조조정, 통합,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금융 개혁을 감행한 은행 부문은 해외 경쟁에 맞설 수 있는 탄력성과 우수한 업무 수행 능력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인 금융 부문 블루프린트(Blueprint)는 2011년에 발표되어 2011~2020년까지 수행되었으며, 금융 부문 마스터플랜의 성과에 기반을 둔 블루프린트는 금융 생태계를 진화시키고 고부가가치, 고소득국가 말레이시아를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성장하는 아시아에서 커져가는 금융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으로 금융 분야의 연결을 강화하고, 권역 간 연결을 지원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아시아의 잉여 자금이 지역의 투자 기회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2~2026년 기간을 위한 세 번째 마스터플랜인 블루프린트 3.0은 2022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기술 및 데이터 중심의 혁신 구현, 금융 분야의 경쟁력 강화, 금융 솔루션의 접근성 및 책임 있는 사용 확대, 향후 경제의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중개업의 효율적인 지원이 지속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블루프린트 3.0은 지속가능성 의제, 특히 기후 관련 리스크의 진전에서 금융 부문의 촉매 역할을 강조하여 녹색경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이슬람 금융권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2006년 8월에 말레이시아 이슬람 국제 금융 센터(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를 세우면서 말레이시아는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했다. 이슬람 금융권은 전통적인 금융권의 믿을 만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은행 및 보험 상품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 2009」에 따라 설립된 말레이

1) <https://www.bnm.gov.my/fep>

시아 네가라 은행(Bank Negara Malaysia, BNM) 소속 샤리아(Syariah) 전문위원회(Shariah Advisory Council, SAC)의 감독을 받는다. 이슬람 금융 시스템이 「샤리아법(Syariah laws)」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고리대금(riba), 모호성(gharar), 투기(maisir)의 요소는 금지된다. 말레이시아 네가라 은행(BNM)과 샤리아(Syariah) 전문위원회(SAC)는 말레이시아의 은행, 보험, 자본시장 상품에 적용되는 샤리아(Syariah) 원칙을 제정하였고, 이슬람 금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샤리아(Syariah) 호환 상품이 출시되어 이슬람 투자자와 비이슬람 투자자를 겨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산업의 신속한 자유화가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과 맞물리면서 외국인 투자 기관이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금융 산업을 펼치는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자격을 완전히 갖춘 이슬람 은행 수가 매우 많으며, 여기에는 외국인 지분을 가진 은행뿐 아니라 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자회사를 설립한 은행도 포함된다. 모든 금융기관은 말레이시아 링깃이 아닌 외화도 취급할 수 있다.

위의 내용 외에도 세무상 비거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세금 우대정책이 있다(예: 비거주 기업·기관의 예치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의 비과세, 이슬람 금융권에 종사하는 비거주자 전문가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국제 이슬람 은행 설립에 최대 100%까지 외국계 지분 소유 허용 등).

4. 외국인 투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정 분야는 규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서비스 하위 분야를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지분 참여를 허용해 왔으며, 추가로 45개 서비스 하위 분야(보건 사회서비스, 관광, 교통, 비즈니스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가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서비스 부문 투자 승인 위원회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확장하려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특별 투자 자본공제(special investment capital allowances), 다양한 세금 감면(a variety of tax deductions),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s), 이중 감면(double deductions), 재투자액 공제(reinvestment allowances)

(즉 승인받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적격한 자본 지출액의 60% 공제 혜택,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자본 투자금의 60% 공제), 정부 후원 산업 단지 사용과 무이자 보조금 및 대출 등이 포함된다.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이외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주요 허브’²⁾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있다.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Multimedia Super Corridor)³⁾의 첨단 기술 회사,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 회사가 인터스트리 4.0 모델(예: 인공지능, 블록체인, 금융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및 디지털 혁신에 투자하는 경우, 경제 개발 코리도(Economic Development Corridor)⁴⁾의 회사,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 이하인 중소기업⁵⁾이 받을 수 있다. 그 외 주목받는 분야로는 제조업, 호텔, 헬스케어 서비스, IT 서비스, 생명공학, 이슬람 금융, 벤처 캐피탈, 서비스업, 관광업, 특정 분야 농업, 석유, 자동차 부품 제조, 특수 장비, 에너지 보전, 환경 보호 등이 있다. 해외 금융 서비스는 라부안(Labuan)섬에서 주목받고 있다.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에 관한 추가 내용은 제3장 II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2) 위험 관리, 의사결정, 전략적 비즈니스 활동, 무역, 금융, 경영 관리, 인적자원 관리를 포함한 주요 기능을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관리, 통제 및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이다(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Regional Operations, <https://mida.gov.my/wp-content/uploads/2020/07/Booklet-2-REGIONAL-OPERATIONS.pdf>, 검색일자: 2021. 10. 28).
 - 3) 국가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T 및 IT 기반 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와 국가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경제 특구이다(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SC Malaysia Status, <https://www.mida.gov.my/industries/services/other-services/other-services-multimedia-super-corridor-msc>,” 검색일자: 2021. 10. 28).
 - 4) 경제 발전의 통합 프레임워크로, 지정된 지리적 지역 내에서 무역 관련 기반 시설을 핵심으로 삼지만, 더 나아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 정책, 규제, 운영 정책의 상호 연결된 문제를 포괄한다 (Prema-chandra Athukorala & Suresh Narayanan, *Economic Corridors and Regional Development*, Asian Development Bank, 2017, p. 3).
 - 5) 제조 부문: 매출 5천만링깃 이하 또는 정규직 직원 200명 이하/서비스 및 기타 부문: 매출 2천만링깃 이하 또는 정규직 직원 75명 이하(SMEcorp, <https://www.smeCorp.gov.my/index.php/en>, 검색일자: 2021. 10. 28).

II 이민국

1. 소개

말레이시아 이민은 1959/63 「이민법」 및 1963 「이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II-1] 말레이시아 지도



주: 말레이시아(흰색 영역)에서 서말레이시아는 태국 및 싱가포르에 인접한 반도를 말하며, 동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지역을 나눈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사바, 사라왁과 라부안 영토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자료: Maps Open Source, <http://www.mapsopensource.com/malaysia-map.htm>, 검색일자: 2021. 10. 28.

서말레이시아 이민 요건은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에 본부를 둔 이민국에서 통제하고 관장한다.

동말레이시아에서는 연방 영토인 라부안을 제외하고 사바 및 사라왁주 당국이 해당 주의 이민 요건을 각각 관장한다.

그러므로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간 이민 요건이 크게 다르다.

다음에 제시된 이민 요건과 절차는 서말레이시아에만 적용된다.

2. 이민 허가 종류

「이민국 규정」 1963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이민 허가가 있다. 다음의 이민 허가 유형은 외국인 육체노동자는 제외하고, 외국인 지식노동자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가. 사회방문허가(Social Visit Pass, 이하 SVP)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제출된 여행 서류(예: 해당하는 경우, 여권 및 비자)가 올바르고 합법적인 경우에 출입국 심사대에서 SVP를 부여받으며,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국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14일에서 90일 사이이다.

SVP는 취업 허가가 아니므로 SVP 소지자는 엄밀히 말해 다음 허용된 활동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일할 수 없다.

- 사회적인 방문
- 친척 방문
- 관광
- 저널리즘/보도
- 미팅/컨퍼런스
- 비즈니스 회의
- 공장 시찰
- 회사 회계 감사
- 계약 서명
- 투자 기회 조사/공장설립
- 세미나 참석
- 친선 사절단으로 방문하는 학생/대학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
- 스포츠 대회 참가
- 말레이시아 이민국장이 승인한 기타 활동

나. 취업 허가(Work Passes)

취업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적절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지식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허가는 다음과 같다.

- 고용 허가(Employment Pass, 이하 EP)
- 전문가 방문 허가(Professional Visit Pass, 이하 PVP)
- Residence Pass-Talent(RP-T)

1) 고용 허가(EP)

소개

EP는 말레이시아에 장기간 파견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정규직 및 영구적인 숙련공 및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려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취업 허가증이다.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원자는 현지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EP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주어질 수 있으며 갱신할 수 있다.

신청 자격

지원자는 다음 표에 따라 지원하려는 직책 관련 학력과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표 1-II-1〉 신청 자격

자격	경험
대학 학사(Degree)	해당 분야 3년 경력
전문대학 학위(Diploma)	해당 분야 5년 경력
기술 자격증(Technical Certificate of Equivalent)	해당 분야 7년 경력

자료: Expatriate Services Division, "ESD Guidebook," https://esd.imi.gov.my/portal/pdf/tc-esd-quick-guidev3-2021_april.pdf, 검색일자: 2021. 10. 28.

EP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다.

〈표 1-II-2〉 EP 카테고리

카테고리	Category I 주재원	Category II 주재원	Category III 지식/숙련 노동자
최소 월 기본급여	RM1만	RM5천에서 RM9,999까지	RM3천에서 RM4,999까지
고용 기간	고용계약 5년까지	고용계약 2년까지	계약 최대 12개월까지
가족 동반	동반 가족 비자(Dependent Pass, DP) 신청 가능	동반 가족 비자(DP) 신청 가능	동반 가족 비자(DP) 신청 불가능

자료: Expatriate Services Division, "ESD Guidebook," https://esd.imi.gov.my/portal/pdf/tc-esd-quick-guidev3-2021_april.pdf, 검색일자: 2021. 10. 28.

동반 가족

EP 소지자는 부양가족을 말레이시아로 동반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의 동반 가족 비자(Dependent Pass, 이하 DP)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모, 시

부모, 18세 이상의 자녀는 장기 방문허가(Long Term Social Visit Pass, 이하 LTSVP)를 신청할 수 있다. 각 DP는 유효 기간을 포함하여 EP와 연동된다. 반면 LTSVP의 유효 기간은 12개월이며 갱신할 수 있다.

2) PVP 전문가 방문 허가(PVP)

소개

고용 주체가 말레이시아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이고 예정된 근무 기간이 단기, 즉 12개월 이하인 외국인인 PVP를 신청할 수 있다. EP와 마찬가지로 현지 회사가 지원자의 스폰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VP는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추가로 6개월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연장이나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

외국인은 관련 학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EP의 자격 요건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요건은 대학 학사(Degree) 및 최소 5년의 관련 실무 경력인데, 이는 외국 국적자가 PVP의 전문가(Expert) 카테고리에 속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PVP 소지자는 PVP 유효 기간 동안 외국 회사에서 고용된 직원으로 남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 직원의 급여는 현지 스폰서 회사를 포함한 현지 회사에 청구되거나 현지 회사는 지급할 수 없다. PVP 소지자로서의 최소 급여 기준은 없다.

동반 가족

PVP 소지자는 동반가족비자(DP)를 신청할 수 없다.

3) Residence Pass-Talent(RP-T)

소개

RP-T는 말레이시아의 기존 숙련 기술자 인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P-T는 독립적인 자체 후원 패스이며, 현지 회사가 지원자의 후원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말레이시아의 어떤 회사와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RP-T 소지자는 최대 10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권에 대한 초기 RP-T 배서(endorsement)는 5년 동안 부여되고, 나머지 5년의 승인 기간에 대

해 또 한 번의 배서(endorsement)가 부여된다. RP-T의 장점은 유연함으로, RP-T 소지자의 말레이시아 내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변경된 고용주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취업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신청 자격

최소 3년 동안 고용 허가로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했으며, 최소 월 기본 급여 RM1만5천 요건과 모든 개인 소득세 의무를 충족한 외국인인 RP-T를 신청할 수 있다.

동반 가족

RP-T 소지자의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는 RP-T 동반 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RP-T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RP-T 동반 가족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도 말레이시아에서 일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할 수 있다. 다만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시부모는 LTSVP를 신청할 수 있다. RP-T 동반 가족 비자는 유효 기간을 포함하여 RP-T 소지자와 연동된다. 반면 LTSVP의 유효 기간은 12개월이며 갱신할 수 있다.

3. 취업 허가 신청 과정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먼저 지정된 심사 기관을 통해 말레이시아 이민국(MID)에 등록해야 한다. 활성화된 이민국 계정이 있는 회사는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인원 수의 추정치를 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 금융 기관, 외국인 지분 보유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은 더욱 엄격한 거버넌스(governance)에 해당하며, 외국인 직접 고용 신청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다음은 취업 허가 신청 절차의 일반적인 개요이다.

가. 취업 허가 신청 절차의 일반적인 개요

〈표 1-II-3〉 취업 허가 신청 절차 개요

단계	설명	소요 기간
해당 이민국 심사 기관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이민국 심사 기관에 현지법인 등록 신청 • 승인 기관은 회사의 이력*, 사업 활동, 연속성에 대한 계획 및 고용하려는 외국인 인원 수 추정치 등 기업의 현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행한 평가에 대해서 평가 담당관이 만족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 회사가 성공적으로 등록되고 고용하려는 외국인 인원 수 추정치가 승인되고 나면 이민국 포털을 통해서 이민국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는데, 회사의 이사가 이민국 담당관의 입회하에 Letter of Undertaking(LoU)/Authorised Persons Letter(APL)에 서명을 하게 된다. <p>* 주의할 점: 무엇보다도 회사는 MYR25만~MYR1백만 범위의 납입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금액은 회사의 자본 구조 및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의 주요 성격에 따라 다름).</p>	14~21 영업일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 이하 SOCSO)의 MYFuturejobs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해당 직무에 대한 외국인 고용을 고려하기 전에 현지 인재 풀에서 가능한 후보자를 발굴해야 한다. • 따라서 SOCSO에서 관리하는 MYFutureJobs 웹사이트에 30일 동안 현지인 대상으로 구인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도 회사가 현지 인재 풀에서 후보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러한 목적으로 구인 광고를 게시하려면 회사는 먼저 SOCSO의 MYFuturejobs 포털에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1달
주재원의 취업 허가 신청서 제출	주재원 그리고/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세부 정보는 신청서에 제공된다.	5~10 영업일
말레이시아에 도착 후 주재원의 여권에 취업 허가증 배서 (endorsement)	여권에 고용 허가증을 배서(endorsement)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 여권 원본을 제출한다.	3~5 영업일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나. 외국인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서류

취업 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본인과 가족의 여권 사본 전체
- 본인과 가족의 여권 사진
- 학위증명서*(현지 회사 인사팀의 원본대조필이 요구될 수 있음)
- 최신 이력서
- 선호하는 비자 수령 기관 선택(입국 전 비자가 필요한 국민의 경우)

DP 또는 LTSVP 신청서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단 EP I 및 II 신청자만 해당).

- 배우자인 경우 혼인 관계증명서
- 자녀인 경우 출생증명서
- 18세 이상 자녀인 경우 Commissioner of Oaths/말레이시아 대사관/주말레이시아 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서신
- 부모/시부모인 경우 EP 소지자 또는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 모든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본국의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된 서류여야 한다.

다. 회사에 요구되는 서류(취업 허가 신청 목적)

회사에 요구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고용계약서(Letter of Offer/Employment Contract) 사본(EP만 해당)
-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사본
- 외국 파견 회사의 수락 서신(Acceptance Letter) 사본(PVP만 해당)
- 개인 보증서(Personal Bond)(PVP 또는 LTSVP만 해당)
- 보증장(Security Bond)(중국과 방글라데시 국민의 PVP만 해당)

라. 배서(Endorsement) 절차

배서(endorsement)는 지원자가 이민국의 배서를 목적으로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취업 허가 신청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입국 심사대에서 SVP를 받는다. 취업 허가 승인을 받은 외국인인 입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 처음 입국하는 동시에 비자가 요구되는 외국인(근무 목적)은 말레이시아 입국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가까운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Visa With Reference(VWR)를 받아야 한다. VWR은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이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인 여행 계획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외국인인 승인서를 소지하고 말레이시아 도착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4. 기관 - 승인, 심사, 지원

가. 승인 기관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취업 허가를 승인하는 관장 기관이지만, 심사 당국 및 기관에 검토 및 평가를 위임했다.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이민국의 승인을 받기 전 취업 허가 스폰서 회사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취업 허가 신청을 처리하도록 이민국이 권한을 위임한 다양한 심사 당국/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 2)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alaysia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 3)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공사(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 MDEC)
- 4) 말레이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alaysia)
- 5)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 6)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 7) 동해안 경제 구역 개발협의회(East Coast Economic Region Development Council)
- 8) Tal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
- 9) 말레이시아 글로벌혁신창조센터(Malaysian Global Innovation & Creativity Centre)
- 10) 말레이시아 공공 서비스 부서(Public Service Department Malaysia)
- 11) Malaysia Expatriate Talent Service Centre(MYXpats Centre) 산하 Expatriate Services Division(ESD)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심사위원회(Expatriate Committee)

위의 내용은 PVP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PVP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심사위원회에서만 심사한다.

나. 지원 기관

더욱 엄격한 지배구조와 규제하에 있는 산업은 외국인 고용 지원 과정에서 지배 기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취업 허가(EP/PVP) 신청서의 관련 판단 기관에 의한 검토와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열거된 관련 관리 당국/규제 기관의 지원 서한이 필요하다.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보건부, 전통보완의학(Ministry of Health, Traditional & Complementary Medicine)

- 관광예술문화부(Ministry of Tourism and Culture)
- 국립체육원, 청소년체육부/국가 체육 위원회, 청소년체육부/관련 협회(National Sports Institute, Ministry of Youth and Sports/National Sports Council, Ministry of Youth and Sports/Related Associations)
- 농업 기반 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ies)
- 말레이시아 바이오 경제 개발공사(바이오 경제)(Malaysian Bioeconomy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Bioeconomy))
- 교통부 산하 민간 항공 부서(Department of Civil Aviation, Ministry of Transport)
- 광물지질과학부, 천연자원환경부(Department of Mineral and Geoscienc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통신 멀티미디어부 USPAL 단위(Unit PUSPAL,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 건설산업개발위원회(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CIDB)
- 말레이시아 승마 협회(Equestrian Association of Malaysia)

III 말레이시아의 조세체계

1. 말레이시아 조세체계 소개

가. 과세관할

말레이시아는 이 나라에서 발생된 소득이나 해외로부터 말레이시아 국내로 송금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속지주의(territorial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은행업, 보험업, 항공업 및 해상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 면제는 2022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2021년 「재정법」 발표 시 반영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2021년 「재정법」(Finance Act 2021)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서 수령한 해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법상 비거주자는 과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이 제안은 차후에 번복되었다. 2021년 12월 31일에 정부는 언론 성명문을 통해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들이 하기의 조건에 해당되는 해외소득을 수령한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에 받은 배당 소득
- 개인에게 받은 모든 형태의 해외 원천 소득

말레이시아는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 또는 지분을 사고팔아 얻는 자본 수익(capital gains) 외에는 자본 수익(capital gains)에 과세하지 않는다.

나. 소득의 종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소득에 과세한다.

- 1) 사업에 따른 이익(gains) 및 수익(profits)
- 2) 근로 소득(고용에 따른 이익 및 수익)
- 3) 배당(dividends), 이자(interest), 할인(discounts)
- 4) 임대료, 로열티(royalties), 보험료
- 5) 생활수당, 연금 등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기 지급금
- 6)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이익(gains) 및 수익(profits)

말레이시아에 있는 세법상 비거주자의 소득 중 과세되는 특정 소득(special class of income)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1) 자산(property) 또는 권리(rights)의 사용 또는 공장, 기계장치의 설치 및 기타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인(person)⁶⁾ 또는 인(person)의 임직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 2) 말레이시아 내에서 과학, 산업, 상업, 벤처, 프로젝트, 계획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 또는 지원 업무의 용역에 대한 대가
- 3) 동산(moveable property) 사용에 대한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지급된 임대료 또는 기타 대금

세법상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V.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에서 참조할 수 있다.

다. 과세소득계산의 기준(basis of assessment)

말레이시아는 당해 연도를 과세소득계산의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모든 원천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연도의 과세기간(basis period)은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과세연도 2021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1967년 「소득세법」⁷⁾에 따르면 사업조직(business organisations)인 경우 회계연도 마감일(accounting year-end)이 12월 31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company),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이하 LLP), 협동조합(co-operative), 신탁기구(trust body)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과세기간(basis period)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결산이 2021년 7월 31일에 끝나는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2021년 7월 31일이 된다. 회사, 유한 책임 파트너십, 협동조합, 신탁기구가 아닌 자(외의 다른 형태나 개인)는 역년(calendar year)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과세소득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으로 적용된다.

6) 「소득세법」 제2장 1조(Section 2(1) of the ITA)에서는 인(person)을 ‘회사, 개인 기업 및 단독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ncome Tax Act 1967(online version 2019. 1.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Act_53_20190101.pdf, 검색일자: 2021. 10. 28.

라. 세무 신고와 평가(tax returns and assessments)

말레이시아는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자 자신이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예상세액을 계산 후 기한 내에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 신고서는 국세청장(Director General of Inland Revenue, DGIR)이 발급한 일종의 세액 결정통지서(the Notice of Assessment)로 간주되고 납세의무를 확정하며, 실제로 국세청장(Director General of Inland Revenue, 이하 DGIR)이 이 결정통지서(the Notice of Assessment)를 발급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 신고서는 종합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후 검증을 받게 된다.

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과세연도가 끝나는 해로부터 5년 이내(이전가격(transfer pricing assessments) 관련해서는 7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한다. 사기(fraud), 탈루(willful default), 과실(negligence)일 경우에는 위의 추가 조사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세무신고 서식 및 납부, 세무신고 기한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장의 4.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Tax Calendar)에서 참조할 수 있다.

마. 불복청구(appeals)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혹은 추가조사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불복청구(appeals)를 할 권리가 있다(「소득세법」 99장(Section 99 of the ITA)). 불복신청은 세액 결정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불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9장에 따르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가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예규(public ruling), 공공 기준 및 규칙, 국세청의 관례(practices)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복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 공공 기준 및 규칙, 국세청의 관례의 종류는 하기를 참고할 수 있다.

- 1) 비공개 예규(private rulings) 또는 사전답변서(advance ruling)
- 2) 국세청의 가이드북(guidelines)
- 3) 소득세 특별 위원회(Special Commissioners of Income Tax, SCIT) 및 법원의 판례
- 4) 기타 서면 증거

소득세 이의신청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장의 3. 세무 및 관세조사와 감사(p. 30, III)에서 참조할 수 있다.

바. 착오 또는 누락에 따른 경정 청구

세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액 결정통지서(the Notice of Assessment)가 발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 납세자가 특정 과세연도의 세금액이 착오나 누락으로 과다 납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소득세법」 제131항에 따라 납세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정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신고(tax returns)를 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 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연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미사용 결손금이나 영업 결손금을 이월하기 위해서는 세무신고(tax returns)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제97A(5)(a)과 제97A(6)(a)).

사. 착오 또는 누락 외의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소득세법」 제97A(5)(b)와 131A)

세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액 결정통지서(the Notice of Assessment)가 발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정 과세연도의 세액이 과다납부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 1) 과세연도의 세무신고(tax returns) 이후 「소득세법」이나 관보에서 발행된 성문법에 따라 면제(exemption), 구제(relief), 수당(allowance), 공제(deduction)가 주어지는 경우
- 2) 과세연도의 세무신고(tax returns) 이후 면제, 구제, 수당, 공제의 승인이 난 경우

경정 청구는 면제, 구제, 수당, 공제의 내용이 관보를 통해 발행되거나 승인이 된 후(둘 중 늦은 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 신고서의 제출 날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천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아. 위반 및 처벌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위반 및 처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Ⅲ-1〉 위반 및 처벌의 주요 내용

(단위: %, 링깃)

위반 내용	「소득세법」 조항	처벌
지연납부	103(3)	미납세액의 10%를 가산함
기한 내에 중간예납(사업소득) 미납	107B(3)/107C(9)	중간예납액의 10%
예납세액의 과소납부(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예납세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107B(4)/107C(10)	납부할 차액의 10%
합당한 사유 없이 소득세 신고나 과징금 고지서 제출 불이행	112(1)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유죄 판결 시] 또는 납부세액의 300%[기소 유예 시]
국가별 보고서(CbCR) 제출 불이행	112A(1)	2만링깃 이상 10만링깃 이하의 가산세와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소득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 납세자의 납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	113(1)	1천링깃 이상 1만링깃 이하의 가산세와 과소납부된 세금의 200%[유죄 판결 시] 또는 과소납부된 세금의 100%[기소 유예 시]
국가별 보고서(CbCR) 자동 교환 협정에 따른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불이행	113A(1)	2만링깃 이상 10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이전가격 문서의 적시 제공 불이행	113B(1)	2만링깃 이상 10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고의로 탈세를 의도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줌	114(1)	1천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그리고 과소납부된 세금의 300%
세금 미납 후 출국 시도	115(1)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합당한 사유 없이 서류 및 기록 보관 의무 불이행	119A	300링깃 이상 1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합당한 사유 없이 국세청이 요청하는 정보 제공 불이행	120(1)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합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주소 변경 통지 불이행	120(1)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자. 공개예규(public ruling)와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1) 공개예규(public ruling)

공개예규(public ruling)는 일반인과 국세청 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한다. 특정 법률에 대한 국세청장(DGIR)의 해석과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함이다. 공개예규(public ruling)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지니

지는 않는다.

공개예규(public ruling) 발표 후 그 조항에 누구라도 적용을 받거나 따른다면 국세청장(DGIR)은 공개예규(public ruling)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니게 된다. 만약 국세청장(DGIR)이 예규 전체 또는 일부분을 철회해야 한다면, 철회 통지서를 제정하거나 기존 공개예규(public ruling)와는 다른 새로운 공개예규(public ruling)를 발표할 수 있다.

2)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국세청장(DGIR)은 납세자가 특정 약정(contract note)이나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관련 세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요청하면 서면으로(written statement) 사전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소득세법」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여 조세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법률 준수를 증진시키고 국세청과 납세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답변 요청은 규정 서식(KA[1/2007]서식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관련되어 있는 특정 약정(contract note)이나 거래(transaction)에 관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후 제외). 사전답변 요청은 특정한 약정의 체결 및 이행을 앞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자는 사전답변 요청 시에 약정 내용 및 구체적인 관련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해당 약정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는 신청자 및 특정 약정과 관련하여 명시된 과세연도에 관해서만 효력을 갖으며, 다른 사례에 인용할 수 없다. 사전답변서에 명시된 약정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답변서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사전답변서는 국세청장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그 답변의 내용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어진다.

- 가) 사전답변을 신청했을 시 명시하였던 특정 약정 및 거래가 실제로 이행된 약정 및 거래와 차이가 있는 경우
- 나)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요청서에 증대한 누락 및 실수,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경우
- 다) 국세청장(DGIR)이 장래에 개시될 거래 또는 사전답변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8)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KA,"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Borang_KA_1.pdf

- 내용에 대해 가정을 했고 이후 그 가정이 틀린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라) 국세청장(DGIR)이 답변서에 명시한 조건을 신청인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 나) 국세청장(DGIR)은 사전답변서를 제공한 후 새로운 판례에 근거하여 해당 답변서의 세법 해석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답변서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다) 관련 세법 조항이 폐지 및 개정되어 사전답변 해석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전답변서 역시 관련 법 조항이 폐지 및 개정되는 효력일로부터 더는 적용할 수 없다.
- 라)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는 그 답변 내용이 신청인에게 유리한지와 관계없이 최종 판결로 간주한다. 신청인에게 불리한 세법 해석 내용일 경우 당사자는 제안 약정서(contract note) 및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안 약정서(contract note)가 이미 체결되어 효력을 갖게 되었다면 사전답변 내용을 따라야 한다.
- 마) 사전답변 내용에 대해서 신청인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사전답변 내용에 따라 세무신고 시 그 내용에 따라 조세처리해야 하지만, 만약 신청인이 그 조세 처리 방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세무신고 후에 「소득세법」의 일반적인 불복 조항에 따라 불복청구할 수 있다.

2. 세금의 종류

말레이시아에는 다음과 같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가. 직접세(Direct taxes)

1) 소득세

소득세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를 관할하는 법률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 ITA)」이 있으며 국세청(Inland Revenue Board, 이하 IRB)은 소득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득세법」은 회사(companies), 개인(individuals), 힌두교 공동가정(Hindu joint families), 신탁 관리자(trustees), 유언 집행자(executors), 협동조합(co-operatives)을 포함한 모든 법

주의 납세자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한다고 정의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관할, 소득의 종류, 과세 기준은 상기 '1. 말레이시아 조세체계 소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법상 거주자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24%이다. 단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 기업의 과세연도의 과세기간 시작일에 250만링깃 미만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하고, 해당 과세연도 동안 총사업소득(gross business income)이 5천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세소득 60만링깃까지는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 17%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1년 「재정법(Finance Act 2021)」에서는 과세연도 2022년에 한해 1억링깃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33%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을 적용받는 기업은 적용받지 않는다.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의 세율 범위는 0~30% 사이이다.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단일세율 30%가 적용되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세무신고 의무가 발생한 세법상 비거주자의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에 적용된다.

다음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표 1-Ⅲ-2〉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단위: %)

지급 종류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개인 및 기업) ⁹⁾
배당(dividend)	0
이자(interests)	0/15
로열티(Royalties)	10
역내 용역(onshore services) 대금/동산(moveable property) 사용료	10
「소득세법」 4(f)항에 근거한 기타 소득	10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세법상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이미 공제된 원천세액은 최종 납세 의무에서 공제된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말레이시아 주요 세법에서 참조할 수 있다.

9) 열거된 세율은 비거주자의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되며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2) 석유소득세(Petroleum Income Tax)

석유소득세(petroleum income tax)는 1976년 「석유소득세법(Petroleum Income Tax Act 1967, 이하 PITA)」¹⁰⁾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는 석유 사업 소득(income)에 38%의 세금을 부과한다.

업스트림(Upstream, 생산 부문)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판매 부문)의 운영에 따라 석유 소득의 세무상 처리가 다르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업스트림 석유 사업(즉 시추 및 생산 활동)은 「석유소득세법(PITA)」 대상이지만, 다운스트림 사업(정제, 판매 활동)은 일반 소득세(income tax under the ITA) 대상이다.

과세연도 2010년부터 「석유소득세법(PITA)」의 적용을 받는 업스트림 사업의 과세소득 계산의 기준은 당해 연도 기준의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로 변경되었다.

3) 부동산양도세(Real property gains tax, RPGT)

부동산양도세(Real property gains tax, 이하 RPGT)는 1976년 부동산 「양도소득세법(Real Property Gains Tax Act 1976)」에 따라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자본이익(capital gains)에 부동산양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IRB)은 부동산 양도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동산양도세(RPGT)는 자본이익(capital gains)에만 부과되는데, 이익(gains)이 본질적으로 자본(capital)의 성격인지 아니면 매출(revenue)의 성격인지에 관한 질문은 각 사례의 전반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매출(revenue)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적용받게 된다.

부동산 처분으로 얻는 이익은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에서 30% 사이의 세금이 부과된다.

1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etroleum Income Tax Act 1967(online version 2017. 2. 1)," https://phl.hasil.gov.my/pdf/pdfam/APCP1967_251119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표 1-Ⅲ-3〉 부동산 양도세율

(단위: %)

처분기간	부동산양도세율		
	회사(Companies) [말레이시아 법인, 신탁회사(trust), 말레이시아 협회 (Malaysian societies) ¹⁾	개인 [시민(citizens),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개인 [비시민권자(non-citizens), 비영주권자(non-permanent resident), 비시민권자 및 비영주권자의 유언 집행자(executor)], 회사[해외법인]
3년 이내	30	30	30
네 번째 해	20	20	30
다섯 번째 해	15	15	30
여섯 번째 해와 그 후	10	5 ²⁾	10

주: 1) 2022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협회(Malaysian societies)”를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대체하였다(2021년 「재정법: Finance Act 2021」). 회사가 아닌 등록된 단체(body of persons)는 협회(societies), 클럽(clubs), 협회(associations), 노동조합(trade unions), 힌두교 공동가족(Hindu joint families)을 포함하지만 파트너십(partnerships)은 제외한다.

2) 2021년 「재정법(2021 Finance Act)」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세율을 0%로 인하했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부동산 양도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VII에서 참조할 수 있다.

4) 인지세(Stamp Duty)

인지세는 1949년 「인지세법(the Stamp Act 1949¹¹⁾」을 따르며, 국세청(IRB)은 인지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지세는 금융, 법률 또는 상업적 영향이 있는 증서(instrument)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인지세를 부담한다. 인지세율은 「인지세법 부속규칙」 제1조(the First Schedule of the Stamp Act)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증서의 특성과 거래금액에 따라 고정(fixed) 또는 종가(ad valorem)세율로 부과된다.

인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VII에서 참조할 수 있다.

11)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Stamp Act 1949(online version 2014. 7.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Stamp_Act_1949_as_at_01072014.pdf, 검색일자: 2021. 10. 28.

나. 간접세

1) 관세(Customs duties)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이하 RMCD)은 관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말레이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에 다음과 같은 관세와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 수입관세(Import duty) - 1999년 「관세법(과세표준 규칙) 규정(Customs(Rules of Valuation) Regulations 1999, 이하 CVR)」¹²⁾에 따라 결정된 재화의 가격에 부과되며, 수입재화의 세번기준(tariff classification, HS)에 따라 0%에서 60% 범위로 부과된다.
- 판매세(Sales tax) - 말레이시아로 수입하는 재화 또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 사용 및 폐기하는 재화에 부과된다. 판매세(sales tax)는 일반적으로 10%이며, 일부 비필수 식품, 주류, 담배와 건축 자재에는 5%, 특정 석유 제품과 주유소 기름값에는 특정 세율로 부과된다.
- 소비세(Excise duty) - 말레이시아로(에서) 수입되거나 제조한 특정 재화에 대해 종가세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2017년 「소비세법 시행령(Excise Duties Order 2017)」¹³⁾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세율에 따라 소비세가 부과된다. 수입 재화의 경우 「관세법 규정(CVR)」에 따라 결정된 재화의 가격에 부과하고, 국내 제조품의 경우 공장 출고액(ex-factory value)에 관세를 부과한다.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재화 중 조사 기관(즉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이하 MITI)이 수출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지원금을 받아 말레이시아 국내 시장이 타격받게 될 때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관세법 규정(CVR)」에 따라 결정된 재화의 가격에 관세를 부과한다.
-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재화 중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가 덤핑가격(dumping prices, 말레이시아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 판단하여 해당 재화가 불공정 거래가격으로 말레이시아 국내 시장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한다. 반덤핑 관세는 「관세법 규정(CVR)」에 따

12)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Customs(Rules of Valuation) Regulations 1999," http://www.customs.gov.my/en/pg/Pages/pg_act.aspx, 검색일자: 2021. 10. 28.

13)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Excise Duties Order 2017," http://www.customs.gov.my/en/pg/Pages/pg_prtheksais.aspx, 검색일자: 2021. 10. 28.

라 결정된 재화의 가격에 관세를 부과한다.

- 세이프가드 관세(Safeguard duty) - 말레이시아의 산업통상부(MITI)에서 판단할 때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시장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과한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며, 세이프가드 관세는 「관세법 규정(CVR)」에 따라 결정된 재화의 가격에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Customs dutie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IV에서 참조할 수 있다.

2) 서비스세(Service tax)

서비스세(Service tax)는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단일 단계의 세금으로, 2018년 「서비스세법(Service Tax Act 2018)」¹⁴⁾에 따라 부과된다. 관세청(RMCD)이 서비스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서비스세(Service tax)는 말레이시아에서 과세 사업자가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과하며, 각 사업자등록 기준 매출액을 초과할 때 서비스세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 서비스에는 숙박업, 요식업, 나이트클럽, 헬스장, 웰빙센터, 마사지사술소, 호프집, 사교클럽, 골프클럽, 골프장, 게임 도박장, 전문서비스, 신용카드, 유료 카드 제공업체 외에도 보험, 통신, 주차장 관리업체, 광고업 등이 포함된다.¹⁵⁾

매년 25링깃씩 부과되는 신용카드나 충전카드를 제외하고 현재 서비스세는 단일세율 6%로 부과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Foreign service providers, 이하 FSP)의 연간 매출액이 사업자등록 기준(registration threshold)인 50만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FSP는 사업자등록 및 6% 서비스세를 징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서비스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IV에서 참조할 수 있다.

14)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 Legislation, SST Act," <https://mysst.customs.gov.my/SSTAct>, 검색 일자: 2021. 10. 28.

15) 2018년 「서비스세법 규정의 부속규칙」 제1조(First Schedule of STR)는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s),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s)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록 2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3) 판매세(Sales Tax)

판매세(sales tax)는 특정 수입품과 국내산 제품에 부과되는 단일 단계 세금으로 2018년 「판매세법(Sales Tax Act 2018)」¹⁶⁾ 따라 부과하며, 관세청(RMCD)이 판매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판매세는 말레이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 또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sold), 사용(used) 및 폐기(disposed)하는 재화에 부과하며, 판매세는 제조업자(manufacturer) 또는 수입업자(importer)가 납부한다.

판매세(sales tax)는 일반적으로 단일세율 10%이며, 일부 비필수 식품, 주류, 담배와 건축 자재에는 5%, 특정 석유 제품과 주유소 기름값에는 특정 세율로 부과된다.

판매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IV에서 참조할 수 있다.

3. 세무 및 관세 조사와 감사

가. 세무감사 및 세무조사

1) 개요

말레이시아는 2001년도에 회사에 대해 자진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 이하 SAS)를 도입하였고, 2004년부터는 사업체(businesses), 파트너십(partnership), 협동조합(co-operative), 봉급생활자(salaried individuals)에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납세자 자신이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예상세액을 계산 후 기한 내에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Forms, 이하 ITRF)는 자체적으로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국세청 전자 신고 시스템(e-filing system)과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진계산 및 신고제도(SAS)하에서 국세청의 주요 활동은 세무감사(Tax Audit)이다. 세무 감사의 주요 목적은 납세자가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ITRF)에 따라 정확한 소득(income)신고와 세금을 납부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감사를 수행하는 이유는 「지방세법(local tax laws)」과 규정(regulations)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는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제도

16)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Act," <https://mysst.customs.gov.my/SSTAct>, 검색일자: 2021. 10. 28.

중 하나이다. 불이행 및 탈세와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지방세법(local tax laws)」과 규정(regulations)에 따라 처리한다.

납세자가 위반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위반 내용에 따라 가산세 납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 세무감사(Tax Audit)란?

세무감사(Tax Audit)는 납세자의 사업 기록과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자료 등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세법과 규정에 따라 소득세 신고서(ITRF)가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납세자의 납세 이행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두 가지 유형의 감사를 수행하는데 데스크 감사(desk audit)와 현장 감사(field audit)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III-1] 데스크 감사(desk audit)와 현장 감사(field audit)

세부 사항	데스크 감사	현장 감사
수행 장소	국세청	납세자의 사업장
감사 이슈	간단함	복잡함
조사 방법	서신 및 인터뷰를 통해 받은 문서와 정보를 검토	모든 관련 문서를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함

데스크 감사 필요에 따라 다음 단계 현장 감사

자료: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 m=5&bt_posi=3&bt_unit=7000&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표 1-III-4〉 데스크 감사(desk audit)와 현장 감사(field audit)

데스크 감사	현장 감사
<p>데스크 감사는 국세청의 사무실에서 실시된다. 이는 서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세금 및 소득 조정 업무를 포함한다. 납세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세청으로 방문 요청을 받을 수 있다.</p> <p>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ITRF)에 신고한 모든 종류의 소득, 지출 외에도 다양한 청구 항목을 검토하고 조사하게 된다.</p> <p>특정한 상황에서는 데스크 감사가 현장 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현장 감사 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한다.</p>	<p>현장 감사는 납세자의 사업장, 국세청, 납세자와 국세청이 합의한 기타 장소에서 실시된다.</p> <p>사업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자영업자나 파트너십의 사업 관련 서류가 불완전하다면 개인은행 명세서와 같은 사업 외 서류를 확인 및 조사하는 작업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p>

자료: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 m=5&bt_posi=3&bt_unit=7000&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3)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란?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는 납세자의 사업 기록과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자료, 관련 물품 및 개인 서류를 포함하여 납세자의 사업과 재정 업무와 관련된 것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은 조사 중인 사건의 관련자를 조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권리가 있다.

세무조사에는 민사와 형사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민사 관련 조사(Civil Invest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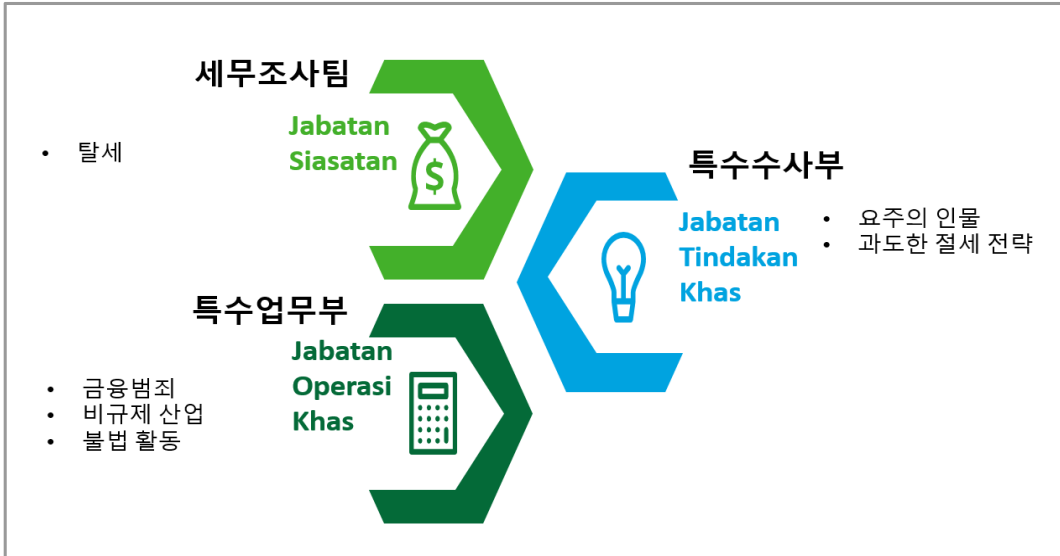
- 탈세 적발 활동을 포함
- 주 목적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중징계를 부과하기 위함
- 국세청의 세무 조사팀(Investigation branches)에서 수행

형사 관련 조사(Criminal Investigation)

- 특수수사부(Special Task Department) 산하 범죄수사과(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에서 수행
- 탈세자의 범죄 기소 및 유죄 선고를 위한 증거 수집에 집중

다음과 같이 여러 부서가 다양한 활동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1-III-2] 국세청(IRB)의 세무조사 관련 부서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세무조사의 주 목적은 향후 또 다른 세금탈루(tax evasion)를 막기 위해 탈세자를 가려내고 기소하는 것이다.

<표 1-III-5> 세무조사 활동

세무조사 활동	<p>세무조사의 초점</p> <p>세무조사는 세금탈루 등의 범죄 기소 및 유죄 선고를 위한 증거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사는 1967년 「소득세법(ITA)」 또는 2001년 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테러 자금 조달 방지(Anti-Terrorism Financing), 「불법을 통한 수익 방지법(Unlawful Activities Act, 이하 AMLATFPUA 2001)」에 근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소득세법」 또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p> <p>국세청이 「소득세법(ITA)」 및 「불법을 통한 수익 방지법(AMLATFPUA 2001)」에 근거하여 세무 조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이후 언젠든 「불법을 통한 수익 방지법(AMLATFPUA 2001)」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자료: Official Portal of Bank Negara Malaysia, <https://www.bnm.gov.my/documents/20124///72c34953-3515-a4b9-2217-9322bb75d22b>, 검색일자: 2021. 10. 28.

4) 조사대상자의 선정사유

세무감사 및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시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정할 수도 있다.

〈표 1-III-6〉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세무감사(Tax Audit)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자체 전산 분석 시스템 활용 • 제3자의 제보 •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표본조사 • 특정 납세자 집단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슈 확인 • 특정 사업장 위치에 대한 표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자체 전산 분석 시스템 활용 • 정보제공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 소득세 신고서(ITRF) 내용의 오류 확인 • 기밀 정보 입수 • 다른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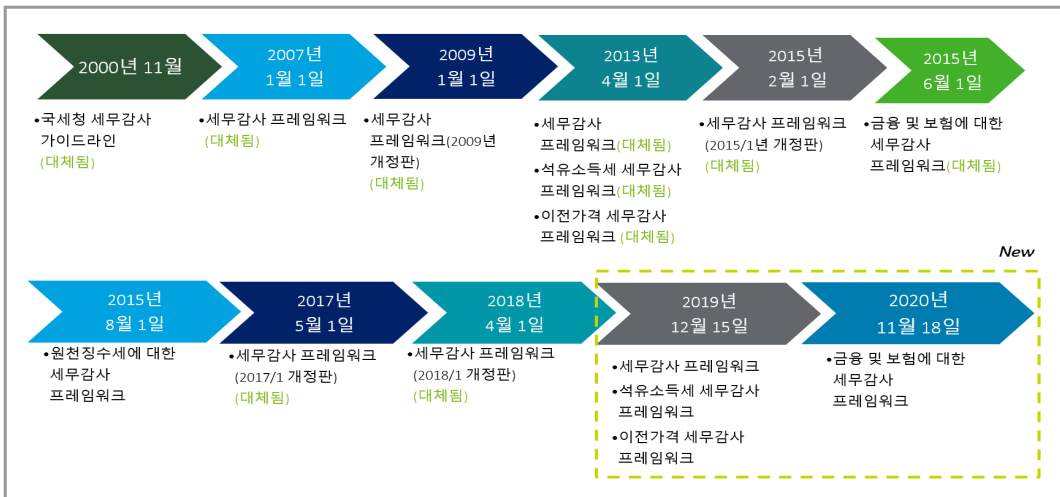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5) 2019년도 세무감사 프레임워크(Tax Audit Framework) 및 2020년도 세무조사 프레임워크(Tax Investigation Framework)¹⁷⁾

국세청이 발행한 프레임워크로 국세청의 세무감사 및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세부 지침으로 사용된다.

가) 말레이시아 세무감사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그림 1-III-3〕 말레이시아 세무감사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자료: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 m=5&bt_posi=3&bt_unit=7000&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1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 m=5&bt_posi=3&bt_unit=7000&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나) 세무감사(Tax Audit) 절차

사전 감사(Pre-Au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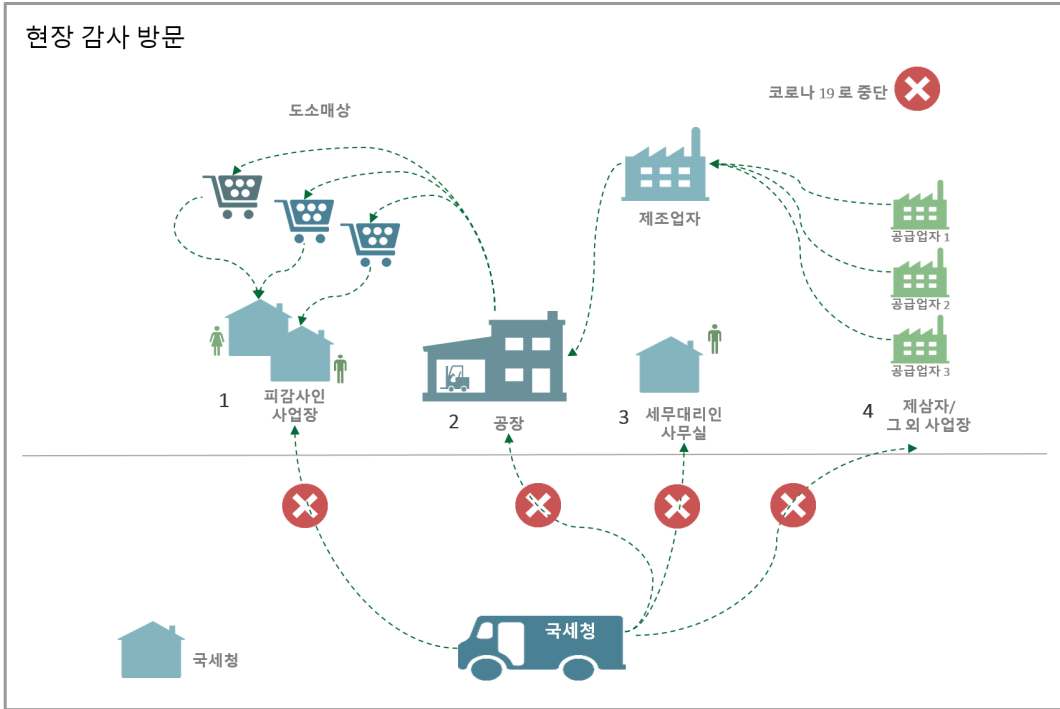
국세청은 데스크 감사 또는 현장 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발행할 수 있다.

- 관련 서류 요청 서신
- 감사 시작 통지서(Notification of Commencement of Audit letter)
- 데스크 감사 사례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 및 소득 조정에 관한 일종의 세액 결정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통보받을 수 있음

현장 감사(Field Audit) 방문

- 방문 준수 통지서(Compliance Visit Notification letter)는 방문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납세자에게 발급됨
- 인터뷰는 국세청이 납세자 및 세무 대리인과 함께 진행함
-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준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회사 설명
 - 글로벌 운영 조직도
 - 경영 구조
 - 기타
- 감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audit officer)은 납세자의 기록과 재고 실사, 사업 장비 검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여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근거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관련 기록과 서류를 복사할 수 있음

[그림 1-III-4] 현장 감사 방문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¹⁸⁾

사후 감사(Post-Au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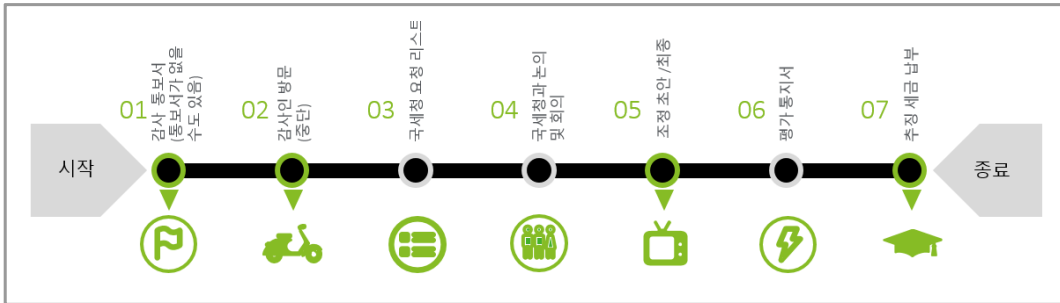
- 세무감사 프레임워크에 따르면¹⁹⁾ 국세청은 감사를 완료하는 데 90일이 소요된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통보
- 세무 감사 검토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세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급함. 납세자는 18일 이내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추가 증빙 서류 및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조정이 필요없다면 국세청은 세금 확인서를 발급함
- 조정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은 평가 통지서 또는 추가 평가서를 발급함

18) 주석 19) 참조

19)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3&bt_unit=7000&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다) 세무감사 과정(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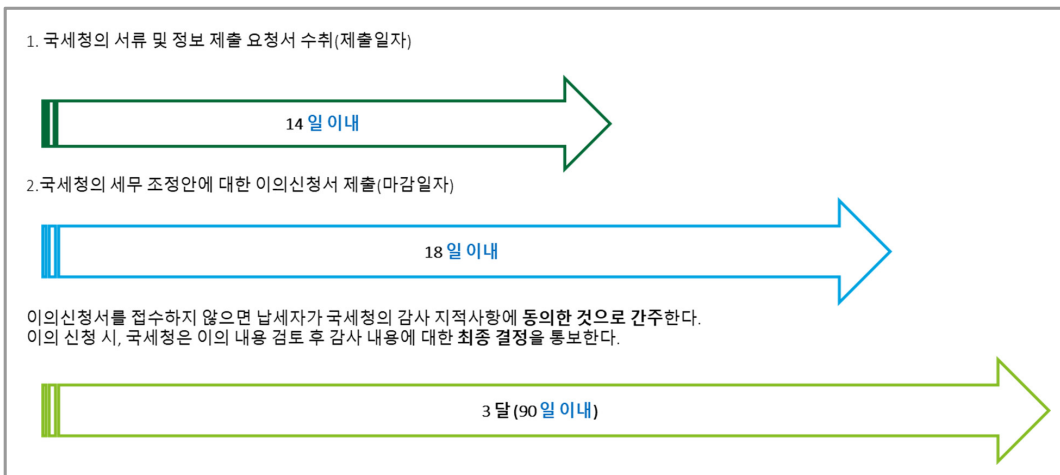
[그림 1-III-5] 세무감사의 시작과 종료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라) 세무감사 중요 타임라인

[그림 1-III-6] 세무감사 중요 타임라인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마)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 절차²⁰⁾

(1) 서류 및 정보 제출 요청

- 데스크 조사는 납세자, 세무 대리인, 제3자에게 관련 서류,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으로 수행할 수 있음

2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Investigation Framework 2020," https://phl.hasil.gov.my/pdf/pdfam/Tax_Investigation_Framework_2020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 납세자는 세무공무원(IRB officers)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구두로 설명해야 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은 사전 방문 통보를 하고 납세자의 사업장을 찾아올 수 있음

(2) 방문 조사/급습

- 필요에 따라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 거주지, 세무 대리인의 사업장, 제3자 외 사업장을 방문 조사할 수 있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장소를 급습 방문함
- 국세청은 모든 토지, 건물, 사업장, 장부, 서류, 물건, 물품 외 모든 것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 전자 매체에서 복사 또는 다운로드, 관련 문서를 압수하고 보유하는 권한을 포함
- 최소 2명의 세무공무원이 사건 관련자의 진술 인터뷰/녹음에 참석하게 됨

(3) 조사 종료

- 조사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조사 종료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 조사가 종료된 것을 확인
- 조사 결과에 동의한다면 합의서나 계약서에 서명하게 됨. 세무청장이 승인하고 평가내용이 발급되면 사건 종료로 간주함. 피조사 납세자는 국세청에 의해 모니터링됨
- 납세자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국세청장(DGIR)의 재량에 따라 평가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기소해야 할 사건은 법무부로 송치

6) 권리와 책임

가) 국세청(IRB)

조사공무원(audit officer)은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국세청이 정한 규칙과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전문성, 예의, 신뢰성, 정직성, 진실성을 갖춰야 함
- 세무 감사의 목적과 납세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언제든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세법을 다루는 데 정통하고 공정해야 함
- 납세자에게 협조적이어야 하고 언제든지 조언과 안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납세자 업무가 최대한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함
- 감사와 관련된 서류, 회계 장부, 정보만을 요청해야 함
- 세무 조정안을 설명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함
-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의 권리와 이익,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함

나) 납세자(Taxpayer)

- 자료제출 요구 등에 공정하고 진실되며 성실하게 협력해야 함
- 조사공무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개예규(public ruling) 7/2000호에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시설과 지원을 제공해야 함
 - ✓ 조사공무원에게 사업장 출입 권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와 가능한 서류를 제공해야 함
 - ✓ 사업에 관한 설명, 회계정보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 물리적 매체 및 전자 매체에 있는 기록, 문서, 회계장부를 조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 물리적 매체 및 전자 매체에 있는 기록, 문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 복사기, 전화, 기타 통신 장비, 전자 장비, 사무실, 가구, 전자 복사 시스템 설비, 즉 콤팩트디스크, USB 메모리, 휴대용 하드 디스크 외 모든 저장 장치 사용을 허용해야 함

다) 공인 세무 대리인²¹⁾

- 납세자는 자신을 대리하는 세무 대리인의 임명장을 제출해야 함
-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이 인터뷰를 대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납세자가 말레이어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공인 세무 대리인은 국세청이 정한 진실성, 책임감, 투명성, 공공책임에 관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함

21)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3&bt_unit=7000&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7) 정보 기밀 유지

국세청이 인터뷰, 토론, 서신, 기록, 서류를 조사하여 납세자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는 기밀로 하며 소득세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8) 위반 및 가산세

가) 부정확한 세금 신고

납세자가 본인 또는 타인을 대신해 신고해야 할 소득액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부정확한 세금 신고(tax returns)를 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납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면 「소득세법」 113(1)(Section 113(1) of the ITA)에 대한 위반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유죄 판결 시, 1천링깃 이상 1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및 미납 세금의 2배에 해당하는 특별 과징금을 징수한다.

부정확한 세금 신고(tax returns)나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것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장(DGIR)은 「소득세법」 113(2)항(Section 113(2) of the ITA)에 따라 미납 세금만큼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감사(tax audit)를 통해 「소득세법」 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처음으로 감사(audit) 또는 조사(Investigation)를 받은 것이라면 가산세율의 4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재범이라면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55%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위와 같더라도 국세청장(DGIR)의 재량에 따라 가산세를 「소득세법」 124(3)(Section 124(3) of the ITA)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아 부과된 가산세는 감면해 줄 수 없다.

나) 소득세신고서(ITRF) 미제출

납세자가 소득세신고서(ITRF)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 미신고는 「소득세법」 112항(Section 112 of the ITA)에 따른 위반사항이다. 112(1)항(Section 112(1) of the ITA)에 따르면 1개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미신고 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반면 112(1A)항(Section 112(1A))에 따르면 2개의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미신고 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천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는 미납세액의 3배에 달하는 특별 과징금을 내야 한다.

미신고 전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장(DGIR)은 「소득세법」 112(3)항(Section 112(3) of the ITA)에 따라 미납세액의 3배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고의 탈루(Wilful Evasion)

고의 탈루는 「소득세법」 114(1)항(Section 114(1) of the ITA)에 따른 위반사항이다. 범죄를 저지른 탈세자는 유죄 시 1천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고, 미납세액의 3배에 달하는 특별 과징금을 내야 한다.

9)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

감사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s, VD)를 하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으나, 일단 감사나 조사가 시작되면 가산세 감면을 목적으로 자진 신고를 할 수 없다.

〈표 1-III-7〉 자진 신고 가산세

(단위: %)

자진 신고 제출 마감 기한	가산세율 (2019년 세무감사 프레임워크)
1. 세무감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60일 이내	10
60일 초과 6개월 이하	15.5
6개월 초과	35
2. 세무감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피감사 대상자 통보 이후 자진 신고	초범이면 45, 2020년 1월 1일부터
재범 ¹⁾	55

주: 1) 재범의 뜻: 감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법」 113(2)항(Section 113(2) of the ITA)에 따라 평가/추가 평가/종합 평가를 받은 적이 있음. 초범일 때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행한 평가 통지서부터 따지게 된다.

자료: Tax Audit Framework 2019²²⁾

22) 주석 19) 참조

10) 불복청구(Appeals)

국세청 세무조사팀의 세무조사 결과가 납세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또는 추가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는 통지서에 대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Q 서식(Form Q)을 이용해 해당 국세청 조사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 97A(2)항(Section 97A(2))과 99~102항(Sections 99 to 102 of the ITA)에서 국세청이 발급한 통지서에 불복청구하는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납세자가 30일의 기한을 놓치면 Q 서식(Form Q)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공식 신청서인 N 서식(Form N)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국세청이 N 서식(Form N)을 승인하기 전에 납세자는 연장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불복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 날짜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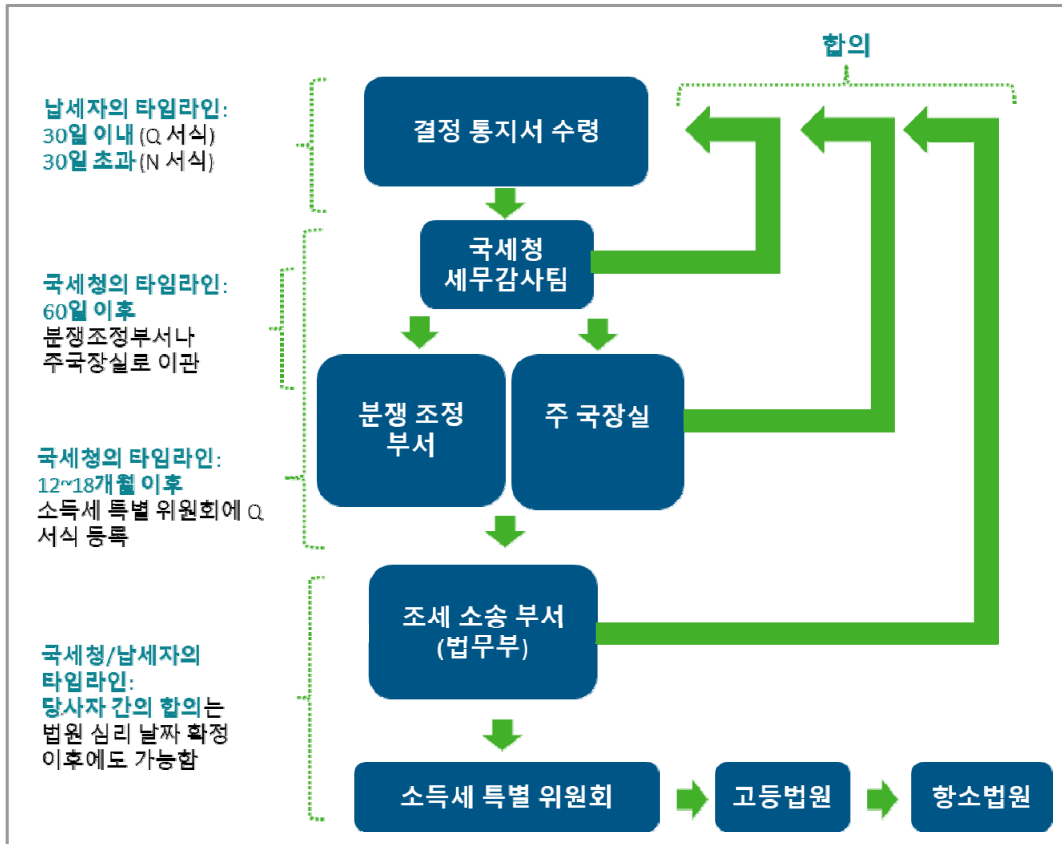
국세청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Q 서식(Form Q)은 분쟁조정부서(Dispute Resolution Division, DRD)나 주국장실(Director's Office, SDO)로 추가 검토를 위해 이관된다.

이들 부서는 국세청 조사팀과 납세자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중재인 역할을 하며,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평가하게 된다. Q 서식(Form Q)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특별한 사례일 때 18개월까지 연장)에 합의할 수 없다면 소득세 특별 위원회(Special Commissioners of Income Tax, SCIT)에 등록해야 한다.

불복청구 건이 소득세 특별 위원회(SCIT)에 등록되고 나면, 분쟁조정부서나 주국장실에서 법무부의 국세청 조세 소송 부서로 이관된다. 이 단계에 이르더라도 여전히 협상과 논의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면 불복청구 건은 법원 심리(Court Hearing)에 등록되고 고등법원(High Court)에 보내지며 마지막으로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보내진다.

[그림 1-III-7] 불복청구타임라인 23)



자료: Tax Audit Framework 2019²⁴⁾

23)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3&bt_unit=7000&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24) 주석 19) 참조

[별첨] 불복청구 신청양식-Q 서식(Form Q)²⁵⁾

(CP 14-Pin. 1/2009)



MALAYSIA
CUKAI PENDAPATAN
(Borang yang ditetapkan di bawah seksyen 152 Akta Cukai Pendapatan 1967)

BORANG



NOTIS RAYUAN KEPADA PESURUHJAYA KHAS
CUKAI PENDAPATAN
(Seksyen 99(1) Akta Cukai Pendapatan 1967)

Kepada: Daripada :

Ketua Pengarah Hasil Dalam Negeri No. Fail :

.....
.....
.....

Saya.....tidak berpuashati dengan :

i. taksiran / taksiran tambahan * bertarikhmenunjukkan RM.....sebagai cukai yang kena dibayar bagi tahun taksiran,
atau

ii. pemberitahuan tidak kena cukai bertarikh..... bagi tahun taksiran

yang notis mengenainya telah disampaikan kepada saya pada..... merayu kepada Pesuruhjaya Khas Cukai Pendapatan atas alasan-alasan berikut :

Tarikh: Tandatangan

.....
Jawatan

CATATAN:

- i. Notis rayuan berasingan hendaklah diberi bagi tiap-tiap tahun taksiran
- ii. Notis ini hendaklah dihantar kepada Lembaga Hasil Dalam Negeri di alamat yang ditunjukkan pada notis taksiran atau pemberitahuan tidak kena cukai.
- iii. Sila nyatakan alasan rayuan dengan jelas dan terperinci.

* potong yang tidak berkenaan

25)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Q,"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CP14_Pin2009_2.pdf, search date: 2021. 10. 28.

[별첨] Q 서식(Form Q)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N 서식(Form N)²⁶⁾

(CP 15-Pin. 1/2009)



MALAYSIA
CUKAI PENDAPATAN
(Borang yang ditetapkan di bawah seksyen 152 Akta Cukai Pendapatan 1967)

BORANG
N

**PERMOHONAN UNTUK LANJUTAN TEMPOH BAGI
MEMBUAT RAYUAN
KEPADA PESURUHJAYA KHAS CUKAI PENDAPATAN**
(Seksyen 100(1) Akta Cukai Pendapatan 1967)

Kepada: Daripada :

Ketua Pengarah Hasil Dalam Negeri
.....
.....
.....

No. Fail :

Saya memohon supaya dilanjutkan tempoh memberi notis rayuan terhadap :

i. taksiran / taksiran tambahan * bertarikhmenunjukkan
RM.....sebagai cukai yang kena dibayar bagi tahun taksiran,
atau

ii. pemberitahuan tidak kena cukai bertarikh.....bagi tahun taksiran
.....

yang notis mengenainya telah disampaikan kepada saya pada.....

Permohonan ini dibuat atas alasan-alasan berikut :

Tarikh:

.....
Tandatangan
.....
Jawatan

Permohonan ini hendaklah dihantar kepada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di alamat yang ditunjukkan pada notis taksiran atau pemberitahuan tidak kena cukai.

* potong yang tidak berkenaan

26)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N,"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CP15_Pin2009_2.pdf, search date: 2021. 10. 28.

11) 세무감사 및 세무조사 종료 후²⁷⁾

- 감사 조정을 통해 부과된 세금이나 가산세가 있다면 지정 대리인 또는 국세청 지급 창구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
- 납세자는 감사 조정을 통해 부과된 세금이나 가산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및 가산세에 대해 특정 기간 분할납부를 요청하면 심사해 볼 수 있다.
- 분할 납부제 신청서(Application for instalments scheme)의 승인을 위해 관련 국세청 지부장에게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납세자가 허용한 기간이나 합의한 분할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제103장(section 103 of the ITA)에 따라 미납세액에 추가 인상하여 징수한다.

4.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Tax Calendar)

세무 당국과 관련하여 일부 중요한 신고서식²⁸⁾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

1)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표 1-Ⅲ-8〉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1	월 소득 공제 제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다음 달의 15번째 날까지
2	근로자에게 제공한 급여명세서(EA 서식) 제출	다음 해 2월의 마지막 날까지
3	국세청에 제출하는 고용주 신고서식(E 서식)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	고용 통지서(CP22 서식)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
5	퇴사 통지서(CP22A 서식)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

2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3&bt_unit=7000&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28) 모든 신고서식은 말레이시아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관련링크: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s - Downlod Forms,"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2&bt_skum=3&bt_posi=1&bt_unit=1&bt_sequ=1, 검색일자: 2021. 10. 28.

〈표 1-III-8〉의 계속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6	근로자 사망신고서(CP22A 서식)	사망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7	근로자 출국 통지서(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CP21 서식)	출국일로부터 30일 전까지
8	근로자의 고용 중단 및 출국에 따라 보류 중인 금액	90일 또는 세금 확인서를 받을 때까지 둘 중 이른 기간 동안 보류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2)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표 1-III-9〉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마감일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1	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 사업 소득이 없을 때(BE/BT 서식) - 사업 소득이 있을 때(B/BT 서식)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2	세법상 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 사업 소득이 없을 때(M/MT 서식) - 사업 소득이 있을 때(M/MT 서식)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3	세액 잔액 납부(즉 월 소득공제 이후 남은 세액/세금 분할 납부) - 사업 소득이 없을 때 - 사업 소득이 있을 때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4	납세자의 추정세액 변경 참고: 비고용 소득에 관한 추정세액은 국세청이 제시할 수 있음. 개인인 해당하는 경우 추정세액을 수정할 수 있음	해당 과세연도의 6월 30일까지
5	세금 분할 납부(국세청이 추정세액을 제공할 때)	분할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일정은 국세청이 제공)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3) 회사, 신탁회사, 유한 책임 파트너십,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납부기한

〈표 1-III-10〉 회사, 신탁회사, 유한 책임 파트너십,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1	각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tax returns) - 회사 - C 서식 - 신탁회사 - TA 서식 - 단위 신탁/자산 신탁 - TC 서식 - 회사 신탁 - TN 서식 - 부동산 투자 신탁/자산 신탁 펀드 - TR 서식 - 협동조합 - C1 서식 - 유한 책임 파트너십 - PT 서식	회계기간 마감 후 7개월 이내

〈표 1-III-10〉의 계속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2	세액 잔액 납부(즉 월 소득공제 이후 남은 세액/세금 분할 납부)	회계기간 마감 후 7개월의 마지막 날
3	추정납부세액 납부(CP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규 회사), 기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을 때 과세연도 첫해에는 추정납부 세액을 내지 않아도 됨 - 중소기업은 최초 2개 과세연도에 대해 추정 납부세액에 대해 면제(서류상 CP204를 제출해야 하지만 추정납부 세액은 표기하지 않아도 됨) - 기준 기간이 다시 시작하는 30일 전까지 (기존 회사)
4	추정납부세액 변경(CP204A)	기준 기간의 여섯 번째와 9번째 달
5	세금 분할 납부	기준 기간의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5일까지 영업 개시 후 첫 번째 과세연도일 때, 기준 기간의 여섯 번째 달부터 매월 15일까지 납부 마감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4) 기타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표 1-III-11〉 기타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1	세금 신고(tax returns) - 파트너십 - P 서식	다음 해 6월 30일까지
2	세금 신고(tax returns) 수정	세금 신고(tax returns) 마감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추가 납부 세액에 6% 인상)
3	회계기간의 변경 통지: - 회계기간이 단축된 경우 - 회계기간이 연장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회계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 원래 회계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전까지
4	주소 변경 통지(CP600B 서식)	주소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평가 통지서, 추가 평가서, 비과세 통지서를 포함하여 평가 서로 간주되는 결과에 불복청구	30일 이내
6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내야 함 - 이자(interest) - 로열티 - 특정 소득(special class of income) - 계약금 - 연예인 - 4(f)에 따른 이익 및 수익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표 1-III-11〉의 계속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7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인, 딜러, 유통업자로 일하는 개인에게 회사가 판매, 거래, 계획에 따라 금전적으로 지급한 보수에 부과한 원천징수세	개인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8	대리인, 딜러, 총판업자에게 현금성 및 비현금성으로 지급한 인센티브 지급 명세서(CP58서식)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나. 부동산 양도세(RPGT)

〈표 1-III-12〉 부동산 양도세 관련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1	양도인 신고 - 부동산 처분(CKHT 1A) - 부동산 회사의 증권 매각(CKHT 1B 서식)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2	양수인 신고 - 부동산 회사로부터 증권 매입(CKHT 2A 서식)	
3	양수인이 취득가액에서 원천징수한 금액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세청으로 납부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다. 판매세와 서비스세

〈표 1-III-13〉 판매세와 서비스세 관련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1	사업자등록 신청서(SST-01 서식)	연간 매출액이 사업자등록 기준 매출액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의 익월 말까지
2	판매세와 서비스세 신고서 제출(SST-02) 및 세금 납부	과세 기간 종료 후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참고: 과세 기간은 격월(매 2개월 간)
3	비과세 사업자의 서비스세 신고서 제출(SST-02A)(즉 해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과세 대상 서비스)	지급일 또는 인보이스 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신고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제2장 말레이시아 주요 세법

- I. 개인소득세
- II. 법인소득세
- III. 이전가액
- IV. 간접세
- V. 원천징수세
- VI.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 VII. 기타 세금

제2장 | 말레이시아 주요 세법

I | 개인소득세

1. 과세 기준

말레이시아는 원천지국(속지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내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생긴다. 말레이시아에서 고용된 개인은 말레이시아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으며, 보수의 지급이 이루어진 장소나 고용계약이 체결된 장소와는 무관하다. 말레이시아는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해외 원천 소득을 말레이시아에서 수령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21년 「재정법」은 2021년 12월 31일에 통과되었다.

다음 면제는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정부 간의 후속 논의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수령하는 모든 유형의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2021년 12월 30일에 동의하였다(조건에 따라).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파트너십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과세 소득

말레이시아에서 과세하는 근로소득에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모든 임금, 급여, 보수, 휴가 수당, 수수료, 커미션, 보너스, 팁, 특전(perquisite) 또는 수당(금전형태 또는 기타)이 포함된다. 현금 지급 이외에 직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 편의 시설 또는 생활 숙박 시설, 비적격 연금(unapproved pension) 또는 적립 기금(provident funds), 제도 또는 사회 기부금(donation), 그리고 고용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금액도 말레이시아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스톡옵션의 행사 또는 주식의 권리 행사를 실시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세무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임대소득 및 배당 소득(단일 계층 배당 제외)과 같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인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과세 대상이 된다.

가. 면세 대상인 고용주로부터 받은 수당, 현물 급여, 특전(Perquisite)

- 연 6천링깃 한도 공무로 인한 교통비, 주유 카드, 주유 수당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²⁹⁾
- 출산비용과 침구 및 아유르베다 치료와 같은 전통의료를 포함한 의료비 보조금
- 주택, 자동차 구입, 교육 목적으로 받은 대출(한도 30만링깃)에 대한 이자 보조금
- 고용주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전화, PDA, 호출기 그리고 고용주 또는 직원 명의로 된 고지서 납부요금(각 기기별 1대/1회선으로 제한)
- 회사가 취급하는 소비재 제품에 대해 연 1천링깃 한도 직원 할인(discounts)
- 회사가 취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직원 할인(discounts)
- 연 2,400링깃 한도 육아수당
- 주차비/주차수당
- 식대
- 연 2천링깃 한도 우수상, 아이디어상, 생산성 우수상, 공로상, 장기근속상(10년 초과근무)
- 휴가비 지원(직원 및 직계가족의 운임에 한함) - (a) 1년에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말레이시아 국내 여행(식사 및 숙박 포함) 또는 (b) 연 1회 말레이시아 국외 여행, 3천링깃 한도
- SOCSO 기여금(contribution)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보험료
- 사고가 났을 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 보험료
- 말레이시아 시민권자인 직원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직원의 친인척이 아닌 고용주가 지불한 Perbadan Tabung Pendidikan Tinggi Nasional("PTPTN")의 학자금 대출(과세연도 2019년부터 과세연도 2021년까지)

29) 업무목적으로 지출한 교통비가 6천링깃을 넘어도 지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제 가능하다.

3. 세법상 거주자

소득세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의 납세의무의 범위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다음에서 소개할 4개의 정량적 테스트(quantitative test)(즉 과세연도 1역년(calendar year)에 말레이시아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일수)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역년(calendar year)에 182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개인은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 또한 개인이 182일 미만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더라도 「소득세법」³⁰⁾에 따라 정의되는 다른 상황에서 세법상 거주자 자격이 될 수 있다.

개인이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소득공제 없이 30%의 단일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납세 목적의 거주자 판정은 출생지, 거주지 또는 국적과 관련이 없다. 개인은 다음 「소득세법」 제7절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결정된다.

「소득세법」 제7절 발췌

- (1)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은 특정 과세연도의 기준 되는 연도에 대해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된다.
- a) 총 182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기준 연도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한다.
 - b) 182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 기준 연도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해당 기간**은 기준 연도의 직전 또는 직후 과세연도에 182일 이상의 연속하는 기간(이하 본 항에서 **그 기간**이라 한다)과 연결된다.

일시적인 말레이시아 부재 성립 조건

- (i) 말레이시아에서의 근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업무 관련, 콘퍼런스나 세미나 참석 또는 해외 유학
 - (ii)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
 - (iii) 총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사교적인 방문
- 일시적인 부재 직전과 직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또는 그 기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ncome Tax Act 1967(online version 2019. 1.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Act_53_20190101.pdf, 검색일자: 2021. 10. 28.

- c)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기준 연도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해당 기준 연도의 직전 4개의 과세연도 중 3개의 기준 연도에서
 - (i) 이 법에서 의미하는 말레이시아 거주자 또는
 - (ii) 총 90일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 거주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과세연도의 기준 연도에 대해 이 법에서 의미하는 말레이시아 거주자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개년의 과세연도 동안 각 기준 연도에 대해서 거주자이면 해당 과세연도의 거주자가 된다.

(1A) (1)항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 하루 중 일부 동안 말레이시아에 체류한 경우, 해당 개인은 하루 동안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해, 어떤 날((1)항의 (a) 및 (c)항 내에서) 개인이 말레이시아에 체류한 기간을 확인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연속적인 기간의 일부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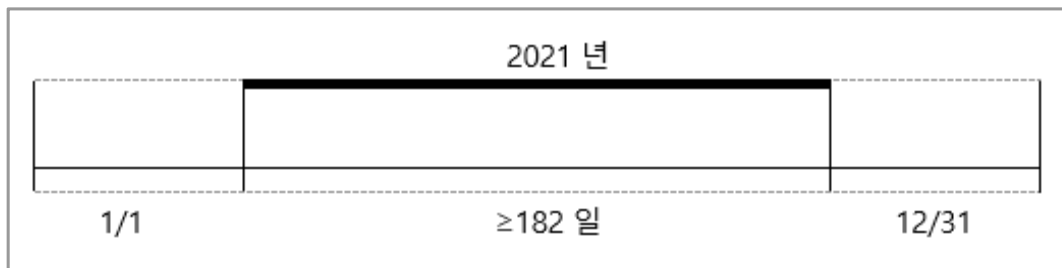
가. 거주자 자격 설명

1) 「소득세법」 제7절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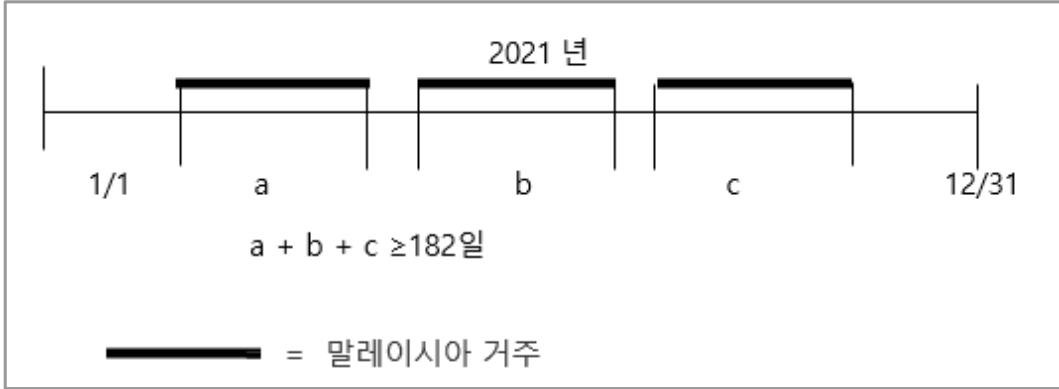
개인은 그 역년(calendar year) 중에 최소 182일을 물리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해야 한다. 182일은 그 역년(calendar year)의 단일 기간 또는 여러 기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는 개인은 말레이시아 거주자이다.

가) 단일 기간



나) 복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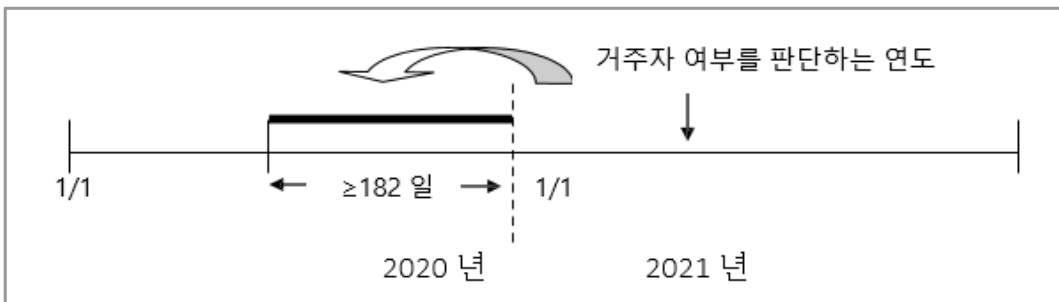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2) 「소득세법」 제7절 (1)(b)

이 조항에서는 개인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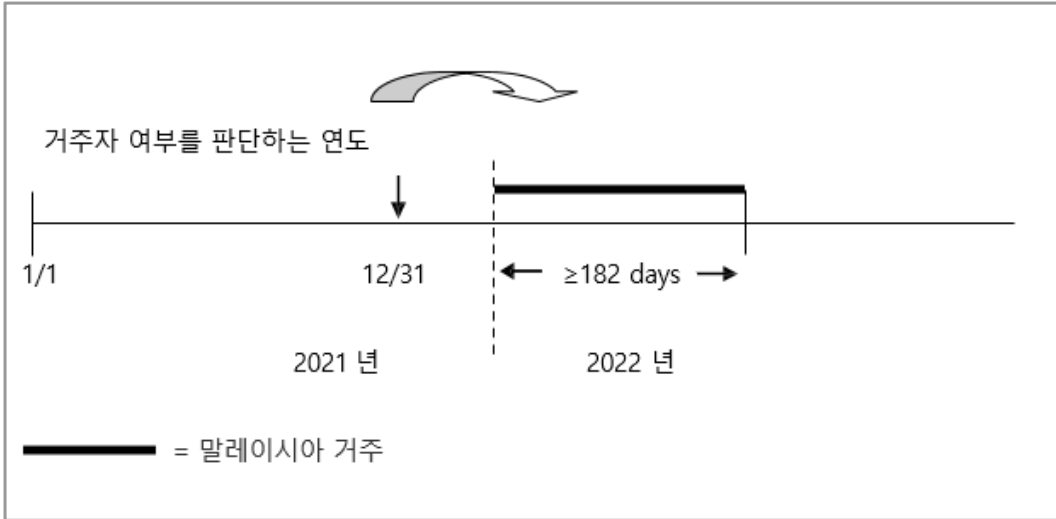
- 가) 개인이 말레이시아에 182일 미만 거주하나, 그 기간은 직전 182일 이상의 연속하는 기간과 연결되거나
- 나) 개인이 말레이시아에 182일 미만 거주하나, 그 기간은 직후 182일 이상의 연속하는 기간과 연결된다.

직전연도 182일 이상의 연속된 기간과 연결되는 그림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다음 해 182일 이상의 연속되는 기간과 연결되는 그림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일시적인 말레이시아 부재:

- 가) 말레이시아 근무 관련 회의, 세미나 참석 또는 유학
- 나)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출국
- 다) 총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사교적인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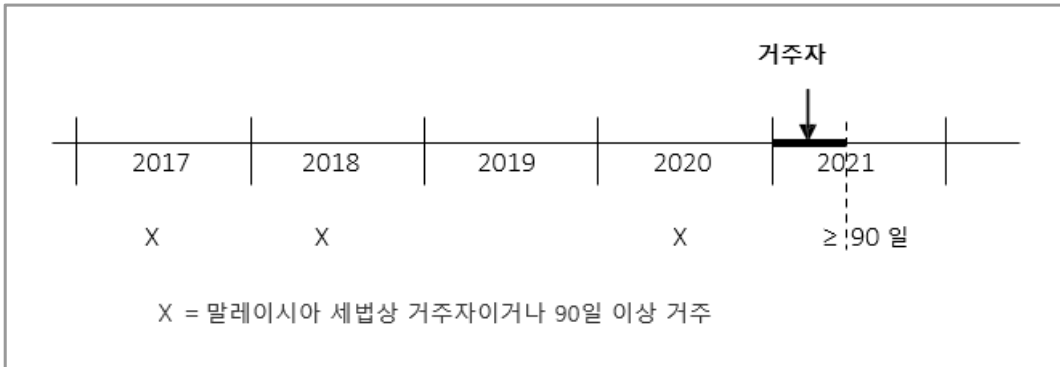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은 182일 이상 연속된 기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연결 기간 동안 해당 개인이 일시적인 부재 기간 직전 및 직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경우, 그 해 12월 31일과 다음 해 1월 1일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한 부재(12월 31일과 1월 1일)는 일시적인 부재중의 일부로 간주된다.

3) 「소득세법」 제7절 (1)(c)

제7절(1)(c)에 따라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 과세연도 동안 90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 나) 직전 4과세연도 중 3과세연도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거주자 또는
 - 말레이시아에 90일 이상 거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개인은 2021년 세법상 거주자이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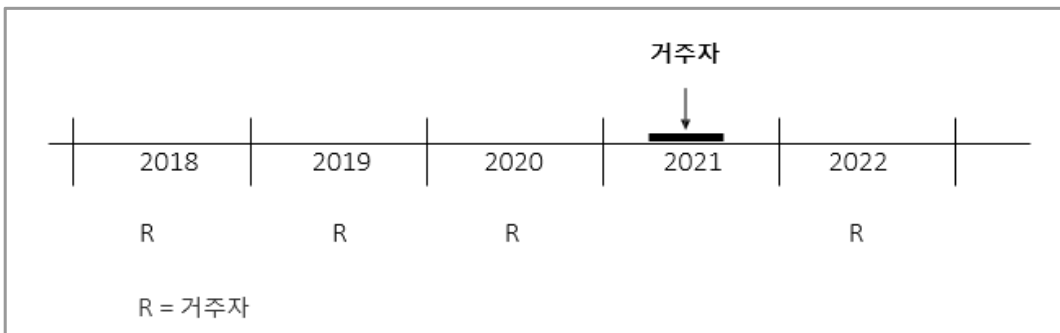
4) 「소득세법」 제7절 (1)(d)

해당 조항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해당 개인은 다음에서 거주자여야 한다.

가) 다음 해 그리고

나) 직전 3개 연도

다음과 같은 개인은 2021년 세법상 거주자이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4.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은 말레이시아 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말레이시아 세무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자격에 따라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결정된다.

거주자는 과세연도 2020년부터 0%에서 30%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며(〈표 2-I-1〉 참조), 소득공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표 2-I-2〉와 〈표 2-I-3〉 참조).

비거주자는 과세연도 2020년부터 30%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소득공제는 신청할 수 없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표 2-I-4〉에 명시된 기부금(donation), 선물(gifts), 기여금(contribution)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에 따라 국세청에 세무 신고서(tax returns)를 제출할 때,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신고서에 청구된 모든 공제는 국세청의 세무 감사 또는 국세청에 세금 완납 증명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충분한 증빙 서류에 의해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인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납세 의무를 진다.

가. 과세연도의 다음 해 4월 30일/6월 30일까지 세무 신고서를 제출한다.

나. 납부할 세액도 위의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 국세청의 세무감사를 대비하여 모든 증빙서류는 과세연도 말부터 7년 동안 유지하고 보관해야 한다.

위를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 세무 신고서 제출 지연 -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나. 기소가 없을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상계, 상환 또는 감면 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 지연 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의 10%를 가산한다.

〈표 2-I-1〉 개인소득세율

(단위: %, 링깃)

구분			세법상 비거주자세법상 거주자		
과세소득		세율	세액	새액	
링깃		%	링깃	30% ¹⁾	
0~5,000	첫	2,500	0	0	750
	이후	2,500	0	0	750
5,001~20,000	첫	5,000		0	1,500
	이후	15,000	1	150	4,500
20,001~35,000	첫	20,000		150	6,000
	이후	15,000	3	450	4,500
35,001~50,000	첫	35,000		600	10,500
	이후	15,000	8	1,200	4,500
50,001~70,000	첫	50,000		1,800	15,000
	이후	20,000	13	2,600	6,000
70,001~100,000	첫	70,000		4,400	21,000
	이후	30,000	21	6,300	9,000
100,001~250,000	첫	100,000		10,700	30,000
	이후	150,000	24	36,000	45,000
250,001~400,000	첫	250,000		46,700	75,000
	이후	150,000	24.5	36,750	45,000
400,001~600,000	첫	400,000		83,450	120,000
	이후	200,000	25	50,000	60,000
600,001~1,000,000	첫	600,000		133,450	180,000
	이후	400,000	26	104,000	120,000
1,000,001~2,000,000	첫	1,000,000		237,450	300,000
	이후	1,000,000	28	280,000	300,000
2,000,000 초과	첫	2,000,000		517,450	600,000
	이후	-	30	-

주: 1. 세액 계산 예시: 과세소득이 6만링깃인 경우, 첫 5만링깃까지는 단일세액 1,800링깃이 적용되며, 5만링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3%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한다.

1) YA 2020 이후부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최고 세율은 30%이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표 2- I -2〉 공제 유형(세법상 거주자에게만 해당)

(단위: 링깃)

No.	공제 유형	공제한도 (링깃)*
1	납세자(본인)	9천
2	배우자 공제(원천 소득이 없거나 부부합산 신고 ³¹)를 선택한 아내나 남편)	4천
	‘아내’는 (종교적 또는 기타 의식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이나 관습에 따라 남성의 아내 또는 그의 아내 중 하나로 간주되는 여성을 의미한다. - 장애인인 배우자 ³²)	5천
3	자녀(남편 또는 아내 중 한 명이 공제 신청)(자녀 1명당 공제 가능한 자녀 수에 제한없음) ‘자녀’는 개인 또는 그의 아내의 적법한 자녀 또는 의붓자식, 또는 법률에 따라 개인 또는 그의 아내가 입양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사회복지국장(the Director General)이 인정한 자녀를 의미한다.	
	• 자녀당(18세 미만)	2천
	• 장애인 자녀(미혼)	6천
	• 자녀당(18세 이상)	
	- 자녀당(18세 이상)	2천 또는
- 국내 및 해외의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공부	8천 ³³)	
- 고등교육을 받는 장애인 자녀	6천	
4	말레이시아 의료 협의회(MMC)에 등록된 의료인(의사)에게 부모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 부모가 말레이시아 거주자인 경우에 한함	8천
5	말레이시아 의료 협의회(MMC)에 등록된 의료인(의사)에 본인, 배우자, 자녀의 심각한 질병에 대해 지불한 의료비. 여기에는 연간 1천링깃 한도의 건강 검진 비용과 연간 1천링깃 한도의 백신 접종 비용을 포함함 2021년 「재정법」에 따라 연간 1천링깃 한도의 건강 검진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8천 ³⁴)
	a) 병원 또는 말레이시아 의학협회에 등록된 의료인이 수행한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COVID-19) 진단 검사 비용 또는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코로나19 자가 진단 테스트 키트를 구매분(과세연도 2022년부터 유효) b) 등록된 정신과 의사, 등록된 임상 심리학자 또는 등록된 상담사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입증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검사 또는 상담(과세연도 2022년부터 유효)	
6	장애인(본인)	6천
7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의 장애 관련 보조 기구	6천
8	적격 적립 기금(provident funds) 및 적격연금제도(approved pensioni scheme)	4천
	과세연도 2022년부터 자영업자 또는 연금 수령 공무원의 자발적 기여금(contribution)을 포함한다(2021년 「재정법」).	

〈표 2-I-2〉의 계속

No.	공제 유형	공제한도 (링깃)*
9	생명보험료(life insurance premiums)	3천
10	개인 퇴직연금 납부액 및 거치연금보험료(2022년 예산안에서 과세연도 2025년까지 연장하도록 발표)	3천
11	교육보험료 및 의료보험료(insurance premiums for education or medical benefits)	3천
12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정하거나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말레이시아 기관 또는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 수료비(tuition fees). 인정되는 분야는 법률, 회계, 이슬람 금융, 직업훈련, 산업 기술, 과학 기술, 공업 기술, 일반 기술 또는 자격을 포함한다. 과세연도 2021년부터 인적 자원부와 기술 개발부에서 승인하는 모든 기술 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 과정의 비용까지 확대된다. 추가 확대된 범위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는 과세연도 2021년 및 2022년에 한해 1천링깃까지로 제한한다. 기술 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 과정에 대한 공제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천링깃으로 인상한다(2021년 「재정법」).	7천
13	개인이 자녀를 위해 Perbadanan Tabung Pendidikan Tinggi Nasional Act 1997라는 법에 의해 설립된 스킴 심판관 펀디칸 내셔널(Skim Simpanan Pendidikan Nasional)에 납입한 예금. 전년도에서 이월된 잔액은 대상이 아니다. 1년 중에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 공제액이 감소된다.	8천
14	부모 부양비(조건 있음)	1,500 ³⁵⁾
15	사회보장기구(SOCSO) 기여액 과세연도 2022년부터 350링깃으로 인상하고 고용 보험 시스템(Employment Insurance System)을 통한 직원의 기여금(contribution)을 공제 범위에 포함한다(2021년 「재정법」).	250
16	라이프스타일(lifestyle) 공제. 도서, 정기 간행물, 잡지, 일간 및 전자 신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간행물(금지 간행물 제외) 구입 비용이 포함된다. Sports Development Act 1997에 정의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비용, 스포츠 시설 입장료 및 대여비, 스포츠 경기 참가비,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구입 비용, 초고속 인터넷 요금, 피트니스센터 회비도 이에 포함된다. 과세연도 2021년부터 매년 500링깃 한도로 스포츠 장비 구입 비용, 스포츠 시설 입장료 및 대여료, 스포츠 대회 참가비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2,500 500

- 31) 부부합산 신고는 부부의 소득 합계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합산 신고서를 신고하는 개인에게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합산 신고는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므로(합산 소득으로 인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권장되지는 않는다. 남편과 아내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각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별 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32)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에서 서면으로 장애인으로 인증한 자
- 33) 만 18세 이상의 미혼 자녀로서, 국가 공인 고등교육기관에서 diploma 이상의 학위 과정 또는 해외 인정 고등교육기관에서 degree 이상의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8천링깃의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과정과 교육기관이어야 한다(<https://www2.mqa.gov.my>).
- 34) 과세연도 2021년부터 공제한도가 8천링깃으로 확대되며 여기에는 한도 1천링깃까지 종합 건강 검진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최대 1천링깃까지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예방 접종 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백신은 페렴 구균,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수두, 수막구균, Tdap종합백신(파상풍, 디프테리, 백일해 및 COVID-19)이다.

〈표 2-I-2〉의 계속

No.	공제 유형	공제한도 (링깃)*
17	수유 기구 비용. 2년에 1회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만 2세까지의 자녀를 키우며 일하는 여성	1천
18	과세연도 2020년과 2021년에 납부한 보육 시설 및 유치원 보육료 2021년 「재정법」에 따라 이 공제를 과세연도 2022년과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3천
19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휴대폰, 노트북 또는 태블릿. 단 라이프 스타일 공제(이 표의 16번 항목)에 따라 청구하지 않은 구매분이어야 함 2021년 「재정법」에 따라 과세연도 2022년 동안 구매한 휴대폰, 노트북 또는 태블릿까지 포함한다.	2,500
20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관광청에 등록된 시설 숙박 비용 및 관광 명소 입장료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까지 확대되고 1992년 「관광법」에 관광청에 등록된 여행사로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국내 관광 패키지를 포함한다.(2021년 「재정법」)	1천
21	전기차(electronic vehicles) 충전시설 설치비, 렌탈비, 구매비 또는 가입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2021년 「재정법」).	2,500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표 2-I-3〉 세금 환급(Tax rebates)(세법상 거주자에게만 해당)

(단위: 링깃)

No	유형	한도 (링깃)
1	과세소득 3만 5천링깃 이하의 납세자(본인)	400
2	납세자가 부부합산 신고를 선택했으며, 배우자의 과세소득이 3만 5천링깃을 초과하지 않을 때 배우자에 대한 추가환급	400
3	출국세(departure levy)/자캇(Zakat)/피트라(Fitrah)/말레이시아의 모든 서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적절한 종교 기관에 의무적으로 지불되는 기타 이슬람 회비(예: 푸사툼군단 자캇(Pusat Pungutan Zakat), 마지스 아가마 이슬람 네그리(Majlis Agama Islam Negeri))	기준연도에 지불된 액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35) 과세연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 1,500링깃 한도로 부모 각각 치료비 공제가 주어진다. 단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i) 납세자는 부모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8천링깃 한도)와 이중으로 공제 신청할 수 없음
 - (ii) 부모는 관련 법적으로 합법적인 친부모와 양부모이며,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 (iii) 부모의 나이는 만 60세 이상
 - (iv) 부모는 해당 과세연도에 말레이시아 거주자이어야 함
 - (v) 부모의 개별 연간 소득이 2만 4천링깃을 넘지 않아야 함
- 이 공제는 다른 형제간에 분할 가능하며, 총공제액은 부모 한 사람당 1,500링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2-I-4〉 기부금(Donation)/선물(Gifts)/기여금(Contribution)

(단위: 링깃)

No.	공제 유형	공제한도(링깃)
1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승인된 기관 및 단체에 금전적 기부	합산소득 (aggregate income)의 10%까지
2	승인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단체에 금전적 기부 또는 물품 기부	
3	재무부가 승인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금전적 기부 또는 물품 기부	
4	와카프(Wakaf) 또는 기부금(donation)의 형태로 금전적 기부	
5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공예품, 사본, 회화 기부	1)
6	도서관 시설 제공에 대한 금전적 기부 또는 도서관에 금전적 기부	20,000
7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제공에 대한 금전적 기부 또는 물품 기부	2)
8	보건부가 승인한 보건시설에 금전적 기부 또는 약품 설비 기부	20,000
9	국립 미술관 또는 주립 미술관에 그림 기부	3)

주: 1) 말레이시아 박물관국 또는 국가문서 보관국이 결정한 증여품의 금액과 같은 금액

2)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제공에 대한 금전적 기부 또는 물품 기부와 같은 금액(금액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3) 국립 미술관 또는 주립 미술관에 기부한 회화와 같은 금액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5. 세무 신고와 준수 사항(Tax Returns and Compliance)

말레이시아 과세연도는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2021년 개인의 소득은 과세연도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세무 신고서식은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다.

〈표 2-I-5〉 개인소득세 신고 양식과 납부 기한

소득 유형	거주자 자격	신고서식	신고 및 납부 기한
근로 ³⁶⁾	거주자	BE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업 ³⁷⁾	거주자	B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근로	비거주자	M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업	비거주자	M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36) 사업 소득이 없는 개인에 해당

37)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에 해당

말레이시아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은 국세청에 세무 신고 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e-Daftar³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개인온라인³⁹⁾으로 전자 신고서식 제출 또는 신고서식을 수기로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세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 Tax Information & Record Management Division
- Tax Operation Department
- Karung Berkunci 00222
- 43650 Bandar Baru Bangi
- Selangor Darul Ehsan

세금 납부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 국세청 Income Tax Payment 사이트(<https://byrhasil.hasil.gov.my>)를 통해 온라인 (FPX)으로 납부
- 지정 은행⁴⁰⁾
- 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쿠칭 지점의 국세청 납부 카운터에서 납부 또는 우편
- 국세청(<http://www.hasil.gov.my>)에서 제공되는 송금 전표(Remittance Slip)인 CP501 사용
- 우편발송의 경우 입금은 양식과 별도로 발송되어야 한다. 현금 결제는 우편발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표, 우편환(money order), 은행 환어음(bank draft)은 반드시 국세청장 앞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 Post Malaysia Berhad-카운터 및 Pos Online
- Telegraphic Transfer/Transfer Interbank Giro/Electronic Fund Transfer to IRBM's bank account.

38) <https://edaftar.hasil.gov.my/index.php?lgv=2>

39) ezHASiL, <https://ez.hasil.gov.my/CI>

40) 관련 정보는 말레이시아 국세청 공식포털(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1&bt_posi=2&bt_unit=5000&bt_sequ=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개인소득세 신고서식 - Form BE⁴¹⁾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Form		YEAR OF ASSESSMENT	
(RESIDENT WHO DOES NOT CARRIES ON BUSINESS)		BE		2020	
UNDER SECTION 77 OF THE INCOME TAX ACT 1967				CP4B - Pin. 2020	
This form is prescribed under section 152 of the Income Tax Act 1967					
BASIC PARTICULARS					
1	Name (As per identification document)		3	Identification no.	
2	Income tax no.		5	Passport no. registered with LHDNM	
4	Current passport no.				
PART A: PARTICULARS OF INDIVIDUAL					
A1	Citizen	Use country code (Enter 'MY' if Malaysian citizen)	A2	Gender 1 = Male 2 = Female	
A3	Date of birth	(dd/mm/yyyy)	A4	Status as at 31-12-2020 1 = Single 2 = Married 3 = Divorced / widow / widower 4 = Deceased	
A5	Date of marriage / divorce / demise	(dd/mm/yyyy)			
A6	Type of assessment	1 = Joint in the name of husband 3 = Separate 2 = Joint in the name of wife 4 = Self whose spouse has no income, no source of income or has tax exempt income 5 = Self (Single / divorcee / widow / widower / deceased)			
PART B: COMPUTATION OF INCOME TAX					
B1	Statutory income from employment	B1a	Number of employment	B1	RM
B2	Statutory income from rents	B2			Sen
B3	Statutory income from interest, discounts, royalties, premiums, pensions, annuities, other periodical payments and other gains or profits	B3			.00
B4	AGGREGATE INCOME (B1 + B2 + B3)	B4			.00
B5	LESS: Approved investment under angel investor tax incentive (Restricted to B4)	B5			.00
B6	TOTAL (B4 - B5) [Enter '0' if value is negative]	B6			.00
B7	LESS: Approved donations / gifts / contributions (Amount from E8)	B7			.00
B8	TOTAL INCOME (SELF) (B6 - B7) [Enter '0' if value is negative]	B8			.00
B9	TOTAL INCOME TRANSFERRED FROM HUSBAND / WIFE * FOR JOINT ASSESSMENT	B9			.00
* Type of income transferred from HUSBAND / WIFE		1 = With business income			
		2 = Without business income			
B10	AGGREGATE OF TOTAL INCOME (B8 + B9)	B10			.00
B11	Total relief (Amount from F20)	B11			.00
B12	CHARGEABLE INCOME (B8 - B11) or (B10 - B11) [Enter '0' if value is negative]	B12			.00
B13	INCOME TAX COMPUTATION (Refer to the tax rate schedule provided at the LHDNM Official Portal, http://www.hasil.gov.my)	B13			.00
B13a	Tax on the first	.00		B13a	.
B13b	Tax on the balance	.00	At rate	%	B13b
B14	TOTAL INCOME TAX (B13a + B13b)	B14			.
B15	LESS: Total rebate	- Self	.00	- Husband / wife	.00
- Departure levy for umrah travel / religious travel for other religions (Restricted to 2 trips in a lifetime)		.00	No. of trips	- Zakat and fitrah	.
B16	TOTAL TAX CHARGED [B14 - B15] (Enter '0' if value is negative)	B16			.
B17	LESS: - Section 110 (others)	.	- Section 132 and 133	.	B17
B18	TAX PAYABLE (B16 - B17)	B18			.
B19	OR: TAX REPAYABLE (B17 - B16)	B19			.
B20	Payment made for 2020 income - SELF and HUSBAND / WIFE for joint assessment	B20			.
- Monthly Tax Deductions (MTD)		.	- Self installments / CP500	.	
B21	Balance of tax payable (B18 - B20) / Tax paid in excess (B20 - B18)	B21			.
▲ (Enter 'X' if tax paid in excess)					
DECLARATION					
I					Identification / passport no * (*Delete whichever is not relevant)
hereby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income and claim for deductions and reliefs given by me in this return form and in any document attached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1 = This return form is made on my own behalf		2 = This return form is made on behalf of the individual in item 1			
3 = As an executor of the deceased person's estate (if A4 = 4) **					
** This form is not a notification pursuant to subsection 74(3) of the ITA 1967. Please furnish Form CP57 (Notification of Taxpayer's Demise) which is available at the LHDNM Official Portal, http://www.hasil.gov.my .				Signature	
Date	(dd/mm/yyyy)				
PART C: PARTICULARS OF HUSBAND / WIFE					
C1	Name of husband / wife (As per identification document)				
C2	Identification no.				
C3	Date of birth	(dd/mm/yyyy)	C4	Passport no.	

41)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BE 2020,"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Form_BE2020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Name: Income Tax No:

PART D:		OTHER PARTICULARS	
D1 Telephone no.	Handphone no.	D2 E-mail	
D3 Employer's no. E		D4 Has financial account(s) at financial institution(s) outside Malaysia	1 = Yes 2 = No
D5 Details of bank (NOTE: Enter the name of the bank and bank account no. for the purpose of electronic income tax refund)			
D5a Name of bank		D5b Bank account no.	
D6a Disposal of asset under the Real Property Gains Tax Act 1976 (If 'Yes', also complete item D6b)	1 = Yes 2 = No	D6b Disposal declared to LHDNM	1 = Yes 2 = No

PART E:		DONATIONS / GIFTS / CONTRIBUTIONS	
E1 Gift of money to the Government / State Government / local authority			.00
E2a Gift of money to approved institutions / organisations / funds		.00	} Restricted to 10% of B4 E2
E2b Gift of money for any sports activity approved by the Minister of Finance		.00	
E2c Gift of money or cost of contribution in kind for any project of national interest approved by the Minister of Finance		.00	
E2d Gift of money in the form of wakaf to religious authority / religious body / public university or gift of money in the form of endowment to public university		.00	
E3 Gift of artefacts, manuscripts or paintings to the Government or State Government			.00
E4 Gift of money for the provision of library facilities or to libraries		Restricted to 20,000	.00
E5 Gift of money or contribution in kind for the provision of facilities in public places for the benefit of disabled persons			.00
E6 Gift of money / cost / value of gift of medical equipment to any healthcare facility approved by the Ministry of Health		Restricted to 20,000	.00
E7 Gift of paintings to the National Art Gallery or any state art gallery			.00
E8 Total approved donations / gifts / contributions [E1 to E7] (Transfer this amount to B7)			.00

PART F:		RELIEF	
F1 Individual and dependent relatives		9,000	.00

F1a Medical treatment, special needs and carer expenses for parents (Medical condition certified by medical practitioner)		.00	Restricted to 5,000	} F2	.00		
OR							
F2b Parent:	Identification / passport no.	Eligible amount	No. of individuals who claim			=	Claimable amount
	i. Mother	1,500	+	=	.00		
	ii. Father	1,500	+	=	.00		
} Restricted to 1,500 for only one mother } Restricted to 1,500 for only one father } Restricted to 3,000							
F3 Basic supporting equipment for disabled self, spouse, child or parent			Restricted to 6,000		.00		
F4 Disabled individual			Restricted to 6,000		.00		
F5 Education fees (Self):			Restricted to 7,000		.00		
(i) Other than a degree at masters or doctorate level – Course of study in law, accounting, Islamic financing, technical, vocational, industrial, scientific or technology							
(ii) Degree at masters or doctorate level – Any course of study							
F6a Medical expenses on serious diseases for self, spouse or child		.00	} Restricted to 6,000		.00		
F6b Medical expenses on fertility treatment for self or spouse		.00					
F7 Complete medical examination for self, spouse or child (Restricted to 500)		.00			.00		
F8a Lifestyle – Expenses for the use / benefit of self, spouse or child in respect of:			Restricted to 2,500		.00		
(i) Purchase of books / journals / magazines / printed newspapers / other similar publications (Not banned reading materials)							
(ii) Purchase of personal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Not for business use)							
(iii) Purchase of sports equipment for sports activity defined under the Sports Development Act 1997 and payment of gym membership							
(iv) Payment of monthly bill for internet subscription (Under own name)							
F8b Lifestyle – Purchase of personal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for own use / benefit or for spouse or child and not for business use (Additional relief for purchases made within the period of 1 June 2020 until 31 December 2020)			Restricted to 2,500		.00		
F9 Purchase of breastfeeding equipment for own use for a child aged 2 years and below (Deduction allowed once in every 2 years of assessment)			Restricted to 1,000		.00		
F10 Child care fees to a registered child care centre / kindergarten for a child aged 6 years and below			Restricted to 3,000		.00		
F11 Net deposit in Skim Simpanan Pendidikan Nasional (Total deposit in 2020 minus total withdrawal in 2020)			Restricted to 8,000		.00		
F12 Husband / wife / payment of alimony to former wife			Restricted to 4,000		.00		
F13 Disabled husband / wife			Restricted to 3,500		.00		
F14 Child	No.	100% Eligibility	No.	50% Eligibility			
F14a Child – Under the age of 18 years		X 2,000 =		X 1,000 =	F14a		
		X 2,000 =		X 1,000 =			
F14b Child – 18 years and above and studying		X 8,000 =		X 4,000 =	F14b		
		X 6,000 =		X 3,000 =			
F14c Child – Disabled child		X 14,000 =		X 7,000 =	F14c		

Name:		Income Tax No:	
F15 Life insurance and EPF			
(a) Pensionable public servant category			
- Life insurance premium		.00	<i>Restricted to 7,000</i>
OR			
(b) Other than pensionable public servant category			
(i) Life insurance premium <i>(Restricted to 3,000)</i>		.00	<i>Restricted to 7,000</i>
(ii) Contribution to EPF / approved scheme <i>(Restricted to 4,000)</i>		.00	
		} F15	
		.00	
F16 Private retirement scheme and deferred annuity	<i>Restricted to 3,000</i>		.00
F17 Education and medical insurance	<i>Restricted to 3,000</i>		.00
F18 Contribution to the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SOCSO)	<i>Restricted to 250</i>		.00
F19 Payment for accommodation at premises registered with the Commissioner of Tourism and entrance fee to a tourist attraction <i>(Payment is made on or after 1 March 2020)</i>	<i>Restricted to 1,000</i>		.00
F20 Total relief [F1 to F19] <i>(Transfer this amount to B11)</i>			.00
PART G: INCENTIVE CLAIM			
Refer to Explanatory Notes for the list of incentive claim code. Please use additional sheet separately in case of insufficient space.			
G1 Claim incentive(s) under paragraph 127(3)(b) of Income Tax Act 1967			
Claim Code	Balance Brought Forward	Amount Claimed	Amount Absorbed
i.			
ii.			
G2 Claim for incentive(s) under subsection 127(3A) of Income Tax Act 1967			
Incentive Approval No.	Balance Brought Forward	Amount Claimed	Amount Absorbed
i.			
ii.			
PART H: NON-EMPLOYMENT INCOME OF PRECEDING YEARS NOT DECLARED			
Type of Income	Year of Assessment	Amount (RM)	
H1			.00
H2			.00
PART J: PARTICULARS OF TAX AGENT WHO COMPLETES THIS RETURN FORM			
J1 Name of firm	J2 Telephone no.		
	J4 Signature		
J3 Tax agent's approval no.			

[별첨] 개인소득세 신고서식 - Form B42)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Form		YEAR OF ASSESSMENT	
RETURN FORM OF AN INDIVIDUAL (RESIDENT WHO CARRIES ON BUSINESS)		B		2020	
UNDER SECTION 77 OF THE INCOME TAX ACT 1967				CP4A - Pin. 2020	
This form is prescribed under section 152 of the Income Tax Act 1967					
BASIC PARTICULARS					
1	Name (As per identification document)		3	Identification no.	
2	Income tax no.		5	Passport no. registered with LHDNM	
4	Current passport no.				
PART A: PARTICULARS OF INDIVIDUAL					
A1	Citizen	Use country code (Enter MY if Malaysian citizen)	A2	Gender	1 = Male 2 = Female
A3	Date of birth	(dd/mm/yyyy)	A4	Status as at 31-12-2020	1 = Single 2 = Married 3 = Divorced/widow/widower 4 = Deceased
A5	Date of marriage / divorce / demise	(dd/mm/yyyy)	A6	Record-keeping	1 = Yes 2 = No
A7	Type of assessment	1 = Joint in the name of husband 2 = Joint in the name of wife	3 = Separate 4 = Self whose spouse has no income, no source of income or has tax exempt income 5 = Self (Single / divorcee / widow / widower / deceased)		
PART B: COMPUTATION OF INCOME TAX					
				RM	Sen
B1	Statutory income from businesses	B1a	Number of businesses	B1	.00
B2	Statutory income from partnerships	B2a	Number of partnerships	B2	.00
B3	Aggregate statutory income from businesses (B1 + B2)			B3	.00
B4	LESS: Business losses brought forward (Restricted to B3)			B4	.00
B5	TOTAL (B3 - B4)			B5	.00
B6	Statutory income from employment	B6a	Number of employment	B6	.00
B7	Statutory income from rents			B7	.00
B8	Statutory income from interest, discounts, royalties, premiums, pensions, annuities, other periodical payments, other gains or profits and additions pursuant to paragraph 43(1)(c)			B8	.00
B9	AGGREGATE INCOME (B5 + B6 + B7 + B8)			B9	.00
B10	LESS: Approved investment under angel investor tax incentive (Restricted to B9)			B10	.00
B11	TOTAL (B9 - B10) (Enter '0' if value is negative)			B11	.00
B12	LESS: Current year business losses (Restricted to B11)			B12	.00
B13	TOTAL (B11 - B12) (Enter '0' if value is negative)			B13	.00
B14	LESS: Other expenses [Qualifying prospecting expenditure - Schedule 4] (Restricted to B13)			B14	.00
B15	LESS: Approved donations / gifts / contributions (Amount from E8)			B15	.00
B16	TOTAL [B13 - B14 - B15] (Enter '0' if value is negative)			B16	.00
B17	TAXABLE PIONEER INCOME			B17	.00
B18	TOTAL INCOME [SELF] (B16 + B17)			B18	.00
B19	TOTAL INCOME TRANSFERRED FROM HUSBAND / WIFE * FOR JOINT ASSESSMENT			B19	.00
	* Type of income transferred from HUSBAND / WIFE		1 = With business income 2 = Without business income		
B20	AGGREGATE OF TOTAL INCOME (B18 + B19)			B20	.00
B21	Total relief (Amount from F20)			B21	.00
B22	CHARGEABLE INCOME [(B18 - B21) or (B20 - B21)] (Enter '0' if value is negative)			B22	.00
B23	INCOME TAX COMPUTATION (Refer to the tax rate schedule provided at the LHDNM Official Portal, http://www.hasil.gov.my)				
B23a	Tax on the first	.00		B23a	.
B23b	Tax on the balance	.00	At rate %	B23b	.
B24	TOTAL INCOME TAX (B23a + B23b)			B24	.
B25	LESS: Total rebate	.00	- Husband / wife	.00	
	- Departure levy for umrah travel / religious travel for other religions (Restricted to 2 trips in a lifetime)	.00	No. of trips	- Zakat and fitrah	.
B26	TOTAL TAX CHARGED [B24 - B25] (Enter '0' if value is negative)			B26	.
B27	LESS: - Section 110 (others)	.	- Section 132 and 133	.	
B28	TAX PAYABLE (B26 - B27)			B28	.
B29	OR: TAX REPAYABLE (B27 - B26)			B29	.
B30	Payment made for 2020 income - SELF and HUSBAND / WIFE for joint assessment				
	- Monthly Tax Deductions (MTD)	.	- Self installments / CP500	.	
B31	Balance of tax payable (B28 - B30) / Tax paid in excess (B30 - B28)			B31	.
					(Enter 'X' if tax paid in excess)
DECLARATION					
I			Identification / passport no *		(* Delete whichever is not relevant)
hereby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income and claim for deductions and reliefs given by me in this return form and in any document attached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1 = This return form is made on my own behalf	2 = This return form is made on behalf of the individual in Item 1			
	3 = As an executor of the deceased person's estate (if A4 = 4) **				
	** This form is not a notification pursuant to subsection 74(3) of the ITA 1967. Please furnish Form CP57 (Notification of Taxpayer's Demise) which is available at the LHDNM Official Portal, http://www.hasil.gov.my .				Signature
Date		(dd/mm/yyyy)			

42)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B 2020,"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Form_B2020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Name: Income Tax No:

PART C: PARTICULARS OF HUSBAND / WIFE											
C1	Name of husband / wife <i>(As per identification document)</i>										
C2	Identification no.										
C3	Date of birth <i>(dd/mm/yyyy)</i>			C4						Passport no.	
PART D: OTHER PARTICULARS											
D1	Telephone no.	Handphone no.			D2		Address of business premise				
D3	E-mail										
D4	Employer's no. E										
D5	Has financial account(s) at financial institution(s) outside Malaysia			1 = Yes 2 = No		Postcode		Town			
D6a	Carries on e-Commerce <i>(If 'Yes', also complete item D6b)</i>			1 = Yes 2 = No		State					
D6b	Website / blog address										
D7 Details of bank <i>(NOTE: Enter the name of the bank and bank account no. for the purpose of electronic income tax refund)</i>											
D7a			Name of bank			D7b			Bank account no.		
D8a			Disposal of asset under the Real Property Gains Tax Act 1976 <i>(If 'Yes', also complete item D8b)</i>			1 = Yes 2 = No		D8b		Disposal declared to LHDNM	1 = Yes 2 = No
PART E: DONATIONS / GIFTS / CONTRIBUTIONS											
E1	Gift of money to the Government / State Government / local authority									.00	
E2a	Gift of money to approved institutions / organizations / funds									.00	
E2b	Gift of money for any sports activity approved by the Minister of Finance									.00	
E2c	Gift of money or cost of contribution in kind for any project of national interest approved by the Minister of Finance									.00	
E2d	Gift of money in the form of wakaf to religious authority / religious body / public university or gift of money in the form of endowment to public university									.00	
E3	Gift of artefacts / manuscripts / paintings to the Government or State Government									.00	
E4	Gift of money for the provision of library facilities or to libraries									Restricted to 20,000 .00	
E5	Gift of money or contribution in kind for the provision of facilities in public places for the benefit of disabled persons									.00	
E6	Gift of money / cost / value of gift of medical equipment to any healthcare facility approved by the Ministry of Health									Restricted to 20,000 .00	
E7	Gift of paintings to the National Art Gallery or any state art gallery									.00	
E8	Total approved donations / gifts / contributions [E1 to E7] <i>(Transfer this amount to B15)</i>									.00	
PART F: RELIEF											
F1	Individual and dependent relatives									9,000	.00
F2a	Medical treatment, special needs and carer expenses for parents <i>(Medical condition certified by medical practitioner)</i>									.00	Restricted to 3,000
OR											
F2b	Parent:	Identification / passport no.	Eligible amount	No. of individuals who claim	=	Claimable amount					
	i. Mother		1,500	=		.00	Restricted to 1,500 for only one mother				
	ii. Father		1,500	=		.00	Restricted to 1,500 for only one father				
										Restricted to 3,000	
F2										.00	
F3	Basic supporting equipment for disabled self, spouse, child or parent									Restricted to 6,000	.00
F4	Disabled individual									6,000	.00
F5	Education fees (Self) (i) Other than a degree at masters or doctorate level – Course of study in law, accounting, Islamic financing, technical, vocational, industrial, scientific or technology (ii) Degree at masters or doctorate level – Any course of study									Restricted to 7,000	.00
F6a	Medical expenses on serious diseases for self, spouse or child									.00	Restricted to 6,000
F6b	Medical expenses on fertility treatment for self or spouse									.00	
F7	Complete medical examination for self, spouse or child <i>(Restricted to 500)</i>									.00	.00
F8a	Lifestyle – Expenses for the use / benefit of self, spouse or child in respect of: (i) Purchase of books / journals / magazines / printed newspapers / other similar publications (Not banned reading materials) (ii) Purchase of personal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Not for business use) (iii) Purchase of sports equipment for sports activity defined under the Sports Development Act 1997 and payment of gym membership (iv) Payment of monthly bill for internet subscription (Under own name)									Restricted to 2,500	.00
F8b	Lifestyle – Purchase of personal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for own use / benefit or for spouse or child and not for business use <i>(Additional relief for purchases made within the period of 1 June 2020 until 31 December 2020)</i>									Restricted to 2,500	.00
F9	Purchase of breastfeeding equipment for own use for a child aged 2 years and below <i>(Deduction allowed once in every 2 years of assessment)</i>									Restricted to 1,000	.00
F10	Child care fees to a registered child care centre / kindergarten for a child aged 6 years and below									Restricted to 3,000	.00
F11	Net deposit in Skim Simpanan Pendidikan Nasional <i>(Total deposit in 2020 minus total withdrawal in 2020)</i>									Restricted to 8,000	.00
F12	Husband / wife / payment of alimony to former wife									Restricted to 4,000	.00
F13	Disabled husband / wife									3,500	.00
F14	Child	No.	100% Eligibility	No.	50% Eligibility						
F14a	Child – Under the age of 18 years	X	2,000 =	X	1,000 =	F14a					
F14b	Child – 18 years and above and studying	X	2,000 =	X	1,000 =	F14b					
		X	8,000 =	X	4,000 =						
F14c	Child – Disabled child	X	6,000 =	X	3,000 =	F14c					
		X	14,000 =	X	7,000 =						

Name:		Income Tax No:	
PART K: FINANCIAL PARTICULARS OF INDIVIDUAL (MAIN BUSINESS ONLY)			
K1	Name of business		
K2	Business code		
K2a	Type of business activity		
TRADING, PROFIT AND LOSS ACCOUNT		BALANCE SHEET	
K3	Sales or turnover		FIXED ASSETS:
		.00	
LESS:			K28 Land and buildings
K4	Opening stock	.00	K29 Plant and machinery
K5	Purchases and cost of production	.00	K30 Motor vehicles
K6	Closing stock	.00	K31 Other fixed assets
K7	Cost of sales (K4 + K5 – K6)	.00	K32 TOTAL FIXED ASSETS (K28 to K31)
K8	GROSS PROFIT / LOSS (K3 – K7)	.00	K33 Investments
			.00
		▲ (Enter 'X' if negative)	
OTHER INCOME :		K34	Stock
K9	Other business(es)	.00	K35 Trade debtors
K10	Dividends	.00	K36 Sundry debtors
K11	Interest and discounts	.00	K37 Cash in hand
K12	Rents, royalties and premiums	.00	K38 Cash at bank
K13	Other income	.00	
K14	TOTAL (K9 to K13)	.00	
			▲ (Enter 'X' if negative)
EXPENSES:		K39	Other current assets
K15	Loan interest	.00	K40 TOTAL CURRENT ASSETS (K34 to K39)
K16	Salaries and wages	.00	K41 TOTAL ASSETS (K32 + K33+ K40)
K17	Rental / lease	.00	
K18	Contract and subcontracts	.00	LIABILITIES:
K19	Commissions	.00	K42 Loans and overdrafts
K20	Bad debts	.00	K43 Trade creditors
K21	Travelling and transport	.00	K44 Sundry creditors
K22	Repairs and maintenance	.00	K45 TOTAL LIABILITIES (K42 to K44)
K23	Promotion and advertisement	.00	
K24	Other expenses	.00	
K25	TOTAL EXPENDITURE (K15 to K24)	.00	OWNER'S EQUITY:
K26	NET PROFIT / LOSS	.00	K46 Capital account
			K47 Current account balance brought forward
			▲ (Enter 'X' if negative)
			K48 Current year profit / loss
			▲ (Enter 'X' if negative)
			K49 Drawings / advance (Net)
			▲ (Enter 'X' if negative)
K27	Non-allowable expenses	.00	K50 Current account balance carried forward
			▲ (Enter 'X' if negative)
PART L: PARTICULARS OF TAX AGENT WHO COMPLETES THIS RETURN FORM			
L1	Name of firm	L3	Tax agent's approval no.
L2	Telephone no.	L4	Signature

[별첨] 개인소득세 신고서식 - Form M43

LHDN MALAYSIA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RETURN FORM OF A NON-RESIDENT INDIVIDUAL UNDER SECTION 77 OF THE INCOME TAX ACT 1967 <small>This form is prescribed under section 152 of the Income Tax Act 1967</small>		Form M	YEAR OF ASSESSMENT 2020 <small>CP54 - Pin. 2020</small>
BASIC PARTICULARS					
1 Name (As per identification document)			3 Identification no.		
2 Income tax no.			5 Expiry date of current passport	(dd/mm/yyyy)	
4 Current passport no.			7 Date of birth	(dd/mm/yyyy)	
6 Passport no. registered with LHDNM					
PART A: PARTICULARS OF INDIVIDUAL					
A1 Citizen	Use country code (Enter 'MY' if Malaysian citizen)		A2 Gender	1 = Male 2 = Female	
A3 Status as at 31-12-2020	1 = Single 2 = Married 3 = Divorcee / widow / widower 4 = Deceased		A4 Date of marriage / divorce / demise	(dd/mm/yyyy)	
A5 Record-keeping	1 = Yes 2 = No				
A6 Type of assessment	1 = Joint in the name of husband 2 = Joint in the name of wife		3 = Separate 4 = Self whose spouse has no income, no source of income or has tax exempt income 5 = Self (Single / divorcee / widow / widower / deceased)		
PART B: COMPUTATION OF INCOME TAX					
				RM	Sen
B1 Statutory income from businesses	B1a Number of businesses		B1		.00
B2 Statutory income from partnerships	B2a Number of partnerships		B2		.00
B3 Aggregate statutory income from businesses (B1 + B2)			B3		.00
B4 LESS: Business losses brought forward (Restricted to B3)			B4		.00
B5 TOTAL (B3 - B4)			B5		.00
B6 Statutory income from employment * / director's fees	B6a Number of employment		B6		.00
* If there is a claim for exemption of employment income under:					
<input type="checkbox"/> 1 = Paragraph 21 Schedule 6					
<input type="checkbox"/> 2 = Double Taxation Agreement between Malaysia and (Use country code)					
State: Amount exempted					.00
B7 Statutory income from rents			B7		.00
B8 Statutory income from discounts, premiums, pensions, annuities, other periodical payments, other gains or profits and additions pursuant to paragraph 43(1)(c)			B8		.00
B9 AGGREGATE INCOME (B5 + B6 + B7 + B8)			B9		.00
B10 LESS: Current year business losses (Restricted to B9)			B10		.00
B11 LESS: Qualifying prospecting expenditure - Schedule 4			B11		.00
B12 LESS: Approved donations / gifts / contributions (Amount from E8)			B12		.00
B13 TOTAL [B9 - (B10 to B12)] (Enter '0' if value is negative)			B13		.00
B14 TAXABLE PIONEER INCOME			B14		.00
B15 Gross income subject to tax at other rates (Please specify:)			B15		.00
B16 TOTAL INCOME (SELF) (B13 + B14 + B15)			B16		.00
B17 TOTAL INCOME TRANSFERRED FROM HUSBAND / WIFE * FOR JOINT ASSESSMENT			B17		.00
* Type of income transferred from HUSBAND / WIFE					
<input type="checkbox"/> 1 = With business income					
<input type="checkbox"/> 2 = Without business income					
B18 AGGREGATE OF TOTAL INCOME (B16 + B17)			B18		.00
B19 CHARGEABLE INCOME (From B16 or B18 whichever applies)			B19		.00
B20 COMPUTATION OF TAX CHARGEABLE					
Division of Chargeable income according to the rate applicable					
			Tax rate (%)	Income Tax	
B20a	.00		30	B20a	.
B20b	.00			B20b	.
B20c	.00			B20c	.
B21 TOTAL INCOME TAX (B20a to B20c)				B21	.
B22 LESS: Section 110 (others)		Section 133		B22	.
B23 TAX PAYABLE (B21 - B22)				B23	.
B24 OR: TAX REPAYABLE (B22 - B21)				B24	.
B25 Payment made for 2020 income - SELF and HUSBAND / WIFE for joint assessment					
- Monthly Tax Deductions (MTD)					
- Self instalments / CP500					
B26 Balance of tax payable (B23 - B25) / Tax paid in excess (B25 - B23)				B26	.
▲ (Enter 'X' if tax paid in excess)					

43)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M 2020,"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Form_M2020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Name: _____		Income Tax No.: _____	
PART C: PARTICULARS OF HUSBAND / WIFE			
C1	Name of husband / wife <i>(As per identification document)</i>		
C2	Identification no.		
C3	Current passport no.	C4	Expiry date of current passport <i>(dd/mm/yyyy)</i>
C5	Passport no. registered with LHDNM	C6	Date of birth <i>(dd/mm/yyyy)</i>
PART D: OTHER PARTICULARS			
D1	Telephone no.	Handphone no.	D2 Employer's no. E
D3	E-mail		
D4	Permanent address in country of origin of individual / executor of the deceased person's estate		
	Postcode	City	
	State & country		
D5	Details of bank account <i>(NOTE: Enter the name of the bank and bank account no. for the purpose of electronic refund of income tax)</i>		
D5a	Name of bank	D5b	Bank account no.
D5c	Type of foreign currency requested	D5d	SWIFT code
D6a	Carries on e-Commerce <i>(If 'Yes', also complete item D6b)</i>	1 = Yes 2 = No	D6b Website / blog address
D7	Has financial account(s) at financial institution(s) outside Malaysia	1 = Yes 2 = No	
D8a	Disposal of asset under the Real Property Gains Tax Act 1976 <i>(If 'Yes', also complete item D8b)</i>	1 = Yes 2 = No	D8b Disposal declared to LHDNM 1 = Yes 2 = No
PART E: DONATIONS / GIFTS / CONTRIBUTIONS			
E1	Gift of money to the Government / State Government / local authority		.00
E2a	Gift of money to approved institutions / organisations / funds	.00	} Restricted to 10% of B9 E2
E2b	Gift of money for any sports activity approved by the Minister of Finance	.00	
E2c	Gift of money or cost of contribution in kind for any project of national interest approved by the Minister of Finance	.00	
E2d	Gift of money in the form of <i>wakaf</i> to religious authority / religious body / public university or gift of money in the form of endowment to public university	.00	.00
E3	Gift of artefacts, manuscripts or paintings to the Government or State Government		.00
E4	Gift of money for the provision of library facilities or to libraries	<i>Restricted to 20,000</i>	.00
E5	Gift of money or contribution in kind for the provision of facilities in public places for the benefit of disabled persons		.00
E6	Gift of money / cost / value of gift of medical equipment to any healthcare facility approved by the Ministry of Health	<i>Restricted to 20,000</i>	.00
E7	Gift of paintings to the National Art Gallery or any state art gallery		.00
E8	Total approved donations / gifts / contributions [E1 to E7] <i>(Transfer this amount to B12)</i>		.00
PART F: PARTICULARS OF BUSINESS INCOME			
Enter the amount without sen.			
F1	Losses		
LOSSES OF CURRENT YEAR OF ASSESSMENT			
	(a) Current Year Of Assessment Business And Partnership Losses	(b) Amount Absorbed In The Current Year Of Assessment	(c) Balance Carried Forward (c = a - b)
LOSSES OF PRIOR YEARS OF ASSESSMENT			
Year Of Assessment In Which Loss Is Incurred	(d) Amount of Loss Incurred	Losses Absorbed / Disregarded Until The Year Of Assessment Preceding The Current Year Of Assessment	Losses Absorbed / Disregarded In The Current Year Of Assessment
		(e) Amount Disregarded [Subsection 44(5F)]	(f) Amount Absorbed
		(g) Balance after Disregarded / Absorbed (g = d - e - f)	(h) Amount Disregarded [Subsection 44(5F)]
			(i) Amount Absorbed
			(k) Balance Carried Forward (k = g - h - j)
2018 and before			
2019			
F2	Business capital allowances carried forward	F3	Partnership capital allowances carried forward

Name: _____ Income Tax No.: _____

PART G: NON-EMPLOYMENT INCOME OF PRECEDING YEARS NOT DECLARED			
	Type of Income	Year of Assessment	Amount (RM)
G1			.00
G2			.00

PART H: INCENTIVE CLAIM

Refer to Explanatory Notes for the list of incentive claim code. Please use additional sheet separately in case of insufficient space.

H1 Claim for Special Deduction(s) / Further Deduction(s) / Double Deduction(s) / Incentive(s) under paragraph 127(3)(b) of the Income Tax Act 1967

Incentive Code	Balance Brought Forward	Amount Claimed	Amount Absorbed	Balance Carried Forward
i.				
ii.				

H2 Claim for incentive(s) under subsection 127(3A) of the Income Tax Act 1967

Incentive Approval No.	Balance Brought Forward	Amount Claimed	Amount Absorbed	Balance Carried Forward
i.				
ii.				

PART J: FINANCIAL PARTICULARS OF INDIVIDUAL (MAIN BUSINESS ONLY)

J1	Name of business	
J2	Business code	
J2A	Type of business activity	

TRADING, PROFIT AND LOSS ACCOUNT				BALANCE SHEET			
				FIXED ASSETS:			
J3	Sales or turnover		.00	J28	Land and buildings		.00
LESS:				J29	Plant and machinery		.00
J4	Opening stock		.00	J30	Motor vehicles		.00
J5	Purchases and cost of production		.00	J31	Other fixed assets		.00
J6	Closing stock		.00	J32	TOTAL FIXED ASSETS (J28 to J31)		.00
J7	Cost of sales (J4 + J5 - J6)		.00	J33	Investments		.00
J8	GROSS PROFIT / LOSS (J3 - J7)		.00	CURRENT ASSETS:			
▲ (Enter 'X' if negative)				J34	Stock		.00
OTHER INCOME:				J35	Trade debtors		.00
J9	Other business income		.00	J36	Sundry debtors		.00
J10	Dividends		.00	J37	Cash in hand		.00
J11	Interest and discounts		.00	J38	Cash at bank		.00
J12	Rents, royalties and premiums		.00	▲ (Enter 'X' if negative)			
J13	Other income		.00	J39	Other current assets		.00
J14	TOTAL (J9 to J13)		.00	J40	TOTAL CURRENT ASSETS (J34 to J39)		.00
EXPENSES:				J41	TOTAL ASSETS (J32 + J33 + J40)		.00
J15	Loan interest		.00	LIABILITIES:			
J16	Salaries and wages		.00	J42	Loans and overdrafts		.00
J17	Rental / lease		.00	J43	Trade creditors		.00
J18	Contracts and subcontracts		.00	J44	Sundry creditors		.00
J19	Commissions		.00	J45	TOTAL LIABILITIES (J42 to J44)		.00
J20	Bad debts		.00	OWNER'S EQUITY:			
J21	Travelling and transport		.00	J46	Capital account		.00
J22	Repairs and maintenance		.00	J47	Current account balance brought forward		.00
J23	Promotion and advertisement		.00	▲ (Enter 'X' if negative)			
J24	Other expenses		.00	J48	Current year profit / loss		.00
J25	TOTAL EXPENDITURE (J15 to J24)		.00	▲ (Enter 'X' if negative)			
J26	NET PROFIT / LOSS		.00	J49	Drawings / advance (Net)		.00
▲ (Enter 'X' if negative)				▲ (Enter 'X' if negative)			
J27	Non-allowable expenses		.00	J50	Current account balance carried forward		.00
				▲ (Enter 'X' if negative)			

Name: _____ Income Tax No.: _____

DECLARATIONI Identification / passport no.*
(* Delete whichever is not relevant)

hereby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income and claim for deductions and reliefs given by me in this return form and in any document attached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This return form is made: 1 = on my own behalf 2 = on behalf of the individual in item 1 3 = as an executor of the deceased person's estate (If A3 = 4) **

** This form is not a notification pursuant to subsection 74(3) of the Income Tax Act 1967.
Please furnish Form CP57 (Notification of Taxpayer's Demise) which is available at the LHDNM Official Portal, <http://www.hasil.gov.my>.

Signature: Date: (dd/mm/yyyy)**PART K: PARTICULARS OF TAX AGENT WHO COMPLETES THIS RETURN FORM**

K1	Name of firm	<input type="text"/>	K2	Telephone no.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K4	Signature	<input type="text"/>
K3	Tax agent's approval no.	<input type="text"/>			

6. 주재원에 대한 세금 면제와 조세 특례

주재원에 대한 세금 면제와 조세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에서 총근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기 방문자(연예인 제외)인 비거주 직원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 면제
- 말레이시아와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며, 관련 조세조약에 명시된 기타 조건이 충족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에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는 단기 방문 직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지역에 거주하는 지식 근로자이며, 적격 활동을 수행하는 자(개인)에게 고용된 개인의 근로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의 15%가 과세된다.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서가 제출되고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적용된다.
- 라부안 법인 이사로서 보수를 받는 국외 거주자에 대해 세금 면제(과세연도 2025년까지)
-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승인된 운영 본부, 지역 사무소, 국제 조달 센터, 지역 유통 센터 또는 재무 관리 센터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고용된 일수에 따른 근로 소득에 따라 시간 할당 기준으로 과세된다.
-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전략적 투자를 하는 회사에서 주요 직책/C-suite 직위를 보유한 비시민권자는 5년 연속 15%의 고정 세율로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세금 인센티브는 PENJANA 이니셔티브에 따라 사업 이전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각 기업에 고용된 5명의 비시민권자로 제한된다.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202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 인센티브는 2022년 예산안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도록 제안되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

말레이시아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8. 순부유세

말레이시아는 순부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9.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이하 EPF)과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EPF는 말레이시아의 적립 기금(provident funds) 제도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과 영주권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EPF 가입 및 기여는 선택 사항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사회보장기구에도 기여하는데,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보수의 1.75%를, 근로자는 0.5%를 기여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 보수(월 최대 4천링깃 한도)의 0.2%를 고용 보험에 기여한다.

10. 고용주의 의무

말레이시아의 고용주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가. 고용주 세금 참조 번호(E번호라고도 함)를 등록한다.
- 나.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근로자 원천징수 표 또는 컴퓨터 계산방식에 따라 직원 보수에서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5일 이전에 국세청에 원천징수 금액을 납부한다.
- 다. 다음 해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고용주 신고서(E 서식)를 제출한다.
- 라.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한 급여명세서(EA 서식)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공한다.
- 마. 7년간 기록을 유지하고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표 2-I-6〉 고용주의 의무-신고서, 마감일, 제출 방법


서식	마감일	제출 방법
CP22 서식 새 직원 근무 시작 신고	근무 시작 후 30일 이내	신고서식은 모든 국세청 사무소에 제출 가능
CP22A 서식 민간부문 근로자의 고용 종료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고용 중단 신고	고용 종료 예정일 최소 30일 이전 또는 사망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	신고서식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CP 21 서식 3개월 이상 해외 출국 사실 신고	말레이시아 출국 예정일 최소 30일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PC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 직원의 소득세 신고번호를 관할하는 국세청 사무소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사. 고용 중단, 사망으로 인한 중단 또는 말레이시아를 떠나 3개월 이상 귀국할 의사가 없는 경우 90일 동안 또는 세금 완납 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예치한다.

위의 의무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위반 건당 200링깃에서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별첨] 고용주 신고서 신고서식 - Form E(44)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RETURN FORM OF EMPLOYER UNDER SUBSECTION 83(1) OF THE INCOME TAX ACT 1967 <small>This form is prescribed under section 152 of the Income Tax Act 1967</small>		Form E	<small>REMUNERATION FOR THE YEAR</small> 2021 <small>CP8-Fln. 2021</small>
1	Name of employer as registered		
2	Employer's no.	E 	
3	Category of employer	<input type="checkbox"/> 1 = Government 2 = Statutory 3 = Local authority <input type="checkbox"/> 4 = Private Sector - Company 5 = Private Sector - Other than company	
4	Status of employer	<input type="checkbox"/> 1 = In operation 2 = Dormant 3 = In the process of winding up	
5	Income tax no.	<small>01 = SG 03 = D 05 = J 07 = TP 09 = TC 11 = TR 13 = TN 02 = OG 04 = C 06 = F 08 = TA 10 = CS 12 = PT 14 = LE</small> 	
6	Identification no.		
7	Passport no.		
8	Registration no. with CCM or others		
9	Correspondence address		
	Postcode		Town
	State		
10	Telephone no.		
11	Handphone no.		
12	E-mail		
13	Return of C.P.8D	<input type="checkbox"/> 1 = Via Data Prefill 2 = Compact disc / USB drive / external hard disk 3 = Via e-mail to CP8D@hasil.gov.my by using an e-mail as per item 12 4 = Exempted *	
<small>* Note = This exemption is applicable to employers which are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Hindu Joint Family and Deceased Person's Estate who do not have employees only</small>			
1			

44)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E 2021,"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Form_E2021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Name _____ Employer's No. E _____

PART A: INFORMATION ON NUMBER OF EMPLOYEES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21

A1 Number of employees as at 31/12/2021	_____	A2 Number of employees subjected to MTD	_____
A3 Number of new employees	_____	A4 Number of employees who ceased employment / died	_____
A5 Number of employees who ceased employment and left Malaysia	_____	A6 Reported to LHDNM (If A5 is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1 = Yes <input type="checkbox"/> 2 = No

PART B: DECLARATION

I _____

Identification / Passport No. *
(* Delete whichever is not relevant) _____

hereby declare that the return by this employer contains information which is true, complete and correct as required under the Income Tax Act 1967.


Signature _____ Date: _____
Day Month Year

Designation _____

NOTE: This declaration must be made by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category of employer as provided under sections 66 to 76 and section 86 of the Income Tax Act 1967

2

C.P.8D - Pin. 2021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RETURN ON REMUNERATION FROM EMPLOYMENT, CLAIM FOR DEDUCTION AND
PARTICULARS OF INCOME TAX DEDUCTION UNDER THE INCOME TAX RULES
(DEDUCTION FROM REMUNERATION) 1994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21

PARTICULARS OF EMPLOYER

Employer's No. :	E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Name of Employer :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Remuneration For The Year :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PARTICULARS OF EMPLOYEE

- An employer is required to complete this statement in Excel or txt file format on all employees for the year 2021 as per example below.
- Employers who have submitted information via e-Data PreFill need not complete and furnish Form C.P.8D.
- Other than e-Data PreFill and e-Filing (e-E), C.P.8D must be submitted in Excel or txt file format by using compact disc / USB drive / external hard disk / e-mail to CP8D@hasil.gov.my.

Note:

- Category of employee (as per MTD Schedule)
 - Category 1 : Single
 - Category 2 : Married and husband or wife is not working
 - Category 3 : Married and husband or wife is working, divorced or widowed, or single with adopted child
- Including benefits in kind, value of living accommodation benefit provided and gross remuneration in arrears in respect of preceding years
- Amount of zakat OTHER THAN that paid via monthly salary deduction


A	B	C	D	E	F	G		I	J	K	L	M	N		P	Q	R		S						
						No. of children	Total relief						Total gross remuneration ²	Benefits in kind			Value of living accommodation	Employee share option scheme (ESOS) benefit		Tax exempt allowances / perquisites / gifts / benefits	Total claim for deduction by employee via Form TP1		Zakat paid via salary deduction	Total tax deduction	
																					1 = Yes 2 = No	Relief		Zakat ³	MTD
No.	Name of employee	Income tax no.	Identification / passport no.	Category of employee ¹	(Enter 1 or 2)	(RM)	(RM)	(RM)	(RM)	(RM)	(RM)	(RM)	(RM)	(RM)	(RM)	(RM)	(RM)	(RM)							
1																									
2																									
3																									
4																									
5																									

3

[별첨]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명세서 - Form EA

(C.P.8A - Pin. 2021)	MALAYSIA INCOME TA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PRIVATE SECTOR Employee's Statement of Remuneration</div>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margin-left: 5px;">EA</div>
Serial No. _____	STATEMENT OF REMUNERATION FROM EMPLOYMENT	Employee's Income Tax No. _____
Employer's No. E _____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_____	LHDNM Branch _____
THIS FORM EA MUST BE PREPARED AND PROVIDED TO THE EMPLOYEE FOR INCOME TAX PURPOSE		
A PARTICULARS OF EMPLOYEE		
1. Full Name of Employee / Pensioner (Mr./Miss/Madam) _____	3. Staff No. / Payroll No. _____	
2. Job Designation _____	5. Passport No. _____	
4. New I.C. No. _____	7. SOCSO No. _____	
6. EPF No. _____	9. If the period of employment is less than a year, please state:	
8. Number of children qualified for tax relief _____	(a) Date of commencement _____	
	(b) Date of cessation _____	
B EMPLOYMENT INCOME, BENEFITS AND LIVING ACCOMMODATION (Excluding Tax Exempt Allowances / Perquisites / Gifts / Benefits)		
	RM	
1. (a) Gross salary, wages or leave pay (including overtime pay) _____		
(b) Fees (including director fees), commission or bonus _____		
(c) Gross tips, perquisites, awards / rewards or other allowances (Details of payment: _____)		
(d) Income tax borne by the employer in respect of his employee _____		
(e) Employee Share Option Scheme (ESOS) benefit _____		
(f) Gratuity for the period from _____ to _____		
2. Details of arrears and others for preceding years paid in the current year		
Type of income (a) _____		
(b) _____		
3. Benefits in kind (Specify: _____)		
4. Value of living accommodation provided (Address: _____)		
5. Refund from unapproved Provident / Pension Fund _____		
6. Compensation for loss of employment _____		
C PENSION AND OTHERS		
1. Pension _____		
2. Annuities or other periodical payments _____		
TOTAL		
D TOTAL DEDUCTION		
1. Monthly tax deductions (MTD) remitted to LHDNM _____		
2. CP38 deductions remitted to LHDNM _____		
3. Zakat paid via salary deduction _____		
4. Approved donations / gifts / contributions via salary deduction _____		
5. Total claim for deduction by employee via Form TP1 in respect of:		
(a) Relief RM _____		
(b) Zakat other than that paid via monthly salary deduction RM _____		
6. Total qualifying child relief _____		
E CONTRIBUTIONS PAID BY EMPLOYEE TO APPROVED PROVIDENT / PENSION FUND AND SOCSO		
1. Name of Provident Fund _____		
Amount of compulsory contribution paid (state the employee's share of contribution only)		RM _____
2. SOCSO: Amount of compulsory contribution paid (state the employee's share of contribution only)		RM _____
F TOTAL TAX EXEMPT ALLOWANCES / PERQUISITES / GIFTS / BENEFITS		
		RM _____
Date: _____	Name of Officer _____ Designation _____ Name and Address of Employer _____ Employer's Telephone No. _____	


[별첨] 새 직원 근무 시작 신고서 - Form CP2245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BORANG PEMBERITAHUAN OLEH MAJIKAN BAGI PEKERJA BAHARU [SUBSEKSYEN 83(2) AKTA CUKAI PENDAPATAN 1967] Borang ini diletakkan di bawah seksyen 152 Akta Cukai Pendapatan 1967 NOTIFICATION FORM BY EMPLOYER FOR NEW EMPLOYEE [SUBSECTION 83(2) OF THE INCOME TAX ACT 1967] This form is prescribed under section 152 of the Income Tax Act 1967		CP22 [Pin.1/2021]
	Borang pemberitahuan ini hendaklah dikemukakan kepada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LHDNM) dalam tempoh 30 hari dari tarikh mula penggajian <i>This notification form must be submitted to the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RBM)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employment</i>		
A. MAKLUMAT MAJIKAN / PARTICULARS OF EMPLOYER			
A1. Nama majikan / Employer's name		A2. Alamat majikan / Employer's address	
A3. No. majikan / Employer's no. E		A5. No. telefon / Telephone no.	
A4. e-Mel / e-Mail			
B. MAKLUMAT PEKERJA BAHARU / PARTICULARS OF NEW EMPLOYEE			
B1. Nama penuh / Full name (Seperti dokumen pengenalan diri) (As per identification document)		B3. No. pengenalan / Identification no.	
B2. No. cukai pendapatan / Income tax no.		B5. No. pasport didaftarkan dengan LHDNM / Passport no. registered with IRBM	
B4. No. pasport semasa / Current passport no.		B7. Jantina / Gender	
B6. Warganegara / Citizen		B9. Status perkahwinan / Marital status	
B8. Tarikh lahir / Date of birth		B11. e-Mel / e-Mail	
B10. No. telefon / Telephone no.			
B12. Alamat kediaman yang terkini / Current residential address		B13. Alamat surat-menyurat yang terkini / Current correspondence address	
Poskod / Postcode		Poskod / Postcode	
Bandar / Town		Bandar / Town	
Negeri / State		Negeri / State	
		Tandakan 'X' jika alamat di B13 adalah alamat ejen cukai / Enter 'X' if the address in B13 is a tax agent's address	
B14. Tarikh permulaan pekerjaan semasa / Commencement date of current employment		B15. Jawatan / Designation	
B16. Tempoh pekerjaan yang dijangkakan / Expected duration of employment		B17. Jenis pekerjaan / Nature of employment	
C. MAKLUMAT SUAMI / ISTERI (JIKA BERKAHWIN) / PARTICULARS OF HUSBAND / WIFE (IF MARRIED)			
C1. Nama penuh suami / isteri Full name of husband / wife		C2. No. pengenalan / pasport Identification / passport no.	
		C3. No. cukai pendapatan / Income tax no.	
		C4. No. telefon / Telephone no.	

45)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22,"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CP22_Pin.1_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D. MAKLUMAT SARAAAN BULANAN / PARTICULARS OF MONTHLY REMUNERATION		
Sila gunakan lampiran tambahan secara berasingan jika ruang tidak mencukupi / Please use additional sheet separately in case of insufficient space		
Bil. / No.	Jenis pendapatan / Type of income	Amount / Amount (RM)
D1.	Gaji, bayaran, upah dan kerja lebih masa / Salary, fees, wages, and overtime pay	
D2.	Gaji cuti / Leave pay	
D3.	Komisen dan bonus / Commission and bonus	
D4.	Elaun tunai termasuk cukai ditanggung oleh majikan (Nyatakan jenis elaun) Cash allowances including tax borne by the employer (Specify the type of allowance :)	
D5.	Manfaat berupa barangan yang layak dikenakan cukai / Benefits in kind subject to tax	
D6.	Nilai tempat kediaman yang disediakan majikan / Value of living accommodation provided by the employer	
D7.	Elaun-elaun selain daripada wang seperti makanan, pakaian, lojing atau pembantu rumah yang diperuntukkan atau dibayar oleh majikan / Allowances in kind e.g. value of food, clothing, lodging or servants provided or paid by the employer	
D8.	Bayaran-bayaran lain (Jika ada, nyatakan :) Other payments (If any, please specify :)	
JUMLAH / TOTAL:		RM
E. MAKLUMAT MAJIKAN TERDAHULU DI MALAYSIA / PARTICULARS OF PREVIOUS EMPLOYER IN MALAYSIA		
E1. Nama majikan / Employer's name	E2. Alamat majikan / Employer's addres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F. AKUAN PEGAWAI YANG DIBERI KUASA / DECLARATION BY AUTHORISED OFFICER		
Saya / I	<input type="text"/>	No. pengenalan / pasport * Identification / passport no. * <input type="text"/>
		* Potong yang tidak berkenaan / Delete whichever is not relevant
dengan ini mengakui bahawa maklumat yang saya berikan dalam borang pemberitahuan ini dan dokumen yang disertakan adalah benar, betul dan lengkap / hereby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given by me in this notification form and in any document attached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Jawatan / Designation	<input type="text"/>	Tandatangan / Signature <input type="text"/>
Tarikh / Date	<input type="text"/>	
Nota / Note: Pengakuan ini perlu dibuat oleh majikan mengikut kategori majikan selaras dengan peruntukan seksyen 66 hingga 76 dan seksyen 86 Akta Cukai Pendapatan 1967 / This declaration must be made by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category of employer as provided under sections 66 to 76 and section 86 of the Income Tax Act 1967.		


[별첨] 민간부문 근로자의 고용 종료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고용 중단 신고서 - Form CP22A⁴⁶⁾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BORANG PEMBERITAHUAN PEMBERHENTIAN KERJA (SWASTA) [SUBSEKSYEN 83(3) AKTA CUKAI PENDAPATAN 1967] Borang ini ditetapkan di bawah seksyen 152 Akta Cukai Pendapatan 1967		CP22A [Pin.1/2021]
Borang pemberitahuan ini hendaklah dikemukakan kepada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LHDN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kurang-kurangnya 30 hari sebelum tarikh pemberhentian seseorang pekerja; atau • dalam tempoh 30 hari selepas dimaklumkan kematian seseorang pekerja 		
Nama & Alamat Majik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60px; width: 100%;"></div>	No. Majik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E </div> No. Telefon Majik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A. BUTIR-BUTIR PEKERJA YANG BERHENTI KERJA / BERSARA / MENINGGAL DUNIA		
1. Nama Penuh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2. Tarikh Mula Bekerja 3. Tarikh Berhenti / Persaraan / Kematian* <i>[* Potong yang mana tidak berkenaan]</i> 4. Tarikh Lahir 5. Jenis Persaraan Wajib <input type="checkbox"/> Pilihan <input type="checkbox"/> <i>[Sila tandakan 'X']</i> 6. No. Rujukan (No. Kad Pengenalan/Polis/Tentera/Paspor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flex; width: 100%; height: 15px;"> </div> 7. No. Cukai Pendapat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flex; width: 100%; height: 15px;"> </div> 8. Taraf Perkahwin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5px;"></div> 9. Tuntutan Potongan Cukai Bagi Anak : a) Bilangan anak orang b) Jumlah RM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5px;"></div> 10. Jika berkahwin, lengkapkan maklumat suami / isteri : a) Nama Penuh Suami / isteri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b) No. Rujukan (No. Kad Pengenalan/Polis/Tentera/Paspor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flex; width: 100%; height: 15px;"> </div> c) No. Cukai Pendapat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flex; width: 100%; height: 15px;"> </div>	11. No. Telefon Pekerja Yang Berhenti Kerja / Bersara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12. Alamat surat-menyurat terkini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width: 100%;"></div> <input type="checkbox"/> Tandakan "X" jika alamat surat-menyurat di atas adalah alamat ejen cukai	
13. Maklumat Wakil Sah [Bagi Kes Meninggal Dunia] : a) Nama Penuh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b) No. Rujukan (No. Kad Pengenalan/Polis/Tentera/Paspor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flex; width: 100%; height: 15px;"> </div> c) Alamat surat-menyura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width: 100%;"></div> d) No. Telefo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5px;"></div>		

46)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22A,"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CP22A_Pin.1_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B. BUTIR-BUTIR SARAAN				
Butir-butir saraan yang diterima dalam tahun semasa untuk tempoh dari hari pertama tahun semasa sehingga tarikh berhenti kerja / bersara / meninggal dunia	Tahun Semasa			RM
	Tempoh			
	dari	hingga		
1) Gaji, bayaran, upah dan kerja lebih masa				
2) Gaji cuti				
3) Komisen dan bonus				
4) Ganjaran				
5) Pampasan kerana kehilangan pekerjaan				
6) Elaun tunai termasuk cukai ditanggung oleh majikan (sebutkan jenis-jenis elaun)				
7) Pencen daripada majikan				
8) Manfaat berupa barangan yang layak dikenakan cukai				
9) Nilai tahunan tempat kediaman yang disediakan majikan				
10) Elaun-elaun selain daripada wang seperti makanan, pakaian, lojing atau pembantu rumah yang diperuntukkan atau dibayar oleh majikan				
11) Kereta dan pemandu				
12) Lain-lain bayaran (jika ada, nyatakan)				
13) Manfaat dari Skim Pemberian Saham daripada majikan kepada pekerja seperti ESOS, ESPP dan lain-lain: Nyatakan: i. Bilangan saham layak: ii. Baki yang belum dilaksanakan:	Tarikh opsyen diberi: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RM
	Tarikh opsyen boleh laksana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Tarikh opsyen dilaksana: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Jumlah manfaat:			
JUMLAH			RM	
C. BUTIR-BUTIR PENDAPATAN YANG BELUM DILAPORKAN				
Bil.	Jenis Pendapatan	Tempoh Diperoleh	Jumlah Pendapatan (RM)	Caruman KWSP Pekerja (RM)
(i)				
(ii)				
(iii)				
D. BUTIR-BUTIR LAIN				
1) Jumlah wang yang ditahan oleh majikan dan akan dibayar kepada pekerja				RM
2) Jumlah Potongan Cukai Bulanan yang dibayar ke LHDNM dalam tahun ini				RM
3) Jumlah potongan zakat yang dibayar dalam tahun ini				RM
4) Caruman pekerja kepada KWSP atau kumpulan wang yang diluluskan				RM
E. AKUAN PEGAWAI YANG DIBERI KUASA				
Nama :	<input type="text"/>			
Jawatan :	<input type="text"/>			
Tandatangan :	<input type="text"/>	Tarikh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NOTA : Pengakuan ini perlu dibuat oleh majikan mengikut kategori majikan selaras dengan peruntukan seksyen 66 hingga 76 dan seksyen 86 Akta Cukai Pendapatan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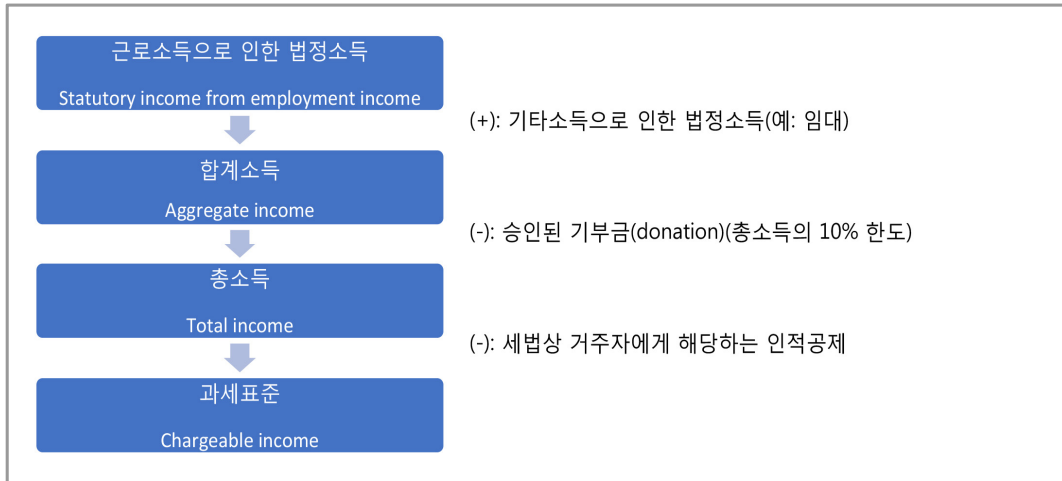
[별첨] 3개월 이상 해외 출국 사실 신고- Form CP2147)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BORANG PEMBERITAHUAN OLEH MAJIKAN BAGI PEKERJA YANG HENDAK MENINGGALKAN MALAYSIA [SUBSEKSYEN 83(4) AKTA CUKAI PENDAPATAN 1967] Borang ini ditetapkan di bawah seksyen 152 Akta Cukai Pendapatan 1967 <i>NOTIFICATION FORM BY EMPLOYER OF EMPLOYEE'S DEPARTURE FROM MALAYSIA [SUBSECTION 83(4) INCOME TAX ACT 1967]</i> <i>This form is prescribed under section 152 of the Income Tax Act 1967</i>	CP21 [Pin.1/2021] LEAVER
	Borang pemberitahuan ini hendaklah dikemukakan kepada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LHDNM): • sekurang-kurangnya 30 hari sebelum tarikh dijangka meninggalkan Malaysia. This notification form should be submitted to the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RBM): • not less than 30 days before the expected date of departure from Malaysia.	
Nama & Alamat Majikan / Employer's Name & Address <input style="width: 100%; height: 50px;" type="text"/>		No. Majikan / Employer's No.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No. Telefon Majikan / Employer's Telephone No.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A. BUTIR-BUTIR PEKERJA YANG AKAN MENINGGALKAN MALAYSIA PARTICULARS OF EMPLOYEE WHO WILL BE LEAVING MALAYSIA		
1. Nama Penuh / Full Name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11. Alamat surat-menyurat pekerja yang terkini / Current address of employee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2. Tarikh Mula Bekerja / Date of Commencement of Employmen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3. Tarikh Dijangka Meninggalkan Malaysia / Expected Date to Leave Malaysia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type="checkbox"/> Tarikhkan 'X' jika alamat surat-menyurat di atas adalah alamat ejen cukai / Enter 'X' if the above correspondence address belongs to a tax agent
4. No. Pengenalan (No. Kad Pengenalan / Polis / Tentera / Pasport) / Identification No. (Identity Card / Police / Army / Passport No.)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5. No. Cukai Pendapatan / Income Tax No.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12. Alasan meninggalkan negara ini / Reason for departure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6. Warganegara / Citizen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13. Alamat surat-menyurat di luar Malaysia / Correspondence address outside Malaysia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7. Tarikh Lahir / Date of Birth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8. Tempat Lahir / Place of Birth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14. Jika akan kembali ke Malaysia, nyatakan tarikh dijangka kembali / If returning to Malaysia, state the expected date of return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9. Jenis Pekerjaan / Nature of Employment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10. No. Telefon Pekerja / Employee's Telephone No.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4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21,"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CP21_Pin.1_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B. BUTIR-BUTIR SARAAAN				
Jika pekerja tidak kembali, nyatakan di bawah ini emolumen dan caruman kepada mana-mana kumpulan wang yang diluluskan bagi tahun beliau meninggalkan negara ini : If not returning, state the emoluments and any approved provident fund contributions for the year of departure below :		Tahun Semasa / Current Year		
		Tempoh / Period		
	Dari / From	Hingga / Until	RM	
1) Gaji, bayaran, upah dan kerja lebih masa <i>Salary, fees, wages, and overtime pay</i>				
2) Gaji cuti <i>Leave pay</i>				
3) Komisen dan bonus <i>Commission and bonus</i>				
4) Ganjaran <i>Gratuity</i>				
5) Pampasan kerana kehilangan pekerjaan <i>Compensation for loss of employment</i>				
6) Elaun tunai termasuk cukai ditanggung oleh majikan (sebutkan jenis-jenis elaun) <i>Allowance in cash including tax borne by the employer (please state type of allowance)</i>				
7) Pencen daripada majikan <i>Pension from employer</i>				
8) Manfaat berupa barangan yang layak dikenakan cukai <i>Benefits in kind subject to tax</i>				
9) Nilai tempat kediaman yang disediakan majikan <i>Value of living accommodation provided by the employer</i>				
10) Elaun-elaun selain daripada wang seperti makanan, pakaian, lojing atau pembantu rumah yang diperuntukkan atau dibayar oleh majikan <i>Allowances in kind, e.g. value of food, clothing, lodging or servants provided or paid by the employer</i>				
11) Bayaran-bayaran lain (jika ada, nyatakan) <i>Other payments (if any, please specify)</i>				
JUMLAH / TOTAL			RM	
C. BUTIR-BUTIR PENDAPATAN YANG BELUM DIPAPORKAN / INCOME OF PRECEDING YEARS NOT DECLARED				
Bil.	Jenis Pendapatan / Type of Income	Tempoh Diperoleh / Year for Which Paid	Jumlah Pendapatan (RM) / Total Income (RM)	Caruman KWSP Pekerja (RM) / Provident & Pension Fund Contribution (RM)
(i)				
(ii)				
(iii)				
D. BUTIR-BUTIR LAIN / OTHER PARTICULARS				
1)	Jumlah wang yang ditahan oleh majikan dan akan dibayar kepada pekerja / <i>Amount of money withheld by employer and due to employee</i>		RM	
2)	Jumlah Potongan Cukai Bulanan yang dibayar ke LHDNM dalam tahun ini / <i>Amount of Monthly Tax Deductions paid to IRBM for the current year</i>		RM	
3)	Jumlah potongan zakat yang dibayar dalam tahun ini / <i>Amount of zakat paid for the current year</i>		RM	
4)	Caruman pekerja kepada KWSP atau kumpulan wang yang diluluskan / <i>Employee contributions to Employee Provident Fund or any approved fund</i>		RM	
E. AKUAN PEGAWAI YANG DIBERI KUASA/ DECLARATION BY AUTHORISED OFFICER				
Nama / Name :				
Jawatan / Designation :				
Tandatangan / Signature :		Tangk / Date : 		
NOTA / NOTE : Pengakuan ini perlu dibuat oleh majikan mengikut kategori majikan selaras dengan peruntukan seksyen 66 hingga 76 dan seksyen 86 Akta Cukai Pendapatan 1967 / This declaration must be made by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category of employer as provided under sections 66 to 76 and section 86 of the Income Tax Act 1967				

11. 과세소득 계산 예시(근로소득 및 투자 소득을 받는 개인)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예제 1:

Ming은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이며, Greenhouse Sdn Bhd에 고용되어 있다. 과세연도 2021년도에 Ming의 고용주는 그녀에게 다음 항목이 표시된 급여명세서(EA 서식)를 제공하였다.

- 총급여 및 휴가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 11만링깃
- 보수(이사 보수 포함), 커미션 또는 보너스 - 2만링깃
- 현물 혜택(법인 클럽 멤버십) - 3,600링깃

또한 그녀의 EA서식에는 고용주가 국세청에 납부한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이 16만링깃에 달한다고 나와 있다.

이외에도 Ming은 말레이시아(12만링깃)와 한국(24만링깃)의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임대소득도 얻었다.

Ming은 2021년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출했다.

- 생명 보험료 - RM4,200
- 스마트폰 구매 - RM2,000
- 승인된 기관에 기부 - RM1,200

Ming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Chong과 결혼했다.

과세연도 2021년에 Ming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다.

	RM
고용으로 인한 법정소득	133,600
(+): 임대료 인한 법정소득 ¹⁾	12,000
합계소득	145,600
(-): 승인된 기부금(donation)	(1,200)
총소득	144,400
(-): 인적 공제	
- 본인 (9천)	
- 생명 보험료(최대 3천링깃)	(3천)
- 라이프스타일 공제(최대 2,500링깃)	(2천)
	(14,000)
과세소득	130,400
세액	
- 처음 RM100,000	10,700
- 나머지RM30,400 @ 24%	7,296
총	17,996
(-):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액(Monthly Tax Deduction)	(16,000)
납부하여야 할 세액(balance of tax payable)	1,996

주: 1. 한국의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역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말레이시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음 면제는 2021년 「재정법」 발표 시 반영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2022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가 말레이시아로 송금하는 해외원천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 Ming의 남편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과세 대상이다. 기혼 납세자는 부부합산 신고(즉 소득 합산) 또는 개별 신고(각 개인이 별도의 신고서 제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부합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더 높은 소득세 구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는 않는다.
- Ming은 세무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에 최종 납부 세액인 RM1,996을 납부해야 한다. 그녀의 세금 납부 마감일은 세무 신고서 제출 마감일과 동일하다(즉 Ming은 Form BE를 제출할 것이므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예제 2:

Ming이 과세연도 2021년에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아니며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이 RM43,320인 점을 제외하고는 예제 1과 동일하다.

	RM
고용으로 인한 법정 소득	133,600
(+): 임대료 인한 법정 소득	12,000
합계소득	145,600
(-): 승인된 기부금(donation)	(1,200)
총소득/과세소득	144,400
세액	
- RM144,400 @ 30%	43,320
(-):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Monthly Tax Deduction)	(43,320)
납부하여야 할 세액(balance of tax payable)	Nil

II 법인소득세

1. 과세관할(scope of taxation)

제 1장 II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는 이 나라에서 얻는 소득뿐 아니라 국내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속지주의(territorial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제3장(Section 3, the Income Tax Act, ITA, 1967)⁴⁸⁾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소득을 창출하였거나 또는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국내에서 해당 소득 수령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ITA)」 제2장 제1조에서는 인(person)을 회사, 개인 기업 및 단독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제3장(Section 3 of the ITA)에도 불구하고, 「부속규칙」 제6조 제28항(paragraph 28 of Schedule 6 of the ITA)에서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령한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 보험업, 항공업 및 해상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는 앞서 언급한 과세 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창출되었는지 여부 또는 해당 소득을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말레이시아에서 과세된다.

2021년 「재정법(Finance Act, 2021)」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제는 오직 말레이시아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령한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에게만 과세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foreign tax credits)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foreign tax credits)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면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새로운 개정안은 2022년 1월 14일 기준으로 관보 게재되지는 않았다(The above is effective from 1 January 2022 to 31 December 2026. This new change has not been gazetted as of 14 January 2022).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제3장(Section 3 of the ITA)에 따르면 오직 소득(income)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에는 부동산 양도세(real property gains tax)가 부과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VII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ncome Tax Act 1967(online version 2019. 1.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Act_53_20190101.pdf, 검색일자: 2021. 10. 28.

2.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기업이 과세연도 중 언제라도 말레이시아 내에서 사업 또는 업무(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경영과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의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가 된다. 경영과 통제의 행사는 실질적이거나 효과적인 지배력의 행사와 경영을 의미한다(단순히 현지 이사를 선임하고, 실질적인 통제 말레이시아 역외의 곳에서 행사되는 것이 아님).

「소득세법(ITA)」에서는 경영과 통제는 과세연도 중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연도 내내 말레이시아 내에서 경영과 통제가 행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단 한 차례라도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면 이 기업은 말레이시아의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로 볼 수 있다.

세법상 거주(tax residence)의 여부는 다음과 같이 기업의 세무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기업은 1986년 「투자촉진법(Promotion of Investments Act, PIA, 1986)」⁴⁹⁾과 1967년 「소득세법(ITA)(ITA)」에 따른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은 비거주자 기업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SME)은 과세표준 60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17%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4. 과세소득과 세율을 참조).
-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기업은 말레이시아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감면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장 VI에서 참조할 수 있다.
- 세무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interest), 로열티(royalty), 계약금, 기술료는 원천세가 과세되지만,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업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가 될 수 있다(이중 거주자로 간주). 이중 거주자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9) Official portal of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1986 (online version 2014. 5.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www.miti.gov.my/miti/resources/auto%20download%20images/5562dfe07d8be.pdf>, 검색일자: 2021. 10. 28.

3. 과세소득 계산의 기준(basis of assessment)

말레이시아는 당해 연도를 과세소득 계산의 기준으로 한다.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모든 원천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연도는 해당 과세소득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basis period)을 나타낸다.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과세기간(basis period)은 다음에 언급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와 같다.

가. 신규 기업의 과세기간

신규 기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 과세소득 계산의 첫 번째 해(the first year of assessment)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1) 사업 개시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21A장(Section 21A of the ITA)에서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때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 투자를 전적으로 하는 활동
- 사업 수행과 투자를 포함하는 활동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중단 후에 진행하는 투자 활동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려면 모든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예비적인(preparatory) 활동과 뚜렷하게 구별되어,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는 과세 목적상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과세기간의 결정

기업이 과세소득 계산의 대상이 되는 첫 해(the first year of assessment)에 사업을 개시하고 회계결산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basis of period)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회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첫 번째 회계기간(accounting period)이 과세소득계산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과세기간이 된다.

예시 1:

ABC Sdn Bhd는 4월 회계연도 마감을 채택했다. 2018년 11월 11일에 사업을 개시했고 회계장부를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구분	회계 기간	기간
첫 번째 회계기간	2018. 11. 1 ~ 2020. 4. 30	18개월
두 번째 회계기간	2020. 5. 1 ~ 2021. 4. 30	12개월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과세소득계산 대상 기간	기간
2020	2018. 11. 1 ~ 2020. 4. 30	18개월
2021	2020. 5. 1 ~ 2021. 4. 30	12개월

2018년과 2019년에 대한 과세소득계산(the years of assessment) 대상의 과세기간은 없다. 첫 번째 과세소득계산 대상 기간은 회계기간(accounting period)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나. 기존 기업이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과세기간

사업을 시작한 기존 기업이 다음 해 같은 날에 결산을 하지 못한 경우(failure year)에는 국세청장(DGIR)이 회계결산을 하지 못한 해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의 과세기간을 결정한다.

회계결산을 하지 못한 해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의 과세기간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 누락된 과세연도가 없는 경우
-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개 이상의 장부를 결산하지 않는 경우

회계결산을 하지 못한 해에 대해서는 국세청(IRB)에서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을 결정하나, 실무에서는 회계기간 변경 통지서(Form CP204B)를 국세청(IRB)에서 제출해야 한다.

회계기간 변경 통지서(Form CP204B)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다.

〈표 2-II-1〉 회계기간 변경 통지서의 제출 기한

구분	제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간 변경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간이 단축된 경우 - 회계기간이 연장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회계기간 시작일 30일 전 - 기존 회계기간 종료일 30일 전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국세청(IRB)에서는 공개예규(public ruling)8/2014⁵⁰⁾를 통해 회계결산을 하지 못한 해에 대한 과세기간의 결정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회계기간 변경 통지서(Form CP204B)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 회계기간 변경 전 기존 회계기간에 대해 지연신고 가산세 부과
- 회계기간 변경 전 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예납세액을 과소추정하여 납부한 경우 불성실납부 가산세 부과
- 회계기간 변경 통지의 의무를 미준수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며, 유죄 판결 시 200링깃에서 2만링깃 사이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음

4. 과세소득과 세율

앞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법인소득세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하거나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받은 소득에 부과된다.

「소득세법(ITA)」에서는 발생(accruing in)하거나 창출(derived from)된다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소득이 발생한 곳(location)을 의미한다.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과세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소득을 수령할 법적 권리)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창출된 것이라야 한다.

가.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중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창출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한다.

- 사업에 따른 이익(gains) 및 수익(profits)
- 배당(dividend), 이자(interest) 및 할인(discounts)
- 임대료, 로열티(royalty), 보험료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익(gains) 및 수익(profits)

5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ublic Ruling 8/2014," https://phl.hasil.gov.my/pdf/pdfam/PR_8_2014.pdf, 검색일자: 2021. 10. 28.

상기 소득 항목은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소득은 원천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특정 소득이 어느 소득에 귀속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배당(dividend), 이자(interest), 할인(discounts), 임대료, 로열티(royalty), 보험료, 기타 소득 같은 투자 원천의 소득(passive sources of income)과 사업소득과 같은 능동적 소득(active sources of income)에 대한 손금 공제(deductibility of expenses),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결손금의 세무상 처리는 다르다.

일반적인 소득 항목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다(모두 나열된 것은 아님).

1) 사업소득

가) 사업소득 발생

「소득세법(ITA)」 제12(1)(a)(ITA Section 12(1)(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임을 입증할 경우 말레이시아 내에서 창출된 소득이 아니며 해당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물품, 농산물, 기타 제품을 말레이시아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조(manufacturing), 재배(growing), 채굴(mining), 생산(producing), 수확(harvesting)하고 이를 말레이시아 외부로 판매하여 발생한 총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창출된 것으로 간주한다(「소득세법」 제 12(1)(b))(Section 12(1)(b)).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소득이 배당(dividend)과 이자(interest)로 구성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창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 (1)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보유한 매도가능증권(stock in trade)의 일부를 구성하는 증권(share), 채권(debenture), 담보대출(mortgage) 및 그 외 관련한 소득, 또는
- (2)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여금(정기적 대여금 포함)

「소득세법(ITA)」은 말레이시아에 사업장(place of business)(place of business)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place of business)에 귀속되는 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사업장(place of business)과 관련한 규정은 주로 다른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s, DTA)을 따른다. 그러나 국세청(IRB)은 말레이시아 세법상 비거주자가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한 국가의 세무상 거

주자일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DTA) 규정이 우선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경우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세법상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체결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V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총수입(gross income) 중 다음의 사업소득이 포함된 과세기간

- (1) 주식 양도(sale of stock) - 매도가능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지급 채무가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과세된다.
- (2) 강제 매수(compulsory acquisition) 또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양도한 매도가능증권은 지급 채무가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과세된다.
- (3) 용역의 제공 또는 자산 임대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용역이 제공이 시작된 시점 또는 자산의 사용과 관계없이 지급 채무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과세된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제공할 서비스 또는 자산 임대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러한 소득은 지급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도 과세된다. 수령한 대금을 향후에 환불하는 경우에는 반환된 금액을 세무상 공제할 수 있다.

계약서상 지급 의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지급해야 할 채무(debt)가 발생한다.

2) 배당(dividend)소득

배당(dividend)을 지급 또는 분배하는 시점에 배당(dividend)의 지급 법인이 말레이시아 세무상 거주자인 경우 배당(dividend) 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자(interest)소득과 로열티(royalty) 소득

가) 이자(interest)소득과 로열티(royalty)의 발생

다음과 같은 경우 이자(interest)소득과 로열티(royalty)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이자(interest) 또는 로열티(royalty)의 지급 책임이 말레이시아 정부, 주 정부, 지방 당국에 있는 경우

- (2) 이자(interest) 또는 로열티(royalty)의 지급 책임이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에게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에 관계된 대여금 또는 말레이시아 자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에 대해 이자(interest)가 발생하는 경우
- (3) 이자(interest) 또는 사용료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하거나 창출된 소득에 관계된 비용으로 손금 공제하는 경우

나) 이자(interest)소득과 로열티 소득의 과세기간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원천의 이자(interest)소득과 로열티(royalty) 소득은 이를 수령한 때에 과세되지만, 해당 소득을 처음으로 채권으로 인식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소득으로 계산한다.

납세자가 요청에 따라 소득에 대한 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계산서 수령이 가능한 시점의 과세기간에 수령한 것으로 취급된다. 관계사(related company) 간의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interest)가 지급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에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소득세법(ITA)」 제29장 제3조(ITA, Section 29(3)).

4) 임대소득

가) 사업소득 또는 투자소득(passive income)

기업이 부동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유지보수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취급할 수 있다.

포괄적인 유지보수 또는 지원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건물 구조, 계단, 비상구, 출입구, 울타리, 로비, 복도, 승강기, 배수구, 하수구, 전선, 케이블, 기타 부속시설 및 설비와 같은 부동산의 청소 서비스 또는 수리를 포함하여 부동산 유지 및 관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작업
- (2) 놀이터, 휴게구역, 차도, 주차장, 열린 공간(open spaces), 조경 구역, 벽, 울타리, 외부 조명, 기타 외부시설 및 설비와 같은 부동산의 외부 부분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작업

단순 보안업무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포괄적인 유지보수 또는 지원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자가 다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간주한다.

- (1) 자신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2)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유지보수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지원 서비스가 포괄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임대소득은 투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나) 임대소득에 관한 과세기간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기에 언급된 사업소득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임대소득이 투자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소득을 수령한 때에 과세되지만, 해당 소득을 처음으로 채권으로 인식하는 과세연도에 과세 대상소득으로 계산된다.

나. 면제

「소득세법 부속규칙」 제6조(Schedule 6 of the ITA)에 의거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며,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127장(Section 127 of the ITA)에 따라서도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세무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주요 소득세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일 체계(single-tier system)에 따라 지급된 배당(dividend)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행한 저축 증서(savings certificates)와 관련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이자(interest)
- 승인된 대여금에 대해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말레이시아 원천 이자(interest)소득

다음 면제는 2022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2021년 「재정법」 발표 시 반영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 은행업, 보험업, 항공업 및 해상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의 해외원천소득을 제외한 해외원천소득. 다만 2022년 예산안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만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및 장려금
-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말레이시아 원천의 은행 이자(interest)(세법상 비거주자

의 말레이시아 사업장(place of business)에 귀속되는 이자(interest)소득은 제외)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이슬람 증권(Islamic securities)과 말레이시아 증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링깃화로 발행된 사채(debenture)(전환 사채는 제외)에 대해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말레이시아 원천의 이자(interest) 소득(단 세법상 비거주자 말레이시아 사업장(place of business)에 귀속되는 이자(interest)소득은 제외).

다. 세율

세법상 거주자 기업(resident company)은 24% 세율로 과세되나 중소기업(Small- Medium Enterprise, SME)은 다음의 우대세율로 과세된다.

〈표 2-II-2〉 중소기업의 우대세율¹⁾

(단위: %)

과세표준	세율
첫 60만링깃	17
60만링깃을 초과하는 소득	24

주: 1)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중소기업(SME)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 과세연도의 과세기간 시작일에 250만링깃 미만의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을 보유하고, 해당 과세연도 동안 총사업소득(gross business income)이 5천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 기업(resident company)
- 관계회사(related company)가 해당 기업의 납입자본금 중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
- 해당 기업이 관계회사(related company)의 납입자본금 중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
- 어떤 회사가 해당 기업의 납입자본금과 관계회사(related company)의 납입자본금에 대해 각각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

관계회사(related company)는 과세연도 시작일에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세법상 비거주자 기업은 사업소득에 대해 24% 세율로 과세된다. 비거주자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특정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V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예산안에 따라 과세연도 2022년에 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과세표준이 1억 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1억링깃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33% 세율로 과세한다.

5. 손금 공제(tax deductions)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데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발생한 모든 지출과 비용은 세무 목적상 공제 대상이다.

지출과 비용(outgoings and expenses)은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이 아닌 수익 성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소득세법(ITA)」에서는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례법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상 자산을 구매하거나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데 발생한 비용이 소득 창출(production of gross income)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비용만 세무상 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손금 공제 대상 비용은 「소득세법」 제39장(Section 39, ITA)에서 구체적으로 불허하는 항목이 아니어야 하며, 각 비용마다 공제 가능 여부를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 불확실한 내용이 있는 경우 판례 또는 공개예규(Public Rulings)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정 비용에 대한 손금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 개시 전 비용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 전 발생한 비용은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사업소득 창출만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사업 개시 전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 1) 승인받은 말레이시아 외부 벤처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 전 발생한 적격의 비용 (Qualifying pre-operational business expenditure incurred for approved business venture outside Malaysia(Schedule 4B))

재무부에서 벤처사업을 승인하고 해당 기업이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기업인 경우 벤처 사업의 해외 확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 개시 전 특정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손금 공제할 수 있다. 벤처사업과 관련한 공제가 가능한 사업 개시 전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 시장조사, 설문조사, 시장정보를 취득하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 타당성 조사 또는 시장조사 수행을 위한 말레이시아 기업 대표의 외국 출장 비용
- 말레이시아 기업 대표의 외국 출장 기간 동안 숙박 및 부식비에 대한 실비(일일 한도 400링깃까지)

2) 법인 설립 비용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 미만이며 2003년 9월 13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법인 설립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정관 및 투자설명서의 준비 및 인쇄 비용, 투자설명서의 배포 및 광고 비용
- 법인 등기 비용, 법정문서 수수료, 인지세
- 예비(preliminary) 계약서 작성 비용 및 인지세
- 사채(debentures), 인지세(stamp duty), 주권(share certificates), 배당 증서(letters of allotment) 인쇄 비용
- 인감(seal of the company) 비용
- 인수 수수료(underwriting commission)

기업이 사용한 상기 법인설립 비용은 사업을 시작한 첫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승인된 교육에 대한 비용

제조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첫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조정소득을 산출 시 승인된 교육비를 이중으로 공제(double deduction)할 수 있다.

- 해당 교육비는 사업 개시 전에 지출해야 한다.
- 향후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예(crafts), 감독(supervisory) 또는 기술력(technical skills)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에서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진행되거나 재무장관이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교육을 받는 직원은 말레이시아 시민(citizens)이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으로부터 승인받은 서신 또는 승인받은 교육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을 포함한 세부사항과 교육을 받은 직원이 참석한 것을 증명하는 서신을 반드시 증빙할 수 있어야 손금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C)에 기부하는 기업은 상기 이중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4) 사업 개시 전 교육비

사업 개시 전에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정소득 산출 시 교육비를 손금 공제할 수 있다(단 이중공제 아님).

- 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술을 전수한다.
- 나) 교육비는 사업 개시 전 1년 이내에 지출해야 한다.
- 다) 「소득세법」 제33장(Section 33 of the ITA)에 따라 손금 공제가 허용되는 종류의 비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교육비 보조금을 받거나 이중공제(double deduction)를 적용받는 기업은 상기 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5) 사업 개시 전 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용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조정소득 산출 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사업 개시 전 1년 이내에 지출해야 한다.

공제가 가능한 직원 채용 비용은 취업박람회 참가비, 채용 대행업체 수수료, 헤드헌터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업 개시 전 직원의 보수 또는 급여는 공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세금 환급(tax rebate)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업을 개시한 소기업 및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SME)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은 첫 3년 동안 연간 최대 2만링깃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소득세 환급은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해당 기업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은 말레이시아 거주자이어야 하며, 말레이시아에서 설립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
- 납입자본금이 과세기간 시작일에 250만링깃 미만이어야 하며, 과세연도 동안 사업소득이 5천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다.
- 소기업 및 중소기업(MSME)이 청구할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은 각 과세연도별 최대 20만링깃까지이며, 자본 지출액(capital expenditure)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영업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하지 않은 세금 환급액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
-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 또는 관계회사(related)로부터 양도받지 않은 별도의 시설(plant), 장비(equipment), 설비(facilities)를 사용해야 한다.
- 재무장관은 시행령(statutory order)을 통해 그 외 조건을 둘 수 있다.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이 위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연도와 후속연도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22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신규 중소기업의 설립과 운영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다. 이자(interest) 비용

총수입(gross income)의 창출 목적으로 대여한 금액 또는 동 과세기간 동안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interest)는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운전자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 창출에 사용하는 고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이자(interest)비용은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즉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자비용을 계상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 예정인 경우에는 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용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해당 이자(interest)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공제가 허용된다.

주식(shares), 정기예금(fixed deposits), 투자부동산, 관계기업 대출(loan to related company) 등의 투자자산의 매입과 동시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투자 소득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 공제 한도는 다음 공식에 따른다 (즉 투자자산에 대한 이자(interest)비용은 사업 소득에 대해 손금 공제 불가).

$$\text{이자비용 공제한도(interest restricted)} = (\text{투자금(investments)} / \text{차입금(borrowings)}) \times \text{이자비용(interest expense)}$$

제한된 이자비용은 해당 투자에 귀속되어 투자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업소득 외에 투자 소득을 얻는 경우 납세자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국세청(IRB)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차입금을 직간접적으로 투자 및 대출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국세청(IRB)에 입증이 가능한 경우, 사업소득으로부터 조정 소득을 산출할 시 공제 가능한 이자(interest) 비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한편 차입금을 직간접적으로 투자 및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이자(interest)비용은 제한된다.

위와 더불어 국경을 넘어 관계사 기업 간 금융지원(financial assistance)에 대한 이자(interest) 공제는 이자(interest)비용 공제 제한 규정(Earning Stripping Rules, ESR)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1 과세연도 동안 50만링깃을 초과하는 이자(interest)에 대해서는 직간접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사 간 금융지원과 관련된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interest)에 대해 ESR 규정이 적용된다. ESR 규정에 따르면 이자(interest) 공제는 사업을 구성하는 각 원천의 세전 순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Income Tax,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EBITDA)⁵¹⁾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최대 공제 허용액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무기한 이월되어 향후 소

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우 다음 해에 해당 기업 주주의 지분 보유 (shareholding)에 상당한 변화(substantial change)가 있는 경우 상기 이자(interest)비용의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도 초과 이자비용이 이월되는 과세연도의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주주 구성과 해당 이자 (interest)비용을 손금 공제하는 과세연도 과세기간의 첫 번째 날의 주주 구성을 비교했을 때, 해당 기업의 지분에 5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주주의 지분 보유(shareholding)에 상당한 변화(substantial change)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예시 2:

- a) ABC Sdn Bhd는 말레이시아 현지 은행으로부터 연 5%의 이자로 140만링깃을 대출을 받았다. ABC사의 사업을 위해 대여금 중 120만링깃을 사용했고 나머지 20만링깃은 말레이시아 상장 법인의 증권을 취득하는데 사용됐다. 2020년 발생한 총이자(interest)는 7만링깃이다. 해당 사업의 이자(interest) 공제한도는 6만링깃(12만링깃/14만링깃×7만링깃)이며, 나머지 1만링깃은 배당(dividend)원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당(dividend)원천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자(interest) 비용은 무시한다.

위의 이자(interest)비용 계산에 관한 금융 수수료나 세액 조정 계산의 더 상세한 예시는 제2장 II 마지막 부분 참조.

- b) DEF Sdn Bhd는 40만링깃의 대출을 받아 전반적인 사업 운영, 정기 예금, 관계사에 무이자(non-interest bearing)로 차용을 주는 목적으로 지출하였다. 2020년에 발생한 총이자(total interest)는 4만링깃이다.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정기 예금에 사용한 총액은 20만링깃이며 관계사에 차용을 준 금액은 10만링깃이다.

DEF사는 정기 예금과 관계사에 차용해 준 투자가 대여금으로 조달된 것이 아닌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사업원천에 대한 이자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egin{aligned} \text{이자비용 공제한도(interest restricted)}^{52)} &= (\text{투자금/잔여 대출금}) \times \text{이자비용} \\ &= (30\text{만링깃}/40\text{만링깃}) \times 4\text{만링깃} \\ &= 3\text{만링깃} \end{aligned}$$

위의 계산에 따라 해당 사업원천에 대해 공제 가능한 총이자 4만링깃에서 3만링깃을 차감한 1만링깃이다.

이 이자비용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소득 원천을 대상으로 한다.

$$\text{이자원천액} = 2\text{만링깃(할당된 투자비용 } 20\text{만링깃}/30\text{만링깃} \times 3\text{만링깃})$$

관계사에 무이자(interest) 차용은 사업 운영의 총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이자비용 공제한도 1만링깃은 공제할 수 없다.

51) 영업이익에서 이자(interest)비용, 세액,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순이익;

세액 - 세전순이익 = [A]+[B]+[C]일 때,

[A]: 「소득세법」 제140C장(Section 140C of the ITA)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원천 이자(interest)공제 제한이 발생하기 전 조정된 소득이다.

[B]: [A]의 「소득세법」 제140C장(Section 140C of the ITA)에 따라 이자(interest)공제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기 전에 조정된 소득의 총액을 확인하기 위한 허용된 적격공제 총액이다.

[C]: 과세기간 동안 사업원천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개인의 총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이자비용이다.

라. 접대비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의 직원이 현금 또는 현물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홍보하기 위해 다음을 제공하는 것을 「소득세법(ITA)」에서는 접대(entertainment)로 규정하고 있다.

- 모든 종류의 음식, 음료, 오락 또는 접대 또는
- 위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숙박(accommodation) 또는 출장(travel)

일반적으로 총수입(gross income)을 창출하는 데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발생한 접대 비용은 다음의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100%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0% 공제가 가능하다.

- 1) 직원 복지비(leave passage⁵³⁾ 제외),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접대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외
- 2)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대비(예: 항공사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같이 돈을 받고 제공하는 접대 또는 응대)
- 3)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개최되는 무역 박람회 또는 산업 전시회에서의 판촉 선물
- 4) 제품 홍보샘플
- 5) 사업 홍보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문화 또는 스포츠 행사
- 6) 회사 로고가 포함된 제품의 말레이시아 내 판촉 선물(promotional gifts)
- 7) 매출과 직접 관련된 고객, 딜러 및 유통업체와의 접대 등과 같이 전적으로 사업 매출과 관련된 접대(단 공급업체는 제외)
- 8) 말레이시아 내에서 고용주, 직원 및 직원의 직계가족이 참여하는 연례 행사를 위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휴가 비용(leave passage) 혜택

52) 위의 계산은 연말결산을 기준으로 한다. 50만링깃이 넘는 투자비용은 월말결산을 기준으로 한다.

53) leave passage란 업무상 부재 또는 휴가기간 동안의 여행 비용 의미하며, 운임비와 관련이 있다.

예시 3:

ABC Sdn Bhd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기간 동안 총 5만 5천링깃의 접대비를 지출했다. 그중 4만링깃은 향후 잠재 고객사(Potential clients)의 접대비로 사용했다(단 현재까지 특정한 사업 관련 논의는 없었음).

위의 내용에 따라 총 5만 5천링깃의 접대비 공제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단위: RM)

구분	비용	손금 공제 설명
잠재고객 접대비	4만	잠재적인 고객을 위한 접대비는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Wholly and exclusively) 당사의 총소득 창출을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 공제할 수 없다.
사원 연례 저녁 식사비	1만 5천	당사 사원의 연례 저녁 식사 비용은 위의 내용과 같이 고용인의 접대에 관한 것이므로 100% 손금 공제할 수 있다.
총액	5만 5천	

마. 임대 비용

총수입(gross income)을 창출하기 위해 과세기간 동안 임대한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rent payable)는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손금 공제가 가능한 임대료(rent payable)는 그 과세기간 내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하며, 동 과세연도 내 총수입(gross income)을 창출하는 데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바. 수리 및 개조 비용

총수입(gross income)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건물(premises), 공장(plant), 기계장치(machinery), 고정자산(fixture)의 수리 또는 사용하고 있는 설비(implement), 기구(utensil), 물품(article)의 교체(renewal), 수리(repair) 또는 변경(alteration)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세 무상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자산의 기존 기능을 유지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리한 비용 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외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대하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 발생한 비용은 자산(즉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며, 손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위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중고 자산을 수리하는 데에 발생한 지출(expenditure)은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으로 간주된다.

- 1) 자산의 열악한 상태가 매입가격에 반영되는 경우
- 2) 자산을 수리할 때까지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시 4:

ABC Sdn Bhd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회계기간 동안 총 10만 5천링깃의 수리 및 유지 비용이 발생했다. 골지 철제 지붕을 타일 지붕으로 개조한 비용 3만 3천링깃은 총비용에 포함된다.

골지 철제 지붕의 개조 비용은 기존 자산의 개선을 위함이며,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의 지출로 손금 공제할 수 없다. 만약 기존 상태의 지붕에 대한 유지 및 복구에 비용이 사용되었다면 손금 공제할 수 있다.

사. 법률 및 전문서비스 비용

기존 영업권(trade rights), 영업시설(trade facilities),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 수수료(professional fees)는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새로운 권리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법률 비용(legal fees)은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의 지출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사 수수료(audit fees), 세무사 수수료(tax fees), 비서 수수료(secretarial fees)와 같은 특정 전문서비스 비용은 총수입(gross income) 창출을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ITA)」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정 감사 수수료(statutory audit fees), 세무 대리인 수수료(tax agent fees), 비서 수수료(특정 조건에 따름)에 대해 특별 공제가 제공된다.

세무사, 비서 수수료에 대한 특별 공제는 과세연도당 1만 5천링깃으로 제한한다(과세연도 2020년부터 적용). 비용변제(reimbursement), 부대비용, 전화 및 팩스, 인쇄, 문구류, 우표, 여행, 숙박, 총회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은 이 특별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 대상이 아닌 기타 법률 및 전문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다.

- 1) 조세불복(tax appeal) 비용
- 2) 비영업용 부채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법률 비용
- 3) 신규 대출 또는 거래신용(credit facility)을 신청하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하기 위해 발생한 법률 비용
- 4) 비영업용 자산(capital asset)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법률 비용

예시 5:

ABC Sdn Bhd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동안 9만링깃의 법률 수수료 및 회비(subscriptions) 지출했다. 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RM)

구분	비용
회계감사 수수료	4만 5천
신규사업에 타당성조사 자문	1만 5천
무역협회 입회비	1만
승인된 기관에 현금 기부	2만
총비용	9만

위의 내용에 따라 법률 수수료 및 회비(subscriptions) 지출 손금 공제액 9만링깃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단위: RM)

구분	비용	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
회계감사 수수료	4만 5천	부기 및 장부 준비에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은 기본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제할 수 있다.
신규사업의 타당성조사 자문	1만 5천	새로운 벤처 사업으로 인한 비용은 새로운 소득 원천과 관련이 있다.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무역협회 입회비	1만	입회비는 지속하는 이익을 위한 자본 성격의 초기 비용이므로 손금 공제할 수 없다.
승인된 기관에 현금 기부	2만	기부금은 보통 손금 공제할 수 없다. 단 승인받은 기부금은 특별히 공제할 수 있다. 다음에 나와 있는 특정 조항에 따라 총수입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총비용	9만	

아. 부실채권(bad and doubtful debts)

「소득세법」의 제34(2)조항(Section 34(2) of the ITA)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채무(debts)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즉 부실채권에 대한 공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채무는 영업활동 관련 채무여야 한다.

「소득세법」(I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란 다음과 같다.

- 이전 과세연도의 사업 총수입(gross income)의 일부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부실채권에 대한 손금 공제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인 대손금(doubtful debts) 또는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조정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 2) 매출채권(trade debts)과 관련된 특정 대손상각이나 특정 대손충당금은 다음의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 가) 이전 과세기간에 납세자의 총수입(gross income)에 포함된 영업 관련 활동 채무여야 한다.
 - 나)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 다) 채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회수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회수 가능성과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 회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문서화해야 한다(예: 통지문, 채무조정 계획, 상환기간조정, 중재, 법적 조치 등).
 - 라) 대손상각에 대한 결정은 개인, 사적, 기타 이유가 아닌 타당한 상업적 이유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3) 실채권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탕감되거나 면제받은 채무
 - 나) 비영업활동 관련 채무
 - 다) 특수관계자와의 채무(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영업활동 관련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결정이 독립적이고 유효한 사업적 또는 상업적 이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결정이 사적인, 개인적인 또는 다른 비상업적인 이유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영업활동 관련 채무(trade debt)에 대해 대손상각하여 손금으로 공제한 후 그 금액을 회수하거나 또는 수령한 경우 회수된 채무 총액은 사업 총수입(gross income)으로 간주된다.

예시 6:

ABC Sdn Bhd는 매년 12월 31일에 결산하는 시점에 8만링깃의 부실채권 총당금(Provision for bad debts)을 계상했다. 부실채권 총당금은 다음과 같다.

- 이전에 대손상각한 매출채권의 회수(손금 공제함) - 2만링깃
- XYZ'의 매출채권에 대한 특정 총당금(채권 회수 안내문 발급함) - 7만링깃
- 부실채권의 일반 총당금 - 2만링깃
- 전 직원에게 차용해준 대출의 대손상각비 - 1만링깃

위의 내용에 따라 8만링깃의 부실채권 총당금 공제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단위: RM)

구분	비용	비용공제에 대한 설명
이전에 대손상각한 매출채권의 회수(손금 공제함)	2만	매출채권을 대손상각하여 이미 손금 공제한 후에 채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된 채권은 사업총소득에 귀속되고 과세된다.
대손상각을 목적으로 XYZ'의 매출채권에 대한 특정 총당금(채권 회수 안내문 발급됨)	-7만	상기 부실채권에 언급된 특정 조건들을 충족할 시 매출채권에 대한 특정 총당금을 손금 공제할 수 있다. 채권의 회수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때, 이 총당금은 손금 공제할 수 있다.
부실채권의 일반 총당금	-2만	부실채권의 일반 총당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잠정적인 것이므로 손금불산입을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전 직원에게 차용해 준 대출의 대손상각비	-1만	비매출채권은 사업원천 총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 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대손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도록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총비용	-8만	

자. 외환차손 및 외환차익(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

외환차손익의 세무 처리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 1) 손익의 실현(realized) 여부 그리고
- 2)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 또는 수익 성격(revenue in nature) 손익의 여부

세무 목적상 수익을 실현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과세 또는 공제 대상이며,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의 외환차손익은 과세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개예규(public ruling) 12/2019에 따르면 국세청(IRB)은 실현(realized)의 의미를 링깃 화 금액이 결정되고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화 계좌를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실현되기 전에 해당 통화를 물리적으로 환산할 필요는 없다.

차. 기부금(donations)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총수입(gross income)을 창출하는 데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인 형태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세법(ITA)」에는 특정 유형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상 공제를 허용하는 특별 조항이 있다.

회사의 총수입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 주 정부 또는 지방 당국에 기부한 금전
- 2) 국세청(IRB)장이 승인한 기관, 단체, 기금에 기부한 금전(해당 연도 총수입의 10%까지로 공제 제한)
- 3) 정부 또는 주 정부에 기부한 공예품, 원고, 미술품
- 4) 공공 도서관, 학교 도서관, 고등교육기관,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도서관 시설을 위해 기부 금전(단 2만링깃 한도)
- 5) 국립 미술관 또는 주립 미술관에 기부한 미술품
- 6)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적법한 종교 기관 또는 해당 종교 기관이 승인한 개인에게 자캣 퍼니아가안(zakat perniagaan)(이슬람 기부금의 일종)을 지급

카. 특별 공제, 추가 공제, 이중 공제(special, further and double deductions)

특정 비용은 특별 공제, 추가 공제 또는 이중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 공제 불가능한 비용

공제 불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 1) 고정자산 구매에 지출된 국내자본, 자기자본 또는 총자본(intended to be employed as capital)에 대한 비용
- 2) 총수입(gross income) 창출을 목적으로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not being money wholly and exclusively laid out or expended) 지출한 비용이 아닌 것
- 3) 5만링깃 또는 10만링깃을 초과하는 신차에 대한 리스 비용. 단 매입가격이 15만링깃 이하의 신차를 리스하는 경우 10만링깃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가격이 15만링깃 초과인 신차를 리스하는 경우는 5만링깃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4) 승인되지 않은 연금(pension), 적금(provident), 저축 제도(saving schemes)에 대한 고

용주의 기여금

- 5) 승인된 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금이 직원 급여의 19%를 초과하는 경우
- 6) 승인되지 않은 기부금
- 7)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접대비의 50%(상기 접대비 참조)
- 8)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직원 휴가비(상기 접대비 참조)
- 9) 말레이시아 원천징수(제2장 V 참조) 대상이지만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interest), 로열티(royalty), 계약금, 기술료, 동산 임대료, 연예인에게 지불한 비용 또는 기타 비용⁵⁴⁾
- 10) 라부안(Labuan) 기업에 지불한 비용 - 불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자(25%), 임대(25%), 기타(97%)
- 11) 단일 체계(single-tier)에 따라 지급된 배당(dividend)과 관련한 비용 및 공제

6. 영업손실과 미사용 결손금(unabsorbed losses)

과세기간 동안 손금 공제 비용 합계가 사업 총수입(gross income)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 결손금이 발생하며, 이는 비영업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 결손금(adjusted loss)이 해당 연도의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결손금은 차기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즉 미사용 결손금).

당해 연도의 영업 결손금은 투자 소득(passive income)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과 상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당기 과세연도에 공제 사용하지 않은 결손금은 최대 7년간 이월하여 차기 과세연도 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총과세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최근 2022년 예산안에서 미사용 결손금을 이월하는 기간을 연속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2018년까지 누적된 미사용 결손금은 2028 과세연도까지 10년간 이월할 수 있다.

후면 기업의 경우, 지분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결손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54) 국세청(IRB)은 소득세 신고서 제출기한 내에 비거주자에게 소득이 지급되지 않았고(no payment or crediting), 원천세 납부의무가 없음(not due for payment)에도 불구하고 원천세가 국세청(IRB)장에게 지급되거나 송금된 경우에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7.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자본공제는 적격 지출(Qualifying Expenditure, QE)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는 세무상 감가상각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공제는 감가상각 정액법을 적용해 자산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이자율로 공제할 수 있다(하기 내용 참조).

자본공제는 산업용 시설(plant) 및 기계장치(machinery) 구입으로 발생하는 적격 공장 지출과 산업용 건물의 건설 및 구입으로 발생하는 적격 건물 지출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한다.
- 과세기간에 적격 지출이 발생한다.
- 자산은 영업용으로 사용된다.
- 과세기간 말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용 중이어야 한다.

가.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plant and machinery)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의 제공, 건축 구매에 대해 발생한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예상 수명이 2년 미만인 자산 제외)은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대상이 된다.

산업용 시설(plant)이란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조직체(apparatus)로 건물, 무형자산, 중고자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써 그 기능을 한다(「소득세법(ITA) 부칙」 3, 70A항). 기계장치(machinery)라는 용어는 「소득세법(ITA)」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해당 자산이 산업용 시설인지 판단할 때, 자산의 기능과 사업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한 적격 지출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incidental expenditure)

-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및 설치를 위해 부수적으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
-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 준비, 절토, 굴삭, 평탄화에 사용하는

비용. 단 이러한 비용이 기타 다른 적격 지출을 포함한 총적격 지출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 지출로 인정받지 못한다.

- 연못, 축사, 닭장, 새장, 건물에 지출한 비용(등기이사, 그 사업을 통제하는 개인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행정 및 사무직원의 숙박을 위해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과 가금류 농장, 동물 농장, 어업, 기타 농업, 목축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나) 차량(vehicles)

- 상품 또는 승객을 위해 상업적 운송이 허가된 차량

기본 차량옵션(모든 자동차 딜러가 제공하는 차량옵션. 단 특정 딜러만 제공하는 추가 차량옵션은 제외)과 말레이시아 도로교통부(Road Transport Department, RTD) 등록비를 포함한 차량의 현금가

- 상품 또는 승객에 대한 상업적 운송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
적격 지출(QE)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표 2-II-3〉 차량의 적격지출

(단위: 링깃)

구분	최대 적격 지출
총구매가가 15만링깃 이하인 신차	10만
이외 차량	5만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다) 할부구매(hire purchase) 자산

할부구매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가 가능한 금액은 과세기간 동안 상환된 자본금액이다.

라) 리스 자산

임차인(lessee)이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자산의 원금 부분(과세기간 동안의 자본 상환 기준 또는 간주 매각의 경우 전액)에 대한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를 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매도(자산과 관련된 위험 및 보상이 임대인에게 이전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lessee)은 발생한 임대료를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상 자산이 적격 자산(qualifying asset)인 경우에만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가 가능하다. 토지 임대는 자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최근 시행된 회계기준 MFRS16에 따라 운용 리스(일반적으로 손금 공제 대상)와 금융 리스(일반적으로 자본공제 대상)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모든 리스가 자산을 사용할 권리로 반영된다. 납세자는 자산의 사용권과 관련하여 어떤 자산이 자본공제 대상이고 어떤 자산이 손금 공제 대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회계 조정(손익계산서에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이자(lease liability interest) 및 리스 비용의 상각으로 반영됨)은 세무상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세자가 실제 원금 납부와 발생한 이자(interest)를 결정해야 하고, 세무 목적상 적절히 구분하여 공제해야 한다.

마) 자산 설치 서비스

- 1)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의 설치 서비스 비용 또는 운영 비용은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 지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만 자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 기존에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된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가 이후 말레이시아 역내에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적격 지출 금액은 사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의 시장가치 또는 순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연간공제만 청구가 가능하다.
- 3) 즉시공제와 연간공제(initial allowances and annual allowances)
 산업용 시설과 영업용 적격지출이 발생할 때, 적격지출이 발생한 첫 해에 20%를 즉시공제(initial allowance)할 수 있다. 이는 적격지출이 발생한 첫 해에 한 번만 공제할 수 있으며,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즉시공제 자격이 주어진다.

과세기간 말에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공제할 수 없다.

- 공제 신청인(Claimant)이 자산의 주인이 아닐 경우 또는
-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간공제(annual allowance)는 즉시공제와 다르게 관련 과세기간 동안 자산이 사용되는 한 매년 공제할 수 있다. 연간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공제할 수 있다(규정된 연간공제율은 다음의 일반적인 자본공제 비율(General rates of capital allowance) 참조).

- 산업용 시설과 기계 장치류에 대하여 적격지출이 발생
 - 과세연도 말에 공제 신청인(Claimant)이 자산의 주인일 경우 그리고
 - 과세기간 말에 자산이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 연간공제는 정액법(Straight-line basis)이 적용된다.

〈표 2-II-4〉 일반적인 자본공제 비율(General rates of capital allowance)

(단위: %)

구분	자본공제	
	즉시공제 ⁵⁵⁾ (initial allowance)	연간공제 ⁵⁶⁾ (annual allowance)
중장비(Heavy machinery)	20	20
시설 및 기계장치(General plant and machinery)	20	14
사무기기, 가구 및 비품(Office equipment, Furniture and fixtures)	20	10
자동차(Motor vehicles)	20	20 ¹⁾
컨설팅, 라이선스 및 부대 비용으로 구성된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Development of customized software, comprising of consultation, licensing and incidental fee)	20	20

주: 1) 위에서 언급한 상업적 운송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적격 지출 제한사항 참조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55) 자산이 자본공제할 수 있는 첫 해에 적용됨

56) 적격 비용이 완전히 공제되기까지 청구 가능한 연간공제

예제 7:

XYZ Sdn Bhd (XYZ)는 2020년에 영업활동을 위해 다음 자산을 구입했다.

(단위: RM)

구분	구매가	구입연도
BMW	25만	2020
Van(상품 또는 승객을 상업적 운송이 허가된 차량)	10만	2020
사무기기(Office Equipment, OE)	8만	2020
가구 및 비품	5만	2021

2020년 및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한 자본공제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과세 연도	자산	이월된 잔존가치 (RM): (A)	구매가 (RM)	적격 지출 (RM) - 추가: (B)	즉시공제 (RM): (C)	연간공제 (RM): (D)	잔존가치(RM): (E)= A+B-C-D
2020	BMW	Nil	250,000	50,000 ⁵⁷⁾	10,000*(20%)	10,000*(20%)	30,000
	Van	Nil	100,000	100,000 ³	20,000*(20%)	20,000*(20%)	60,000
	OE	Nil	80,000	80,000	16,000*(20%)	8,000*(10%)	56,000
2021	BMW	30,000	-	-	-	10,000 [^] (20%)	20,000
	Van	60,000	-	-	-	20,000 [^] (20%)	40,000
	OE	56,000	-	-	-	8,000 [^] (10%)	48,000
	가구	Nil	50,000	50,000	10,000 (20%)	5,000 [^] (10%)	35,000

2020년의 총자본공제액(*)은 8만 4천링깃(즉시공제+연간공제)이다.

2021년의 총자본공제액(^)은 5만 3천링깃(즉시공제+연간공제)이다.

4) 소액자산

2천링깃⁵⁸⁾ 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자산은 100% 자본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과세연도당 최대 2만링깃⁵⁹⁾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중소기업의 정의는 앞 4. 과세소득 및 이자(interest)세율을 참조).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즉 순수 투자 지주 회사인 경우) 공제한도를 2만링깃을 한도로 공제가 제한된다.

57) 1) 나) 항목의 내용 참고

58) 평가연도 2020년부터 적용

59) 평가연도 2020년부터 적용

5)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다음과 같이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장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같은 특정 유형의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가속 자본공제가 가능하다.

〈표 2-II-5〉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류의 가속자본공제

(단위: %)

산업용 시설 및 기계류 유형	즉시공제 (initial allowances)	연간공제 (annual allowances)
ICT 장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매 (맞춤형 소프트웨어 제외)	20	20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나. 산업용 빌딩

1) 적격 건축 비용(QBE)은 다음과 같이 지출하는 자본 지출이다.

- 해당 건물의 증축 또는 재건축, 개축 및 개조 비용 및 건물의 신축 건설비용
- 건물의 취득

다만 과세기간 말에 해당 건물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용 건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적격 건축 비용(QB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용 건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공장
- 부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 창고 및 공공에 임대 가능한 보관 공간
- 공공에 공급하는 수도 또는 전기 공급 사업체의 수도 또는 전기 공급 설비(undertakings) 또는 일반 대중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undertakings)
- 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농장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공간
- 광산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광산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광산을 운영하는 공간

상기에서 공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공장(mill), 작업장(제품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수리 및 서비스가 수행

되는 경우 제품의 수리 또는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작업장은 제외)으로 이루어진 건물, 또는 제품의 제조, 재화 및 원자재의 가공, 공정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의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 및 산업용 시설이 들어선 건물 그리고

- 원자재와 연료의 보관 장소, 제품 제조와 재료의 가공에 필요한 공간 또는 제품 또는 원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보관하는 공간(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동일한 범위 내)

건물이 산업용 건물인 경우 그 산업용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을 위해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목욕탕, 욕실 또는 세면실로 제공되는 모든 건물은 산업용 건물로 취급된다.

2) 일반적인 산업용 건물 공제액(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 비율

- 즉시 공제율: 10%
- 연간 공제율: 3%

3) 산업용 건물,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숙소 등도 산업용 건물로 취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예규 No. 8/2016⁶⁰⁾ 및 No. 10/2016⁶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자산의 처분(disposals)

자본공제 대상인 영업용 자산이 손상, 폐기, 매각되거나 더 이상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이 처분(disposals)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처분한 것이 아니다. 자산의 운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본공제를 할 수 있다.

자산을 처분할 때 균형조정(balancing adjustments)(균형공제(balancing allowance) 또는 균형부과(balancing charge)가 발생한다.

6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ublic Ruling 8/2016,” https://phl.hasil.gov.my/pdf/pdfam/PR_08_2016.pdf, 검색일자: 2021. 10. 28.

61)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ublic Ruling 10/2016,” https://phl.hasil.gov.my/pdf/pdfam/PR_10_2016.pdf, 검색일자: 2021. 10. 28.

자산의 처분 가치가 자산의 잔존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즉 자산의 적격 취득금액에서 누적 자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균형 공제(balancing allowance)가 허용되며, 자산의 처분 가치가 자산의 잔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균형 부과(balancing charge) 명목으로 과세소득에 산입된다. 이 균형 부과는 해당 처분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자본공제액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자산의 처분 가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처분가액은 매각 가격 또는 자산의 시장가격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 자산이 손상(destroyed)된 경우, 간주 처분가액(deemed disposal value)은 자산의 시장가격이다. 다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처분가액은 시장가격 또는 수령한 보험금/보상금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 자산이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폐기되는 경우 간주 처분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1)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기술 발전으로 자산이 노후화됐거나, 소유자의 사망 등)를 제외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공제받은 자본공제액은 환수된다.

2) 통제 이전(controlled transfer)

적격 자산을 특수관계자(related party)에게 처분하는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처분을 일반적으로 '통제된 이전(controlled transfer)'이라고 하며, 해당 자산의 처분이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시된다. 또한 양도인에게 균형 공제(balancing allowance)나 균형 부과(balancing charge)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취득자는 적격자본지출의 잔존가액을 이어서 공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 처분 시 통제 대상이 된다.

- 1) 자산의 취득자가 자산의 처분자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2) 자산의 양도인이 자산의 취득자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3) 자산의 양도인 및 취득자가 공통으로 제3자의 통제를 받는 경우
- 4)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자산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5) 법적 합의, 증여, 사망에 따른 재산권 이전에 의해 자산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과 관련된 통제(control)는 주식 보유, 의결권, 회사 정관 또는 기타 문서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의 경영 및 통제의 권한을 의미한다. 자산양도 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통해 경영 통제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의 자산 처분은 통제 대상에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파트너십과 관련된 통제는 파트너십 자산 또는 파트너십의 배분가능 이익의 절반 이상을 취할 권리를 의미한다.

3) 매도가능자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자산이 매도가능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처분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자산의 처분일 및 처분가액에 따라 세무상 특정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미사용 자본공제액

자본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완전히 공제할 수 없는 경우, 초과분은 이월하여 향후 과세연도에 동일한 사업 출처의 소득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휴면 기업의 경우에는 지분구조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미사용 자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미사용 자본공제의 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8. 세무 신고와 준수 사항

가. 정보제공의 의무

국세청(IRB)장(Director General of the Inland Revenue Board, DGIR)은 누구에게나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또는 세부사항을 요청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소득세법(ITA)」 제81조).

나. 기록보관의 의무

모든 기업은 납부할 세금, 과세 대상 소득 및 손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7년 동안 관련 증빙 서류(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송장, 바우처, 영수증 등)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화의 판매로 발생하는 사업의 총매출액이 15만링깃, 혹은 용역의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의 총매출액이 10만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그 사업과 관련된 재화 판매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거래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한 계산서를 인쇄하여 발행하고, 발행된 모든 계산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증빙 서류를 전자적 형식으로 보관하는 경우, 해당 전산 기록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면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식의 전자 문서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반면에 보관 중이던 기존의 서면 형식의 증빙 서류를 전산 서류 형식으로 변환한 경우에도 해당 증빙 서류의 원본 서류도 유지해야 한다(「소득세법(ITA)」 제82조(7)).

다. 신고 및 납부

말레이시아는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regime)를 채택하고 있다. 법인은 다음과 같은 신고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표 2-II-6〉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의 신고납부 절차

(단위: %)

구분	신고서식	신고 기한	납부 기한
(a) 세액의 예납			
(i) 기존 법인	예납세액 신고서 Form e-CP204	과세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 기업은 당기 예납세액은 직전 과세연도 최종 예납세액의 85% 이상이어야 함	분할납부(예납 신고서상 예납세액 기준)는 과세기간의 두 번째 달부터 납부를 시작하여 매월 15일까지 과 세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납부 해 야 한다.
	예납세액 신고서 Form e-CP204A (선택적)	과세연도의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 달	예납세액 수정 후 분할 납부 잔액은 매월 15일까지 남은 금액에 따라 균 등할부로 납부해야 한다.

〈표 2-II-6〉의 계속

구분	신고서식	신고 기한	납부 기한
(ii) 신규 법인 ¹⁾	Form e-CP204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당되는 경우, 제출한 추정납세액 기준으로 계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부터 납부를 시작하여 매월 15일까지 균등하게 월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Form e-CP204A (선택적)	기준 기간의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 달	예납세액 수정 후 분할납부 잔액은 매월 15일까지 분할납부금에 따라 균등할부로 납부한다.
(b) 법인세 신고	Form e-C62 (103-107쪽 참조)	회계기간 마감 후 7개월 이내 세무신고는 회사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서에 따라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이 예납세액 또는 수정한 예납세액의 0%를 초과할 경우 납부할 차액에 대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분할납부 총액을 공제한 후 결산일로부터 일곱 번째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c) 고용주의 의무	Form E	자세한 내용은 제2장 1. 개인소득세 참조	

주: 1) 신규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 중소기업(SME)은 일정 조건에 따라 사업 개시 후 최초 2년의 과세연도에 대해 예납세액 납부가 면제된다.
- 면제되는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과세연도의 과세기간 시작일에 250만링깃 미만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하고, 해당 과세연도 동안 총사업소득(gross business income)이 5천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기업
 - 관계회사(related company)가 해당 기업의 납입자본금 중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
 - 해당 기업이 관계회사(related company)의 납입자본금 중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
 - 어떤 회사가 해당 기업의 납입자본금과 관계회사(related company)의 납입자본금에 대해 각각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

62)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 2021," https://phl.hasil.gov.my/pdf/pdfam/SampleRF_C2021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관계회사(related company)는 과세연도 시작일에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최초 2개 과세연도에 Form CP204를 제출해야 하지만, 추정하여 산출한 예납세액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새로 설립한 회사의 최초 과세연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첫 과세연도에는 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별첨] 법인소득세 주요 신고서식(Form e-C63)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COMPANY RETURN FORM UNDER SEKSYEN 77A OF THE INCOME TAX ACT 1967 This form is prescribed under section 152 of the Income Tax Act 1967		Form C	YEAR OF ASSESSMENT 2021 GPS - Pn. 2021
BASIC PARTICULARS			
1 Name of company			
2 Reference no. (registration no.)			
3 Income tax no.	C		
4 Incorporated in Malaysia	1 = Yes 2 = No	5 Employer's no.	E
6 Status of business	1 = In operation 2 = Dormant 3 = In the process of winding up	7 Country of residence	(Use the Country Code)
8 Commencement date of operations	(dd/mm/yyyy)		
9 Accounting period	From (dd/mm/yyyy)	To (dd/mm/yyyy)	
10 Basis period	From (dd/mm/yyyy)	To (dd/mm/yyyy)	
11 Company with paid-up ordinary share capital not exceeding RM2.5 million at the beginning of the basis period and gross income from all business sources not exceeding RM50 million	1 = Yes 2 = No		
12 Company established for the issuance of asset-backed securities	1 = Yes 2 = No		
13 Controlled company	1 = Yes 2 = No	14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1 = Yes 2 = No
15 Substantial change in shareholding and subsection 44(5A) applies	1 = Yes 2 = No 3 = Not relevant		
16 Claim / Surrender loss under the Group Relief provision (If claiming, submit Form C (Rk-T); If surrendering, submit Form C (Rk-S))	1 = Claim 2 = Surrender 3 = Not relevant		
(Declare in Ringgit Malaysia (RM) currency)			
PART A: STATUTORY INCOME, TOTAL INCOME AND CHARGEABLE INCOME		RM	Sen
A1 Aggregate statutory income from businesses and partnerships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00
A2 LESS: Business losses brought forward (Restricted to A1)			.00
A3 TOTAL (A1 - A2)			.00
A4 Aggregate statutory income from other sources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 Dividends, interest, discounts, rents, royalties, premiums, other income and additions pursuant to paragraph 43(1)(c)			.00
A5 AGGREGATE INCOME (A3 + A4)			.00
A6 LESS: Current year business losses (Restricted to A5)			.00
A7 Prospecting expenditure under schedule 4 / pre-operational business expenditure under schedule 4B / permitted expenses under section 60F or 60H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00
A8 Approved donations / gifts / contributions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00
A9 Zakat perniagaan (Restricted to 2.5% of A5)			.00
A10 Claim for loss under Group Relief provision			.00
A11 TOTAL INCOME [A5 - (A6 to A10)] (Enter '0' if value is negative)			.00
A12 TAXABLE PIONEER INCOME			.00
A13 CHARGEABLE INCOME (A11 + A12)			.00
A14 CHARGEABLE INCOME OF FOREIGN FUND MANAGEMENT (section 60c)			.00
A15 CHARGEABLE INCOME OF APPROVED INCENTIVE SCHEME (section 65e)			.00
PART B: TAX PAYABLE / REPAYABLE AND STATUS OF TAX			
B1 CHARGEABLE INCOME [from (A13 + A14 + A15)]			.00
B2 Apportionment of Chargeable Income			
B2a	.00	Rate (%)	Income Tax
B2b	.00	17	.
B2c	.00	24	.
B2d	.00		.
B2e	.00		.
B3 TOTAL INCOME TAX CHARGED (B2a to B2e)			.
B4 LESS: Tax reduction on income derived from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petroleum in a Joint Development Area			.
B5 Section 60 rebate (maximum: RM20,000, restricted to B3)			.
B6 TOTAL (B3 - B4 - B5) (Enter '0' if value is negative)			.
B7 LESS: Section 110e tax deduction Section 110 tax deduction (others)
B7 Section 132 and 133 tax relief (Restricted to B3)			.
B8 TAX PAYABLE (B6 - B7)			.
B9 OR: TAX REPAYABLE (B7 - B6)			.
B10a LESS: Instalments paid pursuant to section 107c provision			.
B10b Instalments paid pursuant to paragraph 107A(1)(a) provision			.
B11 Balance of tax payable (B8 - B10a - B10b) / Tax paid in excess (B10a + B10b - B8)			.
▲ (Enter 'X' if tax paid in excess)			
DECLARATION			
I	Identification / Passport No * (* Delete whichever is not relevant)		
hereby declare that this return form **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pertaining to the income tax of this company as required under the Income Tax Act 1967.			
**	1 = This return form is prepared based on audited accounts.		3 = This return form is prepared based on the account of the liquidator's receipts and payments (if item 6 = 3).
	2 = This return form is prepared based on unaudited accounts.		
Date:	Signature:		
Designation:			

63)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 2021," https://phl.hasil.gov.my/pdf/pdfam/SampleRF_C2021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PART C: CAPITAL ALLOWANCES AND CHARGES UNDER SCHEDULE 3, REINVESTMENT ALLOWANCE UNDER SCHEDULE 7A AND INVESTMENT ALLOWANCE FOR SERVICE SECTOR UNDER SCHEDULE 7b					
C1a Particulars of Schedule 3 allowance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and item C1b)		1 = Yes 2 = No			
		Amount Absorbed	Balance Carried Forward		
C1b Total 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if relevant)					
C2 Claim for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under subparagraph 42(1) Schedule 3		1 = Yes 2 = No			
		Amount Withdrawn / Disregarded (a)	Amount Absorbed (b)	Balance Carried Forward (c)	
C3 Particulars of Schedule 7A allowance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C4 Particulars of Schedule 7b allowance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PART D: INCENTIVE CLAIM					
D1 Claim for Special Deduction(s), Further Deduction(s) and Double Deduction(s)					
Claim Code		Amount			
i.					


D2 Claim for incentive(s) under paragraph 127(3)(b)					
Incentive Code		Balance Brought Forward	Amount Claimed	Amount Absorbed	Balance Carried Forward
i.					

D3 Claim for incentive(s) under subsection 127(3A)					
Incentive Approval No.		Balance Brought Forward	Amount Claimed	Amount Absorbed	Balance Carried Forward
i.					

D4 Claim for incentive(s) under Income Tax Act 1967 / Promotion of Investment Act 1986 other than the incentives in items D1, D2 and D3					
Incentive Code		Balance Brought Forward	Amount Claimed	Amount Absorbed	Balance Carried Forward (if relevant)
i.					

PART E: CLAIM FOR LOSSES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Amount Disregarded (E1)	Amount Absorbed (E2)	Amount Surrendered (E3)	Balance Carried Forward (E4)
PART F: PARTICULARS OF COMPANY					
F1 Information for refund: (Info: For refund to a third party account, please submit the application to the branch which handles your income tax file)					
F1a Method of payment for tax refund		1 = Via own account in Malaysia 2 = Via DutNow 3 = Via a third party account			
F1b Name of bank		F1d Bank identification no.			
F1c Bank account no.					
F2 Particulars of company directors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F3 Particulars of company's major shareholders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F4 Foreign equity in comparison with paid-up capital		%			
F5 Government Linked Company (GLC)		1 = Yes 2 = No			
F6 Company listed on Bursa Malaysia		1 = Yes 2 = No			
F7 Has holding company		1 = Yes 2 = No (if 'Yes',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F8 Carries out controlled transactions under section 139 and 140A		1 = Yes 2 = No (if 'Yes',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F9 Receives foreign income which is exempted under paragraph 28 of Schedule 6		1 = Yes 2 = No (if 'Yes',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F10 Subject to interest restriction under section 140C (if 'Yes', fill in information on interest subject to section 140c in the following schedule)		1 = Yes 2 = No			
Amount of tax - EBITDA		Interest expense subject to section 140c	Interest expense restricted	Balance carried forward	
F11a Has Advance Ruling (if 'Yes', also complete items F11b and F11c)		1 = Yes 2 = No			
F11b Compliance with Advance Ruling		1 = Yes 2 = No			
F11c Material difference in arrangement		1 = Yes 2 = No			
F12a Has Advance Pricing Arrangement (if 'Yes', also complete items F12b and F12c)		1 = Yes 2 = No			
F12b Compliance with Advance Pricing Arrangement		1 = Yes 2 = No			
F12c Material difference in arrangement		1 = Yes 2 = No			
F13 Financial particulars of company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F14 Has subsidiary company(ies) or related company(ies) in the Federal Territory of Labuan		1 = Yes 2 = No (if 'Yes',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PART G: OTHER PARTICULARS			
G1 Chargeable income of preceding year not declared (if any)			
Type of Income	Year of Assessment	Amount	
G2	Made payments in the basis period which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 under sections 107A, 109, 109A, 109B, 109E, 109F and 109G	1 = Yes	2 = No
G3a	Disposal of asset under the Real Property Gains Tax Act 1976 (If 'Yes', also complete item G3b)	1 = Yes	2 = No
G3b	Disposal declared to LHDNM	1 = Yes	2 = No
G4a	Carry on e-Commerce (If 'Yes', also complete item G4b)	1 = Yes	2 = No
G4b	Website / blog address		
G5a	Subject to Income Tax (Country-by-Country Reporting) Rules 2016 (If 'Yes', also complete item G5b)	1 = Yes	2 = No
G5b	Subject as a reporting entity / non-reporting entity	1 = Yes - Reporting entity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2 = No - Non-reporting entity (Fill in the required appendix)	
G6	Has financial account(s) at financial institution(s) outside Malaysia	1 = Yes	2 = No
PART H: PARTICULARS OF AUDITOR			
H1	Name of firm		
H2	Address of firm		
	Postcode	Town	
	State		
H3	Business registration no.		
H4	E-mail		
H5	Telephone no.	-	
PART J: PARTICULARS OF THE FIRM AND SIGNATURE OF THE PERSON WHO COMPLETES THIS RETURN FORM			
J1	Name of firm		
J2	Address of firm		
	Postcode	Town	
	State		
J3	Business registration no.	J4	Tax agent's approval no.
J5	E-mail		
J6	Telephone no.	J7	Signature

	FORM C (RK-T) [Amend. 2011]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GROUP RELIEF FORM FOR CLAIMANT COMPANY (Section 44A of the Income Tax Act 1967) This form is prescribed under section 152 of the Income Tax Act 1967 YEAR OF ASSESSMENT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p>A. This form must be completed and furnished together with the Form C by the company claiming the loss under the Group Relief provision.</p> <p>B. This form shall become part of the Form C pursuant to section 77A of the Income Tax Act 1967.</p> <p>C. Letter of authority [verified copy of Form C (RK-S)] from each surrendering company must be retained for examination by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p> <p>D. Use separate forms if the number of companies surrendering the loss exceeds five (5) companies.</p>																																													
<p>1. Particulars Of The Company Claiming The Loss</p> <p>(a) Name of Company <input style="width: 480px;" type="text"/></p> <p>(b) Income Tax No. <input style="width: 180px;" type="text"/></p> <p>(c) Basis Period From <input style="width: 180px;" type="text"/> To <input style="width: 180px;" type="text"/></p>																																													
<p>2. Particulars Of The Company Surrendering The Loss</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Order of Priority</th> <th rowspan="2">Income Tax No.</th> <th rowspan="2">Name of Surrendering Company</th> <th colspan="2">Basis Period</th> <th rowspan="2">Amount Surrendered (RM)</th> </tr> <tr> <th>From</th> <th>To</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right;">TOTAL:</td> <td> </td> </tr> </tbody> </table>		Order of Priority	Income Tax No.	Name of Surrendering Company	Basis Period		Amount Surrendered (RM)	From	To																															TOTAL:					
Order of Priority	Income Tax No.				Name of Surrendering Company	Basis Period		Amount Surrendered (RM)																																					
		From	To																																										
TOTAL:																																													
DECLARATION																																													
<p>I <input style="width: 600px;" type="text"/></p> <p>Identity Card / Passport No. * <input style="width: 180px;" type="text"/> <small>* Delete whichever is not relevant</small></p> <p>by means of authority vested under subsection 75(1) of the Income Tax Act 1967, hereby declare that this form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true, complete and correct as required under the Income Tax Act 1967 and the conditions for the claim of loss under section 44A of the same Act have been complied with, and the election made by the company is final and irrevocable.</p>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Date	<input style="width: 180px;" type="text"/> Designation	<input style="width: 180px;" type="text"/> Signature																																											



FORM C (RK-S) [Amend. 2011]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GROUP RELIEF FORM FOR SURRENDERING COMPANY
 (Section 44A of the Income Tax Act 1967)

This Form is prescribed under section 152 of the Income Tax Act 1967

YEAR OF ASSESSMENT

- A. This form must be completed and furnished together with the Form C by the company surrendering the loss under the Group Relief provision.**
- B. This form shall become part of the Form C pursuant to section 77A of the Income Tax Act 1967.**
- C. This form is acceptable as a letter of authority if completed and duly signed by the surrendering company official as stated in subsection 75(1) of the same Act. Hence, a verified copy of Form C (RK-S) has to be prepared for each claimant company.**
- D. Use separate forms if the number of companies claiming the loss exceeds five (5) companies.**

1. Particulars Of The Company Surrendering The Loss

- (a) Name of Company
- (b) Income Tax No.
- (c) Basis Period From To

2. Particulars Of The Company Claiming The Loss

Order of Priority	Income Tax No.	Name of Claimant Company	Basis Period		Amount Claimed (RM)
			From	To	
TOTAL:					

DECLARATION

I

Identity Card / Passport No. *
 * Delete whichever is not relevant

by means of authority vested under subsection 75(1) of the Income Tax Act 1967, hereby declare that this form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true, complete and correct as required under the Income Tax Act 1967 and the conditions for the surrender of loss under section 44A of the same Act have been complied with, and the election made by the company is final and irrevocable.

Date Designation Signature

라. 위반 및 가산세

「소득세법(ITA)」에 따라 적용되는 주요 위반 및 처벌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II-7〉 주요 위반 내용 및 처벌

위반 내용	가산세
합당한 사유 없이 소득세 신고나 과징금 납부 불이행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유죄 판결 시] 또는 납부세액의 300%[기소 유예 시]
소득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	1천링깃 이상 1만링깃 이하의 가산세와 과소납부된 세액의 200%[유죄 판결 시] 또는 과소납부된 세액의 100%[기소 유예 시]
지연납부	미납세액의 10%를 가산함
세액 분할납부의 지연납부	분할납부 연체금액의 10%
예납세액의 과소납부(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예납세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차액의 10%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마.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return)

말레이시아에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각 회사는 별도의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룹 공제제도(group relief system)에 의하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첫 12개월 기준 기간을 종료된 후 3년간 당해연도의 조정 결손금의 최대 70%까지 이익이 발생한 한 개 이상의 관계사(related company)에 이전할 수 있다. 그룹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법인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시작일 기준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 이상일 것
- 동일한 회계연도를 사용하고 있어야 함
- 그룹 공제를 신청하는 과세기간뿐 아니라 직전 12개월까지 관계사(related company)여야 함

위의 사항은 현재 개척자(pioneer) 자격, 투자세액 공제, 재투자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투자세액공제 인센티브나 개척자 자격 인센티브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투자세 공제액이나 사용하지 않은 개척자 결손금이 있을 때도 그룹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III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1. 이전가격 규정

가. 「소득세법」⁶⁴⁾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140A장(Section 140A of the Income Tax Act)은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0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 모든 자와의 거래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납세자는 동기화(contemporaneous)된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문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나. 「소득세법(이전가격) 규칙」 2012⁶⁵⁾

이 규칙은 「소득세법」 140A장(Section 140A of the Income Tax Act)의 이행에 관한 범위와 절차를 과세범위와 절차를 제공하도록 2012년에 도입, 수행하도록 했다.

다. 이전가격 가이드라인⁶⁶⁾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Malaysian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이하 MTPG)의 목적은 「소득세법」 140A장(Section 140A of the Income Tax Act)과 이전가격 규정에 대한 행정 요구 사항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2012년 7월에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발표, 이는 2003년 7월에 발표된 기존 이전가격 규정에 우선한다. 이후 2017년 7월, 2018년 11월, 2021년 2월에 갱신되었다.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크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017(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17, 이하

64)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gislation,"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3&bt_unit=1&bt_sequ=2, 검색일자: 2021. 10. 28.

65)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gislation,"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20&bt_posi=1&bt_unit=1&bt_sequ=3, 검색일자: 2021. 10. 28.

66)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gislation,"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20&bt_posi=1&bt_unit=1&bt_sequ=3, 검색일자: 2021. 10. 28.

OECD Guidelines)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OECD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지만, 「소득세법」, 국제청제도, 국내 정세를 반영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라.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

말레이시아는 이전가격을 설명할 때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기본으로 한다.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 기술하는 기본에 따르면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가격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허용된다. 정상가격이란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거래되는 정상적인 거래 가격(An arm's length price)이라고 볼 수 있다.

2. 지배(Control)의 정의

가. 지배와 특수관계자의 의미

〈표 2-III-1〉 지배와 특수관계자의 규정항목

규정 항목 또는 가이드라인	정의
「소득세법」 2(4)항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139항	직간접적으로 회사업무를 통제하거나 발행한 자사주를 매입 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득세법」 140A(5A)항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20~50% 보유하고,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할 때에 해당한다. i. 무형 자산 지배(Intangible property control) - 타 회사에서 받은 무형 자산에 의존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ii. 사업 활동 지배(Business activities control) - 본 회사의 사업 활동이 타 회사에 의해 결정되거나 가격 및 조건이 타 회사의 의사에 영향을 받는 경우 iii. 경영 지배(Management control) - 한 명, 그 이상의 이사 또는 이사진 구성원이 다른 회사에 의해 임명될 경우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MTPG)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영, 통제, 자본에 관계되어 있거나, 동일인이 두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영, 통제, 자본에 관계되어 있을 때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앞에서 설명한 지배에 대한 의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특수거래가 있는 납세자라면 말레이시아의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이전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 가능성 분석 항목

가. 허용되는 이전가격 산출 방법

전통적 거래방법과 거래이익 방법을 신뢰할 만한 비교가능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무부 장관은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독립기업 간에 합의한 다른 방법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는 주 요인

- 1) 제품 및 용역 특성
- 2) 기능, 자산, 위험도
- 3) 비즈니스 전략
- 4) 계약 조건
- 5) 경제 상황

다. 이전가격 산출방법-일반적인 적용법

〈표 2-III-2〉 이전가격 산출방법-일반적인 적용법

세부 사항	비교가능 제3자 가격(CUP)	재판매 가격 (RPM)	원가 가산 (Cost plus method)	이익분할 (PSM)	거래 순이익률 (TNMM)
비교 대상	가격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Gross profit)	매출총이익 또는 순이익	순이익 (Net profit)
관련 부분	N/A	매출	매출원가	비용, 매출, 자산	비용, 매출, 자산
주요 적용 대상	원자재, 대여금, 로열티	유통업자	계약 제조업체 또는 용역 공급자	이중 기업(Dual entrepreneur)	구분 없음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라. 비교가능성 분석 - 주요 고려 사항

〈표 2-III-3〉 비교가능성 분석-주요 고려 사항

세부사항	고려 사항
비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화(contemporaneous)된 문서 - 납세자의 단일 연도 결과와 비교 대상의 가중평균을 비교(일반적으로 관행화된 접근법) • 국세청에 의한 감사-납세자와 비교 대상자 간의 전년 대비 비교
정상가격 범위 (Arm's length range)	정상가격 결과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또는 범위 내 지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정상가격 결과 중 중위값(median point)을 참고한다.
분리 또는 통합 거래	거래별 분석을 기업 수준의 총계분석보다 더 선호한다.
테스트 대상자 및 비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테스트 대상자 및 현지 비교 대상자-국세청이 선호 • 해외 테스트 대상자 및 해외 비교 대상자-다음과 같은 문서가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다면 특정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허용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테스트 대상자의 이전가격문서 ✓ 테스트 대상자의 감사재무제표 ✓ 비교 대상자의 감사재무제표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4. 그룹 내 용역(Intragroup services)

가. 그룹 내 용역이란

그룹 내 용역이란 그룹 내에서 하나 이상의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용역에는 관리 서비스, 기술 및 지원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룹 내 용역은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거나 그룹의 비즈니스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기도 한다.

〈표 2-III-4〉 그룹 내 용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활동

주주 활동	일반적으로 한 지배기업이 하나 이상의 그룹 계열사에 대해 소유 지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 즉 주주 자격으로서의 활동을 말한다(예: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 지배기업의 보고 요구사항과 관련된 활동).
중복 활동	한 그룹의 계열사가 이미 다른 그룹 내 계열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중복하여 하게 된다거나,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업무를 중복해서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표 2-III-4〉의 계속

부수적인 혜택이 있는 활동	한 그룹의 계열사가 그룹 내에 특정한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부수적으로 다른 그룹 계열사에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한다(수동적인 연관성, 예: 어떤 기업이 다국적기업의 한 계열사이기 때문에 높은 신용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함. 다른 계열사가 이 기업에 명시적인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아진 것이 아님).
온 콜 서비스(on-call services)	쉽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역으로 이러한 용역으로 파생하는 이익이 없는 경우의 용역 활동이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나. 그룹 내 용역에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

그룹 내 용역에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할 때, 납세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그룹 내 용역)가 수행되었는지의 여부
- 수행되었다면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이 책정됐는지 여부

〈표 2-III-5〉 그룹 내 용역의 판단기준

이익(benefit)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수취자가 경제적 또는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예: 비용 절감 • 용역 수취자가 비슷한 용역을 받기 위해 외부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거나 내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용을 감당할 의사가 충분한 경우
-----------------	---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다. 그룹 내 용역의 비용 부과 방법

직접 청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용역 수취자, 발생 비용, 요금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적용 가능 • 용역 제공자가 외부 기업을 위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
간접 청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청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 비용이 여러 관계자에게 분배되어 정확한 구별이 어려울 때, 예: 모회사의 본사 서비스(전략관리, 재무, 인사, 정보기술 및 기타지원 서비스)를 모든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용역 비용의 배분은 용역의 성격과 목적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출액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납세자가 매출과 비용의 상관관계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라. 그룹 내 용역의 정상가격 결정

그룹 내 용역에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역 제공자와 수취자 모두의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용역 제공자가 정상가격에 따라 중간이윤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수취자 관점에서 행해지는 이익 테스트를 통해서도 입증되어야 한다.

이전가격 산출 방법

용역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 원가 기초방법(원가 가산방법(Cost Plus method) 또는 거래 순이익률 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용역 수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 테스트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5. 무형 자산(Intangibles)

국세청은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세부 과제 8-10에 따라 2017년에 무형자산을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내에 새로 포함하였다.

국세청(IRB)은 로열티에 집중해서 자세히 조사하는 편이다. 회사 내 라이선스의 사용(예: 현지 맞춤), 이익 테스트, 라이선스 기술의 유효기간과 관련성을 본다.

6. 그룹 내 금융

가. 금융지원의 종류

그룹 내 금융은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용역으로, 그룹 내 금융거래는 이전가격규정에 적용된다. 금융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표 2-Ⅲ-6〉 금융지원의 종류

대여금(Loans)	기업 간 신용	선급금	회사보증
말레이시아의 회사가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빌린 자금.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합의된 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가 구매하고 구입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약정, 즉 연체 시 이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약정.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단기 금융,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특수관계자가 채무불이행할 경우 보증인이 대출기관(은행)에 상환하는 약정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나. 가장 적절한 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상가격 이자율을 제공한다. 정상가격 이자율을 결정할 때 쿠알라룸푸르 은행 간 금리(Kuala Lumpur Inter Bank Offered Rate)나 은행에서 제공한 주요 금리 및 비교 대출 금리와 같은 적절한 지수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비교가능성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기준으로 사용된 금리를 조정하여 정상가격 이자율에 도달해야 한다.

7. 이전가격 문서

가.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문서의 요구사항-로컬 파일(Local file)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납세자는 동기화(contemporaneous)된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문서, 즉 로컬파일을 구비해야 한다. 동기화(contemporaneous)된 문서의 의미는 매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이전가격 문서를 적시에 구비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유·무형 자산 및 서비스 혹은 자금거래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완전준수 이전가격 문서(full transfer pricing report)를 구비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부분적준수 이전가격 문서(minimum transfer pricing report)로 선택하여 구비할 수 있다.

1) 이전가격 문서의 종류의 구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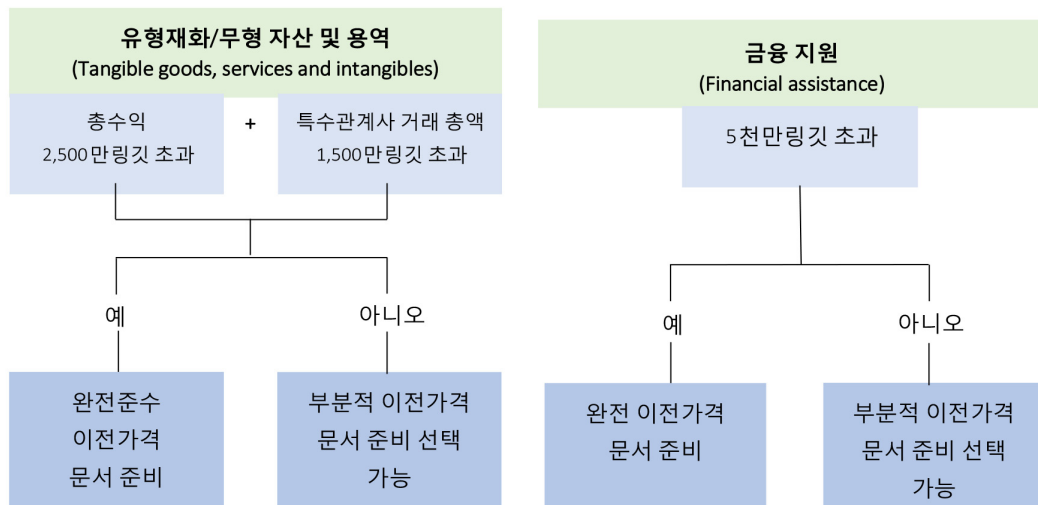
완전준수 이전가격 문서 혹은 부분적준수 이전가격 문서의 구비 기준은 기업의 총수익이

2,500만링깃을 초과하고 유무형 자산 및 용역에 대한 특수관계사 거래의 총액이 1,500만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완전준수 문서를 구비해야 하며, 두 조건 중 한 조건에만 해당하는 경우 부분적준수 문서 구비로 선택이 가능하다.

금융거래에 대한 특수관계사 거래는 5천만링깃이 초과하는 경우 완전준수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해야 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부분적준수 이전가격 문서 구비로 선택이 가능하다.

부분적준수 문서의 내용은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⁶⁷⁾에 나와 있으며, 정상가격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 기관의 벤치마킹 연구(benchmarking analysis)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2-III-1] 이전가격 문서 종류의 구비기준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국내외 거래 모두 이전가격규정을 적용받으며, 이전가격 문서는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 경제적 분석(Financial Update) 갱신 요건

경제적 분석(Financial Update)은 기업의 운영 조건과 사업 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매년이 아닌 3년마다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선정된 비교대상 및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정보, 즉 벤치마킹 분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6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gislation,"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20&bt_posi=1&bt_unit=1&bt_sequ=3, 검색일자: 2021. 10. 28.

다만 정상가격원칙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벤치마킹 분석자료를 검토하고 갱신해야 한다.

나. 이전가격 문서의 주요 내용

이전가격 문서에는 다음에 설명된 기록과 문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목록은 전체 목록이 아니며, 전체목록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⁶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IRB)에서는 경우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표 2-III-7〉 이전가격 문서의 주요 내용

내용	완전준수 이전가격 문서	부분적준수 이전가격 문서	경제적 분석(Financial Update) 갱신
기업구조 및 비즈니스 개요	✓	✓	✓
특수관계자거래 및 가격정책에 대한 설명	✓	✓	✓
회사업무의 산업 개요	✓	✓	✓
관계자 간 특수거래의 기능적 분석	✓	✓	✓
가장 적절한 방법의 선택	✓	✓	✓
벤치마킹 연구	✓	✓	✓
정상가격 분석의 결론	✓	✓	✓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상기 사항 외에도 납세자는 관련 약정서(contract note), 계약서, 서신과 같이 이전가격 분석에 관련된 보충 자료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모든 관련 문서는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제공해야 한다.

다. 이전가격 문서의 제출

소득세 신고시에는 이전가격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동기화(contemporaneous)된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문서 구비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으며, 국세청의 요구가 있을 때 14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문서는 7년 동안 유지하고 보관해야 한다.

68)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gislation, “exhaustive list of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http://dev.hasil.gov.my/en/international/transfer-pricing/chapter-xi-documentation/112-transfer-pricing-documentation>, Transfer Pricing |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검색일자: 2021. 10. 28.

8. 이전가격의 감사(Transfer pricing audit)

가. 이전가격 감사의 종류

국세청은 2013년 4월 1일 이전가격 감사 프레임워크(Transfer Pricing Audit Framework⁶⁹), TPAF)를 발행하고 이후 2019년 12월 15일에 개정하였다. 이전가격 감사의 주요 목적은 납세자가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전가격 감사의 공소시효는 평가연도 7년간이다. 그러나 사기(fraud), 탈루(willful default), 과실(negligence)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가격 감사의 선정은 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에 중요성 기준을 두고 있다.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타 유형에는 반복적인 손실, 사업구조조정, 과거 이전가격 감사 사실 여부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전가격 감사에는 데스크 감사(desk audit)와 현장 감사(field audit)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전가격 감사의 프로세스

정보 요청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및 문서(이전가격 보고서 포함)는 공식 서신을 통해 요청됨 납세자는 서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해야 함
감사 방문(현장 감사에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 방문 4~5일보다 짧거나 연장될 수 있음 비즈니스 설명(데스크 감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 주요 부서 직원과의 인터뷰 회계 기록, 송장, 증빙 자료에 대한 현장 조사
첫 번째 회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첫 번째 회의 진행 감사인 방문 중에 수집된 정보와 필요한 추가 문서를 기반으로 한 국세청의 관찰내용을 납세자에게 통보
국세청과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는 국세청의 관찰내용과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해 답변
감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이 감사 결과를 서신을 통해 발행 납세자는 18일 이내에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공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추가 평가 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이 추가평가서(JA양식)와 최종 서신을 발행
추가 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납세액 및 벌금(이 있을 경우)을 JA양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69)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https://phl.hasil.gov.my/pdf/pdfam/TRANSFER_PRICING_AUDIT_FRAMEWORK_2019.pdf, 검색일자: 2021. 10. 28.

나. 자진 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

납세자는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자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전면 감사의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음
- 잠재적인 벌금 및 추가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됨

9. 벌금 및 추징금

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이전가격 감사

이전가격 조정금액의 5% 이하의 추징금(Surcharge)이 부과된다.

추징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감사가 시작되는 한 이전 연도에도 적용된다.

나. 이전가격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벌금

이전가격 문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벌금은 평가연도당 2만링깃에서 10만링깃까지 부과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납세자도 기소하여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이전가격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벌금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이전가격 문서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로,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평가연도와는 관계가 없다.

다. 지연 납부 벌금

납기일까지 납세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납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미납액 및 벌금이 60일을 초과하여 미납된 경우, 미납액과 벌금의 5%가 추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IV 간접세

1. 말레이시아 관세의 종류

말레이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에 다음과 같은 관세와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 수입관세(Import duty)
- 판매세(Sales tax)
- 소비세(Excise duty)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 세이프가드 관세(Safeguard duty)

가. 수입관세(Import duty)

수입관세는 1999년 「관세법(과세표준 규칙) 규정(Customs(Rules of Valuation) Regulations 1999, CVR)」⁷⁰⁾에 따라 결정된 재화의 과세가격에 부과되며, 통관 시 관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수입관세율은 수입재화의 세번기준(HS)에 따라 0%에서 60%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사항은 2017년 「관세법 시행령(Customs Duties Order 2017, CDO)」⁷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수입 시 재화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세금의 유형이다.

나. 소비세(Excise duty)

소비세는 말레이시아 국내 제조품 또는 수입한 특정 재화에 대해 종가세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2017년 「소비세법 시행령(Excise Duties Order 2017)」⁷²⁾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세율에 따라 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수입 재화의 경우 CVR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에 부과되고 국내 제조품의 경우 공장 출고액에 부과된다.

70)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Customs(Rules of Valuation) Regulations 1999," http://www.customs.gov.my/en/pg/Pages/pg_act.aspx, 검색일자: 2021. 10. 28.

71)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Customs Duties Order 2017," [http://mytraderepository.customs.gov.my/en/PIA%20Documents/P.U.\(A\)%205%20-%20Perintah%20Duti%20Kastam%202017.pdf](http://mytraderepository.customs.gov.my/en/PIA%20Documents/P.U.(A)%205%20-%20Perintah%20Duti%20Kastam%202017.pdf), 검색일자: 2021. 10. 28.

72)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Excise Duties Order 2017," http://www.customs.gov.my/en/pg/Pages/pg_prtheksais.aspx, 검색일자: 2021. 10. 28.

소비세가 적용되는 재화는 다음과 같다.

- 주류(Liquor)
- 담배 및 담배 제품(Cigarettes, tobacco and tobacco products)
- 차량(Motor vehicles)
- 플레이잉 카드(Playing cards)
- 마작 타일(Mahjong tiles)
- 특정 설탕가당음료(Specific sugar-sweetened beverages)

다. 판매세(Sales tax)

판매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
-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sold), 사용(used) 및 폐기(disposed)하는 재화

판매세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화에 대해 10% 세율로 부과된다.

- 2018년 판매세(세율) 시행령의 부속규칙 제1조 또는 제2조(First schedule or Second Schedule of the Sales tax(Rate of Tax) Order 2018)⁷³⁾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에 5% 또는 특정 세율로 판매세가 부과되는 경우
- 2018년 판매세(세금 면제 상품) 시행령(Sales tax(Goods Exempted from Tax) Order 2018)⁷⁴⁾에 따라 판매세가 면제되는 경우

판매세는 과세가격, 수입관세, 소비세를 합한 총액에 부과된다.

판매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73)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Orders, Sales tax(Rate of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Orders>, 검색일자: 2021. 10. 28.

74)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Orders, Sales tax(Goods Exempted from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Orders>, 검색일자: 2021. 10. 28.

2. 재화의 분류(Classification of goods)

재화에 대한 관세의 적용은 재화의 세번기준(HS)에 따라 달라진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967년 「관세법(Customs Act 1967, CA)」⁷⁵⁾에 따라 제정된 CDO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규칙을 통해 재화를 분류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s)가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즉 HS 부호체계)의 분류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동일하다.

말레이시아는 10자리 HS 부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수출입 목적의 경우 재화를 적절하게 분류하기 위해서(상품의 적절한 설명과 함께) 10자리 HS 코드가 필요하다. 첫 6자리 HS 코드는 모든 국가에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코드이고, 마지막 4자리는 말레이시아 고유의 코드이다.

3. 수입관세 경감제도

재화 수입 시 부과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관세인 수입관세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내 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입관세 경감제도가 있다. 말레이시아 수입관세 경감제도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관세법(면제) 시행령(Customs Duties(Exemption) Order 2017)」⁷⁶⁾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 CA 제14(2)항⁷⁷⁾에 따라 재무 장관이 부여한 특정 면제
- 보세창고(Bonded warehouses)
- 허가받은 제조 보세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LMW)
- 자유구역(Free zones)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 관세환급(Drawback)

75)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Customs Act 1967," <http://www.customs.gov.my/ms/PERUNDANGAN%20GAZETTE/CUSTOMS%20ACT%201967.pdf>, 검색일자: 2021. 10. 28.

76) Federal Legislation Portal Malaysia, "Attorney General Chamber's of Malaysia - Customs Duties (Exemption) Order 2017," <https://lom.agc.gov.my/search.php?search=P.U.+%28A%29+445%2F2017&type=pua&sorting=oldest&lookup=all>, 검색일자: 2021. 10. 28.

77)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Customs Act 1967," <http://www.customs.gov.my/ms/PERUNDANGAN%20GAZETTE/CUSTOMS%20ACT%201967.pdf>, 검색일자: 2021. 10. 28.

4. 공통 세관 신고서

- Customs Form No. 1 (“K1”) - 말레이시아로 수입 시 신고
- Customs Form No. 2 (“K2”) - 해외로 수출 시 신고
- Customs Form No. 8 (“K8”) - 화물을 운송할 때 신고
- Customs Form No. 9 (“K9”) - 보세창고 또는 LMW로부터 물품을 부분 수입할 때 신고

5.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

가.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 개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시행 중인 간접세는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이다. 일반적으로 SST(Sales tax and Service tax, SST)로 통칭해서 언급되지만 이는 두 가지 별개의 소비세이다. 말레이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과세 대상 재화와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제조한 과세 대상 재화에 판매세(Sales tax)가 부과되고, 특별히 규정된 과세 대상 서비스에 서비스세(Service tax)가 부과된다. 2018년 9월 1일부터 이 두 가지 세금을 도입하였다.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던 물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를 대체하도록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를 도입했다.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이지만 기존 GST 제도와 적용 방법이 크게 다르다. 주요 차이점은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는 GST의 다단계 원칙과 다르게 단일 단계 소비세라는 점이다. 이는 GST의 핵심 원칙이었던 매입세액공제제도(input tax credit mechanism)가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입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 모두 공급망 내 이중과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면제(exemptions)와 경감제도(relief facilities)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거래 성격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RMCD)은 세금을 관리할 때 세법과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담아 발행하는 지침(guidance documents)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또한 특정 서비스(specific service),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 면제 부여(grant exemptions)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장관 정책(Ministerial policies)을 수시로 발행한다. 이러한 잦은 변경에 대한 지침(Guides)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납세자가 세법 적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현행 SST 제도는 입법과 실무 영역에서 모두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당국과 기업의 지속적인 세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6. 판매세(Sales tax)

가. 판매세(Sales tax)의 범위

판매세(Sales tax)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해 단일 단계에서 과세된다.

-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가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sold), 사용(used) 및 폐기(disposed)하는 재화
- 말레이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

판매세(Sales tax)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화에 대해 10% 세율로 부과된다.

- 2018년 판매세(세율) 시행령의 부속규칙 제1조 또는 제2조(First Schedule or Second Schedule of the Sales Tax(Rate of Tax) Order 2018)⁷⁸⁾에서 규정하는 재화에 5% 또는 특정 세율로 부과되는 경우 또는
- 2018년 판매세(세금 면제 상품) 시행령(Sales Tax(Goods Exempted from Tax) Order 2018)⁷⁹⁾에 따라 판매세가 면제되는 경우

말레이시아 HS 코드 또는 관세 코드에 따라 재화에 대한 판매세 세율을 결정한다.

나. 판매세 사업자등록(Sales Tax Registration)

과세 대상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사(manufacturer of taxable goods)는 판매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78)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Orders, Sales tax(Rate of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Orders>, 검색일자: 2021. 10. 28, pp. 4~57.

79)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Orders, Sales tax(Goods Exempted from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Orders>, 검색일자: 2021. 10. 28, pp. 6~319.

판매세 목적상 제조(manufactur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석유(petroleum)를 제외하고 수동(manual) 또는 기계적인 방법(mechanical means)으로 크기(size), 형태(shape), 구성(composition), 성질(nature), 품질(quality)을 변경하여 유기물질(organic material) 또는 무기물질(inorganic material)을 새로운 제품으로 변환(conversion)하는 것과 기계(machinery)나 기타 제품(other products)을 조립(assembly)하는 것까지 제조의 정의로 포함한다. 다만 건설(construction) 목적으로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installation)하는 것은 제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석유(petroleum)와 관련하여 석유화학 스트림(petrochemical streams) 또는 정제 스트림(refinery streams) 중 분리(separation), 변환(conversion), 정화(purification), 혼합(blending)을 포함하는 정제 과정(process of refining)을 제조로 정의한다.

과세 대상 재화(taxable goods)를 생산하는 제조사의 12개월 동안 매출액이 50만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는 판매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거 방법(Historical method) 또는 미래 방법(Future method)을 기초로 12개월 기간(12-month period)을 계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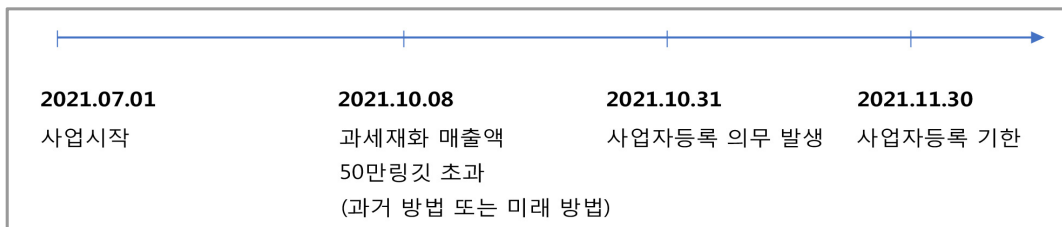
- 과거 방법(Historical method): 해당 월과 직전 11개월의 과세 대상 재화의 매출 총액
- 미래 방법(Future method): 해당 월과 그다음 11개월의 과세 대상 재화 매출 총액

과세 대상의 재화에 대해 하도급 업무(sub-contract work)를 수행하는 제조사는 수행한 용역 매출이 12개월 동안 50만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발적 사업자등록(Voluntary registration)은 관세청장의 재량에 따르며, 지점(branch/division)에 대한 판매세 사업자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매세 사업자등록은 관세청 포털의 SST-01 사업자등록 신청서(Form SST-01)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다음 별첨 참조).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림 2-IV-1] 판매세 사업자등록 타임라인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별첨] 사업자등록 신청서(Form SST-01)⁸⁰⁾

SST-01



**JABATAN KASTAM DIRAJA MALAYSIA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PERMOHONAN PENDAFTARAN CUKAI JUALAN DAN CUKAI PERKHIDMATAN
APPLICATION FOR SALES TAX AND SERVICE TAX REGISTRATION**

Nota Penting (Important Notes)

- Sila isikan borang ini menggunakan **HURUF BESAR** sahaja.
Please fill in this form using **BLOCK LETTERS** only.
- Sila rujuk **Panduan Mengisi Borang Pendaftaran SST-01**.
Please refer to **SST-01 Registration Form Guidelines**.
- Sila rujuk **Kod Tariff Kastam** bagi mengisi butiran kod tariff bagi barangan siap untuk Cukai Jualan.
Please refer to the Custom Tariff Code to fill in the tariff code of finished goods for Sales Tax.
- Ruangan yang bertanda (*) adalah wajib diisi.
Column with (*) is a mandatory field.
- Sila tandakan (X) dalam petak yang berkenaan.
Please tick (X) accordingly.
- Sila hubungi Pusat Panggilan Kastam di talian 1-300-88-8500 / 03-78067200 atau emel ccc@customs.gov.my untuk pertanyaan lanjut.
Please contact Customs Call Center at 1-300-88-8500 / 03-78067200 or email ccc@customs.gov.my for further enquiry.

**BAHAGIAN A : MAKLUMAT PERNIAGAAN
PART A : BUSINESS PARTICULARS**

Jenis permohonan pendaftaran / Type of registration application

CUKAI JUALAN / SALES TAX
 CUKAI PERKHIDMATAN / SERVICE TAX

PENDAFTARAN SUKARELA – Bawah Nilai Jualan Barang / Perkhidmatan Bercukai / Aktiviti Yang Dikecualikan
 VOLUNTARY REGISTRATION – Below Sale Value Of Taxable Goods / Service / Exempted Activities

- Sila isikan maklumat berkaitan:
Please fill in relevant details:
 - No. Pendaftaran GST.
GST Registration No.
 - No. Pendaftaran Cukai Pelancongan
Tourism Tax Registration No.
 - No. Rujukan Cukai Pendapatan
Income Tax Reference No.
- No. Rujukan Audit Kastam (jika berkaitan)
Customs Audit Reference No. (if any)
- Jika permohonan disebabkan oleh penggantian perniagaan pengilang berdaftar, sila isikan tarikh penggantian, nombor daftar dan nama pengilang berdaftar terdahulu.
If the application is due to the registered manufacturer's business succeeded, please fill in the date of succession,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previous registered manufacturer's name.
- Jenis Perniagaan* : (Sila tandakan (X) petak yang berkenaan)
Business Types* (Please tick (X) accordingly)

a) Milikan Tunggal Sole-Proprietorship <input type="checkbox"/>	f) Syarikat Berhad Limited Company <input type="checkbox"/>
b) Rakan Kongsi Partnership <input type="checkbox"/>	g) Perubuhan Association <input type="checkbox"/>
c) Syarikat Sendirian Berhad Private Limited Company <input type="checkbox"/>	h) Lain-lain Others <input type="checkbox"/>
d) Bahagian atau Cawangan Division or Branch <input type="checkbox"/>	
e) Perkongsian Liabiliti Terha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nput type="checkbox"/>	

80)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Regulations, Third Schedule of the Sales Tax(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5) No. Pendaftaran Perniagaan atau No. Kad Pengenalan *
Business Registration No. or Identity Card No.*

6) Nama dan Alamat Berdaftar Perniagaan.*
Name and Registered Address of Business.*

7) Nama Perdagangan
Trade Name

8) Alamat Tempat Pengilangan
Place of Manufacturing Address

9) Nama dan Alamat Cawangan
(jika ada)
Name and Branch Address
(If any)

10) Alamat Surat Menyurat Perniagaan (jika berlainan dari item 6)
Correspondence Address of Business (if different from item 6)

11) No. Telefon.*
Telephone No.*

12) No. Faks.
Fax No.

13) Alamat E-mel *
Email Address *

14) Senarai Maklumat Pengarah / Pemilik Perniagaan.*
Details of Director / Owner.*

(a) Bil. No.	(b) Nama * Name *	(c) Alamat Terkini * Current Address *	(d) No. Tel.* Tel. No.*	(e) No. Kad Pengenalan* Passport / Identity Card / Passport No.*	(f) Warganegara* Nationality *	(g) Tarikh Lantikan* Appointment Date*

**BAHAGIAN B : BUTIRAN PENGILANGAN/ PERKHIDMATAN
PART B : MANUFACTURING / SERVICE DETAILS**

15) Senarai Barang Siap / Perkhidmatan Bercukai
List of Taxable Finished Goods / Service:

a) (1) Nama Barangan Siap* dan (2) Kod Tariff*
(1) Finished Goods* and (2) Tariff Code*

i. (1)
(2) [][][][][] [][] [][][][][]

ii. (1)
(2) [][][][][] [][] [][][][][]

b) Tandakan (X) jika ada membuat kerja subkontrak*
Tick (X) for subcontract work*

(1) Nama Barangan Siap* dan (2) Kod Tariff*
(1) Finished Goods* and (2) Tariff Code*

i. (1)
(2) [][][][][] [][] [][][][][]

ii. (1)
(2) [][][][][] [][] [][][][][]

c) (1) Pilih Kumpulan Perkhidmatan berkaitan (Rujuk Lampiran A)*
Select relevant Service Group (Refer to Annex A)
(2) Jelaskan Perkhidmatan (Jika Perlu)
Specify Service (If required)

(1) [][][][][] [][] [][][][][]

(2)

(1) [][][][][] [][] [][][][][]

(2)

16) Isi maklumat berkaitan:
Fill in relevant details:

	(Hari) (Day)	(Bulan) (Month)	(Tahun) (Year)
a) Tarikh Mula Perniagaan * Business Commencement Date*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b) Tarikh Mula Pengilangan / Perkhidmatan * Manufacturing / Service Commencement Date*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c) Tarikh Mencapai Nilai Jualan Barang Bercukai / Nilai Kerja Yang Dilakukan / Perkhidmatan Bercukai Date of Achieving Sale Value of Taxable Goods / Value of Work Performed / Value of Taxable Service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17) Jumlah Nilai Jualan Barang Bercukai / Nilai Kerja Yang Dilakukan / Nilai Perkhidmatan Bercukai Tahunan *
Total Annual Value of Taxable Goods Sale / Value of Work Performed / Value of Taxable Service *

RM

18) Barang-barang dijual / dilupuskan dengan cara berikut.*
Goods sold or disposed of by :

(Nyatakan peratusan (%) jualan / pelupusan)
(Indicate percentage (%) of goods sold or disposed of)

a) Jualan Tempatan Local Sales	<input type="text"/>
b) Eksport Export	<input type="text"/>
c) Jualan ke Kawasan Khas / Kawasan Ditetapkan Sale to Special Areas / Designated Areas	<input type="text"/>
d) Lain-lain (nyatakan) Others (specify)	<input type="text"/>

19) Bulan Kewangan Tahunan Berakhir.*
Financial Year End Month.*

(bulan)
(month)

BAHAGIAN C : AKUAN PEMOHON
PART C : APPLICANT DECLARATIONS

20) Saya, mengaku bahawa maklumat dinyatakan dalam borang ini dan dokumen sokongan disertakan adalah benar dan lengkap.
I, hereby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stated in this form and any supporting documents furnished as true and complete.

Tarikh / Date

/ /

(hari) (day) (bulan) (month) (tahun) (year)

.....
Tandatangan Pemohon *
Applicant Signature *

21) Nama Pemohon *
Name of Applicant *

22) No. Kad Pengenalan / Passport *
Identity Card / Passport No. *

23) Jawatan *
Designation *

24) No Telefon *
Telephone No*

BAHAGIAN D : UNTUK KEGUNAAN PEJABAT
PART D : FOR OFFICIAL USE

25) Pendaftaran diluluskan / Ditolak (Potong yang tidak berkenaan).
Registration Approved / Rejected (Strike if not applicable)

Tarikh / Date

/ /

(Hari) (Day) (Bulan) (Month) (Tahun) (Year)

.....
Tandatangan Pelulus
Approver's Signature

다. 판매세 신고(Accounting for Sales Tax)

1) 수입 재화(Imported Goods)

말레이시아로 수입하는 재화의 판매세는 수입되는 시점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한 과세 대상 재화(imported taxable goods)의 공급가액은 다음 내용의 합계로 계산한다.

-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가액(Value of such taxable goods)
-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Amount of customs duty, if any, or to be paid on such taxable goods), 그리고
-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비세(Amount of excise duty, if any, or to be paid on such taxable goods)

2) 제조품(Manufactured Goods)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는 재화를 판매(sold)하거나, 폐기(disposed) 또는 제조과정의 원자재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먼저 사용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해 판매세를 신고해야 한다.

매 2개월 과세기간마다 판매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과세 사업자는 SST-02신고서(SST-02 return)에 판매세를 신고해야 한다(다음 별첨 참조).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는 과세기간(taxable period) 변경에 대해 관세청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 포털 MySST를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세를 신고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판매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과 상관없이 SST-02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표 2-IV-1〉 SST-02 신고서(SST-02 return)-판매세 신고를 위한 주요 계산

행 번호	구분	설명 및 계산
	Part B1: 매출 내역(Sales Details)	
8	과세재화 공급가액 (Value of taxable goods sold(RM))	과세기간 동안 판매(sold), 사용(used), 폐기(disposed)한 재화에 대한 판매세 신고(매 2개월) 계산: 과세재화 공급가액 x 판매세율 = 납부세액 예시: RM10만 x 10% = RM1만
	Part D: 판매세 면세 매출(Sales exempted from Sales Tax)	
18(a)	수출/특별구역/지정구역 (Export/Special Area/Designated Area)	2018년 판매세(면세 재화) 시행령(Sales Tax(Goods Exempted from Tax) Order 2018)에 따른 면세 재화의 매출액을 기입 면세 재화 매출액은 Part B1의 과세 매출액에서 상계하지 않고 공시 목적으로만 사용
18(b)	2018년 판매세(납세 면제자) 시행령(Sales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에 따른 면세 매출 1. 부속규칙 제 A조(납세 면제자)(Schedule A(Class of Person)) 2. 부속규칙 제 B조(특정 비과세 재화 제조사)(Schedule B (Manufacturer of specific non-taxable goods)) 3. 부속규칙 제 C조(원자재/포장/부품)(Schedule C(Raw Materials /Packaging/Components)) i. 항목 1, 2(판매세 면세 원자재 구매 및 수입)(Item 1 and 2 (Purchase/Importation of Raw Material Exempted from Sales Tax)) ii. 항목 3, 4(판매세 면세 등록 제조사를 대신하여 원자재 구입 및 수입)(Item 3 and 4(Purchase/Importation of Raw Materials on behalf of Registered Manufacturer Exempted from Sales Tax)) iii. 항목 5(판매세 면세 용역 금액)(Item 5(Value of Work Performed Exempted from Sales Tax))	판매세 납세 면제자에게 판매한 매출액을 공시하기 위함 이 매출액은 Part B1의 과세 매출액에서 상계하지 않고 공시 목적으로만 사용
	Part E: 2018년 판매세(납세 면제자) 시행령, 부속규칙 제C조에 따른 매입(Purchase under the Schedule C, Sales Tax(Person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19	항목 1, 2(판매세 면세 원자재 구매 및 수입)(Item 1 and 2(Purchase /Importation of Raw Material Exempted from Sales Tax))	
20	항목 3, 4(판매세 면세 등록 제조사를 대신하여 원자재 구입 및 수입)(Item 3 and 4(Purchase/Importation of Raw Materials on behalf of Registered Manufacturer Exempted from Sales Tax))	매입액은 총매출액에서 상계하지 않으며 기업이 판매세 면세를 통해 매입한 금액을 공시하기 위함
21	항목 5(판매세 면세 용역 금액)(Item 5(Value of Work Performed Exempted from Sales Tax))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별첨] SST-02 신고서(SST-02 return)⁸¹⁾

SST-02

No. SST-02 :

Pindaan / Amendment



**JABATAN KASTAM DIRAJA MALAYSIA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PENYATA CUKAI JUALAN / CUKAI PERKHIDMATAN
SALES TAX / SERVICE TAX RETURN**

Nota Penting (Important Notes)

- 1) Sila isikan borang ini dengan menaip menggunakan **HURUF BESAR** sahaja.
Please fill in this form using **BLOCK LETTERS** only.
- 2) Borang ini hendaklah diisi secara berasingan bagi Cukai Jualan dan Cukai Perkhidmatan
This form must be filled in separately for Sales Tax and Service Tax
- 3) Sila rujuk **Panduan Mengisi Penyata SST-02**.
Please refer to **SST-02 Returns Guidelines**.
- 4) Ruangan yang bertanda (*) adalah wajib diisi.
Column with (*) is a mandatory field.
- 5) Sekiranya tiada nilai untuk diikrar, sila tulis '0'.
If there is nothing to declare, please write '0'.
- 6) Sila hubungi Pusat Panggilan Kastam di talian 1-300-88-8500 / 03-78067200 atau emel ccc@customs.gov.my untuk pertanyaan lanjut.
Please contact Customs Call Center at 1-300-88-8500 / 03-78067200 or email ccc@customs.gov.my for further enquiry.

**BAHAGIAN A : MAKLUMAT PENGILANG BERDAFTAR / ORANG BERDAFTAR
PART A : REGISTERED MANUFACTURER / REGISTERED PERSON PARTICULARS**

	CUKAI JUALAN / SALES TAX	CUKAI PERKHIDMATAN / SERVICE TAX
1) Jenis Penyata (Tandakan x dalam kotak yang berkaitan)* Type of Return (Tick x in the relevant box)*		
No. Pendaftaran SST.* SST Registration No.*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2) Nama Pengilang Berdaftar / Orang Berdaftar*, Name of Registered Manufacturer / Registered Person.*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3) Tempoh Bercukai.* Taxable Period.*	dari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hingga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hari) (bulan) (tahun) (day) (month) (year)	(hari) (bulan) (tahun) (day) (month) (year)
4) Tarikh Akhir Serahan Penyata dan Bayaran* Return and Payment Due Date*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hari) (bulan) (tahun) (day) (month) (year)	

81)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Regulations, Third Schedule of the Sales Tax(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13A) Pelarasan Potongan Cukai Jualan Yang Layak Adjustment of Eligible Sales Tax Deduction*					RM
14) Jumlah Cukai Yang Kena Dibayar Sebelum Penalti Dikenakan Total Tax Payable Before Penalty Imposed* (14) = (12) - (13)					RM
15) Kadar Penalti / Amaun Penalti Penalty Rate / Penalty Amount		%			RM
16) Jumlah Cukai Kena Dibayar Termasuk Penalti Total of Tax Payable Inclusive Penalty (16) = (14) + (15)					RM

BAHAGIAN C : BARANG-BARANG DI BAWAH JADUAL KEDUA, PERINTAH CUKAI JUALAN (KADAR CUKAI) 2018
PART C : GOODS UNDER SCHEDULE 2, SALES TAX ORDER (TAX RATE) 2018

17) Jumlah Nilai Jualan dan Cukai Yang Kena dibayar mengikut kadar cukai. Total Value of Tax Payable as per rate of tax.					
			Kuantiti Jualan Sales Quantity	Nilai Jualan Bercukai Value of Taxable Sales	Nilai Cukai Kena Bayar Value of Tax Payable
Berkadar At Rate	RM	Per Liter.* Per Litre.*		RM	RM
Berkadar At Rate	RM	Per Kilogram.* Per Kilogram.*		RM	RM
Berkadar At Rate	%	ad-valorem.* ad-valorem.*		RM	RM

BAHAGIAN D : JUALAN / PERKHIDMATAN YANG DIKECUALIKAN CUKAI
PART D : SALES / SERVICES EXEMPTED FROM TAX

18) Jualan Barang-Barang Bercukai / Perkhidmatan Bercukai.* Sales of Taxable Goods/ Taxable Services.*		
a) Eksport / Kawasan Khas / Kawasan Ditetapkan.* Export / Special Area / Designated Area.*		RM
b) Jualan tempatan kepada orang yang dikecualikan di bawah Perintah Cukai Jualan (Orang Yang Dikecualikan Daripada Pembayaran Cukai Jualan) 2018: Local sales to person exempted under the Sales Tax (Person Exempted From Payment of Sales Tax) Order 2018:-		
1) Jadual A (Kumpulan Orang). Schedule A (Class of Person).*		RM
2) Jadual B (Pengilang Spesifik Barang Tidak Bercukai). Schedule B (Manufacturer of specific non taxable goods).*		RM
3) Jadual C (Pengilang Berdaftar)* Schedule C (Registered Manufacturer)		
i) Butiran 1 dan 2 (Pembelian / Pengimportan Bahan Mentah/ Komponen/ Bahan Bungkus dan Pembungkusan Yang Dikecualikan Daripada Cukai Jualan)* Item 1 and 2 (Purchase / Importation of Raw Material/ Components/ Packing and Packaging Materials Exempted From Sales Tax).*		RM
ii) Butiran 3 dan 4 (Pembelian / Pengimportan Bahan Mentah/ Komponen/ Bahan Bungkus dan Pembungkusan Bagi Pihak Pengilang Berdaftar Yang Dikecualikan Cukai Jualan). Item 3 and 4 (Purchase / Importation of Raw Materials/ Components/ Packing and Packaging Materials on behalf of Registered Manufacturer Exempted From Sales Tax).*		RM
iii) Butiran 5 (Nilai Kerja Dilakukan Yang Dikecualikan Cukai Jualan). Item 5 (Value of Work Performed Exempted from Sales Tax).*		RM
c) Jumlah Nilai Perkhidmatan Bercukai Yang Dikecualikan Total Value of Exempted Taxable Services		RM

**BAHAGIAN E: BELIAN DI BAWAH JADUAL C, PERINTAH CUKAI JUALAN
(ORANG YANG DIKECUALIKAN DARIPADA PEMBAYARAN CUKAI JUALAN) 2018**

**PART E : PURCHASE UNDER THE SCHEDULE C, SALES TAX
(PERSON EXEMPTED FROM PAYMENT OF SALES TAX) ORDER 2018**

- | | |
|--|----|
| 19) Butiran 1 dan 2 (Pembelian / Pengimportan Bahan Mentah/Komponen/ Bahan Bungkus dan Pembungkusan Yang Dikecualikan Daripada Cukai Jualan).
Item 1 and 2 (Purchase / Importation of Raw Materials/ Components/ Packing and Packaging Materials Exempted From Sales Tax).* | RM |
| 20) Butiran 3 dan 4 (Pembelian / Pengimportan Bahan Mentah/ Komponen/ Bahan Bungkus dan Pembungkusan Bagi Pihak Pengilang Berdaftar Yang Dikecualikan Cukai Jualan).
Item 3 and 4 (Purchase / Importation of Raw Materials/ Components/ Packing and Packaging Materials on behalf of Registered Manufacturer Exempted From Sales Tax).* | RM |
| 21) Butiran 5 (Nilai Kerja Dilakukan Yang Dikecualikan Cukai Jualan).
Item 5 (Value of Work Performed Exempted from Sales Tax).* | RM |

**BAHAGIAN F : AKUAN
PART F : DECLARATIONS**

- 22) Dengan ini saya sebagai pegawai yang diberi kuasa di bawah Seksyen 89 atau 90 Akta Cukai Jualan 2018/ Seksyen 74 atau 75 Akta Cukai Perkhidmatan 2018 mengesahkan dan memperakui bahawa butir-butir yang dinyatakan dalam penyata ini adalah benar dan lengkap dan bersetuju apa-apa notis disampaikan kepada saya secara perkhidmatan elektronik.
I as the authorized person under Section 89 or 90 of the Sales Tax Act 2018/ Section 74 or 75 of the Service Tax Act 2018 hereby certify that the particulars stated in this return are true and complete and agree that any notice to be served to me through electronic service.*

Tarikh / Date*

		/			/			
(hari)	(day)		(bulan)	(month)		(tahun)	(year)	

.....
Tandatangan Pengikrar*
Declarant's Signature

- | | |
|---|--|
| 23) Nama Pengikrar.*
Name of Declarant.* | |
| 24) No. Kad Pengenalan / Paspori.*
Identity Card / Passport No.* | |
| 25) Jawatan Pengikrar.*
Designation of Declarant.* | |
| 26) No. Telefon.*
Telephone No.* | |

BAHAGIAN G : UNTUK KEGUNAAN PEJABAT PART G : FOR OFFICE USE	
27(a)	27(b)
Tarikh Penyata Diterima Date Return Received	Tarikh Cop Pos Post Marked Date
27(c)	
Pegawai Penerima Receiving Officer	

라. 판매세 납부(Payment of Sales Tax)

판매세는 온라인(FPX)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수표를 우편, 택배를 통해 관세청에 제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수표는 허용되지 않으며, 우편 또는 택배로 전달되는 수표는 우편소인(Post mark) 날짜 또는 배송조회번호가 택배회사 전산에 기록된 날짜에 관세청장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문서화 요구사항(Documentation Requirements)

과세 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는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규정된 세부 사항을 포함한 인보이스(invoice)를 말레이어 또는 영어로 발행해야 한다.

판매세 인보이스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보이스 일련번호
- 인보이스 날짜
-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의 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 구매자 이름, 주소
- 판매한 과세 대상 재화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설명
- 할인 금액
- 각 과세 대상 재화의 유형(type), 수량(quantity), 판매세를 제외한 금액
- 판매세를 제외한 총액, 판매세율, 판매세, 판매세액 별도 표시
- 판매세를 포함한 총액
- 링깃 이외 통화인 경우 판매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통용되는 환율을 통해 링깃으로 표시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는 인보이스 세부사항 변경에 대해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한 판매세 감면(reduction) 또는 인상(addition)이 있을 때 대변표(Credit note)/차변표(Debit note)를 발행할 수 있다.

- 1) 잘못된 수량(wrong quality), 불량 품질(poor quality), 계약하지 않는 상품(uncontracted taxable goods)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sold)하거나 폐기(disposed)하지 않고 반품(returned)한 경우
- 2)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해 할인(discount)을 제공한 경우

대변표(Credit note)/차변표(Debit note)에 포함해야 할 규정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변표 또는 차변표라는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
- 대변표 또는 차변표의 일련번호
- 대변표 또는 차변표의 발행날짜
-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의 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 대변표 또는 차변표 발행 사유
- 과세 대상 재화의 설명, 수량, 가격 표시
- 판매세를 제외한 총금액

- 판매세율 및 판매세 금액
-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해 발행했던 인보이스 번호와 발행 날짜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대변표/차변표는 SST-02신고서(SST-02 return)를 통해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바. 판매세 면제(Sales Tax Exemptions)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과 구매에서 다양한 판매세 면제(sales tax exemptions)가 있다. 2018년 판매세(납세 면제자) 시행령의 부속규칙(Schedules to the Sales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⁸²⁾은 판매세 면제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범주를 명시하고 있다.

- **부속규칙 제 A조(Schedule A):** 개인 및 거래의 특정 부류(Specific classes)
- **부속규칙 제 B조(Schedule B):** 특정 비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사가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를 구매 시 세금 면제
- **부속규칙 제 C조(Schedule C):**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가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를 구매 시 세금 면제

주요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세 대상 재화의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

판매세의 단일단계 부과를 위해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는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를 구매 시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입하거나 다른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 또는 지정된 무역중개회사(appointed trading company agent)로부터 구매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에 대해 면제가 가능하다.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는 2018년 판매세(납세 면제자) 시행령의 부속규칙 제C조(Schedule C of the Sales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⁸³⁾에 따라 관련 면제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82)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Orders, Sales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Orders>, 검색일자: 2021. 10. 28.

83)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Guides, Specific Guides, Sales Tax Exemption under Schedule C," <https://mysst.customs.gov.my/SpecificGuides>, 검색일자: 2021. 10. 28.

2) 기계 및 설비

2018년 판매세(납세 면제자) 시행령의 부속규칙 제A조 제55항목(Item 55 Schedule A of the Sales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⁸⁴⁾에 따라 모든 제조사는 과세 대상 기계(taxable machinery) 및 장비(taxable equipment)를 구매하거나 수입할 경우 판매세 면제가 가능하다. 면제를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기계 및 장비는 사용하지 않은 새 것으로 승인받은 제조사(approved manufacturer)의 구내에 항상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 나) 기계 및 장비는 승인받은 제조사(approved manufacturer)의 구내에서 완성품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 다) 제조사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alaysia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면제를 받아 취득한 모든 기계 및 설비는 관세청의 허가 없이 판매(sold), 양도(transfer), 운송(moved)할 수 없으며 해당 기계 및 설비를 판매, 양도, 운송할 경우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수입 후 10년 미만의 면제받은 기계 및 설비를 폐기(disposed off)할 경우 판매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 판매세 경감제도(Sales Tax Facilities)

과세 대상 재화를 구매하거나 수입할 경우 신청 가능한 경감제도가 있다.

아. 환급(Drawback)⁸⁵⁾ ⁸⁶⁾

재수출을 위해 석유를 제외한 과세 대상 재화를 구매하거나 수입할 경우 납부한 판매세에 대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84)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Orders, Sales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Orders>, 검색일자: 2021. 10. 28.

85)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ection 40 of the Sales Tax Act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Act>, 검색일자: 2021. 10. 28.

86)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Guide, General Guide on Sales Tax," <https://mysst.customs.gov.my/GeneralGuide>, 검색일자: 2021. 10. 28.

7. 서비스세(Service Tax)

가. 서비스세의 범위(Scope of Service Tax)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과세 사업자(registered person)가 제공하는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s)에 서비스세가 부과된다. 매년 25링깃씩 부과되는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현재 서비스세는 6%의 세율로 부과된다. 2018년 서비스세법 규정의 부속규칙 제1조(First Schedule of the Service Tax Regulation 2018, STR)⁸⁷⁾⁸⁸⁾에서 과세 대상 서비스 목록(list of taxable services)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Foreign service providers, FSP)의 연간 매출액이 사업자등록 기준(registration threshold)인 50만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FSP는 사업자등록 및 6% 서비스세를 징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나. 과세 대상 서비스 규정 목록(List of Prescribed Taxable Services)

사업자등록기준 연간 매출액(registration threshold)을 초과하는 과세 사업자(registered person)는 서비스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대상 서비스의 예시로 숙박업(accommodation), 요식업(provision of food and beverage), 컨설팅 서비스(consultancy services)와 같은 전문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IT 서비스(IT services), 매니지먼트 서비스(management services), 디지털 서비스(digital services), 보험(insurance), 통신(telecommunication) 및 광고 서비스(advertising services)를 들 수 있다.

STR의 부속규칙 제1조(First Schedule of STR)⁸⁹⁾는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s),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s)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부록 2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87)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Regulations, First Schedule of the Service Tax 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88) 부록 2 참조

89) 주석 87), 88) 참조

다. 서비스세 공급가액(Value for Service tax)

서비스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 대상 서비스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1)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not connected with the taxable person)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 가) 제공한 서비스의 실제 공급가액(actual value) 또는
 - 나) 일반 보험(insurance policy) 또는 이슬람계 보험(takaful contribution for takaful certificate)의 경우 실제 납입된 보험료
- 2)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특수관계자(person connected with the taxable person)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통상적인 서비스 공급가액
- 3) 과세 대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통상적인 서비스 공급가액

라.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

2019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에도 서비스세(Service tax)가 부과된다. STR의 부속규칙 제1조(First Schedule of the STR)⁹⁰⁾에서 서비스세(Service tax)가 부과되는 수입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의 공급가액(Value of imported taxable services)은 다음과 같다.

- 1)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사업자(not connected person who is outside Malaysia)로부터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를 취득한 경우
 - 가) 일반 보험(insurance policy) 또는 이슬람계 보험(takaful contribution for takaful certificate)의 경우 실제 납입된 보험료
 - 나)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실제 공급가액

90) 주석 87), 88) 참조

- 2) 해외 특수관계자(connected person who is outside Malaysia)로부터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를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거래하는 통상적인 서비스 공급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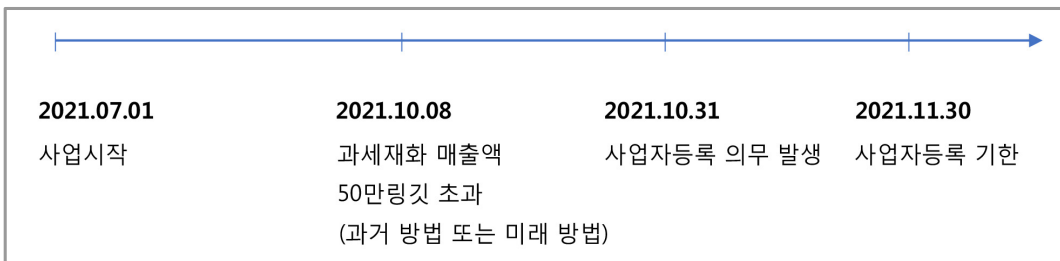
마. 서비스세 사업자등록(Service tax registration)

12개월 동안 50만링깃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단 요식업(food and beverage preparation services)의 사업자등록 기준 매출액은 150만링깃이다. 과거 방법(Historical method) 또는 미래 방법(Future method)을 기초로 12개월 기간(12-month period)을 계산한다.

- 과거 방법(Historical method): 해당 월과 직전 11개월의 과세 공급의 총액(total value of taxable supplies)
- 미래 방법(Future method): 해당 월과 그다음 11개월의 과세 공급 총액(total value of taxable supplies)

자발적 사업자등록(Voluntary registration)과 지점(branch/division)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관세청장의 재량에 따른다. 서비스세 사업자등록은 관세청(RMCD) 포털의 SST-01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림 2-IV-2] 서비스세 사업자등록 타임라인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바. 서비스세 신고(Accounting for Service Tax)

서비스세는 대금 지급일 또는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중 빠른 날짜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는 관세청(RMCD)의 승인을 받아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서비스세(Service tax)를 신고할 수 있다.

서비스세(Service tax) 신고 및 납부는 매 2개월 과세기간마다 해야 한다.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는 SST-02 신고서에 서비스세(Service tax)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신고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짜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세(Service tax) 신고서는 관세청(RMCD)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택배를 통해 관세청 처리 센터(Customs Processing Centre)로 제출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과 상관없이 SST-02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는 또한 과세기간(taxable period) 변경에 대해 관세청(RMCD)에 요청할 수 있다.

〈표 2-IV-2〉 SST-02 신고서-서비스세(Service tax) 신고를 위한 주요 계산

행 번호	구분	설명 및 계산
	Part B1: 서비스 내역(Service Details)	
10	과세 서비스 공급가액(Value of taxable services provided)	<p>지급일 기준 신고방법(Under the payment received method) - 과세기간(taxable period) 동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서비스세를 신고해야 한다. 인보이스 발행 후 12개월 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서비스세(Service tax)를 신고해야 한다(매 2개월마다).</p> <p>인보이스 기준 방법(Invoice method)(관세청(RMCD)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과세기간(taxable period) 동안 인보이스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서비스세(Service tax)를 신고해야 한다(매 2개월마다).</p> <p>계산: 과세 서비스 공급가액 x 서비스세(Service tax) 6% = 납부세액</p> <p>예시: RM10만 x 6% = RM6천</p>
	Part D: 면세 서비스(Services exempted from tax)	
18(c)	면세 서비스 매출총액(Total value of exempted taxable services)	면세 서비스 매출총액은 10번 항목 과세 서비스 공급가액에서 상계하지 않고 서비스세 면세 대상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매출액을 공시하기 위함(다음 Business to Business exemption 서비스세(Service tax) 면제 참조)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사. 수입 서비스(imported services)에 대한 서비스세(Service tax) 신고

서비스세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해외사업자(overseas service provider)로부터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를 수입 및 취득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는 SST-02 신고서에 해당 서비스세(Service tax)를 대리 신고(self-account for service tax)해야 한다.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외사업자(overseas service provider)로부터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를 수입 및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사업자(non-service tax registrant)로 등록하고, 인보이스를 수령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매월 SST-02A 신고서에 서비스세(Service tax)를 신고해야 한다(다음 별첨 참조).

수입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Service tax)는 지급일 또는 인보이스 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RMCD)은 2019년 1월 9일에 발행한 수입 서비스 지침(Guide on Imported Services)⁹¹⁾을 통해 회사가 계상하는 날짜(posting date)를 인보이스 수령일(date of receipt of invoice)로 하도록 했다.

〈표 2-IV-3〉 SST-02A 신고서-수입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Service tax) 신고를 위한 주요 계산

행 번호	구분	설명 및 계산
	Part B1: 서비스 내역(Service Details)	
8	세율에 따른 총납부세액(Total value of taxable payable as per tax rate)	<p>과세기간(매월) 동안 해외사업자(overseas service provider)로부터 취득한 과세 대상 수입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에 대한 서비스세 신고</p> <p>계산: 과세 대상 수입 서비스 공급가액 x 서비스세율 6% = 납부세액</p> <p>예시: RM10만 x 6% = RM6천</p> <p>* 해외사업자(overseas service provider)가 발행한 인보이스 내 금액이 링깃이 아닌 경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 공시하고 있는 환율(Selling rate)을 사용</p>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91)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BM Version of the Portal, Perundangan & Panduan, Panduan CJP, Panduan Industri, Perkhidmatan Bercukai Diimport," <http://mysst.customs.gov.my/IndustryGuides>, 검색일자: 2021. 10. 28.

[별첨] SST-02A 신고서(SST-02A return)⁹²⁾

SST-02A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No. SST-02A :</td> <td style="width: 150px; height: 20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input type="checkbox"/> Pindaan / Amendment</td> <td></td> </tr> </table>	No. SST-02A :		<input type="checkbox"/> Pindaan / Amendment	
No. SST-02A :						
<input type="checkbox"/> Pindaan / Amendment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JABATAN KASTAM DIRAJA MALAYSIA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p>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PENGISYTIHARAN PERKHIDMATAN BERCUKAI DIIMPORT OLEH ORANG SELAIN ORANG KENA CUKAI IMPORTED TAXABLE SERVICES DECLARATION BY PERSON OTHER THAN TAXABLE PERSON</p>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Nota Penting (Important Note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ila isikan borang ini dengan menaip menggunakan HURUF BESAR sahaja. <i>Please fill in this form using BLOCK LETTERS only.</i> 2) Sila rujuk Panduan Mengisi Pengisytiharaan SST-02A. <i>Please refer to SST-02A Declaration Guidelines.</i> 3) Ruangan yang bertanda (*) adalah wajib diisi. <i>Column with (*) is a mandatory field.</i> 4) Sekiranya tiada nilai untuk diikrar, sila tulis '0'. <i>If nothing is nothing to declare, please write '0'.</i> 5) Sila hubungi Pusat Panggilan Kastam di talian 1-300-88-8500 / 03-78067200 atau emel ccc@customs.gov.my untuk pertanyaan lanjut. <i>Please contact Customs Call Center at 1-300-88-8500 / 03-78067200 or email ccc@customs.gov.my for further enquiry.</i> 						
BAHAGIAN A : BUTIRAN ORANG SELAIN ORANG KENA CUKAI PART A : DETAILS OF PERSON OTHER THAN TAXABLE PERSON						
1) No. Pendaftaran Perniagaan.* <i>Business Registration No.*</i>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ATAU / OR						
2) No. Kad Pengenalan.* <i>Identity Card No.*</i>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3) Nama Perniagaan.* <i>Name of Business.*</i>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4) Alamat Perniagaan.* <i>Business Address.*</i>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Bandar (Town)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Poskod (Postcode)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Negeri (State)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5) No. Telefon.* <i>Telephone No.*</i>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6) Alamat Email.* <i>Email Address.*</i>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92)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Regulations, Third Schedule of the Sales Tax(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BAHAGIAN B : MAKLUMAT PERKHIDMATAN BERCUKAI DIIMPORT PART B : IMPORTED TAXABLE SERVICES DETAILS			
7) Tempoh Pengisytiharaan.* <i>Period of Declaration.*</i>	dan <i>from</i>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hingga <i>until</i>
		(hari) <i>(day)</i>	(bulan) <i>(month)</i>
		(tahun) <i>(year)</i>	(hari) <i>(day)</i>
		(bulan) <i>(month)</i>	(tahun) <i>(year)</i>
8) Jumlah Cukai Yang Kena Dibayar Mengikut Kadar Cukai* <i>Total Value Of Tax Payable As Per Tax Rate*</i>	Jumlah Perkhidmatan Bercukai Diimport <i>Value Of Taxable Imported Service</i>	Kadar Cukai <i>Tax Rate</i>	Nilai Cukai Kena Bayar <i>Value Of Tax Payable</i>
<input style="width: 1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6%	RM
9) Kadar Penalti / Amaun Penalti <i>Penalty Rate / Penalty Amount</i>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	RM
10) Jumlah Cukai Kena Dibayar Termasuk Penalti* <i>Total Of Tax Payable Including Penalty*</i>			<input style="width: 10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RM
BAHAGIAN C : AKUAN PART C : DECLARATIONS			
11) Dengan ini saya sebagai pegawai yang diberi kuasa di bawah seksyen 74 atau 75 Akta Cukai Perkhidmatan 2018 mengesahkan dan memperakui bahawa butir-butir yang dinyatakan dalam pengisytiharaan ini adalah benar, tepat dan lengkap dan bersetuju apa-apa notis disampaikan kepada saya melalui perkhidmatan elektronik.* <i>I as the authorized person under section 74 or 75 of the Service Tax Act 2018 hereby certify that the particulars stated in this declaration are true, accurate and complete and agree any notice to be served to me by electronic service.*</i>			
Tarikh / Date*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
(hari) <i>(day)</i>		(bulan) <i>(month)</i>	(tahun) <i>(year)</i>
..... Tandatangan Pengikrar* Declarant's Signature*			
12) Nama Pengikrar.* <i>Name of Declarant.*</i>	<input style="width: 30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13) No. Kad Pengenalan / Passport.* <i>Identity Card / Passport No.*</i>	<input style="width: 30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14) Jawatan Pengikrar.* <i>Designation of Declarant.*</i>	<input style="width: 30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15) No. Telefon.* <i>Telephone No.*</i>	<input style="width: 30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BAHAGIAN D : UNTUK KEGUNAAN PEJABAT
PART D : FOR OFFICE USE**

16(a)
Tarikh Penyata Diterima
Date Return Received

16(b)
Tarikh Cop Pos
Post Marked Date

16(c)
Pegawai Penerima
Received Officer

아. 서비스세(Service tax) 납부

과세 사업자(service tax registrant)와 비과세 사업자(non-service tax registrant) 모두 서비스세(Service tax)를 온라인(FPX)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수표를 우편, 택배를 통해 관세청(RMCD)에 제출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수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개정된 2019년 서비스세법 규정(Service Tax(Amendment) Regulations 2019)⁹³⁾에 따라 우편, 택배로 전달되는 수표는 우편소인 날짜 또는 배송조회번호가 택배회사 전산에 기록된 날짜에 관세청장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문서화 요구사항(Documentation Requirements)

서비스세(Service tax) 과세 사업자(service tax registrant)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세부 사항을 포함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 인보이스 일련번호
- 인보이스 날짜
- 과세 사업자 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 제공한 과세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설명
- 할인(discounts) 금액
- 서비스세(Service tax)를 제외한 총금액, 서비스세(Service tax)율, 총부과되는 서비스세(Service tax) 별도 표시
- 서비스세(Service tax)를 포함한 총금액
- 링깃 이외의 통화인 경우 공급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통용되는 환율을 통해 링깃으로 표시

과세 사업자는 인보이스 세부사항 변경에 대해 관세청(RMCD)에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세(Service tax) 과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Service tax) 감면(reduction) 또는 증가(addition)가 있을 때 대변표(credit note)/차변표(debit note)를 발행할 수 있다.

- 1) 2018년 「서비스세법(Service Tax Act 2018)」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경우 또는
- 2) 사업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Any adjustment in the course of business)

93)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Regulations, Regulation 16 of the Service Tax 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대변표/차변표에 포함해야 할 규정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변표 또는 차변표라는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
- 대변표 또는 차변표의 일련번호
- 대변표 또는 차변표의 발행날짜
- 과세 사업자의 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 대변표 또는 차변표 발행 사유
-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
- 과세 대상 서비스의 수량 및 가격
- 서비스세를 제외한 총금액
- 서비스세율 및 서비스세액
-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해 발행했던 인보이스 번호와 발행 날짜

과세기간(taxable period) 동안 발행한 대변표/차변표는 SST-02 신고서를 통해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차. 서비스세 감면 및 면제(Service Tax Reliefs and Exemptions)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고려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세(Service tax) 감면(reliefs) 및 면제(exemptions)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그룹 감면(Intra-Group Relief for Domestic Taxable Services)

그룹 내 회사(within a group of companies) 간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세 감면(relief)이 가능하다. STR의 부속규칙 제1조 중 그룹 G(Group G of the First Schedule of the STR)⁹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를 그룹 내 회사에 제공할 경우 과세 대상 서비스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룹 내 감면(intra-group relief)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룹 내 감면(intra-group relief)이 가능한 서비스는 STR의 부속규칙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룹 G의 두 번째 열 항목 (a)에서 (i) 또는 (l)이다⁹⁵⁾⁹⁶⁾. 항목 (j) 고용서비스

94) 주석 87), 88) 참조

(Employment services)와 경비(provision of guards), 보안(provision of protections) 업무는 그룹 내 감면(intra-group relief) 대상이 아니다.⁹⁷⁾

그룹 내 감면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통제 테스트(Control test)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통제(control)하는 경우 이 회사는 그룹 회사로 간주된다. 같은 그룹 내 회사로 간주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1) 회사 간에 50% 이상의 납입자본금(issued share capital)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 (2) 회사 간에 20%에서 50% 납입자본금(issued share capital)을 소유한 경우 한 회사는 다른 회사 이사회의 대다수 등기이사(majority of directors)를 선임(appoint)하거나 해임(remove)할 수 있는 권한(power)을 가져야 한다.

(참고: 사채(debentures)나 자금 대출 활동(money lending activities)을 보증(securing)하는 신탁 행위(trust deeds), 사채 보유(debenture holding)를 위해 또는 수탁자의 자격(fiduciary capacity)으로 지명인(nominee)이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나) 동일 서비스 테스트(Same service tes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service provider)가 그룹 외부의 어느 회사(another person outside the group of companies)에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 그룹 내 회사(group company)와 그룹 외부의 회사(non-group company)에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same service)는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로 간주한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 그룹 외부의 회사(non-group company)에 12개월 동안 제공한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 총매출이 그룹 내 회사(group company)와 그룹 외부의 회사(non-group company)에 제공한 동일 서비스(same service) 매출총액의 5%를 초과

95)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Regulations, Paragraph 3 of the First Schedule of the Service Tax 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96)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Regulations, Paragraph 3 of the First Schedule of the Service Tax 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97) 주석 87), 88) 참조

하지 않을 경우 그룹 내 회사(group company)와 그룹 외부의 회사(non-group company)에 제공한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그룹 감면(Intra-Group Relief For Imported Taxable Services)

말레이시아 회사가 해외에 있는 그룹사(group company that is outside Malaysia)로부터 STR의 부속규칙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룹 G(Group G of the First Schedule of the STR)⁹⁸⁾의 두 번째 열 항목 (a)에서 (i) 또는 (l)의 서비스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서비스세 또한 대리 납부(self-account)할 필요가 없다.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에 대해 그룹 감면(intra-group relief)을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를 수입하는 회사는 앞서 설명한 통제 테스트(control test)를 충족해야 한다.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에 대한 그룹 감면(intra-group relief)은 동일 서비스 테스트(same service test)를 적용하지 않는다.

3) Business to Business 서비스세(Service tax) 면제

동일 서비스(same service)를 제공하는 두 과세 사업자(two companies registered for service tax) 간에 특정 Business to Business(B2B) 거래 시 서비스세(Service tax) 면제가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의 그룹군은 다음과 같다.

- 그룹 G(전문 서비스) 중 항목 (a)에서 (i) 또는 (l)
- 그룹 I(기타 서비스) 중 광고 서비스(advertising services)만

2018년 서비스세(납세 면제자) 시행령(Service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⁹⁹⁾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면제가 가능하다.

B2B 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와 수취인(service recipient) 모두 동일 서비스(same item of service)를 제공하는 과세 사업자여야 하고, 서비스 수취인(service recipient)은 해당 동일 서비스(same item of service)를 고객(customer)

98)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Regulations, Paragraph 3A of the First Schedule of the Service Tax 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99)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Orders, Service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당 면제를 위해서 서비스 수취인(service recipient)은 사적 소비(personal consumption)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회사가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를 취득한 경우 서비스세 대리 신고(self-accounting) 및 납부에 대한 재무 장관의 면제(Ministerial exemption)가 있다. 해당 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서비스 수취인(service recipient)은 서비스세를 신고하는 과세 사업자(service tax registrant)여야 한다.
- 과세 사업자 서비스 수취인(registered service recipient)은 해외사업자(foreign vendor)로부터 수령한 동일한 과세 서비스(same taxable service)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 사적 소비(personal consumption)가 아닌 사업의 계속성(furtherance of business)을 위해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를 취득해야 하며,
- 해외사업자(overseas service provider)에게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수입 디지털 서비스 및 IT 서비스의 신고 면제(Exemption to Account for Imported Digital Services and IT Services)

2018년 서비스세법(납세 면제자) 시행령(Service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¹⁰⁰)에 따라 해외 과세 사업자(Foreign registered person, FRP)로부터 디지털 서비스(Digital services)와 적법한 인보이스(valid invoice)를 수령한 과세 사업자(service tax registrant)와 비과세 사업자(non-service tax registrant)는 서비스세(Service tax) 대리 신고(self-accounting)에 대한 면제를 받는다.

또한 STR의 부속규칙 제1조 중 그룹 G의 IT 서비스 과세 사업자(IT service provider of Group G of the First Schedule of the STR)¹⁰¹가 해외사업자(overseas provider)로부터 IT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서비스세(Service tax) 대리 신고(self-accounting)에 대한 면제

100)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Orders, Item 3 of the Service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검색일자: 2021. 10. 28.

101)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Orders, Item 4 of the Service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를 받는다. 그러나 서비스 수취인(service recipient)은 사적 소비(personal consumption)를 위해 IT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동일 서비스(identical IT service)를 고객에게 제공(distributed) 또는 판매(sold)할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관세청(RMCD)은 회사 사내에서 소비하고 사용(own use by the company or to be consumed by company itself)하기 위해 취득한 서비스를 사적 소비(personal consumption)로 간주한다.

8. 판매세(Sales tax) 및 서비스세(Service tax) 행정 사항

가. 가산세(penalties)-판매세(Sales tax) 및 서비스세(Service tax)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 또는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3만링깃 이하의 가산세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둘 다 처벌 가능하다.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 또는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서비스세를 전부 또는 일부(wholly or partly)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표 2-IV-4〉 가산세 비율

(단위: %)

미납세액 발생 일수	가산세 비율(rates of penalty)
1~30일	10
1~60일	25
1~90일	40
90일 초과 시	최대 40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또한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 또는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SS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만링깃의 가산세나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위반내용(offences)은 가중처벌(compoundable offences) 대상으로, 관세청(RMCD)은 기업에 최대 가산세인 5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위반내용(offences)에 대해 기업이 가중처벌(compoundable offences)을 받는 경우 2018년 서비스세(Service tax)법 제 95장¹⁰²⁾과 80(2)장¹⁰³⁾(Section 95 and Section 80(2) of the Service Tax Act 2018)에 따라 당국은 해당 사항에 대해 기업을 기소(prosecution)하지 않는다.

나. 기록보관 의무(Record Keeping Requirements)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 관련 서류는 7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말레이어(Bahasa Malaysia) 또는 영어로 기록할 수 있다. 해당 서류는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 형태(soft copy) 또는 원본(hard copy)으로 보관할 수 있다.

102)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Act, Section 95(4) of the Sales Tax Act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Act>, 검색일자: 2021. 10. 28.

103)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Act, Section 80(2) of the Service Tax Act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Act>, 검색일자: 2021. 10. 28.

V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1. 개관

원천세(withholding taxes)는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비거주자(non-residents)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세는 별도의 세금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비거주자(개인 혹은 법인)가 지급받는 대금 등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소득세이다. 원천세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이지만 원천징수의 의무(responsibility to withhold tax)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인(the payer)에게 있으며,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말레이시아 비거주자(non-residents)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 불이행(non-compliance) 시에는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된다.

2. 원천징수 대상 지급 종류

다음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표 2-V-1〉 원천징수 대상 소득

(단위: %)

지급 종류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개인 및 기업) ¹⁰⁴⁾
배당(dividend)	0
이자(interest)	0/15
로열티(Royalty)	10
특정 소득(Special classes of income)	
•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수행된 자문(advice), 지원(assistance) 또는 용역(service)	10
• 동산임대료(rental of moveable property)	10
계약금 지급(Contract payments)	10 + 3

104) 열거된 세율은 비거주자의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되며,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표 2-V-1〉의 계속

(단위: %)

지급 종류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개인 및 기업) ¹⁰⁵⁾
「소득세법」 4(f)항에 근거한 기타 소득	10
연예인(Public entertainer) ¹⁾	15

주: 자세한 내용은 공개 예규(public ruling) 1/2010¹⁰⁶⁾- 원천징수세의 소득 제4(f)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자세한 내용은 공개 예규(public ruling) 6/2017¹⁰⁷⁾- 원천징수세의 소득 중 대중연예인(Public entertainer)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앞에서 언급한 유형의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지급 형태의 소득은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으로 간주된다.

- 1) 지급 책임이 정부, 주 정부, 지방 당국에 있는 경우
- 2) (1) 지급 책임이 해당 과세연도(basis year)에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그리고
(2) 이자(interest)의 경우, 말레이시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에 관계된 대여금 또는 말레이시아 자산 또는 그 외 자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 3)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에 관계된 비용으로 손금 공제하는 경우

계약금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납부한 원천세는 최종 세금이다. 즉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Forms)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말레이시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 DTA)을 체결한 국가의 납세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감면된 원천세율(이중과세방지협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세율은 10%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우대 원천세율은 없다.

105) 열거된 세율은 비거주자의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되며,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106)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ublic Ruling 1/2010," https://phl.hasil.gov.my/pdf/pdfam/PR1_2010.pdf, 검색일자: 2021. 10. 28.

10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ublic Ruling 6/2017," https://phl.hasil.gov.my/pdf/pdfam/PR_6_2017.pdf, 검색일자: 2021. 10. 28.

예제 1

A Sdn Bhd는 한국 모회사인 B Ltd로부터 연 4.5%의 이자로 RM1백만을 대여금으로 받아서 회계연도 말까지(매년 12월 31일) 이자상환을 해야 한다. 대여금은 A Sdn Bhd의 말레이시아 사업과 관련된 직원 급여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RM4만 5천의 이자 지급(즉 RM1백만 x 4.5%)은 다음과 같이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으로 간주된다.

- a) 지급 책임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납세자(즉 A Sdn Bhd)에게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사용된 자금(즉 급여 지급 및 납품 업체 대한 대금 지급)과 관련된 이자를 지급했다.
- b) 지급한 이자는 A Sdn Bhd가 말레이시아에서 창출한 수익 대한 비용으로 손금 공제하였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RM4만 5천의 이자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대한민국-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은 없다.

가. 로열티(Royalty)

「소득세법」에서 로열티(Royalty)의 정의¹⁰⁸⁾는 광범위하며 납세자는 모든 종류의 무형 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 권한(right to use)에 대한 지급금을 검토해야 한다. 로열티(Royalty)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저작권(copy right), 소프트웨어(software),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업(artistic or scientific works), 특허(patents), 디자인(design) 또는 모델(models), 계획(plans), 비밀 절차(secret processes) 또는 공식(formulae), 상표(trademarks)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other like property or rights)의 사용 또는 사용 권한(right to use)
- 2)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영화 필름, 영화, 비디오테이프,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사용되었거나 복제된 또는 사용, 복제될 예정인 영화, 비디오테이프, 기타 복제 수단, 기타 유사한 재산,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 권한(right to use)
- 3) 기술적(technical), 산업적(industrial), 상업적(commercial) 또는 과학적(scientific) 지식(knowledge), 경험(experience) 또는 기술(skill)에 관한 노하우(know-how) 또는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 권한(right to use)
- 4) (a), (b) 또는 (c)항에 언급된 자산(property), 노하우(know-how) 또는 정보(information)의 양도

108)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ncome Tax Act 1967(online version 2019. 1.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Act_53_20190101.pdf, 검색일자: 2021. 10. 28.

앞에 명시된 바와 같이 로열티(royalty)에는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사용 권한에 대한 지급금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전자 상거래 과세 지침(Guidelines on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급금은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사용 권한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 1) 고객이 애플리케이션/플랫폼을 통해 광고 캠페인을 제작할 목적인 디지털 광고에 대한 지급금
- 2) 소프트웨어 솔루션 구매 및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연간 라이선스 비용
- 3)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월간 구독료(온라인 판매 플랫폼 사용에 대한 구독료 포함)

전자 상거래 과세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은 다음 유형의 지급금이 로열티(royalty)로 인정되지 않고 대신 특정 소득 범위(Scope of special classes of income)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아래에서 설명).

- 1)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의 구매 또는 사용을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금(예: 모든 측면의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지급인(payer)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 2)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성공적인 판매에 대한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
- 3)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상품에 대한 수수료
- 4) 온라인 송금을 통해 당사자 간의 안전한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급 서비스 플랫폼(payment service platform)에 지급한 수수료

말레이시아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납세자에게 로열티(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명시된 '로열티(royalty)'의 정의도 검토해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국내법(domestic law)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정의가 「소득세법」의 정의보다 우선한다. 예를 들어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의하는 '로열티(royalty)'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로열티(royalty)'의 항목 중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로열티에 대한 지급금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해당 항목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로열티로 간주되지 않음).

나. 특정 소득(Special classes of Income)

과세기간 1년 동안 말레이시아 비거주자의 다음과 같은 소득은 특정 소득으로 분류된다.

- 1) 자산을 사용(use of property)하거나 자산에 속한 권리(rights belonging to property)와 관련된 세무상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 또는 비거주자가 시설,

- 기계, 기타 장치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대가(「소득세법」 제4A(i)장),
- 2) 과학적(Scientific)이거나, 산업적인(industrial), 또는 상업적인(commercial) 설비(undertaking), 벤처(venture), 프로젝트(project), 제도(scheme)를 관리할 때 말레이시아 내에서 제공한 자문(advice) 또는 지원(assistance)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A(ii)장), 또는
- 3) 동산(moveable property)의 사용에 대한 계약(agreement) 또는 협약(arrangement)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료 또는 기타 대금(「소득세법」 제4A(iii)장)

2017년 「소득세법(면제)(제9호)시행령(the Income Tax(Exemption)」(No.9) Order 2017)¹⁰⁹⁾에 따라 「소득세법」 제4A(i)장 및 제4A(ii)장에 따른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수행된 서비스의 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계약서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내외에서 서비스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에 귀속되는 계약금의 비율은 공정(fair)하고 정당한(justifiable) 방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계약금의 구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된 용역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된 용역에 귀속되는 계약금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계약서의 사실 관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 예규 제10/2019호(Public ruling No. 10/2019)¹¹⁰⁾ - 특정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Withholding Tax on Special Classes of Income)를 참조하면 된다.

다. 계약금 지급(Contract payments)

「소득세법」 제107A장(Section 107A)에 따라 ‘계약금 지급(contract payment)’이라는 용어는 계약서에 따라 비거주자 계약자, 계약자의 대리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급금을 의미하며, ‘계약서에 따른 서비스(services under a contract)’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 프로젝트, 제도(Scheme)와 관련된 용역(work) 또는 전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를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소득세법」 제107A장(Section 107A)은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

109) Official portal of Federal Legislation, “Income Tax(Exemption)(No.9) 2017 [PU(A) 323/2017],” [https://lom.agc.gov.my/ilims/upload/portal/akta/outputp/pua_20171024_P.U.%20\(A\)%20323.pdf](https://lom.agc.gov.my/ilims/upload/portal/akta/outputp/pua_20171024_P.U.%20(A)%20323.pdf), 검색일자: 2021. 10. 28.

11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ublic Ruling 10/2019,” https://phl.hasil.gov.my/pdf/pdfam/PR_10_2019.pdf, 검색일자: 2021. 10. 28.

(Permanent establishment) 또는 사업장(business presence)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정사업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념이다. 수취인(payee)이 말레이시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납세자일 경우 「소득세법」 제12장(Section 12) 및 관련 판례(relevant case law)를 참조하여 ‘사업장(business presence)’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이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 서비스 지급금은 특정 소득(앞 참조)에 대한 지급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금 지급에 과세하는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다.

- 1) 과세연도 동안 비거주자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 그리고
- 2) 해당 과세연도에 비거주자 기업의 직원(employees)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

다른 원천징수와 달리 「소득세법」 제107A장(Section 107A)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다. 비거주자 기업은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국세청에 법인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Forms)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10% 세액은 법인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Forms)에 명시된 과세연도의 비거주자 기업이 납부할 최종 세액과 상계할 수 있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최종 납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거주자 기업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한 3% 세액(비거주자의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계정)같은 경우 비거주자 기업의 직원이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국세청에서 확인한 후에 비거주자 기업은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시 2:

C Sdn Bhd는 한국 회사인 D Pte Ltd와 10개월 동안 말레이시아 설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감리 서비스(Supervision services)를 제공하도록 계약했다. 대한민국-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 5(5)조에 따라 D Pte Ltd는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말레이시아에서 설치 프로젝트와 관련된 감리 활동을 수행했다.

D Pte Ltd에서 창출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말레이시아 원천으로 간주된다.

- 1) 지급 책임은 거주자(예시: C Sdn Bhd)에게 있다. 그리고
- 2) C Sdn Bhd가 지급한 금액은 말레이시아에서 창출한 수익에 대한 비용으로 손금 공제하였다.

D Pte Ltd가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D Pte Ltd에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107A장에 따른 계약금 지급이므로 10% + 3%의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며, D Pte Ltd는 말레이시아 법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10% 세액은 D Pte Ltd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소득세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나머지 3% 세액의 경우 D Pte Ltd의 직원이 말레이시아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확인한 후에 D Pte Ltd는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설치 프로젝트가 10개월 대신 2개월 동안 수행되어 D Pte Ltd의 말레이시아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 특정 소득(special classes of income)에 대한 원천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대한민국-말레이시아 이중 과세방지협정에 따른 기술 서비스(technical services)에 대한 우대 세율(preferential rate) 없음). 원천징수한 세액은 최종 세금으로, D Pte Ltd는 말레이시아에서 법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세무 신고와 준수사항(Tax Returns and Compliance)

가.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대상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제공하는 감면(relief)의 경우(예: 감면된 원천세 세율 등의 형태로), 수취인(payee)이 거주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Tax Residency/Certificate of Domicile)가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기 증명서가 없는 경우 말레이시아 국세청은 원천징수 시 세율 감면을 불허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세무감사(tax audit)를 진행할 경우 해당 증명서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다.

나. 원천세 행정처리

지급인(payer)이 원천징수 대상인 비거주자에게 지급 책임이 있는 경우, 지급인(payer)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상할 때(반대 상황도 포함) 해당 지급금에 적용되는 세율로 원천징수고(세액이 원천징수된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상한 후 1개월 이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소득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날의 링깃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거주자 연예인(public entertainers)에게 지급한 대금과 관련하여, 해당 연예인의 후원자(sponsor)는 비거주 연예인이 말레이시아 이민국(Malaysia Immigration Department)으로부터 입국 허가(entry permit)를 받기 전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사본 및 지급 문서(예: 수표, 전신 송금 전표, 지급일/계상일과 감면된 원천세율을 증빙할 서류)와 더불어 규정된 납부 신고서 양식을 통해 원천세 납부를

해야 한다. 원천세 납부 관련 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표 2-V-2〉 원천세 납부 관련 신고서 양식

지급방식	양식
이자(Interest)	CP37(다음 별첨 참조)
로열티(Royalty)	CP37(다음 별첨 참조)
특정 소득(Special classes of income)	CP37D(다음 별첨 참조)
계약금 지급(Contract payment)	CP37A(다음 별첨 참조)
비거주자 연예인의 소득(Income of non-resident public entertainers)	평가기관(Assessment Branch)에서 발급한 결제 메모(Payment memo)
「소득세법」 제4(f)장에 따른 소득(Income under Section 4(f) ITA 1967)	CP37F(다음 별첨 참조)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지급인(payer)은 규정된 관련 신고서 양식과 하기 정보를 기입해서 제출해야 한다.

- 1) 지급인(payer)의 성명, 주소 및 소득세 참조번호(income tax reference number)
- 2) 수취인(payee) 성명, 주소, 국가 및 소득세 참조 번호(income tax reference number)
- 3) 송장(invoice) 또는 차변표(debit note) 사본(해당하는 경우) 및
- 4) 은행 송금 전표(bank remittance slip) 또는 지급했거나 계상했던 날짜를 증빙하는 기타 서류

신고서를 작성할 때 수취인(payee)의 소득세 참조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비거주자 부서(Non-Resident Branch)에 수취인의 소득세 참조번호를 요청해야 한다.

다음의 세 곳의 관할 센터에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표 2-V-3〉 원천세 납부 관할 센터

관할 주	주소
말레이시아 반도 (Peninsular Malaysia)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Pusat Bayaran Kuala Lumpur Ground Floor & 15, Block 8A Kompleks Pejabat Kerajaan Jalan Tuanku Abdul Halim, Karung Berkunci 11061 50990 Kuala Lumpur

〈표 2-V-3〉의 계속


관할 주	주소
사바 및 라부안 (Sabah & Federal Territory of Labuan)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Pusat Bayaran Kota Kinabalu Ground Floor, 3 & 4 Menara Hasil Jalan Tuanku Abdul Rahman 88600 Kota Kinabalu
사라왁 (Sarawak)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Cawangan Kuching Pusat Bayaran Kuching Unit Operasi Kutipan Cukai Aras 1, Wisma Hasil No 1, Jalan Padungan 93100 Kuching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국세청의 은행 계좌로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은행 간 송금(Transfer Interbank Giro)/전자 자금 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세금 납부와 달리 원천세는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없다.

[별첨] 이자에 대한 원천세 납부 신고서(Form CP37)¹¹¹⁾

(CP37 - Pin 3/2014)



(Sila baca nota di muka sebelah sebelum mengisi borang ini)
(Please read the notes overleaf before completing this form)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Seksyen 109 Akta Cukai Pendapatan, 1967
Section 109 Income Tax Act, 1967

AKAUN POTONGAN-POTONGAN DARIPADA BAYARAN ROYALTI DAN FAEDAH KEPADA ORANG YANG TIDAK BERMASTAUTIN
ACCOUNT OF DEDUCTION FROM ROYALTY AND INTEREST TO A NON- RESIDENT PERSON

A. BUTIR-BUTIR PEMBAYAR/PARTICULARS OF PAYER					
1. No. Rujukan (No. Pendaftaran Syarikat/Perniagaan atau No. Kad Pengenalan bagi individu) <i>Reference No. (Registration No. of Company/ Business or Identity Card No. for individual)</i>					
2. No. Cukai Pendapatan * (sila lengkapkan) <i>Income Tax No. * (please complete)</i>					
3. Nama Pembayar <i>Name of Payer</i>					
4. Alamat Pos <i>Postal Address</i>					
B. BUTIR-BUTIR MENGENAI ORANG YANG TELAH DIBAYAR/DIKREDITKAN FAEDAH/ROYALTI <i>PARTICULARS OF PERSON TO WHOM INTEREST/ROYALTY HAD BEEN PAID/CREDITED</i>					
5. No. Rujukan (No. Pasport/No. Pendaftaran Sykt./Perniagaan) <i>Reference No. (Passport No./Registration No. of Company/ Business)</i>					
6. No. Cukai Pendapatan Malaysia (jika ada) <i>Malaysian Income Tax No. (if any)</i>					
7. Nama Penuh Penerima <i>Full Name of Payee</i>					
8. Alamat <i>Address</i>					
9. Negara Asing <i>Foreign Country</i>					
C. BUTIR-BUTIR MENGENAI POTONGAN-POTONGAN/PARTICULARS OF DEDUCTIONS					
10. Kategori Bayaran <i>Category of Payment</i>	11. Tempoh diliputi oleh bayaran royalti/faedah <i>Period for which royalty/interest paid/credited</i>	12. Tarikh bayaran royalti/faedah telah dibayar/dikreditkan <i>Date royalty/ interest paid/ credited</i>	13. Amaun kasar (sertakan salinan invoice) <i>Gross amount (attach copy of invoice)</i>	14. Amaun potongan <i>Amount of deduction</i>	15. Amaun bersih dibayar/ ikreditkan (sertakan salinan dokumen) <i>Net amount paid / credited (attach copy of document)</i>
Royalti / Royalty Kadar / Rate (10%)			RM	RM	RM
Faedah / Interest Kadar / Rate (15%)			RM	RM	RM

Saya, bagi pihak saya sendiri/bagi pihak pembayar di atas telah membuat potongan-potongan dari amaun faedah/royalti yang disebut di atas yang telah dibayar/dikreditkan dan mengemukakan akaun ini menurut peruntukan Subseksyen 109(1) bersama dengan bukti dokumen tarikh pembayaran telah dibuat/dikreditkan.
I, on my own behalf/on behalf of the above mentioned payer have made deductions from the above-mentioned amounts of interest/royalty paid/credited and render this accou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Subsection 109(1) together with documentary evidence of the date payment was paid/credited.

Saya sertakan bersama-sama ini wang tunai/cek No.: Amaun : RM.....
I enclose herewith cash/cheque No. Amount


..... Nama :
Cop Rasmi Syarikat/Company's Official Seal Name
Tarikh/Date: Jawatan :
No. Telefon :
Tel. No:
Tandatangan :
Signature

Kegunaan Pejabat/Office Use	
Kategori <i>Category</i>	Kod Bayaran <i>Payment Code</i>
Royalti / Royalty	162
Faedah / Interest	164

111)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37," http://lampiran1.hasil.gov.my/pdf/pdfborang/CP37_Pin3_2014.pdf, 검색일자: 2021. 10. 28.

[별첨]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 납부 신고서(Form CP37D)¹¹²⁾

(CP37D - Pin 3/2014)



(Sila baca nota di muka sebelah sebelum mengisi borang ini)
(Please read the notes overleaf before completing this form)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Seksyen 109B Akta Cukai Pendapatan, 1967
Section 109B Income Tax Act, 1967

AKAUN POTONGAN-POTONGAN DARIPADA PENDAPATAN KELAS KHAS DI BAWAH SEKSYEN 4A AKTA CUKAI PENDAPATAN 1967
ACCOUNT OF DEDUCTIONS FROM SPECIAL CLASSES OF INCOME IN ACCORDANCE WITH SECTION 4A INCOME TAX ACT 1967

A. BUTIR-BUTIR PEMBAYAR/PARTICULARS OF PAYER					
1. No. Rujukan (No. Pendaftaran Syarikat/Perniagaan atau No. Kad Pengenalan bagi individu) <i>Reference No. (Registration No. of Company/ Business or Identity Card No. for individual)</i>					
2. No. Cukai Pendapatan * (sila lengkapkan) <i>Income Tax No.* (please complete)</i>					
3. Nama Pembayar <i>Name of Payer</i>					
4. Alamat Pos <i>Postal Address</i>					
B. BUTIR-BUTIR MENGENAI ORANG YANG TELAH DIBAYAR / DIKREDITKAN PENDAPATAN KELAS KHAS <i>PARTICULARS OF PERSON TO WHOM THE SPECIAL CLASSES OF INCOME HAD BEEN PAID/CREDITED</i>					
5. No. Rujukan (No. Passport/No. Pendaftaran Sykt./Perniagaan) <i>Reference No. (Passport No./Registration No. of Company/ Business)</i>					
6. No. Cukai Pendapatan Malaysia (jika ada) <i>Malaysian Income Tax No. (if any)</i>					
7. Nama Penuh Penerima <i>Full Name of Payee</i>					
8. Alamat <i>Address</i>					
9. Negara Asing <i>Foreign Country</i>					
C. BUTIR-BUTIR MENGENAI POTONGAN-POTONGAN/PARTICULARS OF DEDUCTIONS					
10. Kategori bayaran <i>Category of payments</i>	11. Tempoh di mana bayaran dibayar/ dikredit <i>Period for which the said payment was paid/credited</i>	12. Tarikh bayaran telah dibayar /dikreditkan <i>Date the payment was paid /credited</i>	13. Amaun bayaran kasar (sertakan salinan invois) <i>Amount of gross payment (attach copy of invoice)</i>	14. Amaun potongan dibawah Seksyen 109B (Kadar 10%) <i>Amount of deduction under Section 109B (rate 10%)</i>	15. Amaun bersih dibayar/ dikreditkan (sertakan salinan dokumen) <i>Net amount paid /credited (attach copy of document)</i>
Perkhidmatan <i>Services</i>			RM	RM	RM
Teknikal/ <i>Technical</i>			RM	RM	RM
Harta alih <i>Moveable property</i>			RM	RM	RM

Saya, bagi pihak saya sendiri/bagi pihak pembayar di atas telah membuat potongan daripada amaun bayaran golongan pendapatan kelas khas yang disebut di atas ini dan mengemukakan akaun ini menurut peruntukan Subseksyen 109B(1) bersama dengan bukti tentang tarikh pembayaran telah dibuat/dikreditkan.
I, on my own behalf/on behalf of the above mentioned payer have made deductions from the above-mentioned amounts of special classes of income and render this accou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Subsection 109B(1) together with documentary evidence of the date payment was paid/credited.

Saya sertakan bersama-sama ini wang tunai/cek No.:.....
I enclose herewith cash/cheque No.

.....
Cop Rasmi Syarikat/Company's Official Seal

Tarikh/Date:.....

Kegunaan Pejabat/Office Use

Kategori <i>Category</i>	Kod Bayaran <i>Payment Code</i>
Perkhidmatan/Services	193
Teknikal/Technical	194
Harta Alih/Moveable Property	195

Amaun : RM.....
Amount

Nama :
Name

Jawatan :
Designation

No. Telefon :
No. Telephone


Tel. No. :
Tel. No.

Tandatangan :
Signature

112)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37D," http://lampiran1.hasil.gov.my/pdf/pdfborang/CP37D_Pin3_2014.pdf, 검색일자: 2021. 10. 28.

[별첨] 특정 소득에 대한 원천세 납부 신고서(Form CP37A)¹¹³⁾

(CP37A - Pin 5/2017)



(Sila baca nota di muka sebelah sebelum mengisi borang ini)
(Please read the notes overleaf before completing this form)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Seksyen 107A Akta Cukai Pendapatan, 1967
Section 107A Income Tax Act, 1967

AKAUN POTONGAN-POTONGAN DARIPADA BAYARAN KONTRAK KEPADA KONTRAKTOR YANG TIDAK BERMASTAUTIN
ACCOUNT OF DEDUCTIONS FROM CONTRACT PAYMENT TO NON-RESIDENT CONTRACTORS

A. BUTIR-BUTIR PEMBAYAR/PARTICULARS OF PAYER				
1. No. Rujukan (No. Pendaftaran Syarikat/Perniagaan atau No. Kad Pengenalan bagi individu) <i>Reference No. (Registration No. of Company/ Business or Identity Card No. for individual)</i>				
2. No. Cukai Pendapatan * (sila lengkapkan) <i>Income Tax No.* (please complete)</i>				
3. Nama Pembayar <i>Name of Payer</i>				
4. Alamat Pos <i>Postal Address</i>				
5. Nama Projek <i>Project Name</i>				
6. No. Kontrak (diberi oleh LHDNM) <i>Contract No. (assigned by LHDNM)</i>				
B. BUTIR-BUTIR MENGENAI KONTRAKTOR YANG TIDAK BERMASTAUTIN PARTICULARS OF NON-RESIDENT CONTRACTOR				
7. No. Rujukan (No. Pasport/No. Pendaftaran Sykt./Perniagaan) <i>Reference No. (Passport No./Registration No. of Company/ Business)</i>				
8. No. Cukai Pendapatan Malaysia (jika ada) <i>Malaysian Income Tax No. (if any)</i>				
9. Nama Penuh Penerima <i>Full Name of Payee</i>				
10. Alamat <i>Address</i>				
11. Negara Asing <i>Foreign Country</i>				
12. Tahun Berakhir Perakaunan Penerima <i>Account Year End of Payee</i>				
C. BUTIR-BUTIR MENGENAI POTONGAN-POTONGAN/PARTICULARS OF DEDUCTIONS				
13. Tempoh Asas Bayaran Kontrak <i>Basis Period of Contract Payments</i>				
14. Tarikh bayaran kontrak telah dibayar/dikreditkan <i>Date of contract payments paid/credited</i> (sertakan salinan dokumen bayaran/attach copy of payment documents)	15. Amaun bayaran kontrak kasar <i>Gross contract payment amount</i>	16. Bahagian perkhidmatan bayaran kontrak <i>Service portion of contract payment</i>	17. Amaun potongan di bawah perenggan 107A(1)(a) <i>Amount of deduction under paragraph 107A(1)(a)</i> (Kadar/Rate 10%)**	18. Amaun potongan di bawah perenggan 107A(1)(b) <i>Amount of deduction under paragraph 107A(1)(b)</i> (Kadar/Rate 3%)**
	RM	RM	RM	RM
Saya sertakan bersama-sama ini wang tunai/cek No. <i>I enclose herewith cash/cheque No.</i>				

** Sila kemukakan cek berasingan untuk setiap perenggan 107A(1)(a)/(b).
Please enclose separate cheques for each paragraph under 107A(1)(a)/(b).

Cop Rasmi Syarikat/Company's Official Seal

Tarikh/Date:.....

Nama:

Name

Jawatan:

Designation

No. Telefon:

Tel. No.

Tandatangan:

Signature

113)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37A,"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CP37A_Pin_5_2017.pdf, 검색일자: 2021. 10. 28.

[별첨] 「소득세법」 제4(f)장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Form CP37F¹¹⁴⁾

(CP37F - Pin 3/2014)



(Sila baca nota di muka sebelah sebelum mengisi borang ini)
(Please read the notes overleaf before completing this form)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Seksyen 109F Akta Cukai Pendapatan, 1967
Section 109F Income Tax Act, 1967

AKAUN POTONGAN-POTONGAN DARIPADA BAYARAN KEPADA ORANG YANG TIDAK BERMASTAUTIN
DI BAWAH PERENGGAN 4(f) AKTA CUKAI PENDAPATAN 1967
AKTA CUKAI PENDAPATAN 1967 ACCOUNT OF DEDUCTIONS FROM PAYMENT TO A NON-RESIDENT PERSON
CHARGEABLE UNDER PARAGRAPH 4(f) INCOME TAX ACT 1967

A. BUTIR-BUTIR PEMBAYAR/PARTICULARS OF PAYER				
1. No. Rujukan (No. Pendaftaran Syarikat/Perniagaan atau No. Kad Pengenalan bagi individu) <i>Reference No. (Registration No. of Company/ Business or Identity Card No. for individual)</i>				
2. No. Cukai Pendapatan * (sila lengkapkan) <i>Income Tax No.* (please complete)</i>				
3. Nama Pembayar <i>Name of Payer</i>				
4. Alamat Pos <i>Postal Address</i>				
B. BUTIR-BUTIR MENGENAI ORANG YANG TELAH DIBAYAR / DIKREDITKAN PENDAPATAN DI BAWAH PERENGGAN 4(f) PARTICULARS OF PERSON TO WHOM INCOME CHARGED UNDER PARAGRAPH 4(f) HAD BEEN PAID/CREDITED				
5. No. Rujukan (No. Pasport/No. Pendaftaran Sykt./Perniagaan) <i>Reference No. (Passport No./Registration No. of Company/ Business)</i>				
6. No. Cukai Pendapatan Malaysia (jika ada) <i>Malaysian Income Tax No. (if any)</i>				
7. Nama Penuh Penerima <i>Full Name of Payee</i>				
8. Alamat <i>Address</i>				
9. Negara Asing <i>Foreign Country</i>				
C. BUTIR-BUTIR MENGENAI POTONGAN-POTONGAN/PARTICULARS OF DEDUCTIONS				
10. Tempoh di mana bayaran dibayar/ dikredit <i>Period for which the said payment was paid/credited</i>	11. Tarikh bayaran telah dibayar/ dikreditkan <i>Date the payment was paid/ credited</i>	12. Amaun bayaran kasar (sertakan salinan invoices) <i>Amount of gross payment (attach copy of invoice)</i>	13. Amaun potongan dibawah Seksyen 109F (kadar 10%) <i>Amount of deduction under Section 109F (rate 10%)</i>	14. Amaun bersih dibayar/ dikreditkan (sertakan salinan dokumen) <i>Net amount paid/credited (attach copy of document)</i>
		RM	RM	RM

Saya, bagi pihak saya sendiri/bagi pihak pembayar di atas telah membuat potongan daripada amaun pendapatan dinyatakan di atas menurut peruntukan Subseksyen 109F(1) bersama dengan bukti tentang tarikh pembayaran telah dibuat/dikreditkan.
I, on my own behalf/on behalf of the above mentioned payer have made deductions from the above-mentioned amounts of income pursuant to subsection 109F(1) together with documentary evidence of the date payment was paid/credited.

Saya sertakan bersama-sama ini wang tunai/cek No.:
I enclose herewith cash/cheque No.

.....
Cop Rasmi Syarikat/Company's Official Seal

Tarikh/Date:

Kegunaan Pejabat/Office Use

Kod Bayaran
Payment Code

274

Amaun : RM.....
Amount

Nama :
Name

Jawatan :
Designation

No. Telefon :
Tel. No:

Tandatangan :
Signature

114)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37F,"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CP37F_Pin_3_2014.pdf, 검색일자: 2021. 10. 28.

다. 원천세 납부 불이행

지급인(payer)이 정해진 기한 내에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원천세액에 대해 10%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미납 원천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완전히 정산될 때까지 법인세 목적상 기본적인 지출은 손금 공제가 불허하다(제2장 II. 법인세 내용 참조). 마찬가지로 시설(plant) 및 기계장치류(machinery)의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원천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완전히 정산할 때까지 시설(plant) 및 기계장치류(machinery)에 대한 자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VI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s)

1.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원칙의 적용

제1장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는 이 나라에서 발생된 소득이나 해외로부터 말레이시아 국내로 송금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속지주의(territorial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2021년 「재정법(Finance Act 2021)」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서 수령한 해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법상 비거주자는 과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이 제안은 차후에 번복되었다. 2021년 12월 31일에 정부는 언론 성명문을 통해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들이 하기의 조건에 해당되는 해외소득을 수령한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새로운 개정안은 2022년 1월 14일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나라의 국내 법령 따라 속지주의를 따라 세금을 매길지, 전 세계 소득 범주에 따라 세금을 매길지 정하며, 각 나라마다 수입원을 결정하는 자체적인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제2장의 I, II, V에서 말레이시아의 소득원에 따른 관련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각 나라의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원을 판단하는 방법에서 하나의 소득에 대해 양쪽 국가에서 동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즉 이중과세).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설치 서비스를 말레이시아에서 수행했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기술 서비스에 1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거주 국가인 한국에서 또 한 번 세금을 징수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중과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이하 DTA)¹¹⁵⁾을 맺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수입원과 거주지 개념을 적용한다. 한쪽 국가의 조세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따라 수입원이나 세법상 거주자로 포함되면, 다른 쪽 국가에서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 협약은 '계약 체결국(contracting state)' 사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계약 체결국'이라는 뜻은 협정을 맺은 두 관련 국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¹¹⁶⁾이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계약 체결국'은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이고,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에

115)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Double Taxation Agreement,"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4&bt_unit=1&bt_sequ=1, 검색일자: 2021. 10. 28.

116)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Double Taxation Agreement," https://phl.hasil.gov.my/pdf/pdfam/KoreaDTA_14032019.pdf, search date: 2021. 10. 28.

거주하는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1967년 「소득세법」 제132조(1)항(section 132(1) of the Income Tax Act 1967)¹¹⁷⁾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시 국내법을 우선하게 되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또는 용어 정의를 제한하여 적용(예: 로열티(royalty))하더라도 국내법(domestic legislation)을 우선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세법상 거주자가 외국에 세금을 내고 같은 소득에 대해 말레이시아에서 또한 번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중과세를 감면(double tax relief)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방적 감면(unilateral relief, 해당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또는 상호 간 감면(bilateral relief, 해당 국가와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했을 때)의 형태를 띤다.

가. 상호 간 감면(Bilateral relief)

상호 간 감면(bilateral relief)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1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호 간 감면 신청은 해당 평가 기간 마지막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은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Forms)를 통해 서면으로 국세청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낮은 것으로 감면 금액을 제한한다.

- 해외 소득¹¹⁸⁾에 대한 말레이시아 납세액
- 소득에 대해 이미 낸 외국 납세액

상호 간 감면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호 간 감면 = (해외소득[법정소득(statutory income)]/총소득(Total income)) x 상호 간 감면 전 말레이시아 과세액/일방적 공제액(unilateral credit)
 또는
 해외 소득에 부과된 외국 납세액
 이 중 낮은 금액

11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ncome Tax Act 1967(online version 2019. 1.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Act_53_20190101.pdf, 검색일자: 2021. 10. 28.

118) 상호 간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 소득은 말레이시아 밖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해외에서 세금(외국 납부세액)을 냈다면 해외 소득에 포함시킨다.

상호 간 청구를 목적으로 해외 소득은 말레이시아 밖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해외에서 세금(외국 납부세액)을 냈다면 해외 소득에 포함시킨다.

나. 일방적 감면(Unilateral relief)

일방적 감면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지 않는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의 세법상 거주자에게 주어진다. 해당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만큼은 말레이시아의 과세 소득이 된다.

일방적 감면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1년 평가 기간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둘 중 낮은 것으로 감면 금액을 제한한다.

- 해외 소득에 대한 말레이시아 과세액¹¹⁹⁾ 또는
- 해당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의 절반

일방적 감면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방적 감면액 = 해외소득[법정소득]/총소득 × 상호 간 감면 전 말레이시아 과세액/일방적 공제액
또는
해외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의 절반(½) 중
더 낮은 금액

일방적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 소득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외국 납부 세액이 부과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대한민국 거주자의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 규정 항목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두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s)에게만 적용하며, 거주자란 개인, 법인, 세무 목적상 개인으로 취급하는 모든 단체를 포함한다.

119) 일방적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 소득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외국 납부 세액이 부과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나 대한민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는 여부는 해당 국가의 국내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말레이시아의 세법상 거주자 테스트 방법은 제2장 II에서 설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 양국에 거주자로 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지위를 선택해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서 설명하는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s)을 적용하여 개인의 지위를 결정할 수 없다면,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의 관할 당국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 법률에 따라 개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하기 위해 긴밀한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의 국가 거주자로 간주한다. 만약 말레이시아나 대한민국의 관할 당국이 의문을 품는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세법상 거주자의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권 규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 a) 부동산 소득(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 b) 사업 이익(Business profits)
- c) 해운 및 항공운수(Shipping and air transport)
- d) 배당(Dividends)
- e) 이자(Interest)
- f) 독립적 인적용역(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 g) 종속적인 인적용역(Dependent personal services)
- h) 등기이사의 보수(Directors' fees)
- i) 예술인 및 운동가(Artistes and athletes)
- j) 연금 및 보험연금(Pensions and annuities)
- k) 정부 기능(Government service)
- l) 교수 및 교사(Government service)
- m) 학생 및 훈련생(Professors and teachers)
- n) 로열티(Royalties)
- o) 양도소득(capital gains)
- p) 기타 소득(Other income)

3.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슈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상대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에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하 PE)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고정 사업이 상대 국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 국가의 납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말레이시아-대한민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수익(profits) 중 고정 사업장에 귀속하는 부분만큼은 말레이시아에서 과세하게 된다.

말레이시아-대한민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정 사업장이란 뜻은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를 말한다. 여기에는 경영관리를 하는 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 석유정, 가스정, 채석장, 천연자원 채굴장소, 농장, 천연자원 탐사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사업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라는 것에는 빌딩,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건설 현장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기업이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건설, 설치 및 조립 사업, 이와 관련한 감독 활동을 수행할 때도 말레이시아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고정 사업장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제외).

-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한국 기업을 위해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음
-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기업 소유의 재고를 유지하고, 한국 기업을 대신해 정기적으로 구매 업무를 진행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에는 다음이 있다.

- 1) 기업 소유의 물건과 상품을 보관, 전시, 배송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때
- 2) 기업 소유의 물건과 상품을 보관, 전시, 배송 목적으로 재고를 유지할 때
- 3) 다른 기업의 업무 처리를 위해 한국 기업 소유의 재고를 유지할 때
- 4) 사업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를 유지하는 목적이 기업을 위한 물건 구매,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일 때
- 5) 사업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를 유지하는 목적이 기업을 위한 과학 연구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처럼 준비 과정이나 보조 성격을 띠는 활동을 하는 것일 때
- 6) 사업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를 유지하는 목적이 1)~5)에서 언급한 것이고, 전반적인 활동은 준비 과정이나 보조 성격을 띠고 있을 때

말레이시아 관점에서 제2장 V. 5에서 강조한 것처럼 비거주자가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간주하면 「소득세법」 107A장(Section 107A of ITA)을 실무 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비거주자와 계약을 맺고 말레이시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됐을 때, 말레이시아에 고정 사업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협정 적용 절차

말레이시아는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자 자신이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예상세액을 계산 후 기한 내에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납세자 스스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는 즉시 확인하지 않고 종합 세무감사와 벌금제도로 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세조약 감면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조세조약 감면 청구는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Forms)를 제출하는 시점에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절차와 문서 작업을 따라야 한다.

- 1)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감면을 청구하려면(즉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 적용, 비독립적 개인 서비스, 상호 구제 신청)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면 확인서나 증명서를 관련 부서에서 받아야 한다(이하 거주 증명서라 함). 거주 증명서는 과세연도마다 준비하도록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을 신청할 때는 거주 증명서를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때 국세청에 함께 제출한다. 상호 구제나 면제 신청을 할 때는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거주 증명서를 국세청 세무감사 시 제출하도록 한다.
- 2) 다음 서류는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 상호 구제 신청(bilateral relief)에 대한 감사 시 제출하도록 한다.
 - 외국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은 결정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나 세금 납부 영수증
 - 외국 세무 당국이 통상적으로 결정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나 납부 영수증에 기록하는 내역

3) 다음 서류는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 감사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종속적인 인적 용역비(dependent personal services)조항의 세금 면제에 대해 청구할 때(관련 국가가 말레이시아라 가정) 제출하도록 한다.

가) 거주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나) 개인 여권의 복사 진본 확인서(납세자는 말레이시아 출입국 시 여권에 말레이시아 출입국 기록과 날짜, 도장을 명확하게 찍어 두고 말레이시아의 실제 체류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다음 내용에 관한 해외 사업주의 서면 확인서

(1) 외국 국적자의 보수를 부담하는 자, 즉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는 근로 보수를 부담하는 자

- ✓ 해외에 있는 사업주
- ✓ 말레이시아 거주자 기업
- ✓ 말레이시아 고정 사업장

(2) 보수의 변제, 즉 해외에 있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를 말레이시아 거주자 기업이나 고정 사업장이 갚는지(둘 중 적용 가능한) 여부. 공개 예규(public ruling) 2/2012에서 구체적 형식의 서신을 안내하고 있음

라) 다음 내용에 관한 말레이시아 거주자 기업 또는 고정 사업장의 확인서

(1) 외국 국적자의 보수를 부담하는 자, 즉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는 근로 보수를 부담하는 자

- ✓ 해외에 있는 사업주
- ✓ 말레이시아 거주자 기업
- ✓ 말레이시아 고정 사업장

(2) 보수의 변제, 즉 해외에 있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를 말레이시아 거주자 기업이나 고정 사업장이 갚는지 여부. 공개 예규(public ruling) 2/2012에서 구체적 형식의 서신을 안내하고 있음

VII 기타 세금

1. 인지세(Stamp Duty)

인지세는 거래가 아닌 금융, 법률 또는 상업적 영향이 있는 증서(instrument)에 부과한다. 증서(instrument)에는 모든 서면 문서가 포함되며, 과세 대상 증서의 구체적인 특성은 1949년 「인지세법(Stamp Act 1949)」¹²⁰⁾의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날인되지 않은(unstamped) 증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국세청은 인지세 평가와 징수에 책임이 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인지세 평가 및 납부 시스템(STAMPS)이 기존 Digital Franking System 2.0을 대체한다. 모든 평가 및 납부는 이제 <https://stamps.hasil.gov.my>의 STAMPS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인지세율

인지세율은 증서의 특성과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며, 고정(fixed) 혹은 증가(ad valorem)세율로 부과된다.

재산 및 주식 양도, 서비스 계약 및 대출 계약에 대한 증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인지세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 재산 양도(주식 및 유가증권 제외)

인지세는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재산 가치의 1%에서 4% 사이의 비율로 부과된다.

〈표 2-VII-1〉 재산 양도 시 인지세율

(단위: %)

구분	세율
첫 10만링깃	1
40만링깃까지	2
50만링깃까지	3
1백만링깃 이상	4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12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Stamp Act 1949(online version 2014. 7.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Stamp_Act_1949_as_at_01072014.pdf, 검색일자: 2021. 10. 28.

재산양도 시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으로 한다.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

인지세는 양도일자의 주식의 증가 또는 시장 가치의 0.3%로 부과된다. 양도된 주식의 가치는 사전에 결정된 평가 방법에 따라 인지세사무소(Stamp Office)가 결정한 평가에 따르며, 다음 두 가지 가치평가 방법을 비교해야 한다.

가) 순 유형 자산(Net tangible assets, NTA)

NTA를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1주당 NTA = NTA*/발행자본금

*NTA = 총자산 - 무형자산 - 총부채

나) 판매대가(Sale consideration)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값

이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이 인지세 목적으로 양도된 주식의 가치가 된다.

주식양도 시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으로 한다.

3)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증권 또는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약정서(contract note)를 증서로 삼아 양도한 주식가치의 0.1%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된다.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주식 매매와 관련된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를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한 주식 또는 주식가치의 0.15%로 인상되었다(2021년 「재정법」).

다음 면제는 2021년 「재정법」 발표 시 반영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계약문서에 대해 2백링깃을 초과하는 인지세에 대해서 경감(remit)이 주어졌지만(다음 인지세 경감 참조), 이는 2022년 1월 1일(2021년 「재정법」)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이후,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약정서에 부과하는 1천링깃을 초과하는 인지세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이 주어진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2월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되었다.

인지세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납부한다.

4) 대출계약

인지세는 대출 금액의 0.5%로 부과한다. 담보없이 요구 즉시 상환이 가능한(repayable on demand) 대출계약 또는 일시상환(single bullet repayment)이 가능한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감면된 인지세 0.1%가 부과된다.

외화대출이거나 샤리아(Syariah)에 따라 말레이시아링깃 이외의 통화로 용자한 경우 인지세는 대출 금액의 0.5%지만, 납부해야 하는 총인지세는 2천링깃을 초과할 수 없다. 인지세는 채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은 다음과 같이 인지세를 부과한다.

〈표 2-VII-2〉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시 인지세율

	(단위: %)
연간 총대출금 또는 샤리아(Syariah)에 따른 총융자금 중 25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0.05
1백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대출 각 추가 1천링깃당	0.25
대출 각 추가 1천링깃당 또는 그 일부	0.5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이 경우 '중소기업'의 정의는

- 제조업과 관련하여 매출이 5천만링깃 이하인 기업 또는 정규직 직원이 2백명 이하인 기업 또는
-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과 관련하여 매출이 2천만링깃 이하인 기업 또는 정규직 직원이 75명 이하인 기업

5) 용역 계약

인지세는 용역 금액의 0.5%로 부과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지세가 0.1%를 초과하여 감면될 수 있다.

〈표 2-VII-3〉 용역 계약 시 인지세율

구분	인지세	
모든 용역 계약(1:1용역)	종가세 0.1%	
다중 용역 계약: 비정부 계약 (예: 민간기업과 용역 제공자 간)	첫 번째 단계	종가세 0.1%
	다음 단계	50링깃까지

〈표 2-VII-3〉의 계속

구분	인지세	
정부 계약 (예: 연방/주 정부 또는 주/지방 당국과 용역 제공자 간)	첫 번째 단계	면제
	두 번째 단계	증가세 0.1%
	다음 단계	50링깃까지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인지세는 채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나. 날인

말레이시아에서 작성된 증서 중 인지세가 부과되는 증서는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지연납부로 인한 가산세

지연납부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 1)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5링깃 또는 부족한 세액의 5% 중 더 큰 금액
- 2)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50링깃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 중 더 큰 금액
- 3) 나머지 경우 100링깃 또는 부족한 세액의 20% 중 더 큰 금액

라. 인지세 감면(Stamp duty relief)

재산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감면이 주어진다.

- 1) 관계사 간 재산 양도¹²¹⁾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는 STAMPS를 통해 주정부 국장(the State Director) 사무실로 전달되어야 하며,

121)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90% 이상을 소유하거나 제3자가 두 회사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인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양도 목적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양수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이어야 한다.
- 계약 이행 시 대가 정산 증빙자료(주식 또는 현금)가 요구된다.
- 제공된 양식의 법정 신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효율성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인지세 징수관(Collector)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 법정 신고서 및 증빙 자료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 대가가 양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었거나 증서 실행 시 양도인 또는 양수 회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은 경우
- 자산은 증서 실행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관련된 사람에 의해 이미 이전에 양도된 경우
- 양도 후 3년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결합이 중단되는 경우
- 양도 후 3년 이내에 양수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회사의 재건 또는 합병 계획에 따른 재산 양도

회사의 재건 계획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기존 회사의 사업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
- 새로운 회사의 구성원은 기존 회사의 구성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
- 새로운 회사는 이전한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 수행

‘모든 회사의 합병 계획’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달성할 수 있다.

- 양도 회사 또는 그 주주에게 양수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대가로 기존 회사의 사업을 다른 회사(양수 회사)가 인수하는 거래로 인하며
- 양수 회사가 기존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된 양수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여 기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는 STAMPS를 통해 주정부 국장 사무실로 전달되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인편으

로 제출해야 한다.

- 양수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 또는 설립되었거나 기존 회사의 발행 자본금의 90% 이상을 인수 또는 인수할 목적으로 자본을 증자해야 한다.
- 인수에 대한 대가는 다음 항목의 90%보다 커야 한다.
 - 가) 그 사업 또는 이 외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양수 회사가 기존 회사 또는 기존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한 주식 또는
 - 나) 주식 인수의 경우, 기존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한 양수 회사의 주식
- 지정된 양식에 따라 법정 신고서 작성

다음의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 명시된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양수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기존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 가) 기존 회사의 재건 또는 합병 시 발생하는 대가로 주식 처분
 - 나) 기존 회사의 해산
 - 다) 정부 정책의 요구에 따라
- 양수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인수한 기존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 가) 양수 회사의 재건 또는 합병
 - 나) 양수 회사의 해산

다음의 경우 감면이 취소된다.

- 법정 신고서 및 증빙 자료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 양수 회사와 기존 회사(주주 포함)는 3년 이내에 발행된 주식의 실소유자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양수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때 받은 중복 감면이 있으며, 3년 이내에 새로운 거래로 인하여 첫 번째 거래에서 인수한 주식의 실소유자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마. 인지세 면제(Stamp duty exemption)

다음과 같이 인지세 면제가 주어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과의 증서(Financing instrument)

- 샤리아(Syariah)의 원칙에 따라 리스백(lease back) 목적으로 금융업자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증서 또는 금융업자가 주요 매매 및 구매 계약에 따라 고객의 계약상 의무를 지는 모든 증서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된다.
- 중소기업과 투자자 간(Peer-to-Peer, P2P) 대출/금융 계약에 대해 5년간 인지세 면제가 주어진다. 이 면제는 증권위원회에 등록 및 승인된 P2P 플랫폼을 통한 P2P 금융에 대해서만 제공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P2P 대출/금융 계약에 적용된다.

다음 면제는 2022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되는 차용인 또는 고객과 금융 기관 간의 사업 대출 또는 금융상품을 조정하거나 상환기간을 조정과 관련된 대출 증서 또는 금융 계약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정 조건에 따라 주어졌던 면제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되었다.

2) 양도증서

- 부부간 생전 자발적 처분으로 부동산 양도를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모든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저작권, 상표,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 또는 판매에 대한 인지세 면제
- 보류된 프로젝트(abandoned project)에 대한 회생 작업을 수행하고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 장관이 선정 또는 승인한 계약자 또는 개발업자가 실행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되는 증서에 한한다.
- 보류된 프로젝트(abandoned project)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명의를 기재되어 있는 최초 구매자 또는 그의 수취자가 실행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구매자가 실행한 증서에 한한다.
- 동부 해안 경제 지역에서 적절한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양도 또는 토지 및 건물 임대에 대해 증가세가 부과되는 모든 증서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
- 중소기업이 승인된 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실행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3) 기타

- 모든 종류의 증서 및 그러한 문서의 모든 상대 문서 또는 사본이 말레이시아 국가 또는 주 정부의 통치자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하여 작성되거나 실행되는 경우, 통치자 또는 정부는 그러한 증서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인지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위의 면제는 공식 행정관(사바주의 경우 행정총장) 또는 공공 수탁인 또는 법원이 임명한 수령인이 서명하거나 실행한 증서 또는 서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문법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필요한 문서, 체납된 수입을 환수하기 위해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명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965년 「국토법」 제56조(National Land Code [Act 56 of 1965]), 1963년 「국토법」(페낭 및 말라카 소유권) 제518조(National Land Code(Penang and Malacca Titles) Act 1963 [Act 518]), 사바주의 「토지 조례」[사바주 Cap. 68](the Land Ordinance of Sabah [Sabah Cap. 68]), 또는 사라왁의 「토지 조례」[사라왁 Cap. 68](the Land Ordinance of Sarawak [Sarawak Cap. 81])에 따라 정부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모든 허가 또는 임대
- 완전히 해외에 위치한 부동산 또는 해외에서 수행되거나 수행될 작업과 관련된 모든 증서
- 중앙은행, 라부안 금융 서비스 당국(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말레이시아 협동 조합 위원회(the Malaysia Co-operative Societies Commission) 또는 증권 위원회가 샤리아(Syariah) 원칙에 따른 계획으로 승인한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 실행되는 증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엄격하게 요구되는 추가 증서이지만 다른 자금 조달 계획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증권위원회가 승인한 자산유동화거래를 위해 시행된 일정표에 명시된 증서에 대해 인지세 면제
- 증권위원회가 승인한 사채 또는 이슬람 증권의 발행, 가입, 또는 공개청약과 관련된 모든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계약서 또는 각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가) 할부구매 계약 이외의 상품 또는 제품 판매 목적 또는 이와 관련
 - 나) 상품가치 3백링깃 미만
 - 다) 은행 또는 은행원에게 예치된 돈에 대한 이자 지급

바. 인지세 경감(Stamp duty remission)

인지세 경감이 가능한 항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과의 증서

- 기존 이슬람 금융상품을 조정하거나 상환기간을 조정할 목적으로 샤리아(Syariah)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과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자산 임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증서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경감

2) 기타

다음 면제는 2022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 승인된 증권 거래소의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판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문서에 대해 2백링깃을 초과하는 인지세에 대해서 경감이 주어졌지만,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약정서에 부과하는 1천링깃을 초과하는 인지세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이 주어진다고 발표했다.

2. 토지세 및 재산평가세

토지세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관련 주 정부에서 매년 징수하는 세금이며, 재산평가세는 지방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방 의회에서 반기별로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말레이시아의 개별 주에서는 다양한 세율로 토지세와 재산평가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자산가격 또는 과세가격에 대해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한다.

3. 부동산 양도세(Real property gains tax, RPGT)

부동산 양도세는 부동산(real properties) 또는 부동산 회사(Real Property Companies, RPC)의 증권(shares)을 매도하여 창출한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부과된다. 국세청에서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책임을 갖는다.

과세기간 동안 과세 대상 자산을 매도하여 창출한 자본이득 총액에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양도세를 적용받는 자는 단체(body of persons), 파트너십(partnership), 공동소유자(co-proprietorship), 세무상 비거주자(non-residents), 회사(companies), 집행인(executor), 신탁 관리자(trustees)를 포함한다.

판매(sale) 및 양도(conveyance, assignment, settlement, alienation) 등의 형태로 소유 권을 이전하는 경우 매도로 간주한다.

가. 부동산(real property)의 정의

부동산은 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land)와 그 토지에 대한 모든 이자(interest), 옵션(option), 기타 권리(other right)를 의미한다.

‘토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지표(surface of the earth) 및 그 표면(surface)을 형성하는 모든 물질(all substances)
- 지표 아래 부분(earth below the surface)과 그 안의 물질(substances therein)
- 토지 위의 건물(buildings)과 토지에 부착된 모든 것(anything attached to land) 또는 토지에 부착되어 영구적으로 고정(permanently fastened to anything attached to land)된 것(표면 위 또는 아래)
- 토지에서 자라는 입목(timber), 나무(trees), 농작물(crops), 기타 초목(other vegetation)
- 물이 흐르는 토지

나. 부동산 회사(Real Property Companies, RPC)의 정의

RP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988년 10월 21일 현재 부동산, 증권 또는 모두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과 증권의 확정가액(defined value)이 총유형자산(total tangible assets)의 75% 이상인 통제된 회사(controlled company)
- 1988년 10월 21일 이후로 부동산, 증권 또는 모두를 취득하고 취득일 기준 해당 부동산과 증권의 확정가액(defined value)이 총유형자산의 75% 이상인 통제된 회사(controlled company)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도하여 부동산과 증권의 확정가액이 총유형 자산의 75% 미만이 되는 경우 회사는 매도일 기준으로 RPC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부동산의 확정가액(defined value)은 부동산의 시장가격(market value) 또는 증권의 취득가액(acquisition price of shares)을 의미한다.

통제된 회사(controlled company)는 최대 50명의 주주(members)를 가질 수 있고 5명 미만이 회사를 통제, 운영해야 한다.

RPC 지위(status)는 1988년 10월 21일 기준으로 결정되거나 부동산 또는 PRC증권을 취득할 때마다 결정된다. 회사가 한 번 RPC로 간주되는 경우 그 회사의 증권은 항상 RPC 증권으로 간주된다. RPC가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도하고 남은 부동산과 증권의 총잔존가액이 회사의 총유형자산의 75% 미만이 되는 경우 RPC 지위를 잃는다.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시설(plant), 기계(machineries), 재고(inventory), 채권(debtors), 증권 투자(investment in shares), 현금(cash), 예금(bank), 선급금(prepayments) 및 부동산(real properties)(예: 토지, 건물, 기타 PRC 증권에 투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권리금(good will)과 특허(patent)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은 유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자본이득(Chargeable gain)의 정의

자본이득(chargeable gain)은 처분가액(disposal price)과 취득가액(acquisition price)의 차액이다.

취득가액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consideration)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incidental cost)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부대비용에는 측량사(surveyor), 평가사(valuer), 회계사(accountant), 대리인(agent), 법률고문(legal advisory)에 지급하는 전문 서비스 비용, 인지세(stamp duty)를 포함한 양도 비용(cost of transfer), 판매자(buyer)를 찾기 위한 광고 비용(cost of advertising)이 있다.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자산의 손해(damages) 또는 손상(destruction)으로 지급받은 금액
- 보험증권(policy of insurance)에 따라 수령한 금액
- 몰수한 보증금(forfeited deposit)
-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

2013년 이전에 말레이시아 시민(Malaysian citizen) 또는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가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자본이득(chargeable gain)을 결정하고 부동산 양도세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13년 1월 1일 기준 시장가격(market value)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RPC 증권과 통제된 회사(controlled companies)에 매도하는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가액(disposal price)은 부동산 처분에 따라서 수령한 금액이다. 처분가액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부동산의 증진(enhancement)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capital expenditure), 이는 건물의 보수(renovation) 비용과 건물의 신축 건설 비용(construction of building)을 포함한다.
- 토지 소유권(title)을 설정(establishing), 보존(preserving), 방어(defending)하기 위한 법률 비용(legal fees)
- 부동산 처분의 부대비용(incidental cost), 이는 중개 수수료(brokerage fees), 평가 수수료(valuation fees), 법률 수수료(legal fees), 구매자를 찾는 광고 비용(cost of advertisement)을 포함한다.

라. 공제할 수 있는 손금(Allowable loss)

처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손금(allowable loss)이 발생한다. 매도(disposal)와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는 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제할 수 있다.

-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출된 자본이득(chargeable gains)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매도가 없거나(자본이득이 없는 경우), 손금이 자본이득과 모두 상계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손금(unabsorbed loss)을 이월할 수 있으며, 향후 창출되는 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그러나 개인의 경우 자본이득(Chargeable gains)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손금을 공제하기 전에 면제(exemption)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에 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RPC 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손금은 동일한 과세연도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또한 차기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도 없다. 2022년 1월 1일부터 비공제 손금(non-allowable loss)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 과세 대상 자산(chargeable asset)을 양도하는 대가로 과거에 취득한 증권(즉 처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거래)을 매도하여 발생한 손금까지 확대하였다.

마. 자산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이전(Transfer of assets into stocks)

부동산을 고정자산에서 유동자산(매도가능증권(trading stock))으로 재분류(reclassification)하는 것은 세무 목적상 과세 대상 자산(즉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처분가액은 자산을 재분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market value)으로 본다.

바. 부동산 양도세율

〈표 2-VII-4〉 부동산 양도세율

(단위: %)

처분	부동산 양도세율		
	회사(Companies) [말레이시아 법인, 신탁회사(trust), 말레이시아 협회(Malaysian societies) ¹⁾	개인 [시민(citizens),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개인 [비시민권자(non-citizens), 비영주권자(non-permanent resident), 비시민권자 및 비영주권자의 유언 집행자(executor)], 회사 [해외법인]
3년 이내	30	30	30
네 번째 해	20	20	30
다섯 번째 해	15	15	30
여섯 번째 해와 그 후	10	5 ²⁾	10

주: 1) 2022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협회(Malaysian societies)'를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대체하였다(2021년 「재정법」, Finance Act 2021). 회사가 아닌 등록된 단체(body of persons)는 협회(societies), 클럽(clubs), 협회(associations), 노동조합(trade unions), 힌두교 공동가족(Hindu joint families)을 포함하지만 파트너십(partnerships)은 제외한다.

2) 2021년 「재정법(2021 Finance Act)」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세율을 0%로 인하하였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사. 신고서 및 평가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이득은 부동산 「양도세법(RPGT Act¹²²⁾」에 따라 평가된다. 부동산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 또는 RPC 증권과 관련된 처분이라면 양도인(disposer)과 양수인(acquirer)은 다음과 같이 신고의 의무와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다.

122) Official portal of Federal Legislation, "Real Property Gains Tax 1967(online version 2021. 12. 1)," https://lom.agc.gov.my/ilims/upload/portal/akta/outputaktap/1690122_BI/ACT%20169_2012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1) 양수인(Acquirer)

- RPC 증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은 거래일로부터 기한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60일 이내에 신고서(Form CKHT 2A)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다음 별첨 참조).
- 취득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금인 경우, 양수인은 총현금 대가 또는 총취득가액의 3% 중 낮은 금액을 원천징수(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 해외법인의 경우 7%)해야 하고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21년 「재정법(2021 Finance Act)」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 신탁 관리자(trustee),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가 양도인인 경우 자산 취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했을 때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했다.

- 국세청으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액은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부동산 양도세의 일부이다.
- 양수인이 원천징수의 의무를 미준수한 경우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에 납부 지연 가산세 10%가 부과되며 이 경우 원천징수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2) 양도인(Disposer)


- RPC 증권 또는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기한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60일 이내에 부동산 처분의 경우 신고서(Form CKHT 1A) 또는 RPC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신고서(Form CKHT 1B)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다음 별첨 참조).
- 자본이득(chargeable gains)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율은 과세 대상 자산(chargeable asset)의 보유기간(holding period)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3) 처분일(Date of disposal)

처분일은 매매계약서(written agreement)의 날짜로 간주된다. 매매계약서가 없을 경우 구매 대가의 전액을 지불한 날짜 또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ownership) 이전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날짜 중 빠른 날짜를 처분일로 간주한다.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받은 날을 처분일로 간주하고, 해당 승인이 조건부인 경우 마지막 조건이 충족되는 날을 처분일로 간주한다.

[별첨] 양수인 - 취득 신고서(Form CKHT 2A)¹²³⁾

 LHDN MALAYSIA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BORANG NYA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Borang ini ditetapkan di bawah Seksyen 57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Borang CKHT 2A	TAHUN TAKSIRAN 2021 <small>CKHT 2A - Pin. 1/2021</small>						
ISIKAN RUANGAN BERIKUT									
Nama pemeroleh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No. pengenalan / pasport / pendaftaran * <small>(* Potong yang tidak berkenaan)</small>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No. cukai pendapatan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Maklumat aset :	No. Lot		Daerah						
	No. unit / blok		Mukim						
	No. hak milik		Negeri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Nama syarikat yang menerbitkan syer</td> <td></td> </tr> <tr> <td>Bilangan syer diperoleh</td> <td></td> </tr> </table>				Nama syarikat yang menerbitkan syer		Bilangan syer diperoleh		
Nama syarikat yang menerbitkan syer									
Bilangan syer diperoleh									
Maklumat bayaran Seksyen 21B ACKHT 1976 :	Amaun bayaran								
	No. resit bayaran								
	Tarikh bayaran		<small>(hh/bb/tttt)</small>						
BORANG CKHT 2A 2021									
PERINGATAN PENTING									
1) Borang CKHT 2A Tahun Taksiran 2021 perlu diisi bagi pemerolehan harta tanah atau syer yang tertakluk kepada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ACKHT 1976) dalam Tahun 2021. 2) Tarikh akhir pengemukaan Borang CKHT 2A adalah 60 hari selepas tarikh pemerolehan harta tanah atau syer. 3) Tindakan pendakwaan di bawah Subseksyen 29(1) ACKHT 1976 boleh diambil sekiranya gagal mengemukakan Borang CKHT 2A pada atau sebelum tarikh akhir pengemukaan. 4) Sila rujuk Nota Panduan dan Senarai Semakan sebelum mengisi borang ini. 5) Untuk maklumat lanjut, sila hubungi Hasil Care Line: 03-8911 1000 / 603-8911 1100 (Luar Negara).									
UNTUK KEGUNAAN PEJABAT									
(a) Kod Ase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b) Cawangan yang mengendalikan fail pelupus								
..... Nama dan Tandatangan Penerima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height: 40px;"></td>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arikh terima 1</td> <td style="text-align: center;">Tarikh terima 2</td> <td style="text-align: center;">Tarikh terima 3</td> </tr> </table>							Tarikh terima 1	Tarikh terima 2	Tarikh terima 3
Tarikh terima 1	Tarikh terima 2	Tarikh terima 3							

123)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KHT 2A 2021,"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CKHT_2A_Pin1_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SENARAI SEMAKAN BORANG CKHT 2A

Bil.	Perkara	(v)
1	Maklumat Borang CKHT 2A diisi dengan lengkap, jelas dan ditandatangani. Kegagalan melengkapkan Borang CKHT 2A akan menyebabkan borang tidak akan diperakui terima dan ditolak.	
2	Setiap pemeroleh perlu mempunyai nombor rujukan cukai pendapatan. Pendaftaran nombor rujukan cukai pendapatan boleh dibuat di aplikasi e-Daftar di Portal Rasmi www.hasil.gov.my atau di cawangan LHDNM berhampiran.	
3	Borang CKHT 2A diisi secara berasingan bagi setiap pemeroleh dan dikemukakan ke cawangan LHDNM di mana fail cukai pendapatan pelupus diuruskan atau cawangan LHDNM berhampiran.	
4	Lampiran 1 dan 2 diisi dengan lengkap sekiranya pemeroleh atau pelupus melebihi seorang.	
5	Salinan Borang CKHT 3 (Perakuan tidak dikenakan cukai) lengkap yang diterima daripada pelupus (jika berkaitan) supaya pemeroleh tidak perlu membuat bayaran di bawah Seksyen 21B ACKHT 1976 seperti berikut: (a) 3% (individu warganegara / pemastautin tetap); atau (b) 7% (individu bukan warganegara / bukan pemastautin tetap / syarikat bukan diperbadankan di Malaysia / pentadbir harta pusaka bagi mana-mana orang bukan warganegara dan bukan pemastautin tetap).	
6	Senarai dokumen yang perlu disertakan: (a) Pemerolehan Harta Tanah Salinan Perjanjian Jual Beli berselem / Memorandum Pindah Milik berselem atau bukti-bukti lain pemerolehan harta tanah. (b) Pemerolehan syer yang tertakluk kepada ACKHT 1976 (i) Salinan Perjanjian Jual Beli berselem / Borang 24 Akta Syarikat 1965 / Borang 32A Akta Syarikat 1965 berselem / Borang pemindahmilikan di bawah seksyen 105 Akta Syarikat 2016 / Resolusi Pengarah atau bukti-bukti lain pemerolehan syer. (ii) Dokumen lain - sila nyatakan:	
	(c) Borang CKHT 502 (Bayaran di bawah Seksyen 21B ACKHT 1976)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BORANG NYA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Borang ini ditetapkan di bawah Seksyen 57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Borang
CKHT 2A

TAHUN TAKSIRAN
2021
 CKHT 2A - Pin. 1/2021

BAHAGIAN A : MAKLUMAT PEMEROLEH				
(Sekiranya lebih daripada satu pemeroleh, sila kemukakan maklumat pemeroleh lain dalam Lampiran 1)				
A1	Nama pemeroleh			
A2	No. cukai pendapatan		A3	Tarikh lahir
				(hh/bb/tttt)
A4	No. pengenalan terkini / pasport terkini / pendaftaran		A5	No. pengenalan lama / pasport lama
A6	Alamat emel		A7	No. telefon
A8	Alamat surat-menyurat			
		Poskod	Bandar	
		Negeri		
Sekiranya pemeroleh adalah nomini / pentadbir / pemegang amanah, isikan butiran prinsipal seperti berikut:				
A9	Nama prinsipal			
A10	No. cukai pendapatan		A11	Tarikh lahir
				(hh/bb/tttt)
A12	No. pengenalan terkini / pasport terkini / pendaftaran		A13	No. pengenalan lama / pasport lama

BAHAGIAN B : MAKLUMAT PELUPUS				
(Sekiranya lebih daripada satu pelupus, sila kemukakan maklumat pelupus lain dalam Lampiran 2)				
B1	Nama pelupus			
B2	No. cukai pendapatan		B3	Tarikh lahir
				(hh/bb/tttt)
B4	No. pengenalan terkini / pasport terkini / pendaftaran		B5	No. pengenalan lama / pasport lama
B6	Warganegara	Gunakan kod negara (Isikan "MY" jika warganegara Malaysia)	B7	Pemastautin tetap
				1 = Ya 2 = Tidak
B8	Negara syarikat diperbadankan	Gunakan kod negara (Isikan "MY" jika diperbadankan Malaysia)	B9	No. telefon
B10	Alamat emel			
B11	Alamat surat-menyurat			
		Poskod	Bandar	
		Negeri		
B12	Bahagian pelupusan			
Sekiranya pelupus adalah nomini / pentadbir / pemegang amanah, isikan butiran prinsipal / si mati seperti berikut:				
B13	Nama prinsipal / si mati			
B14	No. cukai pendapatan		B15	Tarikh lahir
				(hh/bb/tttt)
B16	No. pengenalan terkini / pasport terkini / pendaftaran		B17	No. pengenalan lama / pasport lama
B18	Warganegara	Gunakan kod negara (Isikan "MY" jika warganegara Malaysia)	B19	Pemastautin tetap
				1 = Ya 2 = Tidak
B20	Negara syarikat diperbadankan	Gunakan kod negara (Isikan "MY" jika diperbadankan Malaysia)	B21	No. telefon
B22	Alamat emel			
B23	Hubungan di antara pelupus dan pemeroleh	1 = Suami dan isteri 2 = Ibu bapa dan anak 3 = Datuk / nenek dan cucu	4 = Syarikat dikawal / Syarikat berkaitan 5 = Lain-lain (Nyatakan.....)	

Nama:

No. Cukai Pendapatan:

BAHAGIAN C : MAKLUMAT HARTA TANAH / SYER YANG DIPEROLEH**MAKLUMAT HARTA TANAH**

C1	Bahagian yang diperoleh		C2	Nilai pemerolehan keseluruhan		.00
C3	No. lot / blok		C4	Mukim		
C5	No. hakmilik		C6	Daerah		
C7	Keluasan lot		C8	Negeri		

MAKLUMAT SYER

C9	Nama syarikat yang menerbitkan syer	
C10	Bilangan syer diterbitkan	
C11	Bilangan syer diperoleh	
C12	Nilai pasaran harta tanah semasa pemerolehan (RM)	.00
C13	Butir-butir lain (Jika balasan selain daripada wang tunai)	

BAHAGIAN D : BUTIR-BUTIR PEGUAM / EJEN CUKAI

D1	Nama firma			
D2	No. cukai pendapatan	D3	No. telefon	
D4	Alamat emel			
D5	Alamat surat-menyurat			
		Poskod		Bandar
		Negeri		
D6	No. rujukan pelanggan			

AKUAN PEMEROLEHAN ASET YANG BOLEH DIKENAKAN CUKAI

Sebagai mematuhi Seksyen 13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Saya (Nama pemeroleh)			
adalah dengan ini memberitahu bahawa saya telah pada		(hh/bb/tttt)	
bersetuju memperoleh suatu aset yang boleh dikenakan cukai			
daripada (Nama pelupus)			
dan dengan ini mengakui bahawa maklumat mengenai pemerolehan dan butir-butir yang saya berikan dalam borang nyata ini serta dokumen yang dikemukakan adalah benar, betul dan lengkap.			

Tarikh (hh/bb/tttt)

Tandatangan Pemeroleh

MAKLUMAT PEMEROLEH YANG LAIN

LAMPIRAN 1

Sediakan salinan secukupnya mengikut bilangan pemeroleh.


Bil.	Nama	No. Pengenalan / No. Pasport / No. Pendaftaran / No. Cukai Pendapatan	Alamat Surat-menyurat

MAKLUMAT PELUPUS YANG LAIN**LAMPIRAN 2**

Sediakan salinan secukupnya mengikut bilangan pelupus.

Bil.	Nama	No. Pengenalan / No. Pasport / No. Pendaftaran / No. Cukai Pendapatan	Alamat Surat-menyurat

[별첨] 양도인 - 부동산 양도 신고서(Form CKHT 1A)¹²⁴⁾

 LHDN MALAYSIA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BORANG NYA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Borang ini ditetapkan di bawah Seksyen 57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Borang CKHT 1A	TAHUN TAKSIRAN 2021 <small>CKHT 1A - Pin. 1/2021</small>												
ISIKAN RUJANGAN BERIKUT															
Nama pelupus :															
No. pengenalan / pasport / pendaftaran * (* Potong yang tidak berkenaan) :															
No. cukai pendapatan :															
Maklumat aset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No lot</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Mukim</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No. unit / blok</td> <td></td> <td>Daerah</td> <td></td> </tr> <tr> <td>No. hak milik</td> <td></td> <td>Negeri</td> <td></td> </tr> </table>			No lot		Mukim		No. unit / blok		Daerah		No. hak milik		Negeri	
No lot		Mukim													
No. unit / blok		Daerah													
No. hak milik		Negeri													
<h2 style="margin: 0;">BORANG CKHT 1A 2021</h2>															
PERINGATAN PENTING															
1) Borang CKHT 1A Tahun Taksiran 2021 perlu diisi bagi pelupusan harta tanah dalam Tahun 2021. Walau bagaimanapun pelupusan harta tanah yang boleh dikenakan / dikecualikan cukai pendapatan di bawah undang-undang cukai pendapatan adalah tidak tertakluk kepada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ACKHT 1976). 2) Tarikh akhir pengemukakan Borang CKHT 1A adalah 60 hari selepas tarikh pelupusan harta tanah 3) Penalti di bawah Subseksyen 29(3) ACKHT 1976 akan dikenakan sekiranya gagal mengemukakan Borang CKHT 1A pada atau sebelum tarikh akhir pengemukakan. 4) Sila rujuk Nota Panduan dan Senarai Semakan sebelum mengisi borang ini. 5) Untuk maklumat lanjut, sila hubungi Hasil Care Line: 03-8911 1000 / 603-8911 1100 (Luar Negara).															
UNTUK KEGUNAAN PEJABAT															
(a) Kod Aset															
(b) Cawangan yang mengendalikan fail pelupus															
		 Nama dan Tandatangan Penerima												
Tarikh terima 1	Tarikh terima 2	Tarikh terima 3													

124)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KHT 1A 2021,"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CKHT_1A_Pin1_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SENARAI SEMAKAN BORANG CKHT 1A

Bil.	Perkara	(v)
1	Maklumat Borang CKHT 1A diisi dengan lengkap, jelas dan ditandatangani. Kegagalan melengkapkan Borang CKHT 1A akan menyebabkan borang tidak akan diperakui terima dan ditolak.	
2	Setiap pelupus perlu mempunyai nombor rujukan cukai pendapatan. Pendaftaran nombor rujukan boleh dibuat di aplikasi e-Daftar di Portal Rasmi LHDNM www.hasil.gov.my atau di cawangan LHDNM berhampiran.	
3	Borang CKHT 1A diisi secara berasingan bagi setiap pelupus dan dikemukakan ke cawangan LHDNM di mana fail cukai pendapatan pelupus diuruskan atau cawangan LHDNM berhampiran.	
4	Pelupusan satu (1) harta tanah tetapi mempunyai tarikh pemerolehan berlainan boleh mengemukakan satu (1) Borang CKHT 1A. Walau bagaimanapun, pastikan maklumat di Bahagian D (Pengiraan Keuntungan / Kerugian Pelupusan Harta Tanah) diisi mengikut tarikh dan bahagian pemerolehan berkaitan.	
5	Borang CKHT 3 (Perakuan tidak dikenakan cukai) diisi dengan lengkap dan dikemukakan bersama Borang CKHT 1A (jika berkaitan).	
6	Lampiran 1 dan 2 diisi dengan lengkap sekiranya pelupus atau pemeroleh melebihi seorang.	
7	Lampiran 3 diisi dengan lengkap sekiranya memilih pengecualian cukai bagi suatu tempat kediaman persendirian di bawah seksyen 8 ACKHT 1976 bagi warganegara Malaysia atau Pemastautin Tetap sekali seumur hidup.	
8	Senarai dokumen yang perlu disertakan:	
	(a) Salinan Perjanjian Jual Beli berselem / Borang KTN 14A berselem / Memorandum Pindah Milik berselem atau bukti-bukti lain pelupusan harta tanah .	
	(b) Salinan Perjanjian Jual Beli berselem / Borang KTN 14A berselem / Memorandum Pindah Milik berselem / geran / catatan carian persendirian dari Pejabat Tanah atau bukti-bukti lain pemerolehan harta tanah .	
	(c) Salinan laporan penilaian oleh jurunilai berlesen bagi pelupusan dan pemerolehan yang tertakluk kepada nilai pasaran (sekiranya ada).	
	(d) Dokumen sokongan diskaun / rebat yang diterima daripada pemaju atau pelupus (sekiranya ada).	
	(e) Dokumen sokongan perbelanjaan pelupusan dan pemerolehan harta tanah di Bahagian D (Pengiraan Keuntungan / Kerugian).	
	(f) Perakuan Tidak Dikenakan Cukai (CKHT 5 atau CKHT 5A) di bawah seksyen 21A ACKHT 1976 bersama pengiraan cukai yang dikeluarkan oleh LHDNM bagi tuntutan kerugian harta tanah yang telah dilupuskan sebelum ini.	
	(g) Salinan surat kuasa wakil pelupus bagi tujuan pindah milik oleh wakil pelupus. Pastikan setiap wakil pelupus mempunyai nombor rujukan cukai pendapatan.	
	(h) Salinan kad pengenalan, sijil kewarganegaraan, sijil kelahiran / sijil pengambilan anak angkat atau sijil perkahwinan bagi pemberian kasih sayang.	
	(i) Salinan Geran Probat (Grant of Probate) / Surat Kuasa Mentadbir (Letter of Administration) / surat wasiat bagi pelupusan harta pusaka.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BORANG NYA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Borang ini ditetapkan di bawah seksyen 57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Borang
CKHT 1A

TAHUN TAKSIRAN
2021
CKHT 1A - Pin. 1/2021

BAHAGIAN A : MAKLUMAT PELUPUS (Sekiranya lebih daripada satu pelupus, sila kemukakan maklumat pelupus lain dalam Lampiran 1)				
A1	Nama pelupus			
A2	No. cukai pendapatan		A3	Tarikh lahir
A4	No. pengenalan terkini / pasport terkini / pendaftaran		A5	No. pengenalan lama / pasport lama
A6	Warganegara	Gunakan kod negara (Isikan "MY" jika warganegara Malaysia)	A7	Pemastautin tetap
A8	Negara syarikat diperbadankan	Gunakan kod negara (Isikan "MY" jika diperbadankan Malaysia)	A9	No. telefon
A10	Alamat emel			
A11	Alamat surat-menyurat			
		Poskod	Bandar	
		Negeri		
Sekiranya pelupus adalah nomini / pentadbir / pemegang amanah, isikan butiran prinsipal / si mati seperti berikut:				
A12	Nama prinsipal / si mati			
A13	No. cukai pendapatan		A14	Tarikh lahir
A15	No. pengenalan terkini / pasport terkini / pendaftaran		A16	No. pengenalan lama / pasport lama
A17	Warganegara	Gunakan kod negara (Isikan "MY" jika warganegara Malaysia)	A18	Pemastautin tetap
A19	Negara syarikat diperbadankan	Gunakan kod negara (Isikan "MY" jika diperbadankan Malaysia)	A20	No. telefon
A21	Alamat emel			

BAHAGIAN B : MAKLUMAT PEMEROLEH (Sekiranya lebih daripada satu pemeroleh, sila kemukakan maklumat pemeroleh lain dalam Lampiran 2)				
B1	Nama pemeroleh			
B2	No. cukai pendapatan		B3	Tarikh lahir
B4	No. pengenalan terkini / pasport terkini / pendaftaran		B5	No. pengenalan lama / pasport lama
B6	Alamat surat-menyurat			
		Poskod	Bandar	
		Negeri		
Sekiranya pemeroleh adalah nomini / pentadbir / pemegang amanah, benikan butir prinsipal seperti berikut:				
B7	Nama prinsipal			
B8	No. cukai pendapatan		B9	Tarikh lahir
B10	No. pengenalan terkini / pasport terkini / pendaftaran		B11	No. pengenalan lama / pasport lama
B12	Hubungan di antara pelupus dan pemeroleh	1 = Suami dan isteri 2 = Ibu bapa dan anak 3 = Datuk / nenek dan cucu	4 = Syarikat dikawal / Syarikat berkaitan 5 = Lain-lain (Nyatakan.....)	

Nama:

No. Cukai Pendapatan:

BAHAGIAN C : MAKLUMAT HARTA TANAH YANG DILUPUSKAN					
C1	Bahagian pemilikan		C2	Bahagian yang dilupuskan	%
C3	No lot / blok		C4	Mukim	
C5	No. hakmilik		C6	Daerah	
C7	Keluasan lot		C8	Negeri	
C9	Status harta tanah	1 = Bangunan kediaman 2 = Bangunan komersil 3 = Tanah kosong pertanian / temakan 4 = Tanah kosong komersil / perumahan 5 = Lain-lain (Nyatakan :)			
C10	Tarikh siap dibina (Isikan sekiranya C9 = 1 / 2)	(hh/bb/TTTT)	C11	Jenis bangunan (Isikan sekiranya C9 = 1 / 2)	
C12	Alamat bangunan (Isikan sekiranya C9 = 1 / 2)				
		Poskod		Bandar	
		Negeri			
C13	Nilai pelupusan keseluruhan aset	Amaun balasan (RM)		.00	
		Nilai pasaran (RM)		.00	

BAHAGIAN D : PENGIRAAN KEUNTUNGAN / KERUGIAN PELUPUSAN HARTA TANAH				
MAKLUMAT PELUPUSAN HARTA TANAH (Mengikut bahagian pemerolehan)			RM	SEN
D1	Tarikh pelupusan	(hh/bb/TTTT)		
D2	Nilai pelupusan	1 = Amaun balasan 2 = Nilai pasaran		.00
D3 Tolak : Perbelanjaan dan kos sampingan menurut Perenggan 5 dan 6 Jadual 2 ACKHT 1976				
	D3a	Perbelanjaan bagi menaikkan atau mengekalkan nilai harta tanah itu (ubahsuai / tambahan) mulai dari 01 Januari 1970		.00
	D3b	Perbelanjaan untuk memastikan, mengekalkan atau mempertahankan hak milik / hak ke atas harta tanah itu mulai dari 01 Januari 1970		.00
	D3c	Bayaran guaman		.00
	D3d	Duti setem		.00
	D3e	Komisen jualan		.00
	D3f	Perbelanjaan lain. Nyatakan:		.00
D4 JUMLAH (D3a hingga D3f)				.00
D5 HARGA PELUPUSAN (D2 – D4)				.00

Nama:

No. Cukai Pendapatan:

BAHAGIAN D : PENGIRAAN KEUNTUNGAN / KERUGIAN PELUPUSAN HARTA TANAH							
MAKLUMAT PEMEROLEHAN HARTA TANAH (Mengikut bahagian pemerolehan)					RM	SEN	
D6	Tarikh pemerolehan				(hh/bb/TTTT)		
D7	Nilai pemerolehan	1 = Amaun balasan (Selepas menolak diskaun / rebat yang diberi oleh pemaju atau pelupus) 2 = Nilai pasaran pada (hh/bb/TTTT) 3 = Nilai balasan perjanjian usaha sama				.00	
D8	Tambah : Kos sampingan menurut Perenggan 6 Jadual 2 ACKHT 1976						
	D8a	Bayaran guaman				.00	
	D8b	Duti setem				.00	
	D8c	Komisen belian				.00	
	D8d	Perbelanjaan lain. Nyatakan:				.00	
D9	JUMLAH (D7 hingga D8d)						.00
D10	Tolak : Penerimaan menurut Perenggan 4 Jadual 2 ACKHT 1976						
	D10a	Pampasan diterima kerana kerosakan / bencana pada harta tanah itu atau terbina / terhapus / susutan / risiko susutan harta tanah itu (mulai 01 Januari 1970)				.00	
	D10b	Jumlah wang diterima di bawah suatu polisi insurans untuk kerosakan / bencana pada harta tanah itu atau kehilangan / kerosakan / susutan harta tanah itu (mulai 01 Januari 1970)				.00	
	D10c	Jumlah deposit terluccut berhubung dengan pindah milik yang dicadangkan mengenai harta tanah itu (mulai 01 Januari 1970)				.00	
D11	JUMLAH (D10a hingga D10c)						.00
D12	HARGA PEMEROLEHAN (D9 – D11)						.00
D13	KEUNTUNGAN (D5 – D12) / KERUGIAN (D12 – D5) : Tandakan (X) jika kerugian						.00
PENGIRAAN CUKAI (SEKIRANYA D13 ADALAH KEUNTUNGAN)					RM	SEN	
D14	Tolak : Pengecualian di bawah Perenggan 2 Jadual 4 ACKHT 1976 (untuk pelupus kategori individu sahaja)						
	Penentuan pengecualian	1 = RM10,000 x % bahagian yang dilupuskan (C2) ; atau 2 = 10% x keuntungan (D13) yang mana lebih tinggi					
D15	JUMLAH KEUNTUNGAN (D13 – D14)						
D16	Tolak : Kerugian boleh dibenarkan bagi pelupusan sebelumnya selain kerugian saham di bawah Perenggan 34A Jadual 2 ACKHT 1976						
D17	KEUNTUNGAN BOLEH DIKENAKAN CUKAI (D15 – D16); ATAU KERUGIAN HANTAR HADAPAN (D16 – D15) : Tandakan (X)						
D18	JUMLAH CUKAI DIKENAKAN (Sekiranya D17 adalah keuntungan boleh dikenakan cukai)						
	D18a	Cukai ke atas (D17)	.00	Atas Kadar	%		
D19	Tolak : Baki relif cukai dari tahun kebelakangan (Kerugian sebelum 01 April 2007)						
D20	BAKI CUKAI DIKENAKAN (D18 – D19) ; ATAU BAKI RELIF HANTAR HADAPAN (D19 – D18) : Tandakan (X)						
D21	Tolak : Bayaran di bawah Seksyen 21B ACKHT 1976						
D22	BAKI CUKAI KENA DIBAYAR (D20 – D21) ; ATAU CUKAI TERLEBIH BAYAR (D21 – D20) Tandakan (X)						

Nama :

No. Cukai Pendapatan:

BAHAGIAN E : WANG MODAL DITERIMA DI BAWAH PERENGGAN 8 JADUAL 2 ACKHT 1976		RM	SEN
E1	Balasan bagi hak-hak yang terlucut atau diserahkan balik atau kerana tidak menjalankan hak-hak		.00
E2	Balasan bagi penggunaan atau mengeksploitasikan harta tanah		.00

BAHAGIAN F : BUTIR-BUTIR PEGUAM / EJEN CUKAI			
F1	Nama firma		
F2	No. cukai pendapatan	F3	No. telefon
F4	Alamat emel		
F5	Alamat surat-menyurat		
		Poskod	Bandar
		Negeri	
F6	No. rujukan pelanggan		

AKUAN PELUPUSAN ASET YANG BOLEH DIKENAKAN CUKAI	
Sebagai mematuhi Seksyen 13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Saya (nama pelupus)	
adalah dengan ini memberitahu bahawa saya telah pada	(hh/bb/tttt)
bersetuju melupuskan suatu harta tanah yang boleh dikenakan cukai iaitu:	
No lot	Mukim
No. unit / blok	Daerah
No. hak milik	Negeri
kepada (nama pemeroleh)	
dan dengan ini mengakui bahawa maklumat mengenai pelupusan, tuntutan perbelanjaan dan butir-butir yang saya berikan dalam borang nyata ini serta dokumen yang dikemukakan adalah benar, betul dan lengkap.	

Tarikh (hh/bb/tttt)

Tandatangan Pelupus

MAKLUMAT PELUPUS YANG LAIN

LAMPIRAN 1

Sediakan salinan secukupnya mengikut bilangan pelupus.

Bil.	Nama	No. Pengenalan / No. Pasport / No. Pendaftaran / No. Cukai Pendapatan	Alamat Surat-menyurat

MAKLUMAT PEMEROLEH YANG LAIN**LAMPIRAN 2**

Sediakan salinan secukupnya mengikut bilangan pemeroleh.

Bil.	Nama	No. Pengenalan / No. Pasport / No. Pendaftaran / No. Cukai Pendapatan	Alamat Surat-menyurat

LAMPIRAN 3

Kepada:

Ketua Pengarah Hasil Dalam Negeri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BORANG PERAKUAN PEMILIHAN Pengecualian Cukai Untuk Pelupusan Kediaman Perseendirian DI BAWAH SEKSYEN 8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Nama pelupus			
No. pengenalan			
No. cukai pendapatan			
Alamat kediaman yang dilupuskan			
	Poskod		Bandar
	Negeri		
<p>Saya faham bahawa pemilihan ini tidak boleh ditarik balik. Saya mengaku:</p> <p>(a) bahawa saya tidak pernah diberi pengecualian cukai di bawah mana-mana peruntukan Akta ini atau di bawah Akta Cukai Spekulasi Tanah 1974 yang telah dibatalkan berkenaan pelupusan kediaman;</p> <p>(b) bahawa tempat kediaman ini:</p> <p>(i) telah saya diami sebagai kediaman; *</p> <p>(ii) telah saya sewakan sebagai kediaman; * (<i>* Potong yang tidak berkenaan</i>)</p> <p>atau</p> <p>(c) bahawa kediaman ini telah layak diduduki sebelum pelupusan.</p>			

Tarikh (hh/bb/tttt)


Tandatangan Pelupus

PERINGATAN

Dokumen sokongan yang perlu dikemukakan :

- (a) Salinan sijil kelayakan menduduki bangunan bertarikh sebelum tarikh pelupusan harta tanah; **atau**
- (b) Salinan bil telefon, elektrik atau air bertarikh sebelum tarikh pelupusan harta tanah; **atau**
- (c) Salinan perjanjian penyewaan.

[별첨] 양도인 - RPC 증권 양도 신고서(Form CKHT 1B)¹²⁵⁾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BORANG NYA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small>Borang ini ditetapkan di bawah Seksyen 57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small>	Borang CKHT 1B	TAHUN TAKSIRAN 2021 <small>CKHT 1B - Pin. 1/2021</small>
ISIKAN RUANGAN BERIKUT			
Nama Pelupus :			
No. pengenalan / pasport / pendaftaran * <small>(* Potong yang tidak berkenaan)</small> :			
No. cukai pendapatan :			
Maklumat aset :	Nama syarikat yang menerbitkan syer		
	Bilangan syer dilupuskan		
<h2 style="margin: 0;">BORANG CKHT 1B 2021</h2>			
PERINGATAN PENTING			
1) Borang CKHT 1B Tahun Taksiran 2021 perlu diisi bagi pelupusan syer yang tertakluk kepada kepada Perenggan 34 dan 34A Jadual 2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dalam Tahun 2021. 2) Tarikh akhir pengemukaan Borang CKHT 1B adalah 60 hari selepas tarikh pelupusan syer. 3) Penalti di bawah Subsaksyen 29(3) ACKHT 1976 akan dikenakan sekiranya gagal mengemukakan Borang CKHT 1B pada atau sebelum tarikh akhir pengemukaan. 4) Sila rujuk Nota Panduan dan Senarai Semakan sebelum mengisi borang ini. 5) Untuk maklumat lanjut, sila hubungi Hasil Care Line: 03-8911 1000 / 603-8911 1100 (Luar Negara).			
UNTUK KEGUNAAN PEJABAT			
(a) Kod Aset			
(b) Cawangan yang mengendalikan fail pelupus			
			Nama dan Tandatangan Penerima
Tarikh terima 1	Tarikh terima 2	Tarikh terima 3	

125)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KHT 1B 2021,"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CKHT_1B_Pin1_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SENARAI SEMAKAN BORANG CKHT 1B

Bil.	Perkara	(√)
1	Maklumat Borang CKHT 1B diisi dengan lengkap, jelas dan ditandatangani. Kegagalan melengkapkan Borang CKHT 1B akan menyebabkan borang tidak akan diperakui terima dan ditolak.	
2	Setiap pelupus perlu mempunyai nombor rujukan cukai pendapatan. Pendaftaran nombor rujukan boleh dibuat di aplikasi e-Daftar di Portal Rasmi LHDNM www.hasil.gov.my atau di cawangan LHDNM berhampiran.	
3	Borang CKHT 1B diisi secara berasingan bagi setiap pelupus dan dikemukakan ke cawangan LHDNM di mana fail cukai pendapatan pelupus diuruskan atau cawangan LHDNM berhampiran.	
4	Pelupusan yang mempunyai tarikh pemerolehan berlainan boleh mengemukakan satu (1) Borang CKHT 1B. Walau bagaimanapun, pastikan maklumat di Bahagian C (Maklumat Syarikat Yang Menerbitkan Syer), Bahagian D (Maklumat Pemerolehan dan Pelupusan Syer) dan Bahagian E (Pengiraan Cukai Keuntungan / Kerugian Pelupusan Syer) diisi mengikut tarikh dan bahagian pemerolehan berkaitan.	
5	Borang CKHT 3 (Perakuan tidak dikenakan cukai) diisi dengan lengkap dan dikemukakan bersama Borang CKHT 1B (jika berkaitan).	
6	Lampiran 1 dan 2 diisi dengan lengkap sekiranya pelupus atau pemeroleh melebihi seorang.	
7	Senarai dokumen yang perlu disertakan:	
	(a) Salinan Perjanjian Jual Beli bersestem / Borang 32A Akta Syarikat 1965 bersestem / Borang surat cara pindahmilik di bawah seksyen 105 Akta Syarikat 2016 / Sijil-sijil saham / Resolusi Pengarah atau bukti-bukti lain pelupusan .	
	(b) Salinan Perjanjian Jual Beli bersestem / Borang 24 / Borang 32A Akta Syarikat 1965 bersestem / Borang surat cara pemindahmilikan di bawah seksyen 105 Akta Syarikat 2016 / Sijil-sijil Saham / Resolusi Pengarah atau bukti-bukti lain pemerolehan .	
	(c) Sebarang tuntutan perbelanjaan perlu diisi pada Bahagian D (Pengiraan keuntungan / kerugian) dan kemukakan dokumen sokongan untuk perbelanjaan tersebut.	
	(d) Salinan Perjanjian Jual Beli bersestem bagi pemerolehan harta tanah yang dimiliki oleh syarikat harta tanah.	
	(e) Salinan akaun beraudit syarikat bagi tahun berakh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hun pemerolehan atau tahun terhampir sebelum atau selepas pemerolehan harta tanah atau syer dalam syarikat harta tanah yang lain oleh syarikat harta tanah atau tahun syarikat memperolehi harta tanah atau syer dalam syarikat harta tanah yang lain yang menjadikan syarikat tersebut suatu syarikat harta tanah • Tahun syer dilupuskan oleh pelupus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BORANG NYA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Borang ini ditetapkan di bawah seksyen 57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Borang
CKHT 1B

TAHUN TAKSIRAN
2021
CKHT 1B - Pin. 1/2021

BAHAGIAN A : MAKLUMAT PELUPUS (Sekiranya lebih daripada satu pelupus, sila kemukakan maklumat pelupus lain dalam Lampiran 1)					
A1	Nama pelupus				
A2	No. cukai pendapatan		A3	Tarikh lahir	(hh/bb/tttt)
A4	No. pengenalan terkini / pasport terkini / pendaftaran		A5	No. pengenalan lama / pasport lama	
A6	Warganegara	Gunakan kod negara (Isikan "MY" jika warganegara Malaysia)	A7	Pemastautin tetap	1 = Ya 2 = Tidak
A8	Negara syarikat diperbadankan	Gunakan kod negara (Isikan "MY" jika diperbadankan Malaysia)	A9	No. telefon	
A10	Alamat emel				
A11	Alamat surat-menyurat				
		Poskod		Bandar	
		Negeri			
Sekiranya pelupus adalah nomini / pentadbir / pemegang amanah, isikan butiran prinsipal / si mati seperti berikut:					
A12	Nama prinsipal / si mati				
A13	No. cukai pendapatan		A14	Tarikh lahir	(hh/bb/tttt)
A15	No. pengenalan terkini / pasport terkini / pendaftaran		A16	No. pengenalan lama / pasport lama	
A17	Warganegara	Gunakan kod negara (Isikan "MY" jika warganegara Malaysia)	A18	Pemastautin tetap	1 = Ya 2 = Tidak
A19	Negara syarikat diperbadankan	Gunakan kod negara (Isikan "MY" jika diperbadankan Malaysia)	A20	No. telefon	
A21	Alamat emel				
BAHAGIAN B : MAKLUMAT PEMEROLEH (Sekiranya lebih daripada satu pemeroleh, sila kemukakan maklumat pemeroleh lain dalam Lampiran 2)					
B1	Nama pemeroleh				
B2	No. cukai pendapatan		B3	Tarikh lahir	(hh/bb/tttt)
B4	No. pengenalan terkini / pasport terkini / pendaftaran		B5	No. pengenalan lama / pasport lama	
B6	Alamat surat-menyurat				
		Poskod		Bandar	
		Negeri			
Sekiranya pemeroleh adalah nomini / pentadbir / pemegang amanah, isikan butiran prinsipal seperti berikut:					
B7	Nama prinsipal				
B8	No. cukai pendapatan		B9	Tarikh lahir	(hh/bb/tttt)
B10	No. pengenalan terkini / pasport terkini / pendaftaran		B11	No. pengenalan lama / pasport lama	
B12	Hubungan di antara pelupus dan pemeroleh	1 = Suami dan isteri 2 = Ibu bapa dan anak 3 = Datuk / nenek dan cucu	4 = Syarikat dikawal / Syarikat berkaitan 5 = Lain-lain (Nyatakan.....)		

Nama: No. Cukai Pendapatan:

BAHAGIAN C : MAKLUMAT SYARIKAT YANG MENERBITKAN SYER (Sekiranya lebih daripada satu tarikh pemerolehan, sila isi Bahagian C secara berasingan)									
C1	Nama syarikat yang menerbitkan syer								
C2	Tarikh syarikat menjadi Syarikat Harta Tanah (Sekiranya tertakluk kepada Perenggan 34A Jadual 2 ACKHT 1976)			(hh/bb/tttt)	C3	Nilai tertentu harta tanah dan syer dalam syarikat harta tanah lain pada tarikh pemerolehan harta tanah / pada tarikh pemerolehan syer oleh syarikat yang menerbitkan syer (RM)			
C4	Jumlah aset ketara syarikat pada tarikh syarikat menjadi Syarikat Harta Tanah (RM)				C5	Peratusan nilai tertentu berbanding jumlah aset ketara (C3/C4)			%

BAHAGIAN D : MAKLUMAT PEMEROLEHAN DAN PELUPUSAN SYER (Sekiranya lebih daripada satu tarikh pemerolehan, sila isi Bahagian D secara berasingan)										
D1	Bilangan syer diperoleh			D2	Bilangan syer dilupuskan			D3	Peratus syer dilupuskan (D2 / D1)	
D4	D4a	Bilangan syer diterbitkan pada tarikh pemerolehan			D5	Nilai tertentu harta tanah dan syer dalam syarikat harta tanah lain pada tarikh pemerolehan syer (RM)				
	D4b	Bilangan syer diterbitkan pada tarikh pelupusan			D6	Nilai pasaran harta tanah pada tarikh pelupusan (RM)				
D7	D7a	Jumlah aset ketara bersih syarikat pada tarikh pemerolehan (RM)			D8	D8a	Amaun balasan keseluruhan mengikut perjanjian atau dokumen pindah milik pada tarikh pelupusan (RM)			
	D7b	Jumlah aset ketara bersih syarikat pada tarikh pelupusan (RM)				D8b	Nilai pasaran keseluruhan pada tarikh pelupusan jika pelupusan tertakluk kepada Perenggan 9 Jadual 2 ACKHT 1976 (RM) (D2/D4b x D7b)			

BAHAGIAN E : PENGIRAAN CUKAI KEUNTUNGAN / KERUGIAN PELUPUSAN SYER (Sekiranya lebih daripada satu tarikh pemerolehan, sila isi Bahagian E secara berasingan)										
MAKLUMAT PELUPUSAN SYER (Mengikut bahagian pemerolehan)								RM	SEN	
E1	Tarikh pelupusan			(hh/bb/tttt)						
E2	Nilai pelupusan			1 = Amaun balasan (D8a x peratus milik pelupus mengikut bahagian pemerolehan) 2 = Nilai pasaran jika pelupusan tertakluk kepada Perenggan 9 Jadual 2 ACKHT 1976 (D8b x peratus milik pelupus mengikut bahagian pemerolehan)						.00
MAKLUMAT PEMEROLEHAN SYER (Mengikut bahagian pemerolehan)								RM	SEN	
E3	Tarikh pemerolehan			(hh/bb/tttt)						
E4	Nilai pemerolehan			1 = Amaun mengikut pengiraan seperti di perenggan 34A(3)(a) Jadual 2 [D2/D4a x D5] 2 = Amaun balasan mengikut perenggan 34A(3)(b) Jadual 2 [merujuk Perenggan 4 Jadual 2] 3 = Nilai pasaran mengikut perenggan 34A(3)(b) Jadual 2 [merujuk Perenggan 9 Jadual 2] [D7a/D4a x D2] 4 = Nilai pemerolehan harta tanah jika syer diperolehi di bawah Perenggan 34 Jadual 2						.00
E5	Tambah : Kos sampingan menurut Perenggan 6 Jadual 2 ACKHT 1976 (Tidak layak jika E4 = 1)									
	E5a	Bayaran guaman								.00
	E5b	Duti setem								.00
	E5c	Komisen belian								.00
	E5d	Perbelanjaan lain. Nyatakan:								.00
E6	JUMLAH (E4 hingga E5d)									.00
E7	Tolak : Penerimaan menurut Perenggan 4 Jadual 2 ACKHT 1976 (Tidak layak jika E4 = 1)									
	E7a	Pampasan diterima kerana kerosakan / bencana pada aset atau terbinasa / terhapus / susutan / risiko susutan aset (mulai 01 Januari 1970)								.00
	E7b	Jumlah wang diterima di bawah suatu polisi insurans untuk kerosakan / bencana pada aset atau kehilangan / kerosakan / susutan aset (mulai 01 Januari 1970)								.00
	E7c	Jumlah deposit terluat berhubung dengan pindah milik yang dicadangkan mengenai aset (mulai 01 Januari 1970)								.00
E8	HARGA PEMEROLEHAN (E6 – E7)									.00
E9	KEUNTUNGAN (E2 – E8) / KERUGIAN (E8 – E2) : Tandakan (X) jika kerugian									.00
PENGIRAAN CUKAI (SEKIRANYA E9 ADALAH KEUNTUNGAN)										
E10	Tolak : Pengecualian di bawah Perenggan 2 Jadual 4 ACKHT 1976 (untuk pelupus kategori individu sahaja)									
	Penentuan pengecualian			1 = 10% x keuntungan (E9) ; atau 2 = RM10,000 x % bahagian yang dilupuskan (D3), yang mana lebih tinggi						
E11	JUMLAH KEUNTUNGAN (E9- E10)									

Nama:		No. Cukai Pendapatan:			
PENGIRAAN CUKAI (SEKIRANYA E9 ADALAH KEUNTUNGAN)				RM	SEN
E12	Tolak : Kerugian boleh dibenarkan bagi pelupusan sebelumnya selain pelupusan syer di bawah Perenggan 34A Jadual 2 ACKHT 1976				
E13	KEUNTUNGAN BOLEH DIKENAKAN CUKAI (E11 - E12) ; ATAU KERUGIAN HANTAR HADAPAN (E12 – E11) : Tandakan X				
E14	JUMLAH CUKAI DIKENAKAN				
E14a	Cukai ke atas (E13)		.00	Atas kadar	%
E15	Tolak : Bayaran di bawah Seksyen 21B ACKHT 1976				
E16	BAKI CUKAI KENA DIBAYAR (E14 – E15) ; ATAU CUKAI TERLEBIH BAYAR (E15 – E14) Tandakan (X)				
BAHAGIAN F : WANG MODAL DITERIMA				RM	SEN
F1	Balasan bagi hak-hak yang terlucut atau diserahkan balik atau kerana tidak menjalankan hak-hak				.00
F2	Sebagai balasan bagi penggunaan atau mengeksploitasikan aset-aset				.00
BAHAGIAN G : BUTIR-BUTIR PEGUAM / EJEN CUKAI					
G1	Nama firma				
G2	No. cukai pendapatan		G3	No. telefon	
G4	Alamat emel				
G5	Alamat surat-menyurat				
	Negeri				
G6	No. rujukan pelanggan				
AKUAN PELUPUSAN ASET YANG BOLEH DIKENAKAN CUKAI					
Sebagai mematuhi Seksyen 13 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Saya (nama pelupus)					
adalah dengan ini memberitahu bahawa saya telah pada (tarikh)				(hh/bb/tttt)	
bersetuju melupuskan syer yang boleh dikenakan cukai dalam					
Syarikat (nama syarikat)					
sebanyak (jumlah syer dilupuskan)					
kepada (nama pemeroleh)					
dan dengan ini mengakui bahawa maklumat mengenai pelupusan, tuntutan perbelanjaan dan butir-butir yang saya berikan dalam borang nyata ini serta dokumen yang dikemukakan adalah benar, betul dan lengkap.					
Tarikh	<input type="text"/>	(hh/bb/tttt)			
		<input type="text"/>			
		Tandatangan Pelupus			

MAKLUMAT PELUPUS YANG LAIN

LAMPIRAN 1

Sediakan salinan secukupnya mengikut bilangan pelupus.

Bil.	Nama	No. Pengenalan / No. Pasport / No. Pendaftaran / No. Cukai Pendapatan	Alamat Surat-menyurat

MAKLUMAT PEMEROLEH YANG LAIN**LAMPIRAN 2**

Sediakan salinan secukupnya mengikut bilangan pemeroleh.

Bil.	Nama	No. Pengenalan / No. Pasport / No. Pendaftaran / No. Cukai Pendapatan	Alamat Surat-menyurat

4) 국세청 납세 증명서 발행

- 국세청은 매도자가 제출한 신고서 Form CKHT 1A 또는 Form CKHT 1B에 대해 세금 고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발행할 수 있다.
- 상소(appeal)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 세금 납부가 완료된 후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납세 증명서(certificate of clearance)를 수령할 수 있다.
- 세금 납부 지연 시 추가 통보 없이 10%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 가산세(penalty)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신고의 의무를 미준수하여 위반내용에 대한 유죄(guilty of an offence) 판결을 받을 경우 5천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납부해야 할 세액에 세 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21년 「재정법(Finance act 2021)」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를 떠나거나 떠나려고 시도하는 자에게 부동산 「양도세법(RPGT Act)」에 따라 최대 가산세를 5천링깃에서 2만링깃으로 인상하였다.

자. 면제(Exemption)

1)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세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경우 1만링깃 또는 자본이득(chargeable gains)의 10% 중 큰 금액만큼 면제
- 말레이시아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개인 주택 1개를 처분하여 발생한 이득(gain)
- 자산 유통화(securitization of assets)와 관련하여 과세 대상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gain)
- 과세 대상 자산을 부동산 투자 신탁(real estate investment) 또는 부동산 신탁 기금(property trust funds)에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득(gain)
- 취득일로부터 여섯 번째 해(6th year)와 그 이후에 20만링깃 미만의 저비용, 중저가 주거용 주택(low cost, medium low and affordable residential homes)을 처분한 경우

2) 처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사망한 개인(deceased individual)의 자산을 수탁자(trustee) 또는 수유자(legatee)에게 양도
- 증여인이 말레이시아 시민인 경우, 배우자 간에 자산 양도
- 정부, 주 정부, 지방 당국 또는 승인된 자선 단체(approved charity)에 증여
- 법률에 따른 강제 취득(compulsory acquisition)으로 인한 자산 처분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라부안 금융 서비스 당국(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말레이시아 협동조합 위원회(Malaysian Co-operative Societies Commission), 증권 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서 샤리아(Syariah) 원칙에 따라 승인한 자금 조달제도(scheme of financing)로 과세 대상 자산을 처분

3) 양도인의 이득(gain)과 손금(loss)이 없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증여인이 말레이시아 시민인 경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증여를 통한 양도
-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분가액의 75% 이상이 증권 거래이면서 운영 효율성(efficiency in operation)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그룹 내 회사 간의 부동산을 양도

제3장 대한민국 투자자의 기타 고려사항

- I. 말레이시아 내 사업체 설립
- II. 세제 혜택

제3장 | 대한민국 투자자의 기타 고려사항

I 말레이시아 내 사업체 설립

1. 사업체의 주요 형태

사업 조직의 주요 형태로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공기업 또는 개인기업), 외국 회사의 현지 지사(branch), 신탁(trust body),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union), 공동사업(partnership), 자영업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이다. 투자자의 책임은 보유한 주식의 명목 가치 중 미지급된 부분까지만 제한하고 있어 모든 투자자(모회사가 되는 외국 회사 포함)를 보호할 수 있다. 민간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는 주식 양도권이 없고 자본 공모(증권 및 채권)를 할 수 없다. 비상장 기업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는 공개 기업(public company)(public company)으로 간주하게 된다. 비상장 기업은 공개 기업(public company)으로 전환할 수 있고, 반대로 공개 기업(public company)은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종류의 사업과 법인으로 진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가. 현지(local) 전문 서비스 업체의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지역의 전문 서비스 업체(회사 비서, 변호사, 세무사 등)를 통해 기업 설립 및 관련 규제에 관해 도움받는 것이 좋다. 출입국 관리 부서에 비자나 허가 신청, 주 토지 사무소에 서류 제출, 세금 관련 업무 등 특정 절차(말레이시아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신청서, 신고서, 제출서 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서비스 제공 업체의 도움 없이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언어 문제로 말레이시아의 공용어인 말레이어가 여러 관공서에서 널리 쓰이기 때문이다.

현지(local) 전문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산업 군에 따른 특정 이슈에 관한 조언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나 필수 조건(석유 가스산업, 운송업 외 기타 산업이 국가 정책에 의해 보호받는지, 외국인 지분 소유에 관한 제한, 부미푸트라(Bumiputera)(말레이계 우대 정책) 지분 소유권 의무, 납입 자본금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른 세법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고려해야 할 조세 영향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회사 주소/사업장 및 은행 계좌 설정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회사 또는 사업장 주소(실제 주소 또는 가상 오피스)의 주소가 있어야 하고, 현지 은행의 개인 계좌 또는 기업 계좌를 개설해서 주로 현지 통화로 거래되는 대금 지급, 주식 발행, 예치금, 수수료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다. 회사 설립

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원하는 회사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색하고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에 예약해 두어야 한다. 회사명 검색당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음 정보는(등록료와 함께) 회사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기업 구조(선택사항, 단 보증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는 필수)
- 2) 사업의 종류
- 3) 등록된 사무실 주소
- 4) 사업장 주소
- 5) 이사진 및 발기인의 상세사항
- 6) 이사진 및 발기인의 선언문
- 7) 법인 설립 책임자의 법규 준수 선언문

또 다른 요구사항은 승인받은 기관의 회원 또는 기업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 비서를 기업 설립 후 30일 이내에 지정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법인 설립은 하루 안에 완료할 수 있고 기업 위원회의 온라인 포털 MYCOID에 있는 슈퍼폼(Superform)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출입국 허가 및 비자(해당할 경우)

회사 운영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특정 이민 허가과 비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 있다. 설립한 회사 형태에 따라 적용하는 이민 허가과 비자가 있으며, 제1장 III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마. 인사 및 고용

모든 사업주는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고용주의 의무를 유념해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일정한 법정 공제를 하고, 기여금(contribution)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근로자 연금, 사회보장금, 인재 개발 기금이 있다. 또 고용주가 따라야 하는 납세 의무가 몇 가지 있다. 세금 관점에서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내용은 제2장 III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바. 회사, 외국 회사의 지사, 연락 사무소 비교

말레이시아의 기업 유형에 따라 차이 나는 큰 특징을 개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I-1〉 말레이시아의 기업 유형별 특징

구분	개인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외국 기업의 지사(branch)	연락 사무소(contact office)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회사법」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를 통해 법인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회사법」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를 통해 법인설립 의무 없음 말레이시아 개발 산업청에 신청서 제출(승인 대상)
허용하는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기업의 사업활동과 동일해야 함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은 허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 투자를 위한 일반적인 시장 조사, 조율 센터로 활동을 제한. 어떤 종류라도 거래, 사업, 상업, 장고임대, 외국 기업을 대신한 계약, 서비스 제공, 말레이시아의 자회사와 자사에 대한 경영관리 활동을 엄격히 금지
적합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 내 사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내 운영을 짧은 시간 동안만 확장하고자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에 영속적인 사업체 설립을 하기 전 사업성 평가를 위한 임시 거점
소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외국인 소유 가능(산업별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본사의 100%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권 자체가 없음. 주 기업의 대리인

〈표 3-I-1〉의 계속

구분	개인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외국 기업의 지사(branch)	연락 사무소(contact office)
별도 법인	• 맞음	• 아님	• 아님
주주수	• 최대 50명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최소 납입 자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 한 명의 주주가 1링깃 주식을 보유함 • 단 해외 주재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납입 자본금 (즉 25만링깃에서 1백만링깃) 이 필요함 • 사업 구조와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의 사업 본질에 따름(자세한 내용은 제 1장 III 참조)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설립 최소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 한 명의 주주 또는 기업체가 단독으로 소유 •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거주자 이사가 필요 • 말레이시아인일 필요는 없지만 유효한 취업 허가증과 거주지 주소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함 •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에 등록된 회사/회사 비서, 공인회계사, 변호사로부터 법인 설립 서류 및 기타 요구사항에 관해 도움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며 공식 대리인이 될 1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하고, 본사 업무를 대신해서 프로세스 및 서류 작업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임된 대리인은 「회사법」에 따라 외국 기업이 따라야 하는 규칙, 사항 등에 책임지며 「회사법」 위반 시 외국 기업에 부과되는 모든 처벌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해당 없음
책임 제한	• 있음	• 없음(모기업까지 책임 부과)	• 없음(모기업까지 책임 부과)
재무제표 감사 의무	• 있음	• 있음 - 지사의 모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없음
연간 세금보고	• 있음	• 있음	• 해당 없음
세금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및 관리를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거주자로 처리 • 말레이시아 세제 혜택/인센티브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비거주자로 처리 • 말레이시아 세제 혜택/인센티브 사용 불가 • 말레이시아에서 받는 대금은 원천세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상 아님

〈표 3-I-1〉의 계속

구분	개인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외국 기업의 지사(branch)	연락 사무소(contact office)
소득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 및 중소기업 자격이 되는 기업에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 적용 중소기업의 60만링깃 소득 구간 까지 17%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 이후 24%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 지사가 벌어들인 소득은 원천세 징수 대상(최종 세율은 아님, 10% + 3% 부과) 또는 비거주자 세율 적용(예: 이자 소득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없음
주재원 파견 및 취업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종류와 필요한 기술 역량에 따라 파견할 수 있는 인원 수가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종류와 필요한 기술 역량에 따라 파견할 수 있는 인원 수가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와 기술 업무를 위한 파견직 신청을 할 수 있음. 연락 사무소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파견할 수 있는 인원 수가 다름
설립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2년(정부 통상 관련 업무 5년), 조건부 추가 가능
설립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회사는 법인 설립 비용 1천링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사 설립 비용은 승인받은 주식자본에 따라 5천링깃에서 7만링깃이(링깃 환산 시) 부과된다. 특정한 주식자본이 없다면 7만링깃의 정액요금이 적용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없음
설립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와 정보를 완벽히 제출하고 보통 1주일 이내 완료(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정보 준비 시간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와 정보를 완벽히 제출하고 보통 1주일 이내 완료(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정보 준비 시간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 개발 산업청에 서류를 완벽히 제출하고 2~3달 이내에 승인받음

자료: 저자 작성

2. 사업 규정

가. 인수합병(merger and acquisition)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 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ttee, FIC)가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말레이시아 기업의 자산 취득,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규제했다. 하지만 2009년에 외국인 투자 위원회(FIC)가 해체되며 가이드라인이 자유로워졌다.

특정 전략업종(strategic sectors)에서 당국의 규제를 제외하면 더 이상 지분 조건은 없다. 다만 부미푸트라(Bumiputera)나 정부기관이 보유한 지분을 희석하는 2천만링깃 이상의 자산

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려면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 경제기획단(Economic Planning Unit, EP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EPU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인 유닛당 1백만링깃 이하의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다.

3. 회계, 신고, 감사 의무

말레이시아 회계기준(Malaysian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MFRS)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유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기업(non-private entities)에서 필수로 적용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유한기업(private company) 회계기준(Malaysian Private Entities Reporting Standards, MPERS)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유한기업(private company)은 필수로 적용해야 한다. 단 말레이시아 회계기준을 전체 적용하기로 한 기업은 예외로 둔다. 기업은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에 연간 수익률, 이사회 보고서,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정부승인을 받은 감사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2016년 제정된 「법인법(Companies Act 2016)」과 2001년 제정된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법(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Act 2001)」에 따라 특정 부류의 유한기업은 감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휴면 기업, 무매출 기업, 승인받은 회사가 대상이다.

감사 면제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면제 증명서와 함께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II 세제 혜택

1. 말레이시아의 투자 장려정책

말레이시아에서는 1986년 「투자촉진법(Promotion of Investments Act)」,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년 「관세법(Customs Act)」, 1976년 국내 「소비세법(Excise Act)」 및 1990년 「자유지역법(Free Zone Act)」 등에 투자 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조업, 농업, 여행업(호텔업 포함), 특정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보호 등에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혜택에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투자세 공제, 가속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재투자액 공제(reinvestment allowances), 정부후원 산업단지 사용과 무이자 보조금 및 대출 등이 포함된다.

2. 제조 부문에 대한 혜택

가. 제조회사에 대한 주요 혜택

제조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으로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과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가 있다.

1)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취득한 회사는 5년간 법정소득(총소득에서 수입지출과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를 차감한 금액)의 70%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어, 나머지 법정소득 30%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있는 회사는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공장, 플랜트, 기계류 또는 기타 장비 등 프로젝트에 사용된 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나. 하이테크 회사에 대한 혜택

신기술 분야에서 장려 활동 또는 장려 제품을 생산하는 하이테크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 1) 5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2)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투자세 공제

다.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품 또는 활동,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 요구 및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산업 간 연계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1) 10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2)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 1)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중 60만링깃 이하의 과세 소득에 대해 17%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60만링깃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은 24%의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 2) 소기업

국내에서 설립되고 납입자본금이 50만링깃 이하이며, 말레이시아인이 60% 이상을 소유한 소기업은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 5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나)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마. 선정된 산업 투자에 대한 혜택

공장 기계, 자재 취급 장비,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장비 그리고 공장 기계, 자재 취급 장비,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장비의 모듈과 구성품의 생산 활동을 하는 회사와 특정 산업을 위한 특수 공정 기계류 또는 장비, 포장 기계류, 특정 산업 및 포장 기계류를 위한 특수 공정 기계류 또는 장비를 위한 모듈과 구성품의 생산 활동을 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 10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2)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바. 자동차산업에 대한 혜택

다음의 에너지 효율 차량과 그 주요 구성품·시스템의 조립 및 제조회사에 5~10년간 법인세 면제 또는 투자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1) 에너지 효율 차량의 조립
- 2) 변속기, 엔진, 에어백&그 구성품, 핸들&제어 메커니즘 및 브레이크 메커니즘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 차량 또는 비에너지 효율 차량을 위한 주요 구성품·시스템의 제조
- 3) 전기 모터, 전기 배터리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같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을 위한 구성품의 제조

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혜택

다음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 있는 회사에 5~10년간 법인세 면제 또는 투자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1) 항공우주 제조
- 2) 시스템 통합
- 3) 정비(machine), 수리(repair) 및 오버홀(overhaul)
- 4) 항공 관련 서비스

아.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오일팜 바이오매스의 활용에 대한 혜택

바이오 기반 화학약품, 바이오 연료, 파티클보드, 중밀도 섬유보드, 합판, 펄프 및 제지와 같은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오일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회사

- 가) 10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나)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2) 재투자하는 기존 회사에 대한 혜택

- 가) 10년간 재투자에서 발생하는 증가된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나)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자. 산업용 빌딩 시스템에 대한 혜택

기둥, 빔, 슬라브, 벽, 지붕 트러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시스템, 거푸집 공사 시스템, 강철 프레임 시스템, 블록워크 시스템, 목재 프레임 시스템 및 혁신적 시스템의 제조활동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가) 5년간 법정소득의 70~100% 사이의 법인세 면제
- 나)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차. 제조 부문에 대한 추가 혜택

1) 재투자 공제

3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조 활동 및 농업 활동을 운영한 회사가 확장, 자동화, 현대화 또는 동일 산업 내의 관련 제품으로의 다양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 재투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s)

가) 장려 활동 또는 제품에 대한 재투자

재투자 공제기간이 15년이 경과한 후에 장려 제품의 제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가속 자본 공제(capital allowances)를 신청할 수 있다.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는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3년 이내 상각하는 특별 공제로, 첫째 초기 공제 40%와 연간 공제 20%의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혜택이 주어진다.

나) 폐기물 재활용

2001 과세연도로부터 사업목적으로 적격 지출이 발생한 제조회사는 다음과 같은 플랜트 및 기계에 대해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다.

- 폐기물 재활용 전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 폐기물을 완제품으로 추가로 처리하는 데 사용

3) 산업용 빌딩 시스템에 대한 혜택

산업용 빌딩 시스템 구성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을 구매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 회사는 2006 과세연도로부터 초기 공제 40%와 연간 공제 20%의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혜택이 주어진다.

3. 농업 부문에 대한 혜택

1986년 「투자촉진법」에서는 농업 부문과 관련하여 '회사'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 농업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협회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단독 사업체 및 파트너십

농업 부문에서 장려 제품 또는 장려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가. 농업 부문에 대한 주요 혜택

1)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제조 부문에서와 같이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취득한 회사는 5년간 법정소득의 70%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어, 나머지 법정소득 30%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있는 회사는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식품 생산에 대한 혜택

식품 생산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와 식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 1) 식품 생산 활동에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는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자회사에 투자한 금액과 동등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 식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10년간의 평가 기간 또는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의 평가 기간 동안 법정소득에 대해 일체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혜택

1) 할랄(Halal) 식품 생산에 대한 혜택

할랄 식품 생산에 신규 투자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이슬람교 개발국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취득한 회사는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기타 할랄(Halal) 활동에 대한 혜택

가) 할랄 파크 운영자에 대한 혜택

할랄 파크 운영자는 다음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 (1) 10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2)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나) 할랄(Halal) 산업 운영자에 대한 혜택

지정된 할랄 파크에서 프로젝트 운영한 회사는 다음의 혜택이 주어진다.

- (1) 10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 (2) 할랄 장려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및 영업세 면제
- (3) HACCP, GMP, Codex Alimentarius, 위생 표준 운영 절차 및 돼지고기의 식품 추적가능성과 같은 수출시장 준수 규정 등 국제 품질 표준을 획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이중 공제

다) 할랄 물류 운영자에 대한 혜택

할랄 물류 운영자에게는 다음의 혜택이 주어진다.

- (1) 5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한 법인세 면제
- (2)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라.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혜택

1) 재투자 공제

쌀, 옥수수, 야채, 덩이줄기, 가축, 수산물 등 필수 식품의 생산 활동을 36개월 이상 영위한 회사는 재투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자원 기반 산업 재투자에 대한 혜택

말레이시아인 국민 소유지분이 51% 이상인 내국법인이 수출 잠재력이 있는 고무, 오일 팜 및 목재 기반 산업에 사업 확장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5년간 법정소득의 70%에 대해 법인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나)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3) 식품 가공 활동 재투자에 대한 혜택

말레이시아 국민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내국인 소유 기업이 장려 식품 가공 활동에 재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5년간 법정소득의 70%에 대해 법인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나)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4)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재투자 공제 기간이 만료된 회사가 장려 농업 활동 및 식품 제품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가속 자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는 2년 이내 자본적 지출금액을 상각할 수 있는 특별공제로, 첫째 초기 공제 20%와 연간 공제 40%를 받을 수 있다.

5) 농업 공제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특정 자본적 지출에 대해 1967년 「소득세법」에 따라 자본 수당 및 특수 산업용 건물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6)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의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한 100% 공제

1967년 「소득세법 부속규칙」 제4A호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에 따른 농업 프로젝트의 자본적 지출금액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특정 최소 면적을 경작하고 활용하는 농장에 대해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혜택

가.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주요 혜택

생명공학기술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바이오 경제개발공사로부터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을 승인받은 회사는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 지식재산권 소득의 경우, 법정소득의 최대 100%까지의 세금 면제
- 2) 비지식재산권 소득의 경우, 법정소득의 최대 70%까지의 세금 면제
- 3) 5년 동안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 공제에 상당하는 신규 사업 또는 확장 프로젝트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정소득의 100% 세금 면제
- 4) 세금 면제 기간이 만료된 후 10년간 적격 활동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정소득에 대해 20%의 할인(discounts) 세율
- 5) 원자재·구성품·기계류·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영업세 면제
- 6) R&D를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
- 7) 수출 장려를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
- 8) 생명공학기술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적격 건물에 대해 10년간 산업용 건물 공제
- 9) 바이오넥서스 자격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사업화 단계의 초기에 투자한 총투자액에 상당하는 세금 공제

나. 바이오넥서스 자격 회사에 대한 생명공학기술 자금 조달

바이오넥서스 자격이 있는 회사는 생명공학기술 사업화자금 2.0 프로그램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5. 환경 관리에 대한 혜택

가. 조림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산림 재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는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 10년간 법정소득의 100% 법인세 면제가 되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2)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나.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혜택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의 신기술을 이용하는 폐기물 재활용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 5년간 법정소득의 70%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2)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다. 녹색 기술 혜택

- 1) 녹색 기술 프로젝트

녹색 기술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발생한 최초 적격 자본적 지출 일자로부터 최대 5년간 녹색 기술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100%에 상당하는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 녹색 서비스

녹색 서비스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5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 폐기물 에코 파크(Waste Eco Park, WEP)에 대한 혜택

폐기물 재활용, 회수 및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폐기물 에코 파크(WEP)의 개발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다음과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 WEP 개발자

폐기물 에코 파크 내에서 인프라 개발을 수행하는 회사는 2016년 과세연도부터 2025년 과세연도까지 법정소득의 70%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WEP 관리자

폐기물 에코 파크 관리, 유지관리, 감독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회사는 2016년 과세연도부터 2025년 과세연도까지 법정소득의 70%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WEP 운영자

폐기물 에코 파크에서 폐기물 처리·복구 활용을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 5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나) 최초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마.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1) 폐기물 재활용 활동

2001 과세연도부터 사업상 목적의 적격 지출이 발생한 제조회사는 다음과 같은 공장 및 기계류에 대해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폐기물 재활용 전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 ② 폐기물을 완제품으로 추가 가공하는 데 사용된 경우

2) 전력 공급 품질 유지 장비

2005 과세연도부터 사업비용 절감 목적의 전력 공급 품질유지 장비 관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는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다.

6. 연구 개발에 대한 혜택

1986년 「투자촉진법」에서는 연구 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제품의 설계,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영위하는 회사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 연구 개발에 대한 주요 혜택

1) 계약 R&D 회사

계약 R&D 회사란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 외의 다른 회사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 법정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5년간 100% 전액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나) 10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

2) R&D 회사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 또는 기타 회사에 대해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R&D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사내 자체 연구

말레이시아에서 자체 사업 목적으로 사내 R&D를 수행하는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50%의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R&D 활동 재투자에 대한 혜택

재투자하는 기존 R&D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또는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가) 계약 R&D 회사

- (1) 법정소득에 대한 세금이 5년간 100%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2) 첫 번째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

나) R&D 회사

첫 번째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

다) 사내 R&D

첫 번째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0년 내에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한 50%의 투자세 공제

5) 공공 부문 R&D의 사업화에 대한 혜택

공공 연구기관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R&D 성과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와 R&D 성과 상업화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 R&D 성과 상업화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한 회사는 자회사에 투자한 액수에 상당하는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나) R&D 성과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10년간 법정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혜택

1) 연구개발에 대한 이중 공제

가) 회사는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연구개발로 발생한 수익적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승인된 연구기관, 승인된 R&D 회사 또는 계약 R&D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연구 성과 사업화를 위한 연구원에 대한 혜택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은 자신의 연구 결과의 상업화로 얻은 소득에 대해 5년간 50%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7. 교육훈련에 대한 추가 혜택

1) 근로자 채용 비용에 대한 공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비용은 세금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된다. 여기에는 채용 박람회 참여에 따라 발생한 비용, 고용기관에 대한 대금 지급이 포함된다.

2) 채용 전 훈련에 대한 공제

사업 시작 전 발생한 훈련비용은 1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훈련생을 반드시 채용할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비직원 훈련에 대한 공제

회사는 자사 직원이 아닌 거주자에게 실무 훈련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 1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현금 기부에 대한 공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법정기관에 의해 설립 유지되는 기술 또는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현금 기부는 1회에 한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5)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승인된 산업, 기술 또는 직업 훈련용 건물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회사는 건물의 건축 또는 매입에 대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BA)를 신청할 수 있다.

6) 교육 기자재에 대한 세금 감면

승인된 훈련 기관과 사내 훈련 프로젝트 그리고 모든 사립 고등교육 기관은 작업실, 방송실, 어학 실습실의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기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및 국내 소비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7)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 면제

교육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8) 승인된 훈련에 대한 이중 공제

인적자원 개발기금(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에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는 승인된 교육훈련에 대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9) 구조화된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혜택

말레이시아 재능공사(Tal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의 승인을 받은 구조화된 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회사에 의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중 공제가 주어진다.

8.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운송, 통신 및 공익설비 부문의 하위 부문 프로젝트로서 재무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는 1967년 「소득세법」 제127항에 따라 5년간 법정소득의 70%에 대해 세금 면제와 1967년 「소득세법 부속규칙」 제 7B호에 따른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세 공제받을 수 있다.

9.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혜택

2012 과세연도부터 해운회사가 말레이시아 선박의 운항으로 얻은 소득은 거주자에 한해 세금이 70%가 면제되고, 말레이시아 선박에 취업 승선한 모든 개인이 당해 승선근로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10.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대한 혜택

2009 과세연도부터 2015 과세연도까지 말레이시아 거주자인 개인은 사업상 목적의 모든 정보통신기술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과세연도 기준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다.

11. 저개발 지역에 대한 혜택

저개발 지역으로 사업 운영을 확장하는 제조 또는 서비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 회사가 법정소득을 얻는 최초의 과세연도로부터 시작하여 최대 15년간의 과세연도까지 100%의 법인세 면제 또는 10년의 기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에 상응하는 법인세 면제
- 나. 제조업 및 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개발에 사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 시 인지세 면제
- 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 및 서비스 활동에 관련된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에 대한 수수료 또는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 라. 시행 중인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조건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완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와 구성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마. 시행 중인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조건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선정된 서비스 부문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12. 기타 혜택

가. 산업용 건물 공제

산업용 건물 공제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 또는 매입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에 제공된다.

나. MSC Malaysia 내 건물에 대한 산업용 건물 공제

사이버자야 내에서 MSC Malaysia 입주한 회사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10년간 산업용 건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 감사 수수료 공제

사업비용의 절감과 기업의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감사 수수료 지급으로 발생한 지출은 법인세 산정 시 비용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라. 엔젤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창업자본 또는 창업초기 자금조달 단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는 총투자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마.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1967년 「소득세법 부속규칙」 제3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비 및 기계류를 포함한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과 설치 장소의 원상 복구비용에 대한 균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바. 소유권 취득에 대한 혜택

70% 이상이 말레이시아 시민이 소유한 제조회사의 특허·산업 디자인 또는 상표권의 취득 시 발생한 컨설팅 수수료, 법률 수수료, 인지세 등 5년간의 비용에 대해 매년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 관세 관련 산업

1) 원재료·구성부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수출용 완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완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와 구성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내수용 완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선정된 서비스 부문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2) 외주 제조 활동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서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말레이시아 상표 소유자가 제조 활동을 외주할 경우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국내외 계약 생산업체에 의한 완제품 제조 시 사용된 원자재와 구성품에 대한 수입 관세의 면제

나) 국내 계약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완제품에 사용될 해외계약 제조업체의 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sales tax)의 면제

3) 화물 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제조업체가 자사 상품을 사바주(Sabah)와 사라왁주(Sarawak)로부터 말레이시아 반도의 항구로 해상 운송을 할 경우, 화물 운송료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말레이시아 상표 촉진에 대한 이중 공제

말레이시아 상표의 등록된 소유권자인 회사와 같은 그룹 내 회사는 당해 상표 광고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 환경 보호에 대한 기부

환경 보호와 보존만을 위해 승인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단 한 차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직원 주거시설에 대한 혜택

제조업,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 호텔 또는 관광 사업에서 일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당해 건물의 건축·매입으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공제를 제공하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Prema-chandra Athukorala & Suresh Narayanan, *Economic Corridors and Regional Development*, Asian Development Bank, 2017, p. 3.

법령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웹사이트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Expatriate Services Division, “ESD Guidebook,” https://esd.imi.gov.my/portal/pdf/tc-esd-quick-guidev3-2021_april.pdf, 검색일자: 2021. 10. 28.

ezHASiL, <https://ez.hasil.gov.my/CI>, 검색일자: 2021. 10. 28.

Federal Legislation Portal Malaysia, <https://lom.agc.gov.my>, <https://edaftar.hasil.gov.my/index.php?lgv=2>, 검색일자: 2021. 10. 28.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https://www.mida.gov.my>, 검색일자: 2021. 10. 28.

Maps Open Source, <http://www.mapsopensource.com/malaysia-map.htm>, 검색일자: 2021. 10. 28.

MySST portal, <https://mysst.customs.gov.my>, 검색일자: 2021. 10. 28.

Official Portal of Bank Negara Malaysia, <https://www.bnm.gov.my>, 검색일자: 2021. 10. 28.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https://phl.hasil.gov.my>, 검색일자: 2021. 10. 28.

Official portal of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https://www.miti.gov.my>, 검색일자: 2021. 10. 28.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https://www.customs.gov.my>, 검색일자: 2021. 10. 28. htt

SMEcorp, <https://www.smecorp.gov.my/index.php/en>, 검색일자: 2021. 10. 28.

신흥국의 세정연구 말레이시아

발 행 2021년 12월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TEL: (044)414-2114(代)
홈 페이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I S B N 979-11-6655-118-5
조 판 및 인쇄 (주)다원기획 (044)865-811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신흥국의 세정연구 | 말레이시아